

국 역
朝鮮事務書
조선사무서
(2)

국 역
김종학
김홍수
감 수
김동철
현명철
해 제
전성현

번역

김종학(국립외교원 교수)

김흥수(홍익대학교 교수)

감수

김동철(부산대학교 명예교수)

현명철(전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해제

전성현(동아대학교 교수)

국역 조선사무서(2)

발행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051-888-5058)
기획·편집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발행일 2022년 6월 30일
편집·인쇄 한스디자인(051-809-9001)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76-10
ISBN 979-11-85308-47-0
979-89-964675-0-2 (세트)

원문공개 부산광역시(www.busan.go.kr) > 부산소개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www.bssisa.com)

표지에 사용된 지도
조선 해도 부산항 일부(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국 역
조선사무서
(2)
朝鮮事務書

국 역
김종학
김흥수

감 수
김동철
현영철

해 제
전성현

• 발간사

부산시(시사편찬실)는 시사편찬 사업 일환으로 부산의 역사 관련 다양한 책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1989년 부산시사편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면서 지금까지, 총 20여 종, 120여 권이 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부산은 구석기시대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부산의 역사를 한 권의 책자에 담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부산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시리즈의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전 근대 부산 관련 사료를 국역한 부산사료총서입니다.

부산사료총서는 1963년 제1권 『동래부사례』를 시작으로 관서지와 공문서 등 다양한 종류의 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역을 완료한 것은 『내부일기』, 『다대진공문일록』, 『영남진지』, 『내영정적』, 『내영지』, 『추호유고』, 『왜인구청등록』, 『전객사별등록』, 『통신사등록』 등 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조선시대 왜관·통신사 관련 사료를 국역하여 조선시대 대일교섭의 창구 부산의 위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번역할 사료는 『조선사무서』입니다. 『조선사무서』는 개항기 전후 부산의 왜관 관원 등이 작성한 한일간의 외교 문서를 ‘재부산일본영사관’이 정리한 문서입니다.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에 의거하여 부산에 일본 총영사관이 설립되자, 조일외교 문헌정리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1867년부터 1874년까지 외교 문서를 수집하여 연월별로 정리한 뒤 29권 문헌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사무서』의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면, 개항전 부산항에서 이루어진 한일 외교 양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번역자와 감수자, 그리고 해 제 집필자 선생님과 시사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간행으로 근대 개항 이전 부산항의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 목 차

- 발간사 • 04
- 해 제 • 13
- 범 례 • 32

제5권

메이지明治 3년(1870) 8월부터 9월까지

- 01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이 도한渡韓의 내명內命을 받고 낸 의견서 [2통]
 첨부: 소(宗) 지번사(知藩事) 협의의 건34
- 02 조선사무과朝鮮事務課로부터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와 훈도 간의 대화서對話書를 붙여서 외무성의 논의를 위해 제출한 글43
 첨부: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와 훈도의 대화서
- 03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과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의 대화에 따른 의견서50
- 04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조선 사건에 관해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에게 지시하는 글52
- 05 외무경과 외무대보로부터 훈도 응접서를 첨부해서, 조선에 파견할 자를 별도로 정부에서 인선하여 속히 파견할 것을 상신하는 글56
 첨부: 훈도응답약기(訓導應答略記)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의 답변서
- 06 이즈하라번嚴原藩으로부터 대수사 응접답판의 결과, 관맹寬猛의 처분을 속히 지휘해줄 것을 청하는 글66
- 07 변관辨官으로부터 이즈하라번嚴原藩에서 제출한 관맹의 처분을 바라는 글을 회부回附하는 글67

08	변관에게 이즈하라번嚴原藩에서 제출한 글을 외무성이 반각返却하는 글	69
09	아마구치번山口藩 아와야 다스케栗屋多助의 조선교제에 관한 건백서 建白書	71
10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도한渡韓의 절차를 개진한 글	80
11	조선국 관리에게 보낼 선물[贈品] 목록	83
12	변관에게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의 도한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품의稟議하는 글	87
	첨부: 조선행 수속서(手續書) 조선 관리[韓吏]에게 보낼 선물 목록 공금 내역서	
13	조선 관리에게 보낼 선물의 대가代價 건적서	93
14	공금 내역서 【주서(朱書) 가필】	95
15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도한渡韓 배명서拜命書	96
16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위와 같음.	97
17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위와 같음.	97
18	고바야시小林 사생史生, 위와 같음.	98
19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고바야시小林 사생史生도 관명官名을 버리고 출사出仕로 명할 것을 청하는 글	98
20	가나가와神奈川, 나가사키長崎,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등 4개 현에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의 도한에 따라 공신公信의 전달을 명하는 글	99

- 01 나가사키현長崎縣에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의 도한渡韓에 따른
선편船便의 주선과 그들의 공금이 부족할 경우 조달을 의뢰하는 글
.....102
- 02 외무경이 예조판서에게 보내는 글103
- 03 위와 같음. 한역문漢譯文103
- 04 외무대승外務大丞이 동래, 부산 두 사포에게 보내는 글104
- 05 위와 같음. 한역문104
- 06 이즈하라嚴原 번청藩廳에서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의 도한에 따라
훈도 등에게 간곡히 고할 것을 명하는 글105
- 07 예조참판과 참의의 성명106
- 08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쓰시마對馬 도착을 보고하는 글 ...106
- 09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로부터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 등을 수
행시킬 것을 상신하는 글107
- 10 야나기와라柳原 권대승權大丞이 나가사키長崎에서 조선에 체재 중인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한107
- 11 윤10월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109
- 12 훈도로부터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에게 온 서한110
- 13 윤10월 29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에게 보낸 서신111
- 14 11월 6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서 온 서신114
- 15 미야모토宮本 소승小丞으로부터 마치다町田 대학대승大學大丞이
외무성 봉직 중 반출한 서적과 관련하여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에
게 보낸 조회서118
- 16 나가사키현長崎縣으로부터 조선에 보낼 하코모노箱物를 쓰시마對馬에
전달했음을 알리는 서한119

17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이즈하라번嚴原藩 참사參事에게 보내는 글	119
18	소 시게마사宗重正가 가역家役 면직을 청하는 글	120
19	소 시게마사宗重正가 가역의 사표辭表를 제출했음을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알리는 글	123
20	이즈하라번嚴原藩 참사가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내는 서한	124
21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 조선으로 보낼 공신公信을 쓰시마對馬에게 전달했음을 알리는 서한	125
	첨부: 시바야마 헤이자부로(芝山平三郎)의 수령서	
22	이즈하라번嚴原藩에서 초랑관의 내력을 변관辨官에게 상신한 글	126
23	아오야마 시게지로靑山繁次郎의 조선 심교尋交의 건에 관한 의견서	128
24	아오야마 시게지로靑山繁次郎의 의견에 대한 난바 아사카難波安積의 의견서	131
25	아오야마 시게지로靑山繁次郎의 의견에 대한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의견서	132
26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나가사키[崎陽]에서 하세가와 다이조長谷川退藏가 저술한 보천록補天祿을 외무성에 증정하는 글	134
	첨부: 보천록(補天祿)	
27	12월 초하루 일자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의 내신來信	167
	첨부: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와 한인(韓人) 이의일(李宜逸) 간의 대화서	
28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 외무성의 공신公信을 송달하기 위해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주는 글	170
29	나가사키현長崎縣으로부터 조선에서 온 공신公信을 첨부하여 외무성에 보낸 글	171

- 01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제출한 조선의 새 소식174
- 02 초량관草梁館에서 소 씨宗氏의 옛 관리가 외무성 관원에 제출한 의견서176
- 03 한국에 있는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1월 10일자 서신181
- 04 히타현日田縣 봉기의 대의大意188
- 05 관직에 있는 자들은 지금부터 관명·성씨·실명 순으로 서명하라는 명령서189
- 06 관직에 있는 자들의 평소 왕복문서는 이전처럼 약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명령서190
- 07 쓰시마노카미對馬守로부터 외무성 관원과 면접할 것을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조회하는 글190
- 08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내는 2월 5일자 서신192
- 09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조선 도착 이래의 경황을 진술한 2월 8일자 내신來信193
- 10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의 쓰시마[對州] 출범 및 초량왜관 도착 후의 일기197
- 11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가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상경을 알리는 2월 9일자 서신200
- 12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1월 10일자 서신을 열어 보았다는 2월 22일자 내신來信200
- 13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조선 사건에 관해 조목조목 히로세 도요키치廣瀬豊吉에게 유시諭示하는 글201
- 14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조선의 풍문서風聞書를 첨부하여 보낸 2월 30일자 서신206

15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가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에게 보낸 2월 30일자 별도의 서신	210
16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도중에 상경한 경위를 진술한 3월 4일자 내신來信	211
17	요코하미橫濱에 있는 미국인 브루크가 미국 군함을 타고 조선에 가니 부탁할 것이 있으면 수용하겠다고 외무성의 경·보卿輔에게 올린 글	212
18	동건同伴과 관련하여 미국 함대의 하우스가 외무성 대보大輔에게 올린 글	214
19	동건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소승大少丞이 하우스에게 보낸 회답	214
20	동건에 관한 평의서	215
21	동건과 관련하여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내릴 내유서內諭書를 첨부한 상신 안	216
22	동건과 관련하여 재가를 받은,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내리는 내유서	218
23	동건과 관련한 안도 타로安藤太郎의 도한渡韓 지령서	220
24	동건과 관련하여 이즈하라번嚴原藩에 내리는 지령서	220
25	동건과 관련하여 나가사키현長崎縣에 안도 타로安藤太郎의 뱃삿을 임시변통할 것 등을 명령하는 글	221
26	동건과 관련하여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내리는 지령서	222
27	동건과 관련하여 야나기와라柳原 대승이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222
28	동건과 관련하여 조선사무과朝鮮事務課에서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223
29	동건과 관련한 미국 공사와의 대화서(2통)	224

- 30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요코하마橫濱에서 도한 배편 등과 관련하여 보낸 3월 19일자 서한229
 - 31 이타쿠라 데이조板倉貞藏의 도쿄東京 도착 전신電信231
 - 32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고베神戸에서 보낸 3월 23일자 서한 ·231
 - 33 조선인이 미국 선박의 구조로 나가사키에 도착함에 따라 이즈하라번嚴原藩에서 제출한 글233
 - 34 동건과 관련된 문정問情 기록234
 - 35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고베神戸에서 보낸 3월 26일자 서한 235
- 찾아보기 · 238

원문

조선사무서(2)

- 조선사무서 제5권 · 4
- 조선사무서 제6권 · 103
- 조선사무서 제7권 · 194

『조선사무서』 제5~7권 소개

조선사무서는 ‘재부산일본총영사관’이 1867년 바쿠후 말기인 메이지유신 직전부터 부산의 개항을 앞둔 시기까지 조선과 관련된 일본의 외교문서를 시간순으로 사후에 정리한 것이다. 이 시기는 바쿠후幕府말·메이지 초, 일본이 조선과 쓰시마를 통한 ‘구교舊交’를 조선과 외무성을 통한 새로운 근대적 관계(‘新交’)로 재편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외교 관계를 진행하기 시작한 시기이며, 여전히 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1874년까지이다.

외교 문서의 구성은 조선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초량왜관을 둘러싸고 그때까지 조일 관계의 일본 측 파트너였던 쓰시마, 메이지유신 이후 조일 관계를 직접 관장하고자 한 일본 정부와 외무성, 그리고 조일 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조선 측 관료들이 작성하거나 상호 간에 주고받은 외교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 교제 실무진과 외무 당국 간에 오고 간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조일 간의 협상 가운데 조선 측 내용은 모두 일본 측에 의해 번역된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불완전성은 물론이고 번역의 자의성 때문이라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조선 측 관련 자료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조선사무서는 조선과 외교 관계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에 이르는 과정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외교 문서이다. 즉, 1876년 2

월 조일수호조규에 의해 부산구조계가 설정되고 1880년 설치된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이 일본의 대조선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바쿠후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까지 연월별 29권으로 간행한 것이다.

조선사무서(2)는 29권 가운데 제5, 6, 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기는 1870년 8월부터 1871년 3월 신미양요 직전까지이며, 내용은 일본 외무성 관원의 조선 파견과 와중에 전개된 신미양요 직전 일본의 대응을 보여주는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조선사무서(1)과 이어지는 것으로, 앞 시기의 상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한 ‘대정봉환大政奉還’과 ‘왕정복고王政復古’에 따라 조선과의 ‘구교’를 혁파하고 새로운 조약을 통한 교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외교 관계를 단번에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쓰시마를 통한 ‘구교’의 형식을 빌려 ‘신교’의 조약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다. 이른바, 왕정복고의 서계를 통고하는 것(‘王政復古通告書契’)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조선과 교제는 조선 측의 대응으로 여전히 쓰시마를 통해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친정親征’을 알리는 서계의 자구 문제로 인해 조선 측 서계 봉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시적으로 쓰시마를 통한 교제를 진행했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서 있을 수 없었다. 결국, 외무성을 통해 직접 교섭에 나서기 시작했다. 먼저, 1870년 초 외무성 관원의 1차 조선 파견을 통해 조선 정부로부터 서계 봉출이 안 되는 원인과 그 입장을 조사한 조선 내탐서가 작성되었다. 대체적인 내용은 구례의 조선 교제가 대마도의 ‘사교’이기에 폐지하고 정부의 직접 교제와 무역을 위한 약조 체결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더불어 외무성 파견 관원에 의해 군대와 함께 황사를 파견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이른바 ‘황사파견론’이 제기되었다.

외무성은 일본 정부에 곧바로 황사 파견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 탐색이 필요했다. 외무성 관원의 2차 파견은 그 때문이었다. 조선사무서(2)는 외무성 관원의 2차 조선 파견과 관련된 외교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각 권

의 주요 문서 내용을 토대로 그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사무서 제5권(1870년 8월부터 9월까지)

제목	발신	수신	일자
森山茂等渡韓ノ内命ヲ奉シ意見書[一]	廣津弘信 森山茂		08월(음)
森山茂等渡韓ノ内命ヲ奉シ意見書[二]	廣津弘信 森山茂		08월(음)
朝鮮事務課ヨリ浦瀨最助訓導ト對話書ヲ副ヘ省議ニ 備フル書	朝鮮掛		08월19일(음)
森山茂等浦瀨最助對話ニ依リ意見書	廣津弘信 森山茂		08월(음)
午四月浦瀨最助別密會草校, 大島友之允ヨリ朝鮮事 件ヲ浦瀨最助ニ示스書	大島友之允	浦瀨最助	04월(음)
朝鮮事件, 外務省卿輔ヨリ訓導應接書ヲ副ヘ遣韓ノ 者別ニ政府ニ於テ人撰シ速カニ派遣ノ儀ヲ上申スル 書	寺島澤	三職	08월25일(음)
嚴原藩ヨリ大修使應接談判ノ末寬猛處分速カニ指揮 ヲ仰クノ書	森川	外務省	09월15일(음)
辨官ヨリ嚴原藩差出シタル寬猛處分ヲ仰クノ書ヲ回 付スル書	辨官	外務省	09월18일(음)
辨官ヘ嚴原藩差出シタル書ヲ返却スル書	辨官	外務省	09월19일(음)
朝鮮交際ノ新概略, 山口藩栗屋多助朝鮮交際ノ儀建 白書	栗屋多助		09월(음)
吉岡弘毅等渡韓順序ヲ陳ル書			09월20일(음)
辨官ヘ吉岡弘毅等渡韓ニ依リ意見書ヲ副ヘ稟議スル 書	外務省	辨官	09월23일(음)
韓吏ヘ贈品代價積書			
[朝鮮行]用金仕譯書			
吉岡弘毅渡韓拜命書	太政官	吉岡弘毅	09월(음)
森山茂渡韓拜命書	辨官	森山茂	09월(음)
廣津弘信渡韓拜命書	辨官	廣津弘信	09월(음)
小林史生渡韓拜命書	外務省	小林	09월27일(음)
職務進退議則, 吉岡弘毅等ヨリ小林史生モ官名ヲ廢 シ出仕ニ命セラレンフヲ請フノ書	吉岡弘毅, 森山茂 廣津弘信	辨理	09월28일(음)
神奈川[橫濱]長崎大阪兵庫四縣ヘ吉岡弘毅等渡韓ニ 依リ公信傳達ノ儀ヲ令スル書			09월30일(음)

그런데 1차 도한했던 외무성 관헌의 조선 내탐 보고뿐만 아니라 외무성 관헌의 2차 파견은 쓰시마 측의 ‘내밀한 활동’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쓰시마 측에서도 ‘왕정복고통고서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서계 봉출은 차치하고, 조일 교섭의 주선조차 조선 측의 거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후속 조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이즈하라 번지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는 일본 정부에 후속 조치의 내명을 요청했다. 즉, 일본 정부에 ‘관맹寬猛의 두 길’ 중 근본 방침을 우선 확정하고 사절 교섭의 대처와 관련한 타당한 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요청은 외무성 관원의 2차 조선 파견으로 일단락되었다.¹

다른 한편, 비공식적으로는 쓰시마의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역관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에게 도한과 함께 조선 측 훈도와 ‘특별 밀회’를 지시했다. 즉, 조선 측 훈도와 진심을 토로하는 대담을 통해 조선 측 의향을 내밀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는 만약 서계 통고의 경과를 그대로 답습해 일본 정부가 한층 엄중하게 교섭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성사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동래부에 난입하거나 억지로 입경해 국왕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병단을 여는 시기에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주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이 서계 봉출을 하지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 정부가 ‘그 무례함을 꾸짖어 토벌해야 한다는 논의’로 나아가게 되면, 이는 조선의 불행이고 또한 쓰시마의 불행이기 때문에 조일 간의 교섭을 주선하는데 진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²

오시마의 특별 밀회 지시에 따라 우라세는 부산에서 훈도와 비밀리에 대담했다. 대담의 자리에서 우라세는 그간의 교섭에서 성과가 전혀 없어 자신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황상과 국왕國王의 칭호는 우선 놓아두고 양국 정부가 등대等對로 교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해 마침내 훈도의 양해를 얻

¹ 嚴原藩ヨリ大修使應接談判ノ末寬猛處分速カニ指揮ヲ仰クノ書；辦官ヨリ嚴原藩差出シタル寬猛處分ヲ仰クノ書ヲ回付スル書；辦官ヘ嚴原藩差出シタル書ヲ返却スル書

² 午四月浦瀬最助別密會草校

어냈다. 물론 이것은 조선 측 훈도가 성공 여부는 반드시 기약하긴 어렵지만, 크게 진력해서 주선한다는 취지 정도였다.³ 그래도 외무성은 이에 고무되어 사전의 논의를 통해 준비해둔 두 사람 이외에 한 사람을 정부로부터 새로 인선 받아 정부와 정부 간의 교제를 위해 조선 파견을 준비했다.⁴ 그렇게 외무성 관원의 2차 조선 파견은 미리 결정된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와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에 더해 새로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로 결정되었다. 이들은 조선 파견 전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아래와 같다.

외무성에서 출장가는 것은, 첫 번째로는 조정의 법칙이 해외교제海外交際의 사건은 외무성의 직무에 관계되는 바이며, 두 번째로는 소 씨가 저 나라와 왕복하는 조밀粗密이 과연 인교隣交를 후하고 돈독히 하려는 조정의 뜻을 관철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만국의 형세와 우내宇内の 변상變常을 상세하게 설유說諭하고, 아울러 범과 이리 같은 러시아가 잠식蠶食의 뜻을 펼쳐서 아시아 전체를 병탄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러시아와 저 나라는 바로 이웃집과 같으니 편고교주偏固膠柱하여 안일하게 있다가 만약 하루아침에 일이 생기면 고립된 나라가 되어 사직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들과 우리는 본디 순치脣齒의 관계에 있는 나라로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서로 돕고 구해서 각자 그 나라를 보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의 형세는 양국의 안위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지극히 중대하니 어찌 조언에 도구가와 씨의 심상尋常한 교통交通의 예전例典을 답습하여 스스로 편안히 여기고 있을 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조정에서 조만간 국사國使를 내려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속히 이러한 뜻을 이해시켜서 접대 준비를 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루한 습벽習癖 때문에 만약 깊이 국내의 실정을 누설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뜻이 있음이 보인다면, 오히려 일단 종전의 관례에 따라 신사信使를

³ 朝鮮事務課ヨリ浦瀨最助訓導ト對話書ヲ副ヘ省議ニ備フル書

⁴ 朝鮮事件, 外務省卿輔ヨリ訓導應接書ヲ副ヘ遣韓ノ者別ニ政府ニ於テ人撰シ速カニ派遣ノ儀ヲ上申スル書

우리에게 보내서 깊이 우리 조정 친교親交(직접 교제함)의 지극히 신실하고 돈독한 뜻을 깨닫기를 희망하는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⁵

이들이 스스로 제시한 조선 파견 목적은 첫째, ‘조정의 법칙이 해외 교제의 사건은 외무성의 직무에 관련되었기’ 때문이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대외 교섭은 외무성 소관이었다. 둘째, ‘이즈하라 번지사가 조선과 왕복하는 조밀粗密이 과연 이웃과의 교제隣交를 후하고 돈독히 하려는 조정의 뜻을 관철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서였다. 대외 교섭이 외무성 소관임에도 현재 ‘구교’에 따라 조선과 ‘신교’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쓰시마를 내세웠지만 이를 직접 감독해야 했다.

셋째, ‘만국의 형세와 우내宇內的 변상變常을 상세하게 설유說諭’하기 위해서였다. 이른바 만국공법의 세계 체제와 ‘신교’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아울러 ‘범과 이리 같은 러시아가 잠식蠶食의 뜻을 펼쳐 아시아 전체를 병탄하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조선이 ‘편고교주偏固膠柱하여 안일하게 있다가 하루아침에 일이 생기면 고립된 나라가 되어 사직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조선과 ‘순치의 관계에 있는 나라로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서로 돕고 구해서 각자 그 나라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넷째, 지금의 형세는 양국의 안위와 관계되어 일본 정부에서 조만간 국사를 보내려고 하니 접대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외무성 관원의 2차 조선 파견은 쓰시마 측을 보익하고 감독하며, 한편으로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 조선의 여러 항구를 개방하여 일본이 조선과 각국 간의 조약을 매개하고 짐작하는 일을 관장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였다.

요시오카 외무권소승 외 2명의 외무성 관원은 이처럼 정부 간 등대교제等對交際를 최종 목적으로 삼아, 도한 후 조선과 교섭 절차(수속)를 다음과 같이 정했

⁵ 森山茂等渡韓ノ内命ヲ奉シ意見書[一]；森山茂等渡韓ノ内命ヲ奉シ意見書[二]

다. 우선, 외무경이 조선의 예조판서에게, 외무대승이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
 게 각각 보낼 서계를 지참한다. 그리고 도항 후 쓰시마번에서 파견해 초랑왜관
 에 체류하고 있는 제사諸士와 적당한 때를 신중히 상의해 훈도와 면담을 갖는다.
 양국 순치의 두터운 정과 참되고 정성스런 뜻을 설유해서 조선 측의 의단疑團을
 영원히 해소한다. 그리고 지참한 서계를 제출해 등대교섭의 대의를 표시한다.

만약 이 서계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돌아가지 않고 교제의 간절한 뜻과 지금의
 형세 등을 서서히 설명하여 가장 먼저 판서로부터 교섭의 정에 감사한다는 회신
 을 얻는다. 교섭의 정이 성숙한 후, 통신의 흠차대신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황사
 를 보내든지 순차적으로 반드시 내왕하도록 한다. 이어서 예전부터 이루어진 공
 사무역이라는 것을 효유하고 관민의 정이 서로 어그러지지 않는 양법을 상의해
 미봉한다. 그 사이 협상 시기의 변동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 간 대등교제가 완전
 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수순이었다.⁶ 교섭 절차가 갖춰지자, 도항을 위한 공금과
 선임, 그리고 조선 관리에게 줄 선물 등을 준비하는 등 순조롭게 도항에 나섰다.⁷

2) 조선사무서 제6권(187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목	발신	수신	일자
長崎縣へ吉岡弘毅等渡韓ニ依リ船便ノ周旋及同人用金闕 乏ノ節ハ調達スヘキ旨ヲ依頼スル書	外務省	長崎縣	10월(음)
外務卿ノ朝鮮禮曹ニ贈レル書, 外務卿ヨリ禮曹判書へ贈ル 書	澤宣嘉	朝鮮國禮曹 判書	1870년(음)
丸山外務大丞ノ東萊釜山府使ニ贈レル書, 外務大丞ヨリ東 萊釜山兩使ニ贈ル書	丸山作樂	朝鮮國東萊 釜山兩令	1870년(음)
嚴原藩廳ヨリ吉岡弘毅等渡韓ニ依リ訓導等へ懇告ス可キ 旨ヲ令スル書	政所	館司	10월(음)
禮曹ノ姓名, 禮曹參判參議姓名書			

⁶ 吉岡弘毅等渡韓順序ヲ陳ル書; 辦官へ吉岡弘毅等渡韓ニ依リ意見書ヲ副へ稟議スル書

⁷ 韓吏へ贈品代價積書; [朝鮮行]用金仕譯書

제목	발신	수신	일자
吉岡等對馬着報告書, 吉岡弘毅等對州著ノ旨上申書	廣津弘信 森山茂 吉岡弘毅	外務省	10월15일(음)
渡韓報告, 吉岡弘毅ヨリ浦瀬最助等ヲ隨從セシメタル旨上申書	廣津弘信 森山茂 吉岡弘毅	外務省	10월28일(음)
柳原正使ノ吉岡ニ告ル日清條約成立ノ報告書, 柳原權大丞長崎ニ在テ在韓吉岡弘毅等へ往翰	柳原	吉岡 森山茂 廣津俊藏	10월19일(음)
閏十月吉岡弘毅等へ往信	大少丞	吉岡	윤10월(음)
訓導ヨリ浦瀬最助へ來翰	訓導	最助	윤10월19일(음)
吉岡へ日本使節渡歐通知書, 閏十月二十九日吉岡弘毅へ往信	佐田白茅, 大廷源次兵衛, 花房, 田邊, 宮本, 水野, 楠本, 柳原, 丸山	吉岡	윤10월29일(음)
吉岡等渡韓報告書, 十一月六日吉岡弘毅等ヨリ來信	廣津弘信 森山茂 吉岡弘毅	外務省	11월06일(음)
宮本少丞ヨリ町田大學大丞外務省奉職中差出シタル書籍ノ義吉岡弘毅へ照會書	宮本	吉岡	11월07일(음)
長崎縣ヨリ朝鮮へ送ルヘキ箱物ハ對州へ轉達セシ旨來翰	長崎縣	外務省	11월14일(음)
吉岡弘毅等ヨリ嚴原藩參事ニ贈ル書	吉岡, 森山, 廣津	嚴原藩參事	11월14일(음)
建白書寫	大島友之允		
宗氏辭職願ト交渉(建白書), 宗重正家役ヲ免セラレンフヲ請フノ書	嚴原藩知事	辨官	11월(음)
宗重正ヨリ家役ノ辞表差出セシヲ吉岡弘毅等へ告ル書	重正	吉岡弘毅 森山茂 廣津弘信	11월19일(음)
嚴原藩參事ヨリ吉岡弘毅等へ往翰	高瀬, 古川, 島雄	吉岡弘毅 森山茂 廣津弘信	11월21일(음)
長崎縣ヨリ朝鮮行公信對州へ轉達セシ旨來翰	長崎縣	外務省	11월26일(음)
朝鮮館所之儀民部省ヨリ御達ニ依差出候書面寫, 嚴原藩ヨリ草梁館ノ來歷ヲ辨官へ上申セシ書	嚴原藩	辨官	11월27일(음)

제목	발신	수신	일자
青山繁次郎ヨリ朝鮮尋交ノ義意見書	青山繁次郎		
青山繁次郎意見ニ依リ難波安積意見書	難波安積		
青山繁次郎意見ニ依リ廣津弘信意見書	廣津弘信		
吉岡弘毅等ヨリ崎陽長谷川退藏著述セシ補天祿ヲ外務省ニ贈ル書	廣津弘信 森山茂 吉岡弘毅	外務省	12월01일(음)
補天祿一閱後外務卿誌	外務卿		1871년 01월23일(음)
吉岡等ノ報告, 十二月朔日吉岡弘毅等來信	廣津弘信 森山茂 吉岡弘毅	外務省	12월01일(음)
長崎縣ヨリ外務省公信ヲ送達スル為メ吉岡弘毅等ニ贈ル書	長崎縣	廣津弘信 森山茂 吉岡弘毅	12월07일(음)
長崎縣ヨリ朝鮮公信ヲ副へ來書	長崎縣	外務省	12월13일(음)

요시오카 고키 외무권대승을 비롯해 모리야마 시게루, 히로쓰 히로노부의 외무성 관원과 회계 기록을 검한 사생史生 고바야시 등 4명은 조선으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예전에 우리 조정에서 소 요시아키라宗義達에게 귀국과 구교를 거듭할 것을 의논하라고 명한지 이제 3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회주回奏하지 않았습시다. 살펴보건대 귀국의 제현이 혹 본방에서 옛 교분을 거듭 펴는 뜻을 미처 양찰하지 못한 것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거듭 진술해서 알리는 것”이라는 외무경이 조선의 예조판서에게 보내는 서계를 지참했다.⁸ 더불어 “조일 간의 옛 맹약을 다시 돈독히 하는 일을 파견한 외무성 관원에게 맡겨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를 직접 만나 일본의 성의誠意를 진술하게 합니다. 외무성 관원들을 관대하게 접대하고 그들이 진술하는 바를 청납聽納하며 그들이 가져가는 외무경의 서한을 예조판서께 전달할 것”을 바라는 외무대승의 서계도 지참했다.⁹

⁸ 外務卿ノ朝鮮禮曹ニ贈レル書

⁹ 丸山外務大丞ノ東萊釜山府使ニ贈レル書

이들은 10월 9일 나가사키에 도착해 14일까지 정박한 후 15일 쓰시마의 이즈하라에 도착했다.¹⁰ 쓰시마에서 지참사와 상의하는 등 공무를 끝내고 29일 도한을 위해 이즈하라에서 출발했다. 이때, 쓰시마의 역관 우라세 사이스케와 새로운 초량왜관 관수 난바 아사카難波安積 등이 수행했다.¹¹ 29일에 출항한 배는 윤월 2일 와니우라鰐浦에 도착했는데, 일기가 좋지 못해 21일간 대기하다가 23일 다시 출항했다. 다시 바람 때문에 부산포에 입항하지 못하고 울산부 내의 당포에 표착했다. 이때 조선 측의 문정을 받아 이들의 조선 파견은 한양에 알려지게 되었다.¹² 그리고 30일 당포를 출발해 부산포로 갔는데 여전히 일기가 좋지 못해 절영도와 오륙도 사이에 정박하다가 겨우 초량왜관에 도착했다. 실로 이즈하라를 출발한지 33일만이었다.

파견 온 외무성 관원은 11월 5일부터 공무에 착수해 6일 초량왜관의 관사를 비롯한 제사와 협의하고 조선 측 훈도 등에게 자신들의 도한을 전했다.¹³ 더불어 러시아와 관련해 온성에서도 볼 수 있는 장소까지 러시아인들이 출몰했다는 우라세와 이의일과의 문답을 첨부하며 ‘만약 한국에 큰일이 생기면 이는 곧 일본의 큰일’이기 때문에, 조일 교제를 종전의 목적대로 이즈하라번과 협동하여 진력하고자 했다.¹⁴

한편, 쓰시마 측은 외무성 관원의 2차 파견에도 여전히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¹⁵ 그런데 외무성의 조선 직접 교섭과 쓰시마번 측의 교섭 감독이 추진되자,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의 대응책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는 이즈하라번지사인 소 시게마사宗重正가 조일 교통을 관장하는 구례의 가역과 조선과의 공무를 위한 외국사무보의 면직을 청원한 것이었다. 근거로 아래 인용문과 같이

¹⁰ 吉岡等對馬着報告書

¹¹ 渡韓報告, 吉岡弘毅ヨリ浦瀬最助等ヲ隨從セシメタル旨上申書

¹² 吉岡等ノ報告, 十二月朔日吉岡弘毅等來信

¹³ 吉岡等渡韓報告書

¹⁴ 吉岡等ノ報告, 十二月朔日吉岡弘毅等來信

¹⁵ 嚴原藩廳ヨリ吉岡弘毅等渡韓ニ依リ訓導等へ懇告ス可キ旨ヲ令スル書

‘강기綱紀를 한번 진작하여 각국의 교제를 외무성에서 통괄하는데, 유독 한국만 본번에서 관여한다면 외교의 권위가 두 길로 나뉘는 것’으로 그 체제가 스스로 불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과거의 복철覆轍로 장래의 형세를 숙고해 보건대, 관원이 다시 도한渡韓할 때 여전히 대수사 응접 순서를 따라 반복변론反復辨論한다면, 그 효과가 없을 것임은 말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관원은 마땅히 그 단서端緒를 바꿔서 답판해야 하니, 이번에 만약 전례前例에 따라 본번本藩이 그 사이를 주선하고 한인韓人이 구습舊習을 답습해서, 과거에 본번本藩에 가했던 간책奸策을 관원에게 사용하여, 다시 금일의 공간公幹을 방해해서 더 이상 황조皇朝의 실제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신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황공한 정도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강기綱紀를 한번 진작하여 각국의 교제를 외무성에서 통괄하는데, 유독 한국만 본번本藩에서 관여한다면 외교의 권權이 두 길로 나뉘는 것이니 그 체제體裁가 어떻겠습니까?

일부러 신정新政 이래로 세습의 직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본번本藩만 가역家役으로 봉직하게 하신 것은 지금의 취지로 볼 때 스스로 불안한 것이 있으니, 부디 전후의 정실情實을 살피시어 이번에 신의 가역家役을 면허免許하는 분부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원이 다시 도한渡韓했을 때 답판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저들에게 신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해 면직된 사실을 전하면, 조정의 위엄이 한인의 의표를 찔러서, 저들이 크게 두려운 마음을 품어 피아가 답판할 때 주객강약主客強弱의 형세가 바뀔 것입니다. 게다가 저들 또한 외교의 전권全權이 오로지 외무성 한 길로 귀착된 사실을 깨달아 저절로 황국의 성의誠意를 철저하게 이해할 것이니, 내외양전內外兩全의 장책長策이라고 생각됩니다.¹⁶

¹⁶ 宗氏辭職願ト交渉(建白書)；宗重正ヨリ家役ノ辞表差出セシヲ吉岡弘毅等へ告ル書；嚴原藩參事ヨリ吉岡弘毅等へ往翰

더불어 구래의 조선 교섭의 임무를 담당한 쓰시마의 가역이 면제된다면 오히려 조선과 담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더 이상 쓰시마가 조선의 일본 측 교섭 대상이 아닌 것을 통보하면 조선이 ‘두려운 마음’으로 담판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조일 간 주객과 강약의 형세가 뒤바뀔 것이다. 또한 일본 외교의 전권이 외무성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의 ‘성의’를 더욱 잘 이해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계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대응은 여전히 조선과의 교섭은 쓰시마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그와 같은 의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간의 교섭 경험을 토대로 볼 때, 현재의 조선 측 입장이 단순히 ‘기휘忌諱하는 자구 때문에 공무가 지체된 것’이니 ‘대수사의 서계 가운데 잠시 저들이 기휘하는 자구를 변통하고, 사실을 철저하게 알리는 것을 실용으로 내세우’면 그 이후의 절차가 순순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었다.¹⁷ 아마도 이즈하라 번지사의 조선과 교제를 담당하던 가역 면직 청원은 쓰시마번의 조선 교제 사무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무성 관원은 소 시게마사의 가역 면직 청원을 받아들이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3) 조선사무서 제7권(1871년 1월부터 3월까지)

제목	발신	수신	일자
大島大夫歸國說			
大島友之允ヨリ差出セン朝鮮新聞			01월08일(음)
朝鮮御用件ニ付役役見込彼地ニテ官員へ申出候書取			
吉岡等へ外務省ノ書翰	宮本鳴 津久井遠 佐田直寛	吉岡弘毅 森山茂 廣津弘信	01월10일(음)
日田騷動内容, 日田縣一揆ノ大意			
在官ノ輩自今官苗字實名ヲ署スヘキ令書	太政官		1870년 12월(음)

¹⁷ 青山繁次郎ヨリ朝鮮尋交ノ義意見書；青山繁次郎意見ニ依リ廣津弘信意見書

제목	발신	수신	일자
在官ノ輩平日往復文書ハ旧ノ如ク略式ニテ可ナル旨令書	太政官		1870년 12월(음)
第二月十日横濱出版新聞紙抜萃			
宗義達ノ東萊釜山兩使ニ贈ル書	平義達	朝鮮國 東萊釜山兩 令	02월(음)
米國討韓事情, 二月五日吉岡弘毅等へ往信	韓國御用掛 宮本鳴 津久井遠 佐田直寛	吉岡弘毅 森山茂 廣津弘信	02월05일(음)
吉岡等ノ外務報告書, 二月五日[八日]의 誤記]吉岡弘毅等ヨリ 着韓以來ノ景況ヲ陳スル來信	廣津弘信 森山茂 吉岡弘毅	外務省	02월08일(음)
吉岡弘毅等對州開帆及草梁館着後ノ日記			
二月九日吉岡弘毅ヨリ廣津弘信上京ノ義來信	吉岡弘毅	大少丞	02월09일(음)
二月二十二日吉岡弘毅等ヨリ正月十日ノ往信披見シタル旨 ノ來信	森山茂 吉岡弘毅	佐田白茅 津久井遠 宮本鳴	02월22일(음)
諭旨大意條目			
廣津弘信ヨリ朝鮮事件ニ關スル條條廣瀬豐吉へ諭示書	廣津弘信	廣瀬豐吉	02월23일(음)
二月晦日吉岡弘毅等ヨリ彼地風聞書ヲ副へ來信	森山茂 吉岡弘毅	柳原丸山	02월29일(음)
二月晦日吉岡弘毅ヨリ廣津弘信へ別信	森山茂 吉岡弘毅	廣津弘信	02월29일(음)
三月四日廣津弘信途中ニ於テ上京ノ次第ヲ陳スル來信	廣津弘信	佐田白茅 津久井 宮本	03월04일(음)
横濱ニ在ル米國人「ブルーク」ヨリ米國軍艦ニ乗り組ミ朝鮮 ニ赴クヲ以テ委託ヲ受ケントシ外務省卿輔ニ贈ル書	ゼーユーチ ブルーク (J. H. Brook)	外務卿輔	04월24일
「ブルーク」ト米海軍長官ノ外務送翰書, 米國艦隊「ハウス」ヨリ 外務省大輔ニ贈ル書	ハウス (House)	寺島	04월29일
外務「ハウス」ニ回翰, 外務省大少丞ヨリハウス回翰	外務大少丞	ハウス (House)	03월14일(음)
米國ト朝鮮關係ニ就 評議書			
内諭, 吉岡弘毅等へノ内諭書ヲ副へ上申案	外務卿	吉岡弘毅 森山茂 廣津弘信	03월(음)

제목	발신	수신	일자
英語通譯派遣ノ件	外務省	辨官	03월15일(음)
米艦ト吉岡等心得書	外務省	辨官	03월15일(음)
內諭			03월(음)
安藤太郎渡韓指令書	外務省	安藤太郎	03월16일(음)
嚴原藩へ指令書[一]	外務省	嚴原藩	03월16일(음)
嚴原藩へ指令書[二]	外務省	嚴原藩	03월(음)
嚴原藩へ指令書[三]	外務省	嚴原藩	03월(음)
長崎縣へ安藤太郎乗船松賃一時辨用スヘキ旨等ヲ令スル書	外務大少丞	長崎縣知參事	03월(음)
外務ノ米艦派遣ト吉岡等へ命令, 吉岡弘毅等へ指令書	外務省	吉岡弘毅 森山茂	03월(음)
柳原大丞ヨリ吉岡弘毅等へ往信	柳原前光	吉岡弘毅 森山茂	03월16일(음)
吉岡森山へノ公信案, 朝鮮事務課ヨリ吉岡弘毅等へ往信	朝鮮事務		03월16일(음)
澤卿米公使對話, 米國公使對話書[一]			03월16일(음)
米商船漂着ト米國, 米國公使對話書[二]			
廣津弘信橫濱着	朝鮮掛		03월20일(음)
廣津ノ朝鮮到任用向書, 三月十九日廣津弘信橫濱ヨリ渡韓船便等ノ義來翰	廣津弘信	外務省 朝鮮御用掛	03월19일(음)
電文用向, 板倉貞藏着京電信	板倉貞藏	外務省	03월20일(음)
三月二十三日廣津弘信神戸ヨリ來翰	廣津弘信	近藤典	03월23일(음)
嚴原藩ヨリ朝鮮人米船ノ救援ヲ受ケテ長崎ニ來著スルニ依リ差出セシ書	仁位半左衛門		03월25일(음)
嚴原藩ヨリ朝鮮人米船ノ救援ヲ受ケテ長崎ニ來著スルニ依リ問情記			
三月二十六日廣津弘信神戸ヨリ來翰	朝鮮事務掛		04월03일(음)

외무성 관원은 조선 파견 이후 훈도의 입관을 이즈하라번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섭했다. 훈도는 병을 핑계로 초량왜관에 오지 않았다. 해를 넘겨 1월에야 서울로부터 품의가 내려와 왜관에 온 훈도와 면회하고, 그 자리에서 ‘외무관원이 외무경의 간절한 성의를 품고 심맹尋盟을 위해 도해했으니 응접하라’고 했다. 훈도는 이번에도 선례에 따라 쓰시마의 조선 사무 담당이 아니면 면담할 수 없다고 거듭 사양하고, 이후 청병을 이유로 왜관에 오지 않았다.¹⁸ 석 달째 조선 측은

여전히 종래 외무사원을 맞이한 전례가 없다고 외무성 관원의 접견을 거부했다.

조일 간의 관계가 계속 교착상태에 빠지자 외무성 관원은 히로쓰 히로노부를 직접 도쿄에 보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품의하도록 했다.¹⁹ 히로쓰는 도쿄로 가는 도중 이즈하라번에 도착해 번지사가 별서계別書契와 별편別便을 조선에 보내주길 요청했다.²⁰ 이에 따라 쓰시마노카미對馬守는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예라는 것이 일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외무사원의 예가 정체가 바뀐 지금 생긴 것’이다. ‘인의를 공고히 하고 친호를 돈독히 하는 것이 양국의 복’이니 외무성 관원과 면접할 것을 조희했다.²¹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난관을 다른 방법으로 돌파하고자 했다. 그것은 미국의 조선 침략과 관련된 신미양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1869년 새롭게 미국 대통령이 된 윌리시스. S. 그랜트와 그의 정부는 일본을 개항시킨 미국 외교 정책인 포함외교정책을 그대로 이어갔다. 그래서 그간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조선 원정계획을 주장한 미 해군과 아시아함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1870년 2월 3일(음), 조선 원정을 단행한다고 선포했다. 3월 20일 주청 미국 공사에게 아시아함대와 조선으로 가서 통상 조약은 물론 ‘난파선’ 구조 조약을 협상하도록 명령했다. 주청 미국 공사는 10월, 아시아함대 사령관 및 상하이 총영사와 협의하여 원정 시기를 1870년 5월 중으로 잡았다. 그리고 조선 정부에 편지를 보내, 제너럴셔먼호의 행방불명 규명과 통상을 요구했다. 당연히 조선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은 아시아함대의 전 병력을 1870년 3월 중순까지 나가사키에 집결시켜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다.²²

1871년 벽두부터 ‘미국이 한국을 치려는 정황’이 일본에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서신이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에게 통고되었다.²³ 이른바 미

¹⁸ 吉岡等 / 外務報告書

¹⁹ 二月九日吉岡弘毅ヨリ廣津弘信上京ノ義來信

²⁰ 三月四日廣津弘信途中ニ於テ上京ノ次第ヲ陳スル來信

²¹ 宗義達ノ東萊釜山兩使ニ贈ル書

²² 김태웅, 「신미양요, 150년 전 한미관계의 첫 단추」, 『지식의 지평』 31, 2021, 5~7쪽.

국의 조선 침략인 신미양요의 준비 과정이 일본에서 확인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조선으로 가는 물길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기 위해 제주에서 표류한 조선인을 상해와 나가사키로 옮겨 가며 압록강 등의 물길을 집요하게 묻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²⁴

또한 일본에 있던 미국 정보원 J. H. 브루크Brooke는 일본 외무성에 미국 함대의 ‘조선 탐색을 위한 발행’에 승선해 조선에서 담판 상황 및 성과, 조선 및 조선 인민의 현재 형세를 탐색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그는 단순한 탐색이 아닌 전투를 상정하며 쌍방이 사용하는 군세의 다과, 무기의 종류 및 전투의 형세 등을 아는 것은 일본 정부도 필요한 일이니 혹시 용건이 있으면 미국 영사에게 알려달라고 했다.²⁵ 이 서신은 일본 병무성에 고용된 영국 해군 중위 하우스를 통해 외무대보에게 전달되었다. 하우스는 병무성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고’를 덧붙였다. 일본도 이 기회에 사정을 직접 탐색하기 위해 한 명의 대리인을 같이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²⁶ 즉각 외무성은 하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브루크에게 부탁할 것을 회신했다.²⁷ 이어서 정부의 대처 방안이 아래와 같이 마련되었다.

一. 이것과 관련된 내유內諭를 보낼 것

一. 영어 통역 1명을 파견하고자 하는 것[두주(頭註): 구(舊) 도미나가 이치쿠라(富永一藏), 금(今) 나카토미 후유키(中臣冬樹)]

一. 브루크에게 부탁하여 그 정실情實(실제의 사실)을 탐색토록 하는 것

一. 요시오카吉岡와 모리야마森山가 그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

²³ 米國討韓事情, 二月五日吉岡弘毅等へ往信

²⁴ 嚴原藩ヨリ朝鮮人米船ノ救援ヲ受ケテ長崎ニ來著スルニ依リ差出セシ書 ;

²⁵ 横濱ニ在ル米國人「ブルーク」ヨリ米國軍艦ニ乗り組ミ朝鮮ニ赴クヲ以テ委託ヲ受ケントシ外務省卿輔ニ贈ル書

²⁶ 「ブルーク」ト米海軍長官ノ外務送翰書

²⁷ 外務「ハウス」ニ回翰

— 미국 공사에게 그 허실虛實을 듣고 조선에 영지領地(왜관-웁긴이)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

— 미국 공사에게 우리나라 관원이 그곳에 있고, 또한 조선과 우리나라는 구교舊交가 있음을 은연중에 얘기해서, 만약 임기臨機하여(어떤 기회나 고비에 처하여) 그 나라에서 편의便宜를 요청할 일이 있어 우리 관원이 그 나라에 있는 해군[水師] 제독 등에게 제의할 일도 있다면 해군 제독도 이들과 담합談合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처리를 의뢰하는 것²⁸

일본 정부의 대처 방안은 미국에 대한 방안과 조선에 파견된 외무성 관원에 대한 방안이었다. 미국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하우스의 충고를 받아들여 영어 통역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둘째, 브루크에게 부탁하여 그 정실을 탐색하도록 했다. 셋째, 미국 공사에게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선에 초량왜관이 있음을 알렸다. 넷째, 미국 공사에게 조선에 현재 외무성 관원이 파견되어 있으니 혹시 어떤 기회나 고비에 처하여 조선에서 편의를 요청할 일이 있으면 외무성 관원과 미국 해군 제독이 담합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다. 덧붙여 미국 공사와의 협의에서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의 안위를 보장받았다. 이처럼 일본은 미국이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 조선의 ‘죄를 문책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²⁹ 하지만 철저하게 미국의 편에서 조선과의 봉착된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 따라서 아래 인용문과 같이 이를 잘 활용하도록 조선에 파견된 외무성 관원에게 내유했다.

— 조선은 경계를 접하고 있고 구교가 있는 나라이다. 특히 지금은 이미 관원을 파견해서 친교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저 나라에 사변이 있으려 한다. 반드시 그 방책을 다해서 그 나라의 위급을 걱정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그

²⁸ 米國ト朝鮮關係ニ就 評議書

²⁹ 澤卿米公使對話

해를 피할 것을 권유해서 황조(皇朝)가 인접하고 있는 친정(親情)(친하게 지내려는 마음)을 드러내야 한다.

- 미국(米國)은 비록 구교(舊交)가 없지만 이미 정부와 공연(公然)한 우의를 맺었고, 조선은 아직 정부와 교의(交誼)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때 공연한 황조의 처분은 미국을 도울 의리는 있지만 조선을 도울 이치는 없다. 그러므로 황조가 조선과 우의를 맺기 전에 일단 일이 생기면, 우리 황조는 그것을 방관하면서 미국이 하는 대로 맡겨두고, 감히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과 우의를 잃어선 안 된다.
- 조선은 경계를 접하고 있고 구교가 있는 나라이다. 더구나 우리가 먼저 교제를 촉구했다. 아직 저들이 공의(公義)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정(私情)이 있다. 미국은 공연한 우국(友國)이고 더구나 그 문책하는 바엔 이치가 있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우리와 그 정곡(正鵠)이 같다. 황조에 있어 양국의 관계가 이와 같다. 그리고 만약 한 쪽이 우리에게 의탁해서 그 정원(情願)(진정으로 바람)을 통하게 할 것을 요청한다면, 아직 공연한 교제가 없는 조선이 바로 공공연히 우의를 표하도록 해서, 양국 사이에서 그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중하게 현재 세계의 형세를 통찰하고 보통의 공리(公理)를 조성해서 그 조치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황조의 지금 형세를 숙려(熟慮)하고 고념(顧念)해서, 힘껏 스스로 그 사이에 들어가 끼여 그 일을 담당함으로써 남의 책임을 나에게 불려와서는 안 된다.
- 조선의 금일의 뜻은 미국이 바라는 바와 공교롭게도 상반된다. 우리 또한 (조선과) 교제를 바라는 점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조선이 하루아침에 양이쇄국(攘夷鎖國)을 결의할 경우엔 우리 또한 시의(猜疑)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결과 끝내는 위기를 초래해서 해만 있고 이익이 없을 것이다. 신중히 우국에는 신의를 지키고, 다른 쪽에는 시의를 피해서 그 위태함이 우리에게 초래되지 않게 하라.

一. 지금의 형세는 일단 조선이 그것을 거부하더라도 영원히 지킬 수 없다. 반드시 개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대처함에 반드시 장래를 숙려해서 절대 장애가 될 바를 남겨두지 말라.³⁰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에 대한 방안은 내유를 통해 첫째, 미국과 사변이 일어나면 조선이 위급하다는 걱정의 뜻을 표하고 그 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교섭해야 함을 드러내도록 했다. 둘째, 그런데 일본과 조선이 우위를 맺기 전에 사단이 생기면 일본은 방관하면서 미국이 하는 대로 맡겨두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선과의 ‘구교’가 아니라 미국과의 ‘우의’가 먼저였다. 셋째, 만약 한쪽이 일본에 의탁해 ‘정원情願을 통하게 할 것을 요청한다면’, 아직 교제가 없는 조선이 우의를 표하도록 해서, 양국 사이에서 그 요청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미국과의 강화를 조선과의 교제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만 스스로 이 일을 담당해 ‘남의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음을 강조했다. 넷째, 즉 ‘신중히 우국에는 신의를 지키고, 다른 쪽에는 시의를 피해서 그 위태함이’ 일본에 초래하지 않도록 했다. 결국 조선은 미국의 요구(통상, 개국)를 거절할 수 없으니 ‘장래를 숙려해서 절대 장애가 될 바를 남겨’두지 말라고 했다.

결국 일본은 꼭 막혀있던 조선과의 새로운 조약 체결을 미국의 조선 침략이라는 기회를 발판삼아 해결하고자 했다. 그 때문에 미국의 조선 침략에 대한 정보는 조선 측에 전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즉, 미국 측 정보원의 활용은 물론 영어 통역의 미군 함대 승선과 함께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의 신병 보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다른 한편, 한미 간 분쟁이 발발하고 혹시 강화가 필요할 경우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던 것이었다.

³⁰ 內諭, 吉岡弘毅等へノ内諭書ヲ副へ上申案; 內諭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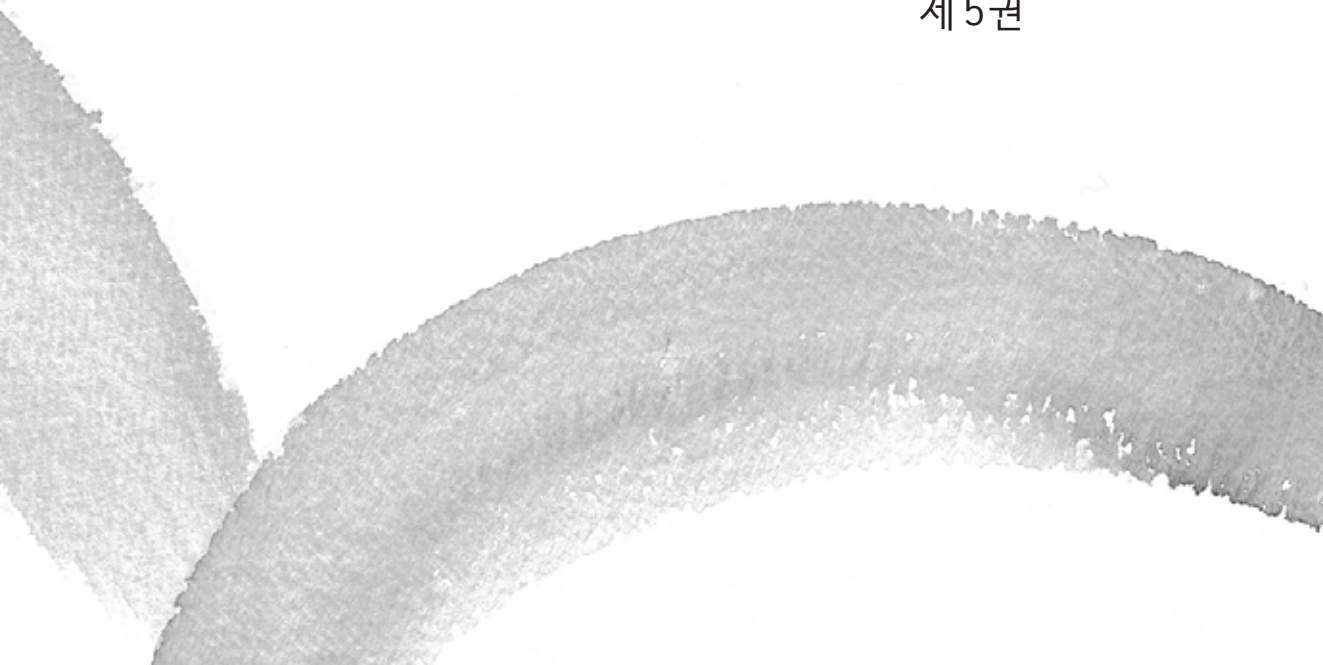
1. 일본의 관직명, 지명, 인명 등 고유명사는 일본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外國官, 外務省, 太政官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과 관직명은 각각 외국관, 외무성, 태정관 등 한자 발음으로 옮겼다.
2. 조선에서 일본에 보내는 문서에 나오는 일본 고유명사는 한자 발음으로 옮기고, 각주에 일본어 발음을 표기했다.
3. 원문에 사후적으로 문서의 제목이나 요지를 덧붙인 구절은 번역에서 제외했다.
4. 원문에는 문서 번호가 없으나, 편의상 목차와 수록문서의 순서에 맞게 번호를 부여했다.
5. 원문의 할주(割註: 문장 속에 작은 글씨로 두 줄로 넣은 주석)는 작은 글씨로 표기했다.
6. 문맥상 한자어 병기가 필요한 경우 작은 글씨로 표기했다. 단, 의역일 경우 원문을 [] 내에 표시했다.
7. 번역문 중에 한자어와 할주가 섞여서 혼동되는 경우 할주는 []로 구분하여 표기했다.
8. 영인본 『조선외교사무서』 제2권 1쪽 ~ 290쪽은 김종학, 『조선외교사무서』 제2권 291쪽 ~ 572쪽은 김홍수가 번역했다.



국역

조선
사무서
(2)

제 5권



5

조선사무서 제5권

메이지明治 3년(1870) 8월부터 9월까지

01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이 도한渡韓의 내명內命을 받고 낸 의견서 [2통]

저희가 다시 도한渡韓의 내의內意를 명받았으므로 대략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 . 외무경外務卿·외무대보外務大輔가 동래부사에게 서계書契를 보낼 것.
이와 관련하여, 저희에게 외무경·외무대보의 위임장을 내려주실 것.
- . 대일본 외무성 관원이 공식적으로 저 지역[조선]에 도향할 것.
- . 화관和館에 도착한 후 저들이 접대하는 사의辭誼에 따라 국기國旗를 세울 것.
- . 소宗 씨가 직접 도한渡韓해서 알선에 힘쓸 것을 태정관에서 명령하실 것.
- . 소 씨의 지금까지의 부채[약 3~4만냥, 상세한 목록은 별지에 기록함]를 지참해 소 씨가 변제하고, 그로부터 담판의 실마리를 이끌어 낼 것.
- . 소 씨의 부채를 동銅·명반明礬·단목丹木 등 현물[正物]로 가져가는 것과 관련하

여 국가의 군함 또는 증기선이라도 대여하라고 분부하셨으니, 화관和館 앞바다에 정박하여 임기응변의 보수報酬 등에 비요備要할¹ 것.

- 一. 소 씨가 도한渡韓한 다음에는, 저희는 감독과 보익輔翼(보좌)을 한다는 마음이 짐으로 서서히 정공精功을 도모할 것.
- 一. 오래 재한在韓하는 것이 예상되고 특별히 인망人望이 요청되므로 화和를 주지主旨로 하여 재물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함. 그러므로 공금[用金] 1만 냥을 내려주실 것.

단, 저 지역은 전적으로 뇌물 등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 공금 내에서 여러 증물贈物 등을 조달함.

- 一. 도한渡韓하는 인원수가 많은 것은 매우 좋지 않음. 관원 3명에 부속 가예家隸에 이르기까지 총 6, 7명 정도를 한도로 할 것.

이처럼 적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지나치게 과격한 사무라이들이 많이 도항하면 저들의 깊은 교녕狡獪과² 인순因循으로 인해 분노를 일으켜 결국 우리가 담판을 깨는 데 이를 것이기 때문임. 오직 침착하고 신중하게 심지원모深知遠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을 거두는 것을 정책定策으로 함.

이상의 건들은 신중히 평의評議하시어 채용해주시길 바람. 그 다음에는 저 지역에 가서 간절히 설유說諭한³ 후, 반드시 통신사通信使를 인솔해 오든지, 아니면 우리 황사皇使가 도항할 것을 약속하고 때가 되면 저들의 도하都下(서울)를 청결히 해서 황사를 공손히 맞이하게 하든지, 2개 가운데 어느 쪽이든 반드시 성공을 거둘 것.

8월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¹ 비요(備要): 본래 중요한 자료나 서적 등을 나중에 사용할 때 편리하도록 모아두는 것을 뜻한다.

² 교녕(狡獪): 교활하고 흉악함.

³ 설유(說諭): 설득하고 타이름.

④⁴ 조선에 사절을 파견하는 것은 비단 인호隣好⁵를 닦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저 나라를 보존해서 러시아를 방어하는 가장 좋은 책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황사皇使가 도한渡韓하더라도 저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저들로 하여금 문명개화文明開化에 이르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의 소사小使도 그 뜻을 유념해서 동래부사에게 설유說諭해야 한다.

조선국 재도再渡와 관련하여 명심할 사항 및 응접 문제는 임기응변에 달려 있으니 금일 확정하기 어렵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정실情實에 기초한 전망을 대략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一. 조선과의 교제交際는 400여 년간 소 씨가 중간에서 주선함으로써 숙성熟成하였는데, 중도에 단절된 것을 다시 이으려면 반드시 한두 번 응해서는 의론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전에 부산에 있던 관館을 지금의 초량항草梁項으로 이전하는 일조차 몇 년간 왕복한 끝에 억지로 경계를 벗어나 동래부로 가 몇 달간 논란을 거듭하고, 다시 사절이 간 뒤에야 비로소 이관移館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이번에 소 씨의 사절이 저곳에 가서 일을 상의했지만, 도요토미豊臣·도쿠가와德川 시대에 비하면 아직 100분의 1의 알선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절이 직접 부사를 만나 대지大誌를 보일 수도 없었으니, 단지 관사官司나 전어관傳語官을 통해 저 훈도訓導라는 자에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겨우 문자文字에 구애되어 한갓 세월을 허비해서, 조정의 공명정대한 은지恩旨를 간절히 설유說諭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 씨는 저들이 믿고 또 존중하는 바입니다. 신 등이 이번에 재도再渡할 때 소 씨를 보익輔翼해서 도한渡韓하게 하고, 예

⁴ 외무성을 가리킴.

⁵ 인호(隣好): 이웃 국가 간의 우호.

절과 신의[禮信]를 표시하여 성상聖上(일본천황)의 성대한 뜻을 저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一. 소 씨 도해渡海의 취지는, ‘재작년 겨울부터 조정의 명을 받들어 대차사大差使를 파견하여 일신一新을 통지했는데 시일을 천연遷延(지연)하면서 이를 국도國都에 알리지 않았다. 게다가 올해 봄 동래부사가 대차사에게 보낸 글에, 한갓 문자에 관한 논란을 내세워 친인선린親仁善隣의 국보國寶를 내팽개쳤다. 우리가 수백 년간 양국이 교통交通함에 그 중간에 섰는데, 무슨 면목으로 조정의 친교親交의 대지大旨를 관철하지 못했음을 상주하겠는가? 이는 오로지 너희가 우리의 신의信義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가? 너희와 우리의 정情으로 볼 때, 차마 가신에게 이를 말길 수 없어서 파도를 헤치며 직접 조정의 친교의 성의盛意를 알리고, 또 지금의 형세와 너희의 안위安危를 설명해주고자 한다.’라는 말을 설유說諭의 단서로 삼는 데 있습니다. 설령 저들이 문자에 구애되어 논란을 일으키더라도 사소한 일에 관계치 말고 우선 선린의 후의厚意를 이해시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一. 외무성에서 출장가는 것은, 첫 번째로는 조정의 법칙이 해외교제海外交際의 사건은 외무성의 직무에 관계되는 바이며, 두 번째로는 소 씨가 저 나라와 왕복하는 조밀粗密이 과연 인교隣交를 후하고 돈독히 하려는 조정의 뜻을 관철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만국의 형세와 우내宇內的 변상變常을 상세하게 설유說諭하고, 아울러 범과 이리 같은 러시아가 잠식蠶食의 뜻을 펼쳐서 아시아 전체를 병탄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러시아와 저 나라는 바로 이웃집과 같으니 편고교주偏固膠柱하여 안일하게 있다가 만약 하루아침에 일이 생기면 고립된 나라가 되어 사직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들과 우리는 본디 순치脣齒의 관계에 있는 나라로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서로 돕고 구해서 각자 그 나라를 보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의 형세는 양국의 안위가 관계돼 있습니다. 그 일이 지극히 중대하니 어찌 종전에 도쿠가와 씨의 심상尋常한 교통交通의 예전例典을 답습하여 스스로 편안히 여기고 있을 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조정에서 조만간 국사國使를 내려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속히 이러한 뜻을 이해시켜서 접대 준비를 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루한 습벽習癖 때문에 만약 깊이 국내의 실정을 누설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뜻이 있음이 보인다면, 오히려 일단 종전의 관례에 따라 신사信使를 우리에게 보내서 깊이 우리 조정 친교親交의 지극히 신실하고 돈독한 뜻을 깨닫기를 희망하는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一. 소 씨를 통해 설득시키거나 또는 신 등이 타이르는 것은,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협력해야 하지만 아무튼 소 씨를 주체로 하고, 저희는 보익輔翼·감독監督하는 것을 주지主旨로 해야 합니다.

一. 우선 훈도·별차와 같은 소관小官에 이르기까지 깊이 교분을 얻고, 아울러 인근 마을의 어른이 아이를 타일러 따르게 하듯이 크게 상방上邦(일본을 자칭)의 관인돈후寬仁敦厚의 풍조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一. ‘무릇 천하의 일은 그 마땅함[誼]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마땅함이란 무엇인가? 천지가 처음 열려 각각 국토에 한계를 두되 바다를 그 경계로 삼고, 사람과 만물을 그 사이에 낳았으니 또한 그 국토에 따라 본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봉강封疆이 다르면 정교풍속政教風俗도 그에 따라 달라짐은 천지의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현성賢聖한 인물들은 조정의 계책을 정함에 그 봉강封疆을 폐쇄해서 안을 지키는 것을 법으로 삼은 것이다. 그렇지만 똑같이 하나의 태양이 비추는 바이니 가지 못할 나라가 없고, 하나의 지구가 싹는 바이니 오지 못할 사람도 없다. 물산이 풍부한 지나支那(중국)조차 항구를 열고 시장을 설치해서 해외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천지의 자연스러운 이치다. 만국의 능재⁶가 그 시기를 헤아려 항시⁷를 개방하고, 이로써 예전에 폐쇄한 것과 이제 개방하는 것을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을 닫고 저것을 여는 것이 모두 그 마땅함을 얻은 것이다. 지금의 경우는, 개화⁸하는 것이 그 시의⁹에 맞고 천리에 부응하는 시대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차이를 구분하지 않을 수 없다.

청¹⁰·한¹¹과 우리의 경우는, 한 지구상에서 운상¹²이 서로 같고 문자가 서로 통한다. 풍속이 조금 다르다고 해도, 명교¹³가 크게 같으니 함께 순치상보¹⁴齒相保하는 나라는 굳이 논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범이나 승냥이 같은 러시아가 오래 전부터 창궐하여 발톱과 이빨을 갈면서 청·한의 사이를 엿보고 있으니 저들과 우리가 어찌 편안히 잠자고 있을 때이겠는가? 저 나라에 만약 일이 생기면, 저 나라가 갑자기 위험해질 것은 바로 피할 수 없는 이치와 형세이다. 그렇다면 저 나라와 우리나라 간에 금일 사소한 논의에 구애되어 국가의 대계¹⁵를 태만히 하는 것은, 어찌 자신만의 편협하고 고루한 식견을 고집하여 천지¹⁶의 정대¹⁷한 대의¹⁸를 저버리는 이치가 있겠는가?’ 등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 一. 해외의 뜬소문에, 혹자는 말하길 ‘저들이 러시아의 독문¹⁹에²⁰ 기망²¹되어 그 사술²²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삼간투사²³의²⁴ 뜻이 없지 않다는 질문을 통해 저들의 기미를 살필 것.

예전에 프랑스가 한국 강화도를 어지럽힌 뒤에 러시아가 한국을 은밀히 원조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이는 한인²⁵에게 탐문하니 아직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지나²⁶에 재류하는 서양인의 한때 경박한 신문지에서 나온 말인 듯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러시아를 보는 눈은 그 대답을 통해 진위

⁶ 원문은 ‘開和’로 되어 있다.

⁷ 독문(毒吻): 남을 속이는 간교한 말.

⁸ 투사(投梭): 외부인의 유혹.

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식적으로 우리 황조皇朝의 친교를 받들어 동맹을 맺고 교제통상조약交際通商條約을 분명히 한 후, 우리가 이를 각국에 포고한다면 설령 러시아가 저들에게 일을 일으키더라도 우리의 동맹국이므로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뜻으로 타이르는 것입니다.

— 저 나라의 백성 가운데 우리에게 표류해오는 자가 매년 몇 척의 선박, 수십 수백 명이 됩니다. 그 표류한 자들은 혹은 도카이東海, 홋카이北海, 산인山陰, 진제鎭西 등의 번藩과 현縣에서 육로로 여러 주州를 거쳐 나가사키에 호송합니다. 그리고 나가사키 시가市街와 근교近郊에선 모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합니다. 지금 저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좁은 화관和館 부지 안에만 거처하게 하고 있으니, 양국 친후親厚의 도道가 어찌 이와 같은 것이겠습니까?

— 무역을 의논할 때는 이익利益의 설을 뒤로 미루고, 서로 있고 없는 것을 교역함은 조화造化의 부족분을 보급補給해서 각국이 서로 돕는 자연의 이치임을 타이르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 ‘무역은, 양국 민심의 애증을 속일 수 없고 또 관官에서 사사롭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아래 백성들의 사정私情에 맡겨서 묻지 않는다면, 사홀詐譎의 술계術計가 점차 생겨나 천연의 도리에 어긋나고 양국의 교의交誼를 막는 데 이를 것이니, 따라서 공평한 조약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을 보이는 것입니다.

— 예전부터 소 씨의 문인文引을 증빙으로 삼았다고 하나, 앞으로는 외무성 인신印信을 증빙으로 삼을 것임을 통고해야 합니다.

— 네덜란드 상선이 나가사키에 들어와 서양의 실정을 알리고, 미국 장군이⁹ 우라가浦賀에 와서 동양의 형세를 논한 것 등, 상세하게 그 정보와 논리를 익힌 뒤에 기회가 왔을 때 그 뜻을 취사선택한다면 저들을 타이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저들이 그 백성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무역을 시도하길 원하는 때가 온다면, 우리나라 동서남북, 또는 부현府縣의 어떤 개항장을 막론하고 희망하는 곳은 반드시 허락하고, 요청하는 곳은 반드시 용납하겠다.’라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이상의 건들은 저들과 우리의 교제交際를 맺는 데 유의사항의 대요大要를 기록해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곳에 도항한 후 어찌면 며칠, 어찌면 몇 달, 어찌면 몇 년을 체제하는 가운데 현밀진퇴顯密進退와 선후완급先後緩急의 적절한 대응은 미리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신의예양信義禮讓을 두터이 하여 순순諄諄히¹⁰ 그 기회를 도모하고 그 변화에 응하여 설득한다면, 성심誠心이 이르는 바에 설령 철암鐵巖의 벽굴壁窟이라고 해도 우리 약속을 받아들일 창이 있을 것이며, 어리석은 귀축鬼畜이라고 해도 그 완고함을 깨뜨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결국 저들에게 여러 항구를 개방하게 하고, 우리가 [조선과] 각국 간의 조약을 매개媒介하고 짐작斟酌하는 일을 관장하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또 황사皇使를 내려보내고 신사信使를 불러들이는 계제階梯 등이 차츰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들이 설령 불경한 대접을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히 신의와 우호[信和]를 근본으로 할 것입니다. 일신의 치욕을 견디지 못해 국가의 대해大害를 빚어내는 것 같은 일은 결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삼사三舍를 피해¹¹ 속히 표당의 논의

⁹ 1853년 에도만에 입항한 페리 제독을 가리킴.

¹⁰ 순순(諄諄): 다정하고 간곡하게 타이르는 모양.

를 여쭙고, 진퇴를 그 지휘에 따를 것입니다.

8월

히로쓰 히로노부 廣津弘信

모리야마 시게루 森山茂

한 편의 방담放膽의 의론이正大하고 유쾌하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시행할 때는 신속하게 나아가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천천히 여유를 갖고 인망人望을 얻은 뒤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과격하고 거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비단 조선뿐만 아니라 송씨宋氏(중국)의 우호까지 잃을 것이다. ㉔¹²

부언附言

소종 지번사知藩事가 직접 도한渡韓해야 한다는 견해는 이 글에서 아뢴 대로입니다. 몹시 현명하고 관후寬厚한 사람으로서 능히 말을 널리 포용하는 그릇도 갖추었으니, 이 지사가 도항하면 성공도 촉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올해 봄에 ‘직접 지사가 도항해서 반드시 신사信使를 데려오라는 조정의 명을 받드는 행차를 했더라면 위로는 조정의 위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아래로는 선조의 공훈功勳이 과인의 일신에 이르러 욕되게 됐음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도한渡韓의 명을 받는다면 함께 진력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간절히 신 등과 함께 논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장이 있다면, 번藩의 조시土士 모리카와 교쿠조森川玉城라는 자에게 명하여 부채를 가지고 신 등과 함께 도한할 것을 명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는 지금 조선에 있는 대차사 히구치 데츠시로樋口鑣四郎의 아우

¹¹ ‘퇴피삼사(退避三舍)’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날을 깊이 헤아려 양보하거나 충돌을 피한다는 의미다.

¹²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를 가리킨다.

로서 형제 모두 정실순박精實淳朴한 사士이니, 형제가 협동하여 진력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유說諭하고 변해辨解한 뒤에 소 씨가 직접 도한渡韓한다면, 반드시 일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볼 것입니다. 속히 이를 조정에 상주하시어 소 씨에게 명령하실 것을 엿드려 바라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체로 쓰시마번에는 인물이 부족하고, 간혹 조금 재주가 있는 자를 시험해 보면 교활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여 번국藩國의 대계大計를 뒤로하는 무리입니다. 부디 신중히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02 조선사무과朝鮮事務課로부터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와 훈도 간의 대화서對話書를 붙여서 외무성의 논의를 위해 제출한 글

어제 18일 이즈하라번의 조선 통변通辨(통역) 우라세 사이스케라는 자가 출두하여 5월 이래 저곳[조선]의 형세와 훈도와의 담판에 관해 진술했으므로, 가키토리書取를¹³ 만들어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 깊이 어리석으나마 생각한 것도 있으니, 후에 평론評論에 부치시길 바랍니다.

8월 19일

조선과 朝鮮掛

지난 5월 13일 임관任官인 훈도 그 사람에게 응접한 개략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

¹³ 가키토리(書取): 말을 옮겨 적은 문서 또는 등본.

우라세 : 이번에 조정에서 일신一新(메이지유신)한 전말을 동래부사가 귀 조정에 아뢰었는데, 회답을 전하는 것과 용건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을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선 사절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므로, 이미 부관들이 중도에 귀국해서 쓰시마에서 상의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이 용건은, 귀국의 국론國論이 한번 정해져서 단연코 거절하신다면, 그 뒤로는 공무[御用]를 성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3년을 헛되이 보내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제 와 공무를 타결하지 못하고 복명하게 된다면 [대마도주가] 면직과 전책을 받을 것이니 지극한 황송함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본래 미력하고 불초不肖한 처지에 부득이하게 된 일이긴 하나, 폐주弊州와 귀국 사이에 수백 년 동안의 친목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이는 차치하고, 폐주弊州가 이미 힘이 다하여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복명한 뒤에는 그대로 공무를 받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 다음엔 자연히 조정에서 접수해서 국사國使 등을 파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귀국의 신사信使를 에도부江戶府에 초청했을 때의 전례에 따를 것입니다. 국사國使도 우리나라의 신사信使와 다를 바 없으니, 바다를 건너온 뒤엔 어찌면 상경上京 등을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관도 즉시 하동下東할 예정이니, 그 전에 이제 일단 유념하시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남김없이 하셔야 복명하더라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확실히 승낙하신 뒤에 서둘러 동하東下하게¹⁴ 하십시오.

훈도 : 타이슈對州와는 특별히 가까운 이웃으로서 종래 호의好誼를 나누던 사이인데, 만약 면직 등의 일이 생긴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우선 우리

¹⁴ 도카(東下): 교토에서 관동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

로서도 결코 본래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국에 부속된 나라로서 이미 신하라고 부르며 황제皇帝·황상皇上을 칭하고 있다. 그런데 귀국과의 교식交式은, 수백 년 이래 국주國主 또는 대군大君이라고 불려왔다. 그것을 이제 갑자기 상국上國의 칭호를 귀국에 부르는 것은 실로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렵다.

이에 관해 일부러 사절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있어 이러한 뜻을 청국에 내주內奏했는데 결국 사절의 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옳다고 했으니 이는 우리나라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바임을 모조록 이해해주길 바란다. 또 국사國使가 화관和館에 건너오고 상경하는 등의 일은, 구약舊約의 뜻으로 볼 때 우리 조정이 그에 따를 도리가 추호도 없다. 그와 같은 일에 이르면 당혹할 뿐이다. 이에 관해 유념해주실 것을 동래부사에게도 말씀드렸고, 조정의 요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밀히 아뢰는 것이니 모조록 한 번 양국이 온순穩順한 데로 돌아가는 양편兩便한 방도를 알려달라. 이것 역시 상부에 아뢰길 바란다.

우라세 : 오직 지금의 형편으로 보면, 변통하실 것을 본주本州(타이슈)에서 간절히 청해도 다시 변별辨別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의 명을 받든 후 3년이 되도록 성의誠意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실로 지극히 황송하므로 땅에 엎드려 대죄待罪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귀국이 모두 물리치는 것도 본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니, 보다 관용적인 교식交式을 용납해주시는 것 등의 의뢰를 하신다면, 그 말씀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슈가 나서서 귀국을 위해 주선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훈도 : 그것은 지당한 말이다. 그것에 따라 그 주향主向¹⁵을 알려주신다면, 내가

¹⁵ 주향(主向): 주된 방향.

마음을 써서 조정의 명을 청하고, 이쪽에서 의뢰 드릴 것이라는 말을 전함으로써 자주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라세 : 제 관견管見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심절深切하게 말씀하셨는데 전부 상의하지 않는 것도 본의가 아니니, 참으로 제 생각을 은밀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리석음은 아마 짐작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어쨌든 ‘황상皇上’의 존칭이 청국에 대해 지장이 있어서 조치할 수 없다면, 우선 ‘황상’과 ‘국왕國王’의 칭호는 서로 우선 놓아두고 양국정부兩國政府의 등대等對로 교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훈도 : 그것은 특별한 타견이다. 타이슈의 공公과 집정執政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우라세 :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저 혼자 이 자리에서 생각난 것을 심망深望에 부응하려고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이 일은 설령 귀국에서 간원懇願하더라도 무엇보다 조정의 공의公議가 어떨 것인지. 성사 여부는 조정의 처분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될 것이라는 전망은 부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도 : 그렇다면 내가 마음을 써서 조정 요로의 분들에게 급히 은밀히 아뢰고 허락을 받은 뒤에 시담示談할¹⁶ 것이니, 부디 6월 중순까지는 화관和館에 머물러주길 바란다.

이에 대해 귀국歸國이 급하다는 뜻을 여러 가지로 말하자, 훈도는 “그렇다면 절충해서 6월 10일까지 체류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일을 기한으로

¹⁶ 시담(示談): 싸움을 붙이지 않고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결하는 말.

서로 약속해 두었습니다.

6월 13일 밤, 훈도가 동래東萊로부터 임소任所에 내려와 대담對談한 요령要領

훈도와 별차가 동석했습니다.

훈도 : 예전에 조정에 계신 분께 은밀히 올린 것의 회답서返書가 마침내 얼마 전에 도착해서 이제 막 내려온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처음 예상과는 달라서 크게 고심하고 있다. 자세히 말하면, 5월 3일 부산포에 이양선이 와서 정박했는데, 그 배에 귀 번藩의 나카노 교타로中野許多郎가 타고 있었다. 그 문정問情 결과가 3일 전에 경성에 도착해서 온 조정의 의론이 어지러운 중에 내가 올린 글이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답서의 대략에,

「정미년丁未年(1847) 경부터 여러 포구에 이양선이 들어와 정박하면서 항상 닭, 돼지, 소, 달걀 등을 간절히 청했으므로 대략 그 3분의 1 정도를 제공하고, 때때로 만나서 속히 물러가도록 명하는 것을 본지本旨로 삼아 왔다. 그런데 5, 6년 전에 이미 서한으로 알린 것처럼, 경기도의 속도屬島강화江華로 쳐들어와 난리를 일으키기에 마침내 군대를 동원해서 물리쳤다. 그런데 패주하던 중 덕산德山이라는 곳에 있는 선묘先墓를 부수고 영골靈骨을 약탈해 갔으니 그 원통함이 실로 골수에 사무쳐 모두가 불구대천의 원수라며 분격을 이기지 못해 이를 갈았다. 그 뒤로 승패를 따지지 않고 저들을 물리치는 데 국론이 하나로 정해져 포고령을 내려 계속해서 물리쳐 왔다.

그런데 일본국이 이웃 국가의 우호를 고려했다면, 제속諸屬의¹⁷ 사람이라

도 우리의 적선敵船에 탑승해서 우리나라에 올 리가 없다. 더구나 타이슈 對州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고 양국 인교隣交의 우의를 아는 자를 탑승시켰으니, 이는 우리를 우롱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롱하는 것인가? 또 이를 깊이 따져보면 이번에 ‘천황’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허락하지 않음을 알고, 난제難題를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한 뒤에 이인異人(서양인)과 공모하여 필경 우리나라를 쓰러뜨리려는 술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론이 하나로 결정돼서 대장군을 선발하고 또한 8도에 군대를 재촉하는 상황이다. 그대[훈되는] 아침저녁으로 일본인과 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일본인에게 심취하여 그렇게 된 것이니, 양국양편兩國兩便 등의 방안을 아뢰어온 것은 그 어리석음이 몹시 심하여 발칙하다. 앞으로는 일본과 이국인이 군마軍馬를 파견하는 시기를 탐색하고 미리 알아 곧장 계문啓聞하여 예전의 어리석음을 만회하라.」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경악스럽다.

또한 이번 일은 내 비공식적 답변으로서, 나에게 내화內話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도리가 없다.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의 간명懇命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없을 듯하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확립된 뒤에는 이미 임관任官도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비할 데 없이 마음이 아프다.

우라세 : 그것은 외람되나 귀 조정의 유별난 의견臆見으로 지나치게 의심한 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선박에 관한 문제는, 제가 완전히 알지는 못하나 화관和館에 건너온 뒤에 대략 들으니, 원래 본주本州 근해까지 오가던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주本州와 귀국은 바다를 접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귀국에 정박하는 등의 성가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

17 제속(諸屬): 쓰시마가 아닌 다른 소속의 일본인.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통역하는 자를 탑승시킨다면 임시방편이 될 것으로 생각한 일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듣자마자 그의 승선에 관해 화관和館에도 조치할 것을 주선하여 신속하게 퇴선시켰으므로,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 조정에서는 전체적인 일의 자세한 사정은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고 전부 의심해 버리니, 소홀한 정사政事라고 생각합니다.

훈도 : 우리끼리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도 근래 무관武官이 점차 득세하는 시세時勢여서 예전과 달리 거친 일이 많다. 또한 교타로는 일찍이 나가사키로 가서 근무한 사람으로서¹⁸ 쓰시마 주에서 탑승했을 리가 없음은 잘 알고 있다. 이는 동래와 부산에서도 능히 변해辨解해 두었지만, 조정에 대해선 그 이상 절대 해명하기 어렵다. 이를 말하면 더욱 의심을 살 것이다.

우라세 : 그렇다면 절교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훈도가 이와 관련하여 극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도 : 두 나라가 승평昇平한 금일 갑자기 흉기凶器(병기)를 움직인다면 억조億兆 백성의 목숨이 관계되니, 실로 천지에 대해 수수방관할 수 없는 일이다. 모조록 진력해서 평온으로 돌아가는 길을 주선해주기를 깊이 희망한다.

우라세 : 그에 따라 이미 간담懇談에도 응했고, 또 자신이 직접 서울에 애써서 아 된 바도 있는데, 오로지 그 일의 가부可否에는 답변이 없고 도리어 의혹만을 키우니, 어떻게 도모해야 온편穩便한 방도가 있겠습니까?

¹⁸ 원문의 敏出崎人是 쓰시마에서 근무한 통사가 아니라 표류민 송환을 위해 나가사키 출장소[長崎聞役]에서 근무한 대마도 통사라는 뜻이다.

훈도 : 이제 은밀한 말을 하겠다. 귀국에서 자주 우리 조정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단을 키우지만, 난제難題라고 짐작할 만한 것은 이인異人(서양인)과 합체해서 병마兵馬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의심이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조정이 안심하고 승낙할 수 있도록 말을 전한다면, 난제라고 생각할 만한 것도 없다. 그렇게 한다면, 이국인 운운하는 의심은 대변에 깨끗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내가 은밀히 하는 이야기다. 만에 하나라도 누설된다면 곧장 내 신상에 관계될 것이니, 본인만 알고 있기를 바란다. 이미 내화內話한 것처럼 상호 정부등대政府等對의 교제 방식으로 변통하는 것을 귀국에서 제안한다면, 성공 여부는 반드시 기약하긴 어렵지만, 크게 진력해서 주선하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저는 “그 일은 어떻게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화관和館에 체류해도 쓸모가 없으니 차례대로 출범出帆할 것입니다.”라는 말로 말미를 청하고 헤어졌습니다.

03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과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의 대화에 따른 의견서

우라세 사이스케가 제출한 응접서應接書의 내용으로는, 역시 작년의 통고 서면의 문자에 관한 의론이 이어진다는 의미일 뿐, 현재의 형세와 조정의 심후深厚한 선린의 성의盛意를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나, 타이슈의 일개 역사譯士로서는 응접의 도道를 잘했다고 할 만합니다. 그 응접 중에 저들이 점점 더 친교 거절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니, 앞으로는 실로 우선 당장 도한渡韓한 후 깊이 유념해서 그 기회가 성숙함을 관찰하고 서서히 설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예로부터 대한교제對韓交際는 서로 크게 의심하지도 않고, 또 크게 신뢰하지도 않았다고 들었으니, 지금까지 한 번 변혁할 때마다 반드시 허실표리虛實表裏에 서로 교녕狡獪을 뽐내다가 그 결말에는 신의信義를 빌려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한인韓人은 우리에게 대해 크게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국이 교제交際하는 중에 피차 감합勘合이 저들의 일에 저촉되어 한층 더 의단疑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나 모든 일은 크게 의심하지 않으면 크게 신뢰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의심은 곧 신뢰의 시작이니, 다행히 이 의심하는 바를 갖고 우리가 오히려 솔직한 지성至誠을 펼친다면, 진실순치眞實脣齒의 근본으로 만들 기회가 바로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사건을 미천한 신 등이 쉽게 설명하는 것은 황송하옵지만, 필경 성공의 전망도 있으니 어떤 굴욕도 인내하며 조정의 뜻을 관철하도록 필사적으로 진력하는 것이 미천한 신 등의 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미한 정성을 가련히 살피주시어 묘의廟議가 결정에 이르도록 더욱 진력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상관上官 중에서 추가하게 된다면, 부디 선임해주실 것을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경오년(1870) 8월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또한 3, 4장의 부지附紙를 두었으니 이것도 회람해주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선박이 부산을 엿본 것은, 한인韓人의 위구심보다 쓰시마인이 오히려 의심하는 것이 많다.

04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조선 사건에 관해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에게 지시하는 글

경오년 4월 우라세 사이스케의 특별 밀회 초안草按¹⁹

그대가 잠시 쓰시마로 돌아왔을 때 급히 화관和館에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은 이유는, 대수사 담판에 관해 앞으로 어떻게 변론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경위로 볼 때 전혀 이뤄지지 않을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 나라에서 구실로 삼는 것은 오직 책임을 청국에 돌리는 것이니, 훗날의 이난異難²⁰을 피하려는 원모遠謀로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 근원부터 착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정에서 청국에 통신通信의 국사國使로 기도木戶 중3위를 임명하였으니, 조만간 바다를 건너갈 분위기입니다. 통교通交를 맺은 뒤에는 조선 교제 건도 청국에 이야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조선과의 교섭의 대체大體는, 우선 청국으로 간 다음에 크게 교섭에 착수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수사의 진퇴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앞 장후에서 말한, 청국으로 왕립하실 때까지 헛되이 화관和館에 체류하는 것은 외부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또 앞으로 한층 엄중하게 교섭하신다면 도저히 병단을 열려는 각오 없이 성사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지금의 대처에 있어 결단을 내릴 시기는 아니니, 오늘날 양책良策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신정新政을 통보할 때와 작년 겨울 응접에 관해 격렬한 응수가 벌어지자 후환이 생길지 모른다는 분부는, 조의朝議의 취지가 전후로 조금 모순되는 점도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금은 묘당에서 크게 가슴을 터놓고 대수사 서계書契 중에 저들이 불

¹⁹ 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국편 5212)에는 본 문서의 제목이 특별한 비밀 지령이라는 의미의 ‘別密令’으로 되어 있다. 문서의 형식으로 봐도 오시마가 우라세에게 내리는 ‘申令(지령)’이 맞다. 따라서 원문의 ‘密令’은 ‘密令’의 오기라고 생각되나, 일단 원문대로 옮겼다.

²⁰ 이난(異難): 비난과 논란.

복하는 점을 제거하고, 이의 없이 승복할 수 있는 문체로 대정일신大政一新의 전말을 속히 통지하여, 우선 양국 통교의 매듭을 취해두고, 그런 다음 교제의 만반萬般의 법칙은 청국과 담판을 한 후 순서에 따라 강정講定하는 것이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위를 최근 하기菰에서 [오시마가] 기도木戶님께 간담懇談했는데, 사실상 크게 동의하셨습니다. 결국 도쿄에서 상의한 뒤가 아니라면 의논을 결정하기 어려우니, 마찬가지로 동행東行한 뒤에 정의廷議를 여쭙어 정할 것입니다. 결정하는 경위는 자세히 체인體認하시는 대로입니다. 그에 따라 앞으로의 교섭과 관련하여 이제 일단 임관任官의 속뜻을 대략 예측해야 합니다.

이제 쓰시마에 복귀한 중에 화관和館에 건너가라는 명을 받았으니, 또한 더욱 비밀리에 다음의 건들을 명심하고, 저 나라의 현재 정태情態를 깊이 고변考辨해서 종래 조처한 목적들을 이루도록 적절히 대담對談해야 할 것입니다.

一. 이번에 도해渡海하여 훈도와 대담對談의 대체大體를 세워야 함. 저 나라가 점점 더 담판의 주의主意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대수사 접견을 하지 않으려는 국론國論이 참으로 확정된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양국 생령의 미란糜爛을 우려해서 조정에는 응접 중이라고 하면서 시일을 끌었지만, 이번에 불응하는 현실을 상주한다면 조정의 논의가 어디로 갈 것인지? 실로 양국 간의 대사가 금일에 박두해서 성패가 여기서 판가름날 것임. 훈도와 종래의 교의交誼가 있다는 이유로 일단 도해渡海하여 내화內話하게 되었으니, 그가 남김없이 진심을 토로하도록 할 것.

一. 훈도의 지금까지의 배려가 간절함을 다하지 않은 바가 없고, 본주本州로서도 실로 주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 않음.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경과를 답습하여 한층 엄중하게 교섭하라는 조명朝命이 내렸으니, 성사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동래부에 난입闖入하거나²¹ 또는 억지로 입경入京해서 국왕과의 면의面議 등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 외엔 도리가 없음.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조선도 온순穩順하게 따르지 않으리라는 것은 필연이니, 이로부터 병단을 여는 시기에 이를 것임. 본디 신자臣子の 직분으로는 온 번藩의 사민士民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는 되어 있지만, 이는 또 일에 무익할 뿐 아니라, 양국간 수백년의 교의交誼로 봐도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니, 본주本州의 정실情實로 논한다면 사직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음. 대체로 그런 쪽으로 번론藩論이 세워졌지만, 혹시 조의朝議의 결정이 [대마도주의] 사직이 면직免職된 후 엄중한 견책을 받을 것인지, 또 지금까지의 응접이 인순因循했다는 등의 이유로 병마兵馬의 선도先導가 되라는 명을 받을 것인지, 어느 쪽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움. 주州에서 노심초사하고 있음을 체인體認할 것.

- 一. 최근 조선이 불응하는 현실을 상주한 뒤에는 정의廷議가 관寬과 맹猛, 어느 쪽으로 나갈 것인지? 반드시 조야의 의론이 분분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무례함을 꾸짖어 토벌해야 한다는 논의로 나갈 것으로 생각됨. 그런데 이제 병마兵馬가 처음으로 진정됐으며, 안팎으로 다사多事한 가운데 이웃 나라에 흥기를 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묘당의 노성老成한 견식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물론 타이슈의 입장에서선, 조선의 화禍는 눈앞에 타이슈의 화禍가 생기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주선에 진력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음. 이를 위해 [대마도의] 관리들도 계속 도쿄에 파견하는 상황임. 따라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당연히 본주本州로부터의 주장이 관철돼서 만일 조정의 논의가 관인寬仁한 데로 나와서, 될 수 있으면 일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주의主意하에 조선 측에서 꺼리는 바와 또 그 희망하는 바가 어떤 절목節目이며, 어떤 체제體裁인지 도쿄에서 상세하게 질문할 것임. 첫 단계서부터 응접對應接掛의 신분으로 봉답奉答하려는 각오가 없어선 안 됨. 이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는

²¹ 난입(闖入): 허가 없이 쳐들어가는 일.

대로 상의해둘 것.

단, ‘황皇’이라는 글자와 신인新印을 비롯해서 그밖에 도쿠가와가德川家を 대신하여 통교通交의 적주適主를 세우는 체통[體統]의 문제.

—. ‘도쿠가와가德川家を 대신해서’ 운운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신一新의 정체政體와 권병귀일權柄歸一の 취지에 있어 시행할 도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만일 저 나라에서 간청한 대로 귀족과 대신 중에서 적주適主를 두고 서간 왕래 등을 할 때는, 경조慶弔의 예禮의 경우 조정을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통교通交의 적주適主를 위주로 할 것인지? 금일은 세습의 직임職任이 없는 때이니, 이에 이르러 그 조처가 궁한 것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입장을 바꿔서 거듭 생각해야 함. 또 도리로 논한다면, 인교隣交하는 나라의 제도가 자국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인국隣國의 정체政體를 변혁하게 하는 조리條理가 있는가의 문제.

—. 이후 동행東行한 다음에는 예전에 기도木戶님과 내평內評한 대로 관용寬容으로 나와서 대수사의 서계를 개찬改撰하는 때에 이를 경우, 군상君上의 칭호를 비롯해서 ‘공公’이라는 글자와 ‘조신朝臣’ 등, 저들이 원하는 대로 서계의 체식體式을 모두 복구하는 모양이 되는 것이 앞으로의 협상에서 가능할지 생각할 것.

—. 대수사의 서간을, 옛 인장으로 해결하는 시의時宜에 이를 경우, 앞으로 신인新印을 사용하는 일은 별한別翰으로 통보하는 문제.

—. 게이쵸慶長 기유己酉년의 조약 이전에는 서계에 화압花押을 썼다고 들었음. 그러한 전례가 있으니 앞으로의 서계는 신인新印을 사용하되, 저 나라에서 도서圖書(인장)를 바꾸는 것에 대해 끝까지 승복하지 않는 형편이라면, 취허吹嘘도 감함勘습을 위해서니, 저 나라에서 주조하는 것을 굳이 체통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치는 없음. 따라서 실명實名을 서로 멈추고, 별도로 지당한 문자

를 써서 주조하여 보냄으로써 영세永世의 감합勘合으로 삼는 문제.

- 一. 청국과 교섭하여 교제에 관한 만반의 규칙을 정하기 전까지는, 천황이 저들의 국왕에게 직접 전하는 응수應酬는 하지 않고, 교제의 법칙은 정부등대로 한다는 것은 훈도와 응접할 때 시의時宜에 맞게 협상할 것. 또한 이번엔 기초적인 내담內談을 결정해두고, 대수사 서계 중에는 이를테면 “교제의 체식體式 같은 것은 반드시 양측의 편의를 짐작하여 의정議定한다.”와 같은 구절이 들어가도록 명심할 것.

이상 특별히 비밀리에 지령하니 쓰시마에서 자세히 총판總判에게 말씀드리고 지시를 받으십시오. 이상.

경오년(1870) 4월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 님

05 외무경과 외무대보로부터 훈도 응접서를 첨부해서, 조선에 파견할 자를 별도로 정부에서 인선하여 속히 파견할 것을 상신하는 글

얼마 전 타이슈인 우라세 사이스케가 훈도와 응접한 대의大意를 고찰하였는데, 결국 정부와 정부 간의 교제가 된다면 저들이 희망하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전에 내의內意를 이해시켜둔 두 사람[모리야마, 히로쓰] 외에 이제 한 사람을 정부에서 인선하고, 타이슈에서도 소개하게 하되, 단 대차大差 등의 명의를 쓰지 말고 외무성의 명命으로 도한渡韓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양역兩譯(훈도와 별차)과 다른 자들에게 친후親厚의 교정交情을 간절하게 유지諭示하여, 의단疑團이 깨끗이 해소된 후 기회를 살피 동래부사 또는 부산첨사를 면

회해서 결약結約한다면, 저들이 본디 마음이 있는 바이니, 반드시 숙의熟議하는데 이를 것입니다. 우선 정부 상호 간의 교제를 해두는 것은 굳이 훗날의 해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서둘러 정부에서 인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내년 봄까지 버려두어야 한다는 의론도 있습니다. 이는 필경 훗날의 목표를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니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만의 교제를 강구하면 온건, 타당[穩妥]하고 또 저들의 속마음이 이미 함축含蓄하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니 대략 목표도 설 것입니다. 결국 교화交和를 깨뜨리는 것 같은 폭담暴談에는 결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실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오니 부디 속히 평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오년(1870) 8월 25일

테라지마寺島 외무대보

사와澤 외무경

삼직三職 귀중

양사兩士의 의견이 매우 타당합니다. 만약 상관上官인 자를 파견한다면,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오히려 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다행히 있다면 논외지만, 만약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면 관직의 존비를 불문하고 양사兩士에게 위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훈도訓導 응답개략應答概略

연조사年條使·재판裁判·표차사漂差使의 접대 방법에 관한 교섭은 상세히 우라세 사이스케가 아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내외의 형세가 매우 불온한 상황으로 보여 충분히 사정을 탐색했는데, 지나 5월 3일 독일 군함이 내박來泊했다는 계문啓聞이 한성에 도착해서 조의朝議가 어지러울 때, 계속해서 사이스케와

의 내담^{內談} 1건이 암암리에 혐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단지 해안 방비에 관한 평결^{評決} 등만이 들렸으므로, 서둘러 훈도가 내려오는 방안에 관해 계속 교섭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근신 중이라고 하다가, 지난달 27일에 입관^{入館}했으므로 관수^{館守}, 간사^{幹事}관^韓事官(원문)도²² 출장해서 여러 송사의 접대 방법에 관한 대처에 관해 교섭하였고, 지난 5월 22일에는 응대 절차에 따라 교섭했습니다.

대수사의 공무에 관해선, 도선주가 중도 귀국했기 때문에 순편^{順便}한 도리에 따라 진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사이스케가 도해^{渡海}하여 말하길, “대수사의 공무가 지금처럼 결실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사^{知事}도 사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경우 국사^{國使}가 도해^{渡海}하고 병대^{兵隊}를 인솔할 것은 물론이고, 이곳에서의 담판은 성사될 리가 없으니 곧장 한성으로 올라가 담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 막으려고 한다면쟁요^{爭擾}의 일단^{一端}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정부등대^{政府等對}의 이야기도 은밀하게 나누었습니다.

훈도 : 내가 숨길 이유는 없다. 한성에 은밀히 전달했는데, 그때 불행히 독일 선박이 도착하고, 우리나라 말을 하는 사람도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의 의혹도 적지 않았다. 그때 마침 사이스케가 은밀하게 고한 전말을 한성에 전달했으므로, 과연 난제^{難題}를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의심에 이르렀다. 상황이 부득이했다고는 하나, 우리가 먼저 절교한 것이 없으니 잘못은 저들에게 있다. 따라서 금일의 연조^{年條}송사^{送使}의 연향과 접견은 물론, 미목^{米木} 등의 입송^{入送}도 어렵다. 그 다음엔 임역^{任譯}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주소^{住所}를 떠나 동정^{動靜}을 살펴서 치보^{馳報}하라고 하므로, 동래부로 올라가 근신하고 있다. 어쨌든 면회할 용건이 있다고 하여 부사께 말씀드리고 내려왔다.

²² 幹事官의 오자. 당시 간사관은 가와모토 구사에몬(川本九佐衛門)이었다.

간전관 히로세 도요키치(広瀬豊吉) : 사이스케의 어떤 말을 갖고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까? 본디 조정에서 명령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쪽 사람을 면회할 때 그 소견을 들은 것으로 대수사가 지금처럼 복명하지 못한다면, 지사(知事)도 자연히 사직을 자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니, 어쩌면 국사(國使)가 건너오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수위병대(守衛兵隊)를 인솔할지도 모릅니다. 매우 불안한 상황이므로 고심한 끝에 옛 우의를 생각해서 은밀히 대화(內話)를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언사(言辭)의 입처(立處)에 의거해서 지나치게 추론한 것이니, 결코 본조(本朝)를 의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조정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짐작으로 이것저것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정에서 분부하신 주의(主意)는 조금도 병마(兵馬)를 움직이려는 내의(內意)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귀국은 종래 후의(厚誼)도 있으니, 어디까지나 신의를 깨뜨리지 않고 보전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응수(應酬)하며, 우리가 먼저 퇴거하는 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분부도 있었습니다. 황송하지만 이러한 내의(內意)로 짐작해보면, 반드시 흥기를 움직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국에서 [일본 조정의] 관대한 주의(主意)에 크게 감패(感佩)하며 안도하시고, 연조(年條使)의 일은 그 밖의 관계도 없으니 속히 순성(順成)하도록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로 설득하고 개유(開諭)하자, 훈도가 말했습니다.

훈도 : 정실(情實)의 사정을 자세히 들었다. 중요한 조정의 분부의 주의(主意)를 듣고 비로소 의심을 풀고 안도했다. 귀국에서 외람되지만 이렇게까지 조치가 있으니, 겨우 한두 글자 때문에 양국 백만의 생명(生靈)이 하루아침의 도탄의 고통을 받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 절대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

는데, 금일 관대한 주의^{주의}를 들으니 참으로 안도가 된다.

이와 관련해선 우라세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각 읍의 군수, 현감에게 특별히 포고한 것은, 일본 국사^{國使}가 병대^{兵隊}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온다는 소식이 들렸으니 대구 감사가 명을 기다리지 않고 동래 또는 김해 지방에서 보낸 치보^{馳報}에 따라 속히 출병하여 원조하도록 한 것이다. 또 미목^{米木}의 경우에는, 적에게 군량을 대주는 도리이니 우선 입급^{入給}을 보류하고 우리에게 비축해 두도록 엄명한 것이다. 이 때문에 좀처럼 연조사^{年條使} 접대 자리가 없을 것이니, 임관^{任官}으로서 참으로 두려움을 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니 안도가 된다. 이러한 내화^{內話}들도 보고 드리겠다.

이에 대해 관리들이 “현재 상황을 충분히 해명하신 뒤에 하루라도 빨리 다례^{茶禮}를 마련하도록 진력, 전념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설유^{說諭}했습니다. 그러자 혼도가 답하길, “일단 보고를 해서 조정을 번거롭게 했는데, 이제와 고민스러운 일이다. 양국에 이렇듯 일이 엇갈리게 된 이유에 관해, 명백하도록 조치하지 않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왜관의 쓰시마 관리들이]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사이스케의 구진^{口陳}은 전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자연히 말의 경중은 있을 수 있지만, 당신도 어세^{語勢}를 잘못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되니, 누구라도 본주^{本州}에 말을 전하여 거듭 알렸을 것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충분히 해명된 후 하루라도 빨리 연향을 열어서 양측이 온순^{穩順}하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 뜬소문이 더해져 훗날의 해를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니, 위의 사정을 부사에게 말하고 머지않아 다례^{茶禮}를 마련하도록 서둘러 진력해줄 것”을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러자 속히 동래부에 올라가 금일 답판의 전말을 자세히 부사에게 말씀드리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은 사이스케가 귀국한 뒤의 외국의 동정과 훈도와 담판한 개략입니다.

조선의 새 고지에 관한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의 답변서

지난 4월 대수사大修使 교섭에 관한 공무를 띠고 도관渡館하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3일에 훈도와 담판한 시말과 최근 한지韓地에서 이것저것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일찍이 제가 훈도와 한 담판에 관해 그 후 관사館司 및가와모토 구자에몬川本九左衛門이 소통사小通事 재수在守에게²³ 물었는데, 전에 제가 제출한 취지 및 사정과 크게 달라서 내외에 타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훈도와 의 담판 내용에 관해 더욱 힐문하고, 조목 별로 적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의표에서 벗어난 바로서, 유감스럽고 황공한 일로 생각됩니다. 분부에 따라 당시 대담의 대의大意와 어리석은 제 뜻이 낙착되기 어려웠던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아뢰오니, 부디 현명한 지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一. 지난 4월 공무에 관해 지시하신 글의 취지와 구두로 말씀하신 각 사항과 관련하여 훈도와 담판할 때, 원래 저 나라와 우리나라는 풍속이 같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문사文辭만으로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어긋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문답 중에 억양抑揚과 이장弛張의 대처를 그 상황에 맞추어 대화한 것이니, 지시하신 순서와 추호도 다르지 않았습니 다. 아울러 자연히 대동소이大同小異하지만 과불급過不及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체大體의 주의主意를 잃는 등의 일은 조금도 없었는데, 참으로 생각지도 못한 시기時機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담판의 대요大要는 글로 적어서 대수사 및 관

²³ 최진한(崔震翰)[재수(在守)]을 말한다.

사에게 제출한 대로입니다. 그런데도 훈도와 소통사 등이 이제 와 말을 뒤집는 답판을 하게 된 경위는 참으로 괴이하고 미워할 만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용건에 그와 같이 대관절大關節의 저어齟齬가 생긴 것은 필경 제가 불초한 데서 양성된 것이니 몹시 황공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장이 없다면 이제 일단 훈도와 대결對決할 것을 명하시어 흑백黑白을 분명히 가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극히 중대한 용건을 취급하는 가운데 미천한 신토의 결백함을 밝히려다가, 만에 하나라도 공무에 해를 끼친다면 더욱 황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공무에 제 말이 피해를 끼쳤다면 죽더라도 죄가 남을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해도 황송하기 그지없으므로, 앞뒤를 살피지 않고 이처럼 간원懇願하오니 부디 현명한 지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저와 훈도의 응접이 만에 하나라도 해를 양성한다면 이는 또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이를 금지하는 결의決議가 이뤄진다면 저의 일신이 삼가 형벌을 받을 것은 물론이니, 이에 대해서도 타당한 용서를 바랍니다.

- 一. 훈도 및 소통사의 말과 관련하여 가장 어긋남을 보이는 것은, 제가 답판 중에 국사國使가 병졸을 인솔하여 바다를 건너가 서울에 올라가기로 결정됐다고 했기 때문에 한성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나 여기저기 관계 관청에서 방비의 조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연조사年條使의 접대는 물론, 미목米木의 입송入送과 서계의 왕복이 정지되고, 임관이 화관和館에 가는 일조차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독일 문제는 그다지 지장이 없었지만 제 한마디 말 때문에 갑자기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경악스럽고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본래 연조송사年條送使는 본번本藩(쓰시마번)의 국한된 일이지만 대수사의 공무는 중대한 일이어서 공사公私의 구별이 판연判然하니, 최근의 용건에 연계해서 답판할 수 없습니다. 이 국사國使의 안전과 관련해 답판한 취지는, ‘이번에 대수사大修使의 공무가 3년을 끝었는데 이제 와 타결하지 못했다

고 복명한다면, 본주本州(쓰시마주)의 직장職掌을 파면당한 뒤에 엄중한 견책도 받을 것이다. 또 본주本州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그대로 끝나지 않고 자연히 조정에서 국사國使 등을 파견할 것이다. 그 경우, 과거 귀국의 신사信使(통신사)의 전례에 따라 상경上京 등의 논의가 없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호위를 위해 병대兵隊 등을 인솔하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외무성의 역원役員에게 첨부해서 내람內覽하신 문답서問答書대로입니다.

물론 국사國使와 병대兵隊 운운한 것은 지시를 받은 바 없지만, 한인韓人の 교활한 추속醜俗이 이번 용건에 불응하는 회답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점차 진행해온 선례도 있으니 더욱더 허실을 시험하기 위해 위갈威喝을 품고 저 교활함을 꺾고 그 실심實心을 토로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우의愚意로부터 사건의 전망과 술책을 마련해서 답판한 것입니다. 이제 와 황송하기는 하오나, 본디 국사國使 운운하는 말을 답판의 주本主本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들의 불응의 국론國論이 참으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공갈로 한때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탐지하고, 또 이로부터 교제交際의 체식體式과 관련하여 저들이 바라는 바를 토로하게 한다면, 설령 앞으로 관寬과 맹猛, 어느 쪽으로 나가시더라도, 외람되오나 정의廷議의 일조一助, 목적 등이 될 것이라는 데 착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답판을 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필경 미숙하고 서투른 대화와 언어가 상세하지 못한 데서 의미가 전도되고, 그 주지主旨로 하는 바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지레짐작으로 말을 가설假設하는 것을 장기로 여겼으니 거듭 송구하옵니다. 하지만 제 변론이 상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국사國使가 도해渡海해서 상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거의 병단兵端도 열린다는 말이 들릴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정부등대政府等對 등의 내화內話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일에 관해 굳이 저를 만류하면서 수도에 왕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一. 오늘날에 이르러 독일 선박에 통역하는 사람이 탑승한 것은 그다지 지장이 없다고 훈도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관해선 제가 분명히 들은 것으로,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나카노 교타로가 탑승한 경위에 관해 변해(變解)하자, 훈도가 말하길 ‘그 일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예전에 이미 동래와 부산에 주위에 주의를 거듭해서 다 변해했다. 그래서 실은 내일 관내(館內)로부터 요미료(米) 입송(入送)의 요청을 받더라도 이 일을 분명히 설명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성에서 이양선의 일로 이미 대장군을 선발하고 팔도에서 군대를 모집하는 상황이 된 이상, 한성에 대해선 결코 설명하기 어렵고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혹을 키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밖에 세세한 것은 문답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갑자기 독일 문제는 그다지 지장이 없다고 하고선, 국사(國使) 문제를 갖고 독일 선박 문제로 변환(變換)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필시 앞으로 국사(國使)에 관한 말을 본본(本藩)에서 꺼내지 못하게 하려는 간계일 것이니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一. 훈도와 제가 영별(永別)한 것은 이미 동역(同役)²⁴ 히로세 도요키치에게 보낸 문서에도 보입니다. 또 저의 한 마디로 온 나라가 소란을 빚었으니 사이스케를 처벌하도록 요구했는데, 거듭 저의 일보(一報)²⁵까지는 연조사(年條使) 등도 접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무슨 일보(一報)를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또 훈도가 의뢰하기를, ‘타이슈의 면직, 국사(國使)의 도해(渡海)라는 상황이 된다면 지체 없이 극비리에 알려달라.’라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다린다는 일보(一報)란 바로 이 일을 말합니다. 국사(國使)의 도해(渡海)가 결정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한마디 말로 온 나라가 소란해졌다는 것과는 맞지 않으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²⁴ 동역(同役): 같은 직무를 맡은 사람.

²⁵ 일보(一報): 첫 소식.

一. 저의 일보一報까지는 취관就館하는 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두어 관수와 구자에몬이 소통사 재수在守에게 한 내담內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훈도가 화관에 내려와서 저의 담판과 관련하여 국사國使 운운한 것을 언급했는데, 관사館司와 구자에몬이 아는 바 없다고 답변했으므로 제 말이 허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에 대한 처벌을 훈도가 신청한 것을 받아들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수도에서 연조사年條使 응접, 미목米木 입송, 서계 왕복 등을 엄중히 거절해 왔는데, 갑자기 한성에 왕복하는 일 수도 아닌 열흘을 넘기지 않고 송사送使의 접대를 시작하고, 기타 미목米木 등을 신속히 입송入送했으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저의 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역원役員들로부터 국사國使 운운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사이스케 한 사람의 허설虛說로 주장해서, 죄에 빠뜨린 후에 본번本藩에서 국사國使에 관한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하려는 간계奸計의 확증이라고 생각합니다.

一. 소통사 재수在守에게 문의한 반담返答 가운데, 용건의 시담示談²⁶을 훈도가 사이스케에게 물리쳤다고 회답했으므로, 부득이하여 정부등대 건을 서울에 아뢰어 줄 것을 의뢰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첫 단계에서 훈도가 담판한 후, 재수가 저의 거처에 찾아와서 최근의 담판은 능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훈도가 그쪽에 말했는가?’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뒷마루椽側에 있던 훈도의 가미[興]의 그늘[陰]에서 몰래 들었다고 하므로 괴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세한 담판 내용을 하나씩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이 자가 말하는 것이 담판한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말하기를, “제가 돌아가자마자 훈도가 별차를 불러서 제가 담판한 것을 남김없이 이야기한 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견을 말하게 했습

²⁶ 시담(示談): 분쟁을 화해시키는 말.

니다. 별차가 다른 의견이 없다고 답했더니, 훈도가 ‘임관에게 소견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별차가 ‘사이스케의 말이 모두 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능하다면 등대等對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훈도가 ‘모든 임관은 인체人體를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진위를 판별하지 않으면 임관은 종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는, 아무개는 어떤 인물이며, 또 아무개는 어떤 인물인지 여러 가지로 타이슈인對州人을 품평品評한 끝에 등대等對의 논의는 지극히 타전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김해金海에 있는 걸음이 빠른 자를 한성에 파발[飛脚]로²⁷ 보낼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벽 너머로 들은 내용을 제 목전에서 말할 때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관수가館守家에 회답한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이 자는 평소 은혜를 베풀어서 심복이 된 자라고 판단했는데, 최근의 마땅하지 않은 행실은 한인의 통상通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생각됩니다.

이상의 각 사항을 양찰하신 후 부디 타당한 지휘를 내려주시길 삼가 바랍니다. 이상.

9월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

06 이즈하라번嚴原藩으로부터 대수사 응접담판의 결과, 관맹寬猛의 처분을 속히 지휘해줄 것을 청하는 글

신정新政을 통보하기 위해 조선국에 파견된 대수사가 담판한 끝에, 저 나라 동

²⁷ 히카쿠(飛脚): 서신이나 문서 등을 송달하는 사람.

래부사가 제출한 단간短簡에 덧붙여 지난 4월 별지 가키토리書取로 이후의 교섭에 관한 지휘를 청하였는데 지금까지 어떤 분부도 없었습니다. 물론 조선국에서의 담판의 전말은 잘 아시는 대로니 다시 본번本藩에서 재촉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속히 일정한 지휘를 내지 않고, 사절이 지금 모양으로 헛되이 한 국에 체류한다면 조의朝議가 천연遷延되는 업신여김의 단서를 열 뿐만 아니라, 장래의 공업功業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응접應接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러 바라옵건대, 관寬과 맹猛,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으로 나가더라도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속히 무언가 분부를 내려주시길 바라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시를 청하라는 뜻을 지사知事가 전해왔으므로 이를 여쭙니다. 이상.

9월 15일

이즈하라번

모리카와森川 권대참사權大參事

외무성 귀중

⑤ 外) 머지않아 외무성 관원의 출장을 분부하실 것이니 그들과 상담할 수 있도록 회답할 것.

07 변관辨官으로부터 이즈하라번嚴原藩에서 제출한 관맹의 처분을 바라는 글을 회부回附하는 글

이즈하라번에서 별지 2통과 조선사건朝鮮事件을 여쭙었습니다. 반드시 외무성에도 여쭙겠지만, 이해를 위해 회부回附해 드립니다.

경오년(1870) 9월 18일

변관²⁸辨官

외무성 귀중

신정新政을 통보하기 위해 조선국에 파견된 대수사가 답판한 끝에, 저 나라 동래부사가 제출한 단간²⁹短簡에 덧붙여 지난 4월 별지 가키토리書取로 이후의 교섭에 관한 지휘를 청하였는데 지금까지 어떤 분부도 없었습니다. 물론 조선국에서 답판의 전말은 잘 아시는 대로니 다시 본번本藩에서 재촉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속히 일정한 지휘를 내지 않고, 사절이 지금 모양으로 헛되이 한 국에 체류한다면 조의朝議가 천연遷延되는 업신여김의 단서를 열 뿐만 아니라, 장래의 공업功業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응접應接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러러 바라옵건대, 관寬과 맹猛,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으로 나가더라도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속히 무언가 분부를 내려주시길 바라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시를 청하라는 뜻을 지사知事가 전해왔으므로 여쭙니다. 이를 외무성에 아뢰오니 타당한 지휘를 청합니다. 이상.

9월 17일

이즈하라번

모리카와森川 권대참사²⁹權大參事

변관²⁸辨官 귀중

동래부 단간²⁹短簡 첨서添書 사본²⁹

²⁸ 변관(辨官): 태정관에 속해서 문서사무 및 여러 관사(官司) 또는 지방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관리.

²⁹ 이 문서는 제목만 있고 실제 사본은 수록되지 않았다.

08 변관에게 이즈하라번(嚴原藩)에서 제출한 글을 외무성이 반각(返却)하는³⁰ 글

대정유신(大政維新)으로 조선국과의 교제를 친재(親裁)하신다는 뜻으로 조의(朝議)에 따라 초안(草案)의 서계(書契)를 갖고 2년 전 무진년(戊辰年)(1868) 겨울에 대수사(大修使)의 사명(使命)으로 중역(重役)이 건너가, 선규(先規)에 따라 서한(書翰)을 저 나라 임역(任譯)들에게 전달한 후 원문서(原文書) 봉출(捧出)의 방법을 엄중히 교섭했으나, 몇 달을 천연(遷延)하면서 말을 좌우로 돌리며 사절을 만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황조(皇朝)로서는 더욱 인의(隣誼)를 돈독히 하려는 성의(誠意)가 도리어 시의(猜疑)를 낳았습니다. 친교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아뢰었으니, 다시 궤언(贅言)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관해 묘당에서 관寬과 맹猛, 두 가지 길의 근본(根底)을 우선 확정해서 지휘하지 않으신다면 답판의 결말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관해 일찍이 건의한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변관(辨官)이 어역소(御役所)에서 “대수사 교섭에 관해 격렬하게 응수하면 도리어 훗날의 해를 낳을지도 모른다. 어떤 나라라도 보전(保全)의 마음(心)으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간요(肝要)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퇴거(退去)하는 조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신 내유(內諭)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번(本藩)의 역인(役人)은 어디까지나 온건하고 타당함(穩妥)을 위주로 하여 답판하려는 각오였는데, 저들은 더욱 집요한 모습으로 서계(書契)를 봉출하지 않는 사유를 글로 적어서 제출하고, 사절의 퇴거(退去)도 임역(任譯)이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의 경위로는 아무리 응접과 변론을 다하더라도 헛되이 일력(日力)만 소비할 뿐, 그 효과가 다시 없을 것이므로 크게 고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외무성 관원이 도해(渡海)하셔서 한토(韓土)의 실태와 대수사 답판의 절차 등을 직접 청취하신 후, 역인(役人)에게도 간유(懇諭)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저들이 서계를 봉출하지 않는 의도를 별지와 같이 동래부사가 단간(短簡)으로 제출했습니다. 언사가 크게 불손하나 구구한 절목을 논했습니다. 시

³⁰ 반각(返却): 보내온 물건을 받지 않고 돌려보냄.

사時事에 무익할 뿐 아니라, 크게 때가 늦어서 앞으로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으로 서면書面을 받아서 보내왔기에 우선 태람臺覽을 위해 보내드립니다. 숙고하신 후 무언가 분부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조만간 관원이 귀조歸朝해서 제반 사항에 관해 분부를 받들 것입니다. 이즈음 묘의廟議가 하나로 정해졌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고찰해보면, 은위恩威를 병행하고 관맹寬猛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취하여 결국 외국으로부터 업신여김을 초래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에 대해 중대한 용건을 조속히 복명하지 못한 이유는 물론 한인韓人의 완고한 국습國習 때문이긴 하나, 직장職掌에 있어 몹시 황공하옵니다. 부디 전후의 정실을 적절히 양찰하시고, 앞으로 사절의 교섭의 대처와 관련하여 타당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외무성에 여쭙었으니, 적절한 지휘를 바랍니다. 이상.

4월 11일

이즈하라 번지사
변관辨官 귀중

변관辨官 귀중

외무성

이즈하라번에서 조선사건을 당성當省(외무성)에도 아뢴 것과 관련하여, 이는 조만간 당성의 관원이 그곳에 출장할 것이니, 수시로 상담하라는 뜻으로 회답하였음. 이에 따라 이즈하라번에서 귀 관청에 제출한 서류를 일람한 후 반각返却함.

경오년(1870) 9월 19일

영토를 넓히는 데 힘쓰는 것은 거칠지만, 덕의德誼를 심는 것은 널리 문명文明의 교화를 사표四表에 흐르게 합니다. 삼가 아시아주亞細亞洲의 대체大體를 살피건대, 원래 하나의 대경大境으로서 민종民種³¹도 같은 일족입니다. 그런데 크게 권력을 갖고 완전히 이 주洲를 통어統御하는 자가 없어서 마침내 분열되어 황국皇國(일본)·한토漢土(중국)·인도 및 조선·류큐琉球 등이 여러 방면에서 건국의 기업基業을 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봉강封疆을 다투니, 인민들이 격절隔絶하고 교제가 소원疎遠해졌습니다. 각기 정부를 세워서 겨우 그 한 경내를 보호하고, 혹은 국경을 빼앗고 노략해서 적수敵讎³²의 추태醜態를 고결固結하니,³³ 어찌 그 덕을 헤아려 이웃 나라와의 교의交誼를 닦을 겨를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함주閔州를³⁴ 통어統御하고 인민을 보호하는 위업偉業에 뜻을 두지 않은 자가 있겠습니까?

덕에는 정해진 작위[定爵]가 없고 나라엔 정해진 국경이 없습니다. 한토漢土가 비록 광대하지만 그 덕이 없으면 아시아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고, 황국이 비록 작지만 그 덕을 보존하면 아시아주의 으뜸이 되어 제도를 하나로 하여 각 방면을 다스릴 것이니,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조선을 통제하는 데 그 힘을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저항해서 무력 분쟁[兵爭]을 일으켜 양민을 해치고 하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도리어 몽매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상고시대 건국의 위업偉業을 계고稽考해 보건대, 신조神祖의 위덕威德은 실로 숭앙할 만합니다. 그 백성을 사랑함에 어찌 구구한 일개 경토境土를 기약했겠습니까? 널리 태양이 비추는 바에 천민天民³⁵을 보호하는 것이 신의神意였을

³¹ 민종(民種): 인종.

³² 적수(敵讎): 원수.

³³ 고결(固結): 응고해서 변하지 않는 모양.

³⁴ 함주(閔州): 온 고을. 여기서 일국을 뜻한다.

³⁵ 천민(天民): 하늘이 낸 백성.

것입니다. 그러나 중고(中古) 시대에 이르러 건국의 업적이 희미해져 그 정치가 쇠퇴함에 인교(隣交)를 닦을 겨를이 없어서 전권(全權)을 장군가(將軍家)에 맡겼습니다. 국내가 더욱 소란스럽고 사린(四隣)이 차례로 멀어졌으니, 누가 다시 건국 시기의 교제를 논의하는 데 이르렀겠습니까? 그 사이에 혹은 외국에 아양을 떨고, 혹은 덕을 잃어 변고가 백출만단(百出萬端)하고, 혹은 위축되어 구차히 안일만 쫓고, 혹은 고식적으로 응접하였으니, 그 쇠퇴함을 탄식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정(王政)이 중흥의 조짐을 만회했으니, 금일의 위업은 거의 2천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쇠퇴한 정치와 장군가의 실덕(失德)을 바로잡고, 왕덕(王德)을 심는 데 힘쓸 기회이니, 훗날 대일주(大一周)를 통일하는 기초를 기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토를 넓히는 데 힘쓰는 것은 왕가(王家)의 업(業)이 아니며, 군대로 부덕한 자에게 복수하는 것은 왕가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생각해보건대, 머지않아 왕덕(王德)을 조선에 시험함으로써 저 몽매한 완민(頑民)을 문명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여, 하늘의 뜻을 돕고 이 양민을 보호하는 것이 천리(天吏)³⁶의 정해진 직분(定職)입니다. 황국의 탁월한 덕은 전 아시아주에서 으뜸가는 것이니, 어찌 원근(遠近)과 구역, 내외(內外)와 존비(尊卑)를 논하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신의를 베풀었는데 저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의 신의를 저버리는 사모(詐謀)로써³⁷ 신의를 취하려 한다면, 이는 큰 신의(大信)가 아니니 다른 사람이 어찌 우리를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지도해서 그 백성을 안녕하게 하려는데, 완고하게 하늘의 뜻을 거슬러 천민(天民)을 해친다면 이는 곧 천리(天吏)된 자가 그 죄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황국의 관계는, 교제의 체제가 오래전에 폐전(廢典)이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는 이웃 나라의 정의(情誼)가 있고, 부용국(附庸國)에는 부용국의 체제가 있습니다. 그 체제가 애매몽롱(曖昧朦朧)하면서도 신의를 잃지 않는 경우는 거의 드물

³⁶ 천리(天吏): 천명을 받들어 천하의 무도한 자를 벌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탕왕(湯王)이나 무왕(武王)과 같은 군주를 말한다.

³⁷ 사모(詐謀): 속이기 위한 계략.

니다. 저들[조선인]은 그 형상이 우리에게 굴복하면서도 은밀히 불만의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정交情이 날로 소홀해져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허다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의론이 분분하여 아직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간과干戈가 그치지 않아 창생蒼生이 그 해를 입는 것이 갈마들며 많았는데, 중고中古 이래로 타이슈 소 씨의 선조가 양국 간의 교제를 미봉하자 양국 백성이 비로소 안정되었습니다. 옛 막부도 쟁란爭亂을 싫어해서 그 교의交誼를 타이슈 가문에 위임하고 다시 그 가부를 따지지 않았으며, 인민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 오직 저 나라[조선]에서 구하게 했습니다. 저들[조선인]도 전쟁이 중단된 것에 기뻐하였고, 그 덕에 감사하며 풍흉豐凶에 무관하게 매년 양식을 대준 것이 이제 수백 년이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성상星霜³⁸을 거침에 정의情誼가 점차 희박해지고 새로운 원한이 그에 따라 일어나 마침내 교제를 싫어하는 데 이른 것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저들과의 교제를 상의함에 혹은 분쟁의 기운爭氣을 띠고, 혹은 이번 기회에 자기의 사욕을 펼치려고 하고, 혹은 물리치면서 굳이 교의交誼의 득실을 개의치 않으려 하였으니, 이처럼 영구고식寧口姑息하는 교제를 타이슈에 맡겨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는 하나, 이제 만국교제萬國交際의 시대에 한 도島の 권병權柄을 저들이 제어하고 있으니, 이는 비단 소 씨의 흠일 뿐만이 아니요, 그 실덕失德이 황국 정부에 돌아올 것입니다. 훗날 러시아의 세력이 만연蔓延해서 쓰시마섬을 병탄하여 그 소유로 만든다면, 이른바 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버티고 싸우는³⁹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구습舊習을 개혁해서 저들을 안심시켜서 적수敵讎의 형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분쟁의 기운을 일으켜서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는 것은 극히 무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덕의德誼를 심어서 양국 백성이 서로 보호하고 제양濟養하는

³⁸ 성상(星霜): 오랜 세월

³⁹ 원문에는 ‘海[虫+喬]ノ笑’로 되어 있는데, 海[虫+喬]은 蚌鷸의 잘못된 것으로 보고 옮겼다. 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버티고 싸운다는 의미의 ‘蚌鷸之爭’, 즉 어부지리의 고사에서 연유한 말이다.

방도를 넓힌다면, 저들도 같은 민중民種이니 감격하는 선량한 마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방역方域(구역)으로 인도하고 그것을 무휼撫恤하면, 이른바 천리天吏의 정해진 직분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피차 백성들이 비로소 황국의 왕정王政이 새로워짐을 숭배하여 진하進賀가 늦은 것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웃 나라와의 교의交誼와 맹약의 단서입니다.

탐색의 전망에 관한 각서[覺]⁴⁰

一. 저 나라[조선]의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그 자손들에게 유언하기를, “명조明朝를 예禮로 섬기고, 일본과 신信으로 교제하면 길이 이 나라를 보전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말을 고집해서 국론이 하나로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명조明朝의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옛 맹서를 감히 어기지 않아서, 황력사皇曆使는 책력을 받아오고 동지사冬至使는 선달그믐을 진하進賀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말에, “지금 베이징北京은 참으로 옛날에 비할 바가 아니다. 서양의 오랑캐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라의 위의威儀를 잃었지만, 봉강을 접하고 또 구약舊約 때문에 황제로 받들지 않을 수 없다. 일본과의 교제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나, 분로쿠文祿 임진의 변壬辰ノ變(임진왜란)이 나라의 큰 피해이자 치욕으로서 그 원한이 골수에 사무쳤으니, 어찌 징계懲戒하지⁴¹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옛 원한을 잊지 않고 새로 신의로써 영원히 교제해서 양국 인민의 왕래와 제양濟養의 친함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인정人情이지만, 어찌면 외모外侮⁴²를 받아 신복臣僕의 예禮를 강요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절하면, 나라의 피해가 갑자기 폭주輻輳할 것이다. 앞으로 나가도, 뒤로 물러서도 두려우니 애매한 방책을

40 각[覺]은 일본어로 오보에라고 하며, 기억을 위해 기록한 문서를 총칭한다.

41 징계(懲戒): 스스로 과거에 당한 일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경계함.

42 외모(外侮): 외국의 압신여검.

써서, 겨우 한오라기 실처럼 그 교정交情을 완전히 끊지 않는 전책全策만⁴³ 같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슈의 백성도 저들을 마치 노예처럼 보고 있으니, 그에 따라 공사公私의 증답贈答과 수수受授하는 사이에 저절로 균형을 잃어서, 마침내 우리 본국을 가리켜 범과 승냥이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일마다 진정眞情으로 임하지 않으면서 은연중에 “타이슈 섬은 조선의 섬이다. 비록 일본의 판도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그 백성을 봉양하니 우리 토지와 우리 백성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식자識者가 과연 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一. 예로부터의 폐습을 일소하여 쓰시마 섬을 현懸으로 만들어 나가사키현에 합병하고, 외교外交를 조정에서 열어 세계보통世界普通的 조약을 맺는다면 저들이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바닷가에 정박처를 빌려서 일본 상민商民의 베이징을 왕래하는 선박을 위해 신수薪水가 부족할 때 보급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 예로부터의 폐교弊交 가운데 부산포의 구약舊約을 오래 지속해야 합니다.

一. 양국 상호 간에 길吉·흉凶·빈賓·군軍·가嘉를⁴⁴ 묻는 접대와 예절은 저들의 뜻에 맡기되, 왕래와 거류에 드는 비용은 반드시 자국에서 대야 합니다.

一. 물품의 무역은, 양국 상민商民의 손에 맡기면 그 사이에 반드시 불공평[不平均]을 낳을 것입니다. 쌍방이 제양濟養하는 도道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곧 관道官途의 직분이니, 지금처럼 직무역直貿易하는 것은 그 업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본 일반의 상민들이 왕래 및 거류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⁴³ 전책(全策): 안전책(安全策)

⁴⁴ 길례(吉禮)·흉례(凶禮)·빈례(賓禮)·군례(軍禮)·가례(嘉禮)를 오례(五禮)라고 한다.

관館(영사관)을 설치하며, 저들의 상민도 마음대로 일본 내지에 거류지를 설정하게 해야 합니다.

— 각지에 호시장互市場을 열지 않아도, 연해의 왕래와 베이징·딩하이定海 통행의 편의를 위해, 혹은 거센 풍파로 인해 호시장 외에도 정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도의 해남海南과 제주濟州, 경기도의 강화도, 평안도의 의주義州 등 여러 곳을 사전에 그 편의를 측량해야 합니다.

— 교제의 주안점은, 서계의 왕복과 빙사聘使의 예계禮階를⁴⁵ 논하여, 저 혼자 존중하며 국위國威를 넓히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오직 양국 인민의 보호를 본지本旨로 합니다. 따라서 서계의 자항字行을 따지는 것은 무용한 일이며, 도리어 본지를 그르칠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제를 구했으니, 주인主人의⁴⁶ 뜻에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위國威에 어찌 증감增減이 있겠습니까? 이는 아시아주의 통폐通弊입니다.

— 오직 조선에만 주목해서 교제를 구하는 것은 도리어 완민頑民의 호의狐疑를⁴⁷ 키워 본지本旨를 깨뜨릴 뿐, 억지로 인심을 해치고 자국의 힘을 허비해도 이를 보상받는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우선 베이징과 텐진天津에 상통相通하되 때때로 조선 연해를 왕래하고 정박한다면, 여러 항구를 열고 그에 따라 의혹을 점차 깨끗이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선으로의 도해渡海와 왕래를 속박하는 것은 바로 쓰시마섬인데, 사리私利를 추구하는 구폐舊弊를 먼치 못하니 이 때문에 지금처럼 격절隔絶하게 된 것

⁴⁵ 예계(禮階): 의미가 분명치 않으나 예의 등급을 뜻하는 말로 보인다.

⁴⁶ 주인(主人): 손을 맞아들이는 사람, 즉 조선을 비유함.

⁴⁷ 호의(狐疑): 여우처럼 의심이 많아 머뭇거리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

입니다. 그러므로 어부와 상선의 왕래에 대한 숙박을 해제하는 것이 가장 급무입니다. 그러는 동안 과연 부정不正을 놓고 쟁론諍論을 양성한다면, 관가官家가 취체取締하는⁴⁸ 조약을 인민이 먼저 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객이 바뀌어 저들이 먼저 요구할 것입니다.

- 저들의 관세[貿易利稅]는 관고官庫의 소유가 아니며, 타이슈의 소유도 아니니, 어부와 상선 일반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래숙박법往來束縛法을 해제하는 것은, 교제조약交際條約의 이유를 만드는 방법의 순리順理이자 제일착第一着의 수단이 됩니다.

이상.

경오년(1870) 9월

야마구치번山口藩

아와야 다스케栗屋多助

삼가 아뢰입니다.

⁴⁸ 취체(取締): 단속.

이 논의에 취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론에 있어선 참으로 공명무사公明無私의 도리를 말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이나, 다스케多助가 종전 함종승從 사무私賈의 일 및 장래 도모하는 바를 숙지하지 못하고, 또 대한對韓의 정실情實을 잘 알지 못하는 자는 어찌면 현혹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의를 비판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날 이 사건에 관계된 입장에서 논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사계가미에서 지금까지 탐색한 몇 개 조목으로 조금 그 사흘詐譎을 비평하는 것입니다. 엇드려 바라옵건대, 외무경과 외무대보 각하께서 제현諸賢 대하臺下에 이르기까지 관원들이 저 지역에 도향한 뒤에도 지면의 논의를 대략 보시고 그 진위眞僞와 간신奸信을 깊이 살펴 피지 않은 채 대번에 그 가부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히로노부弘信

갑甲. 사계가미下げ紙

‘저들의 토지’, ‘저들의 백성’ 운운한 것은 예의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관여치 않더라도, 오늘날 일신一新을 맞이하여 교화交和 및 무역貿易의 예전例典과 조약 등은 저들을 타일러 깨닫게 한 뒤에 점차 그 개혁을 해서 만국이 보기에 공정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금일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고심하는 바입니다. 저 다스케는 나가사키와 쓰시마의 함종무역從貿易을 계획하는 자로서, 이번에 도쿄에 와서 기도木戸 씨에게 우거寓居한 지 이미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을 입을 닫고 지내다가 금일 갑자기 이를 논한 것은

⁴⁹ 사계가미(下げ紙): 관청 등에서 상신한 문서에 상급자가 의견이나 이유 등을 적어 첨부하는 종으로 부전(付箋)과 같은 뜻이다.

은밀한 논의가 있는 것이니, 제가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어찌 이를 간파하지 못 하겠습니까? 타이슈 번지사의 개탄을 이제 아울러 생각해보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을乙. 가케가미⁵⁰ かけ紙

쓰시마를 현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론이 올해 봄부터 점차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금일이 출병을 논의하는 때라면 곧장 이를 실행해야 할 것이로되, 화친을 철저히 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때에는 이를 서두르는 경우 확실히 저들의 의구심을 키우는 단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폐변廢藩의 논의를 세워선 안 됩니다.

가케가미⁵¹ 掛紙

여기서부터 이하로는 만사를 손에 잡히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상당한 재자才子인⁵¹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와 같이 척척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교제의 성약誠約을, 저들이 열기 쉬운 창문을 골라 수용하는 것이 출발의 일대 수단이 됩니다. 금일 떠들썩하게 천하에 한 사람의 견식과 같이 공론空論을 하는데 이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일일이 논파하지는 않겠습니다.

⁵⁰ 가케가미[かけ紙, 掛紙]: 본문의 증보, 삭제, 정정 등을 위해 본문에 첨부한 쪽지.

⁵¹ 재자(才子): 재주와 지력이 뛰어난 사람.

10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도한渡韓의 절차를 개진한 글

이번에 양국정부 등대等對의 목적으로 도한渡韓하는데, 저 지역[조선]에서의 응접 상황 등을 미리 금일 진술하기는 어려우나, 조정의 친교親交의 성의盛意와 만국의 형세, 고금 기운機運의 변천을 간절히 설명하고 도저到底한 우리의 선린善隣의 성의誠意로 감동시켜서 교제를 원만히 성사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등대의 목적에 관계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아립니다.

一. 외무경이 저 나라 예조판서에게, 외무대승外務大丞이 저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서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판서는 바로 예조의 장長으로서 우리 외무경과 같음】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는 전부터 쓰시마주 번지사藩知事가 등대等對로 왕복하였으므로, 대승이 서한을 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一. 도한渡韓 후 가장 먼저 취할 수순은, 예전 쓰시마번에서 저 지역에 파견하여 화관和館에 체류하고 있는 제사諸士와 시의를 신중히 상의해서, 훈도와 면담을 갖고 순순諄諄하게 양국 순치脣齒의 후정厚情과 성의盛意를 설유說諭해서 저들의 의단疑團을 깨끗이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적으로 하는 정부 등대교섭等對交涉의 대의大意는, 저 훈도가 타이슈번에 내의內意를 탄원하도록 조처한 뒤에 가져간 서계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단, 양국의 교제는, 도쿠가와 시대에 이즈하라번이 다시 맺은 뒤로 정부 관원이 저 지역에 도항하는 일이 중단됐습니다. 모든 절목節目의 개혁을 거절하는 것은⁵² 저 지역의 습벽習癖입니다. 반복해서 거절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로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니, 그럴 때마다 간곡하고 온화하게 이야기한 끝에 마침내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의 도항渡航도, 설령 저들이 거절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성의誠意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 있고 관후寬厚한 태도로

⁵² 원문은 ‘節目改革／折ハ’로 되어 있는데, 의미가 잘 통하지 않아서 ‘折’은 ‘拒’의 오키인 것으로 보고 옮겼다.

임기응변하면서 답판하고, 이즈하라번에서 협동, 진력하면서 훈도 및 동래·부산에 서서히 면회하는 수순을 취할 작정입니다.

- 이 서계를 수용시킨 뒤에 더욱 간절한 뜻을 전하며 서서히 지금의 형세 등을 설명하여 가장 먼저 판서로부터 교정交情에 감사한다는 회신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정交情이 성숙한 후, 통신通信의 흠차대사欽差大使를 저들이 먼저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보내든지 앞뒤로 반드시 내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혹은 예전부터 공사무역公私貿易이라고 부르던 것을 효유曉諭해서, 다시 관민官民의 정情이 서로 어그러지지 않는 양법良法을 상의하여 미봉할 것입니다. 가령 조약을 시험 삼아 이야기해봄에, 혹은 피차 표류민의 취급 및 호송의 절차, 혹은 피차 내지에 상호 거류 및 여행 등의 허가 방법과 토지의 이수里數 등을 편의한 대로 상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협상 시기의 변동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 간 등대교제等對交際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도항渡航과 관련하여, 구례舊例를 답습하여 모든 일에 협력하고 알선하도록 태정관에서 이즈하라 번지사에게 다시 분부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지금 도쿄에 있는 우라세 사이스케는 조선 통변通辨에⁵³ 능숙한 자이니, 우리의 동행으로 포함하라는 뜻을 외무성에서 이즈하라 번저藩邸에 전달하고자 함.

- 언제 공무가 끝나 귀국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략 계산하건대 6개월을 기한으로 함.

⁵³ 통변(通辨): 통역, 또는 도리에 밝은 사람을 뜻한다.

一. 해로海路로 나가사키長崎까지는 서양의 연락선에 탑승함. 기요崎陽에서⁵⁴ 타 이슈에 갈 때는 기후가 서북풍이 불 때라서 화선和船의 항해가 아무래도 불안하므로, 기요에서 증기선 또는 범전선帆前船⁵⁵ 등 그 편의를 고려해서 도항할 계획임. 그 전에 한지韓地에의 왕복은 물론 화선和船으로 항행할 예정임.

一. 공금 3,000냥 및 선임船賃(賃) 양은洋銀 540달러를 내려주시길 바랍.

단, 이번 일은 점진적으로 성의誠意를 관철할 계획이니 저 지역에 오래 체류할 수 있고, 뇌물 등을 많이 가져갈 것이므로 비용도 그에 상응하여 많이 필요함. 또 저 지역의 관리들에게 줄 선물[贈品]도 조정調整해야 하므로 이상의 금액을 내려주시길 바랍.

덧붙임. 선물의 구매와 왕복 선임船賃, 여러 시야쿠쇼仕訳書⁵⁶ 등 상세한 것은 별지에 조사해서 첨부함.

一. 이번 일은 지극히 손쉽고 간편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할 작정이므로, 부속 인원 등을 거느리는 것도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회계 기록을 검하는 시쇼史生 1명을 동반하고자 함.

이상의 건들을 평결評決하시는 대로 일찍 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오년(1870) 9월 20일

⁵⁴ 기요(崎陽): 나가사키의 별칭.

⁵⁵ 범전선(帆前船): 서양형 범선.

⁵⁶ 시와케(仕訳): 복식부기에서 매일의 거래, 대차관계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록, 정리하는 것.

11 조선국 관리에게 보낼 선물[贈品] 목록

도한渡韓과 관련하여 저 지역의 관리들에게 보낼 선물[贈物]

동래부사에게

용지[料紙] · 베틀상자	나시지梨子地 마츠시마松島の 그림 다카마키에高蔭絵 ⁵⁷	1조組
다이와긴大和錦	금박을 입힌 가라쿠사唐草 ⁵⁸ 문양	두루마리卷 1개
대폭大幅 흰색 치리멘縮緬 ⁵⁹		1필匹
홍건紅絹		1필
중폭中幅 붉은 치리멘		1필
『대일본사大日本史』 ⁶⁰		1본本
『황조사략皇朝史略』		1본
『여불급재문초如不及齋文鈔』 ⁶¹		1본
『고산조지高山操志』		1본
『사십칠사전四十七士傳』		1본
일본연해도日本沿海圖		1장
송문천상탁본宋文天祥石摺 ⁶²		4종
미토 나리아키水戸齋昭 ⁶³ 공공 서화		2종
후지타 도고藤田東湖 서화		3종
상당표相當表 ⁶⁴		1장

이상.

⁵⁷ 마키에(蔭絵): 금이나 은가루로 칠기 표면에 무늬를 놓는 일본 특유의 공예.

⁵⁸ 가라쿠사(唐草): 잎이나 줄기, 넝쿨 식물이 서로 얹힌 것을 표현한 식물 문양.

⁵⁹ 치리멘(縮緬): 바탕이 오글쭉글한 비단.

⁶⁰ 『대일본사(大日本史)』: 미토번(水戸藩) 제2대 번주 도쿠가와 미츠쿠니(徳川光圀)가 전국의 역사가를 불러 편찬한 방대한 분량의 일본 역사책으로, 1906년에 이르러 총 397권으로 완간되었다.

⁶¹ 여불급재(如不及齋)는 막부 말기 오노(小野)와 쓰치우라(土浦) 번사(藩士) 후지모리 고안(藤森弘庵, 1799~1862)의 호(號)다.

부산첨사에게

단도短刀		1자루
용지[料紙] · 벼루상자	검은 바탕 안에 나시지梨子地 마츠니타치바나松二橘의 마키에蒔絵	1조組
과자菓子 단스筆筭 ⁶⁵	송松 · 죽竹 · 매梅의 마키에蒔絵	1개
다이와긴大和錦	금박을 입힌 가라쿠사唐草 ⁶⁶ 문양	두루마리 1개
홍견紅絹		1필
중폭中幅 흰색 치리멘		1필
『황조사략皇朝史略』		1본
『일본정기日本政記』		1본
『일본외사日本外史』 ⁶⁷		1본
『일본외사보日本外史補』		1본
『사십칠사전四十七士傳』		1본
『여불급재문초如不及齋文鈔』		1본
『고산조지高山操志』		1본
상당표相當表		1장
송문천상탁본宋文天祥石摺		2종
후지타 도고 탁본藤田東湖石摺		3종

이상.

⁶² 이시즈리(石摺)는 일본어로 탁본을 뜻한다. 문천상(文天祥, 1236~1283)은 중국 남송(南宋)의 유명한 충신(忠臣)이다.

⁶³ 미토 나리아키(水戸齋昭): 미토번 제9대 번주이자 에도막부의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의 생부 도쿠가와 나리아키(徳川齋昭, 1800~1860)를 가리킨다.

⁶⁴ 상당표(相當表): 의미가 불확실하나 메이지정부 수립 이후 관직의 변천을 표시한 관위상당표(官位相當表)일 것으로 추측된다.

⁶⁵ 단스(筆筭): 옷장이나 장롱 등 옷이나 장신구 등을 수납하는 목제 가구.

⁶⁶ 가라쿠사(唐草): 잎이나 줄기, 넝쿨 식물이 서로 얽힌 것을 표현한 식물 문양.

⁶⁷ 『일본외사(日本外史)』: 에도시대의 역사가 라이 산요(賴山陽, 1780~1832)가 한문으로 쓴 사서이다. 무신 가문의 흥망을 중심으로 가계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1826년에 완성되었으며, 그의 사후 출판되어 막부 말 유신지사를 비롯한 일본인들에게 널리 읽혔다.

훈도에게

용지[料紙]・벼루상자	검은 바탕 안에 나시지梨子地 마즈니타치바나松=橘의 다카마키에高蒔絵	1조組
다이와긴大和錦	노란 바탕에 자주색 우콘鬱金の ⁶⁸ 칠보七寶	두루마리 1개
중폭中幅 자주색 치리멘		1필
『고도칸술의弘道館述義』		1본
상당표相當表		1장
미토 나리아키水戸齊昭 공公 서書		2종
후지타 도고藤田東湖 서		5종
송문천상탁본宋文天祥石搦		2종

이상.

별차에게

사게주提重 ⁶⁹	검은 바탕에 마즈니츠루松=霍의 마키에高蒔絵	1조組
중폭中幅 붉은색 치리멘		1필
가이키海氣 ⁷⁰		2필
『고도칸술의弘道館述義』		1본
상당표相當表		1장
미토 나리아키水戸齊昭 공公 서書		2종
도고藤田東湖 서		4종
라이 오가이賴鴨崖 서		1장

이상.

⁶⁸ 우콘(鬱金): 강항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노란색의 물감.

⁶⁹ 사게주(提重): 들고 다니도록 된 찬합.

⁷⁰ 가이키(海氣): 견직물의 일종.

위는 의무대승이 저 지역 관원들에게 증진贈進하는 품목임.

훈도에게

긴멧키銀減金 ⁷¹ 태도太刀	1자루
홍견紅絹	1필
주바코重箱 ⁷²	검은 바탕에 연자화燕子花 ⁷³ 금금 마키에高蒔絵

그 밖의 잡품雜品은 보류함.

이상.

별차에게

합촌봉초도合寸捧鞘刀	1자루
홍견紅絹	1필
다바코본煙草盆 ⁷⁴	1개

그 밖의 잡품雜品은 보류함.

이상.

동래 및 부산에 소속된 소리小吏와 소통사小通事 등에게 시의時宜에 따라 선물할 품목의 대략적 견적.

⁷¹ 긴멧키(銀減金): 다른 금속 표면에 은박을 붙인 것.

⁷² 주바코(重箱): 찬함.

⁷³ 연자화(燕子花): 일본어로 제비꽃(가키츠바타)을 가리킨다.

⁷⁴ 다바코본(煙草盆): 담배를 태우는 데 필요한 물건을 모아두는 도구.

가이키海氣		10필
홍견紅絹		5필
중폭中幅 색色 치리멘		
잡품雜品	후바코文箱 ⁷⁵ · 스즈리바코硯箱 ⁷⁶ · 다바코本煙草盆 그 밖의 작은 물품류	여러 가지
언월도偃月刀		2자루
창鎗		6자루

이상.

위는 출사出使 관원이 증진贈進하는 품목임.

12 변관에게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의 도한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품의稟議하는 글

변관辨官 귀중

외무성

이번에 요시오카 고키 외 2명이 조선국에 파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의 예상서[見込書] 및 외무경과 외무대승의 서계안書契案 등을 별지로 첨부했으니 적절히 취사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분부하신 대로 편의便宜한 각선脚船으로 출발할 것이니, 공금 건을 조속히 대장성大藏省에 하명下命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급히 분부를 여쭙니다.

경오년(1870) 9월 23일

⁷⁵ 후바코(文箱): 편지나 문서 등을 담아두는 상자.

⁷⁶ 스즈리바코(硯箱): 벼루집.

조선행 수속서手續書

이번에 양국정부 등대等對의 목적으로 도한渡韓하는데, 저 지역[조선]에서의 응접 상황 등을 미리 금일 진술하기는 어려우나, 조정의 친교親交의 성의盛意와 만국의 형세, 고금 기운機運의 변천을 간절히 설명하고 도저到底한 우리의 선린善隣의 성의로 감동시켜서 교제를 원만히 성사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등대의 목적에 관계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아립니다.

一. 외무경이 저 나라 예조판서에게, 외무대승外務大丞이 저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서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판서는 바로 예조의 장長으로서 우리 외무경과 같음.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는 전부터 쓰시마주 번지사藩知事가 등대等對로 왕복하였으므로, 대승이 서한을 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一. 도한渡韓 후 가장 먼저 취할 수순은, 예전 쓰시마번에서 저 지역에 파견하여 화관和館에 체류하고 있는 제사諸士와 시의를 신중히 상의해서, 훈도와 면담을 갖고 순순諄諄하게 양국 순치脣齒의 후정厚情과 성의를 설유說諭해서 저들의 의단疑團을 깨끗이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적으로 하는 정부 등대교섭等對交涉의 대의大意는, 저 훈도가 타이슈번에 내의內意를 탄원하도록 조치한 뒤에 가져간 서계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단, 양국의 교제는, 도쿠가와 시대에 이즈하라번이 다시 결합시킨 뒤로 정부 관원이 저 지역에 도항하는 일이 중단됐습니다. 모든 절목節目의 개혁을 거절하는 것은 저 지역의 습벽習癖입니다. 반복해서 거절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로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니, 그럴 때마다 간곡하고 온화하게 이야기한 끝

에 마침내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의 도항渡航도, 설령 저들이 거절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성의誠意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 있고 관후寬厚한 태도로 임기응변하면서 담판하고, 이즈하라번에서 협동, 진력하면서 훈도 및 동래·부산에 서서히 면회하는 수순을 취할 작정입니다.

- 一. 이 서계를 수용시킨 뒤에 더욱 간절한 뜻을 전하며 서서히 지금의 형세 등을 설명하여 가장 먼저 판서로부터 교정交情에 감사한다는 회신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정交情이 성숙한 후, 통신通信의 흠차대사欽差大使를 저들이 먼저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보내든지 앞뒤로 반드시 내왕하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혹은 예전부터 공사무역公私貿易이라고 부르던 것을 효유曉諭해서, 다시 관민官民의 정情이 서로 어그러지지 않는 양법良法을 상의하여 미봉할 것입니다. 가령 조약을 시험 삼아 이야기해 봄에, 혹은 피차 표류민의 취급 및 호송의 절차, 혹은 피차 내지에 상호 거류 및 여행 등의 허가 방법과 토지의 이수里數 등을 편의한 대로 상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협상 시기의 변동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간 등대교제等對交際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一. 이번 도항渡航과 관련하여, 구례舊例를 답습하여 모든 일에 협력하고 알선하도록 태정관에서 이즈하라 번지사에게 다시 분부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지금 도쿄에 있는 우라세 사이스케는 조선 통변通辨에⁷⁷ 능숙한 자이니, 우리의 동행으로 포함하라는 뜻을 외무성에서 이즈하라 번저藩邸에 전달해 주실 것.

⁷⁷ 통변(通辨): 통역, 또는 도리에 밝은 사람을 뜻한다.

— 언제 공무가 끝나고 귀국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략 계산하건대 6개월을 기한으로 함.

— 해로海路로 나가사키長崎까지는 서양의 각선脚船에 탑승함. 기요崎陽에서⁷⁸ 타 이슈에 갈 때는 기후가 서북풍이 불 때라서 화선和船의 항해가 아무래도 불안하므로, 기요에서 증기선 또는 범전선帆前船⁷⁹ 등 그 편의를 고려해서 도항할 계획임. 그 전에 한지韓地에의 왕복은 물론 화선和船으로 항행할 예정임.

— 공금 3,000냥 및 선임船賃 양은洋銀 540달러를 내려주시길 바람.

단, 이번 일은 점진적으로 성의誠意를 관철할 계획이니 저 지역에 오래 체류할 수 있고, 뇌물 등을 많이 가져갈 것이므로 비용도 그에 상응하여 많이 필요함. 또 저 지역의 관리들에게 줄 선물[贈品]도 조정調整해야 하므로 이상의 금액을 내려주시길 바람.

덧붙임. 선물의 구매와 왕복 선임船賃, 여러 시야쿠쇼仕譯書⁸⁰ 등 상세한 것은 별지에 조사해서 첨부함.

— 이번 일은 지극히 손쉽고 간편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할 작정이므로, 부속 인원 등을 거느리는 것도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회계 기록을 겸하는 시쇼史生 1명을 동반하고자 함.

이상의 건들을 평결評決하시는 대로 일찍 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⁷⁸ 기요(崎陽): 나가사키의 별칭.

⁷⁹ 범전선(帆前船): 서양형 범선.

⁸⁰ 시와케(仕譯): 복식부기에서 매일의 거래, 대차관계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록, 정리하는 것.

경오년(1870) 9월 20일

요시오카 고키岡弘毅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조선 관리[韓吏]에게 보낼 선물 목록

도한渡韓과 관련하여 저 지역 관리들에게 보낼 선물

단, 저 지역은 증답贈答의 예禮가 중대하게 행해지는 풍속이지만, 가능한 한 간이하게 전망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칠기漆器	대소大小 7개
다이와긴大和錦	두루마리 2개
세고精好 ⁸¹	두루마리 1개
치리멘縮緬	3필
홍견紅絹	7필
이즈키이치五日市	5필
가이키海氣	12필
태도太刀	1자루
붕초도捧鞘刀	1자루
언월도偃月刀	5자루
창鎗	5자루
서적	수종數種
잡품	여러 가지

약 850냥

⁸¹ 세고(精好): 명주실로 조밀하게 짠 비단.

이상은 동래부사, 부산첨사, 혼도와 별차, 기타 두 사또에게 부속된 소관리小官吏 및 소통사 등에게 돌릴 품목입니다.

- 一. 공용 붓, 종이, 묵, 원근측량기계遠近測量器械, 기타 나가모치長持⁸² 등 잡구雜具 이것저것 매입하는 비용
- 약 150냥
- 합계 금 1,000냥

이상과 같음.

공금 내역서

준비금 내역서

- 一. 금액 3,000냥
- 一. 양은洋銀 540원元
- 내역
- 一. 양은洋銀 540원

상등上等 선임船賃 4명분	요코하마에서 나가사키 왕복 1인당 50원씩 400원
하등下等 위와 같음 8명분	1인당 15원씩 240원

⁸² 나가모치(長持): 의류나 물품을 수납하는 네모난 상자.

-. 300냥	기요崎陽에서 타이슈까지 증기선 또는 범선帆前船 등을 빌리는 임금賃金の 대략적인 예상
-. 200냥	타이슈에서 조선까지 왕복하는 데 화선和船을 전세 내는 ⁸³ 임금賃金の 대략적인 예상
-. 150냥	귀로歸路할 때 타이슈에서 나가사키까지 화선和船을 빌리는 대략적인 예상
-. 648냥	상하上下 12명, 일수日數 180일본 하타고료旅籠料 ⁸⁴
-. 약 1,000냥	저 곳 관리들에게 선물할 물품, 기타 공용 붓, 종이, 먹과 모든 잡품雜品을 구입하는 비용
나머지	이는 공용 나가모치長持와 기타 공용 화물을 적재하는 증기선임선蒸氣船賃의 왕복 비용임. 그리고 저 지역에서의
-. 702냥	여러 선물은 내지內地에서처럼 조달하기 어렵고, 또 공무의 완급緩急에 따라 중간에 1, 2명이 귀경歸京하고 왕래할 일도 있을지 모름. 이를 포함한 기타 모든 준비금임.

총계 금금 3,000냥

양은洋銀 540원

13 조선 관리에게 보낼 선물의 대가代價 견적서

도한渡韓과 관련하여 저 지역 관리들에게 보낼 선물

단, 저 지역은 증답贈答의 예禮가 중대하게 행해지는 풍속이지만, 가능한 한 간이하게 견적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동래부사에게

칠기漆器 50냥/ 다이와긴大和錦 두루마리 1개 35냥/ 다이치쿠멘大縮緬 1필 30냥/

⁸³ 원문의 야토이키리(雇切)는 일정 기간 동안 완전히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⁸⁴ 하타고(旅籠): 여행 중의 숙박비와 식비.

홍건紅絹 1필 14냥/ 검은 이즈키이치五日市 1필 18냥

합계 147냥

부산첨사에게

칠기 30냥/ 다이와긴 두루마리 1개 35냥/ 홍건紅絹 1필 14냥/

이즈키이치五日市 1필 18냥

합계 97냥

훈도에게

칠기 30냥/ 세고精好 두루마리 1개 30냥/ 홍건紅絹 1필 14냥

이 훈도는 양국 간에서 모든 일을 주선하는 사람이니, 그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 별도로 보낼 품목이 다음과 같음.

긴멧키銀減金 태도太刀 1자루 17냥

이는 마련하는 데 17냥 정도로서 민간에서 구매할 예정임.

중폭中幅 치쿠멘縮緬 1필 30냥/ 다바코본煙草盆 1개 5냥/

기타 잡품雜品 10냥

합계 136냥

별차에게

칠기 20냥/ 이즈키이치五日市 1필 18냥/ 가이키海氣 2필 16냥

이 별차는 훈도와 마찬가지로의 일을 함.

합촌봉초도슴寸捧鞘刀 1자루 7냥/ 홍건紅絹 1필 14냥/

다바코본煙草盆 1개 3냥/ 기타 잡품雜品 5냥

합계 83냥

- 一. 동래·부산 부속 소관리小官吏 및 소통사小通事에게 보낼 물품의 대략
 가이키海氣 10필 80냥/ 홍건紅絹 3필 42냥/ 이즈키이치五日市 2필 36냥/
 잡품雜品 30냥/ 언월도偃月刀 3자루 5냥/ 창鎗 6자루 5냥
 합계 198냥
 총 661냥

그 밖의 서적

- 『일본사日本史』 1부 30냥/ 『일본외사日本外史』 2부/ 『황조사략皇朝史略』 1부/
 『화한연표和漢年表』 3부/ 『상당표相當表』 소형 20책/ 「일본전도日本全圖」 3장/
 성판(省板) 「지나근방도支那近傍圖」 10장/ 『국사략國史略』 박용첩(薄用摺) 2부/
 「여지전도輿地全圖」 5장/ 『도고시초東湖詩抄』 2부
 이 밖의 서목 여러 가지, 대략 200냥

- 이 밖에 공용 나가모치長持, 여러 잡구雜具 등을 구매하는 비용 등
 총계
 합계 1,000냥

14 공금 내역서

공금 내역서

내려주시길 바라는 금액

- 一. 금찰金札 3,000냥

위와 같음

- 一. 양은洋銀 540원

내역

一. 양은洋銀 540원

상객上客 4명 요코하마에서 나가사키까지 왕복하는 증기선蒸氣船 비용 1인 당 50
불씩 400원

하등下等 8명 위와 같음. 1인당 15원씩 240원

一. 300냥 기요崎陽에서 타이슈까지 승기선 또는 범전선 등을 빌리는 비용의 대략적 예상

一. 200냥 타이슈에서 조선까지 왕복하는 데 화선和船을 전세 내는 예상 비용

一. 150냥 귀로歸路할 때 타이슈에서 나가사키까지 화선을 전세 내는 예상 비용

一. 648냥 상하上下 12명분의 하타고료旅籠料 일수日數 180일

一. 약 1,000냥 저 지역 관리에게 보낼 물품과 기타 공용 종이, 잡품의 구입비

一. 702냥

이는 공용 나가모치長持와 기타 공용 화물을 적재하는
증기선蒸氣船賃의 왕복 비용임. 그리고 저 지역에서의
여러 선물은 내지內地에서처럼 조달하기 어렵고, 또
공무의 완급緩急에 따라 중간에 1, 2명이 귀경歸京하고
왕래할 일도 있을지 모름. 이를 포함한 기타 모든
준비금임.

총계 금 3,000냥

양은洋銀 540원

15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도한渡韓 배명서拜命書

요시오카 고키

공무[御用]로 조선국에 파견을 명함.

경오년(1870) 9월

태정관太政官

16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위와 같음.

모리야마 시게루

요시오카 고키의 조선국 파견과 관련하여 동행을 명함.

경오년(1870) 9월

변관辨官

17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위와 같음.

히로쓰 히로노부

요시오카 고키의 조선국 파견과 관련하여 동행을 명함.

경오년(1870) 9월

변관辨官

18 고바야시^{小林} 사생^{史生}, 위와 같음.

고바야시^{小林} 사생^{史生}

요시오카 고키의 조선국 파견과 관련하여 동행을 명함.

경오년(1870) 9월 27일

외무성

이는 예문^{例文}으로 변관^{辨官}, 대장성^{大藏省}에 전달함.

19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고바야시^{小林} 사생^{史生}도 관명^{官名}을 버리고
출사^{出仕}로 명할 것을 청하는 글

직무진퇴의칙^{職務進退議則}

변리^{辦理}

고쥬^{口上}⁸⁵

이번에 도한^{渡韓}하는 각자는 관직명을 버리고 출사^{出仕}의 명목으로 할 것을 명받았으므로, 따라서 어제 동행의 명을 받은 고바야시^{小林} 사생^{史生}도 관명^{官名}을 버리고 다시 출사^{出仕}로 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아웁니다.

9월 28일

⁸⁵ 고쥬(口上): 구두로 하는 말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20 가나가와^{神奈川}, 나가사키^{長崎},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등 4개 현에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의 도한에 따라 공신^{公信}의 전달을 명하는 글**

경오년(1870) 9월 30일 도착.

요코하마^{横浜}, 나가사키^{長崎},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이번에 당성^{當省}(외무성)의 요시오카 외무권소승^{外務權少丞} 외 2명이 조선국에
파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도쿄에 왕복하는 서류가 들어올 때는 지체
없이 전달해주길 바랍니다. 이를 아울러 상의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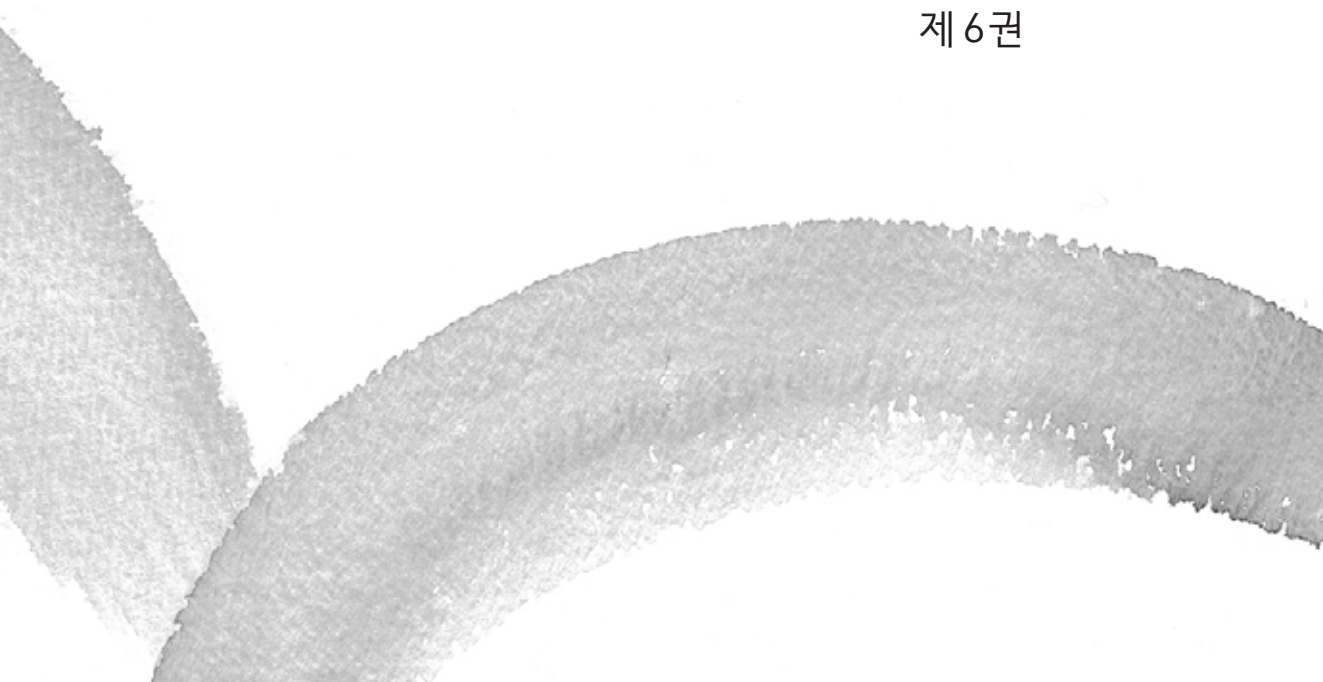




국역

조선
사무서
(2)

제 6권



6

조선사무서 제6권

메이지明治 3년(1870) 10월부터 12월까지

01 나가사키현長崎縣에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의 도한渡韓에 따른 선편船便의 주선과 그들의 공금이 부족할 경우 조달할 것을 의뢰하는 글

【출사出使하는 자가 지참할 테가미手紙¹ 안案】

나가사키현 귀중

이번에 조선행의 명을 받은 요시오카 외무권소승 외 2명에게 향해 선임船賃과 기타 여러 비용의 대략적인 견적에 따라 준비금 3,000냥과 양은洋銀 540불을 대장성에서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의 목적에 따라 체류일이 길어지거나 또는 의외의 임시비용 등이 많아져서 귀조歸朝하는 시기까지 자연히 부족해질 경우, 이 4명이 신청하는 대로 사실을 조사해서 지장이 없도록 비용을 지급

¹ 테가미(手紙): 서한 등 용건을 적은 종이.

하시길 바랍니다.² 또 그쪽 항구에서 쓰시마까지의 증기선 등의 대여와 관련하여 신청이 있으면 부디 주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겸하여 상의 드립니다.

경오년(1870) 10월

02 03 외무경이 예조판서에게 보내는 글³

일본국 외무경 사와 노부요시澤宣嘉가 조선국 예조판서 모 공某公 각하께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 우리 조정에서 소 요시아키라宗義達에게 귀국과 구교舊交를 거듭 펼 것을⁴ 의논하라고 명한 지 이제 3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회주回奏하지 않았습니다. 살펴보건대 귀국의 제현諸賢이 혹 본방本邦에서 옛 교분을 거듭 펴는 뜻을 미처 양찰하지 못한 것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거듭 진술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세 이래로 병마지권兵馬之權을 장군가[將門]에 위임하고 강역疆域의 정치 또한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운世運이 일변했으니, 우리 조정이 강기綱紀를 경장更張하여 폐해를 혁제革除하고 정령政令을 유신維新했습니다. 원래 귀국과 깊은 인의隣誼를 맺은 지 이미 삼백 여년이 되었으니, 마땅히 다시 구의舊誼를 펴서 양국의 맹약을 더욱 돈독히 다져서 영원히 변치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밤하늘의 별과 바둑판의 돌처럼 무수히 많은 해외 여러 나라들이 문화를 닦고 무武를 강구하며, 선박의 편리함과 대포의 예리함으로 원근을 가리지 않고 이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국토와 인민을 책임진 자가 어찌 심모원려深謀遠慮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² 원문의 操替(쿠리카에바라이)는 용처가 정해진 금액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을 말한다.

³ (2)와 (3) 문서는 각각 일본어와 한문으로 작성되었으나 사실상 내용은 같으므로 번역문은 1건만 실었다.

⁴ 원문의 심맹(尋盟)은 옛 맹약을 다시 돈독히 한다는 뜻이다.

귀국의 동쪽은 곧 우리의 서쪽입니다. 그 거리가 겨우 한 조각 거룻배로 건널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입술과 이가 서로 의지하는 듯 존망이 서로 관계되니, 이것이 그 인의隣誼가 더욱 돈독하고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고명한 각하께선 필시 소견이 있을 것입니다. 성신誠信의 소재를 마음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니, 부디 각하께선 옛 교분을 거듭 펴는 성의를 살피셔서 양국을 위해 잘 생각하시고 밝게 회답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처 다 적지 못하고 보냅니다.

메이지明治3년(1870) 월 일

외무경사와 노부요시

04 05 외무대승^{外務大丞}이 동래, 부산 두 사또에게 보내는 글

일본국 외무대승 마루야마 사쿠라^{丸山作樂}가 조선국 동래, 부산 두 영공^{領公} 각 하께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 우리 조정에서 소 요시아키라에게 명하여 귀국과 구호^{舊好}를 중수^{重修}할 뜻을 전달하게 했는데, 요시아키라가 아직까지도 복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외무경께서 특별히 귀국 예조판서 공께 글을 보내서 본방^{本邦}의 정권이 복고^{復古}한 정상을 상세히 알리고, 양국 심맹^{尋盟}을 상의하는 일을 요시오카 고키, 모리야마 시게루, 히로쓰 히로노부에게 맡겨서 글과 함께 귀국에 파견한 것입니다. 겸하여 양공^{兩公} 각하를 직접 뵙고 우리 나라의 성의^{誠意}의 소재를 진술하게 했으니, 부디 이 사원^{使員}들을 관대하게 접대하시고 그들이 진술하는 바를 청납^{聽納}하시며 그들이 가져가는 외무경의 서한을 예조판서 공께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공^{兩公} 각하께서도 그 사이에서 주선해서, 양국의 심맹^{尋盟}이 만세토록 변치 않게 하신다면 매우 큰 다행이겠습니다.

메이지明治 3년(1870) 월 일

외무대승 마루야마 사쿠라丸山作樂

06 이즈하라嚴原 번청藩廳에서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의 도한에 따라 훈도 등에게 간곡히 고할 것을 명하는 글

예전에 조명朝命을 받아 사개使介를⁵ 파견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권政權이 복고된 전말을 통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저 무리는 구구한 언설만 내세우며 감히 서계書契를 봉출捧出하지 않다가, 동래부에선 마침내 허락하지 않는다는 서의書意까지⁶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의 정실情實을 자세히 조정에 아뢰고 관재官裁를⁷ 청했으나, 이는 직사職事의⁸ 당연한 직분을 다한 것이다.

하지만 조정의 의론은 일이 실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여겼다. 이에 관원 요시오카 고키, 모리야마 시게루, 히로쓰 히로노부를 파견해서 동래부에서 면회하여 직접 본방本邦의 정중한 성의誠意를 알림으로써 구맹舊盟을 다시 펴고자 했으니, 이는 인의隣誼를 더욱 돈독히 하여 영원히 변치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글이 도착하는 대로 바로 이러한 사유를 훈도와 별차 등에게 간곡히 고해서 양국 교제가 순후淳厚한 데로 돌아가도록 힘쓰라.

경오년(1870) 10월 일

정소政所

이상과 같이 관사館司에게 효유함

⁵ 사개(使介): 사절.

⁶ 서의(書意): 글에 적힌 뜻.

⁷ 관재(官裁): 관의 결재.

⁸ 직사(職事): 직무와 관계된 일.

07 예조참판과 참의의 성명

무진년(戊辰年)(1868)

예조참판 강건(姜鍵)

예조참의 오덕영(吳德泳)

경오년(1870)

예조참의 유세환(兪世煥)

08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쓰시마(對馬) 도착을 보고하는 글

지난 9일 밤 나가사키에 도착함. 그로부터 증기선 대여 방법과 절차를 세웠는데, 도요라번(豊浦藩)⁹ 만슈마루(滿珠丸)라는 선박으로 답판이 이뤄졌음. 12일 저녁 4시, 탑승하여 즉시 출발했는데 서북풍이 맹렬해서 다음날 동트기 전 이키호(岐の 고노우라郷ノ浦)라는 곳에 도착함. 그런데 바람이 잦아들지 않아서 13일과 14일까지 정박한 후, 15일 새벽에 발선하여 같은 날 1시 쓰시마 이즈하라에 도착했으므로 부디 안심하시기 바람. 또한 때때로 답판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후 인편으로 아뢰겠음. 이상 무사히 도착한 전말을 이와 같이 보고함.

경오년(1870) 10월 15일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외무성 귀중

⁹ 도요라번(豊浦藩): 조슈번(長州藩)의 지번(枝藩) 중 하나.

09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로부터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 등을 수행시킬 것을 상신하는 글

쓰시마 도착 건은 며칠 전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함. 그런데 쓰시마번 체재 중에 점차 지참사^{知參事}에게 상의한 공무가 결말이 났으므로, 금일 도한^{渡韓}을 위해 출범함. 또한 우라세 사이스케 및 쓰시마번에서 난바 아사카^{難波安積}, 마지마 겐조^{間島健造}, 필생^{筆生}¹⁰ 노자키 도라이치^{野崎虎市} 등을 수행시키라는 명을 받았으므로 동행함. 이를 보고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

10월 28일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외무성 귀중

10 야나기와라^{柳原} 권대승^{權大丞}이 나가사키에서 조선에 체재 중인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한

【신미년(1871) 정월 27일 도착】

여러분 더욱 안태^{安泰}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명^{使命}을 받고 노고가 크시니 크게 경하^{敬賀}하는 바입니다. 필시 지금은 부산에서 면려^{勉勵}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키미쓰^{前光}¹¹ 청나라에 들어온 후, 공무 만사가 성공해서 텐진^{天津}에서 총리각국사무^{總理各國事務} 공친왕^{恭親王}으로부터 외무경과 외무대보에게 마

¹⁰ 핫세(筆生): 서기(書記).

¹¹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 본인을 가리킨다.

침내 우리 전권사절의 출발을 기다렸다가 조약을 맺기를 희망한다는 서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지난 17일 상하이上海를 출발해서 이제 19일 사각巳刻¹²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청국에서의 답판 대의大意를 별지 1책에 담았습니다. 자연히 그쪽에서 답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보내드리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거친 먹[麈墨] 3포包를 번번치 않지만 헌상獻上하니 한번 웃고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청국 교제 건은 이제부터 귀조歸朝해서 복명한 후, 내년에 우리 흠차전권대신이 조약 사무를 의정議定하고 총재직總裁職의 대건大件을 발하여 조약을 맺기까지의 일이니, 이제 자애自愛하고 정려精勵하시길 모쪼록 기원합니다. 외람되지만 고바야시 사생史生에게도 부디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갖추지 못하고 삼가 말씀 드립니다.

(뒷면) 10월 19일 미각未刻¹³ 나가사키에서 씀.

외무성위변견청정사外務省委辦遣清政使

야나기와라柳原 외무권대승 배拜

요시오카吉岡 외무권소승 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님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님

¹² 사각(巳刻): 오전 9~11시.

¹³ 미각(未刻): 오후 1시~3시.

11 윤10월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요시오카 권소승權少丞 님

대소승大少丞 연명

성상聖上(천황)께서 더욱 안녕하시어 능히 주련駐輦하시니¹⁴ 황공하지만 크게 기쁜 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더욱 청영淸榮하신¹⁵ 중에 봉직奉職하시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외무경과 외무대보를 포함해서 본성本省(외무성)의 속사屬司¹⁶ 모두 무사히 잘 있습니다.

- 이미 도한渡韓을 해서 모든 일의 형편이 잘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멀리서나마 생각합니다.
- 이번에 본성本省에 변무사辨務使를 두어, 사에지마鯨島 소변무사少辨務使가 영국, 프랑스, 프리시아로 이번 달 3일에 출발하였고, 이어서 모리森 소변무사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변무사의 등급 등은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국으로 간 야나기와라 권대승을 비롯한 일동은 무恙無恙하며 이번 달 24일 귀경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특히 노고가 크실 줄 압니다. 좋은 소식이 조만간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경오년(1870) 윤 10월 일

추신. 『태정관일지太政官日誌』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과 같이 물품을 보내드리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¹⁴ 주련(駐輦): 임금이 행행(幸行)할 때 잠시 가마를 멈추는 것, 또는 외지에 체류하는 일.

¹⁵ 청영(淸榮): 상대방의 무사와 안녕을 축원하는 인사말.

¹⁶ 속사(屬司): 관청에 딸린 하급관리.

태정관일지太政官日誌	37호부터 46호까지
신력新曆	1부
황서약력皇西略曆	위와 같음
해외신문海外新聞	18호부터 26호까지
탄정대전도정규칙彈正臺纏挑灯規則	1부
해군기장海軍旗章	위와 같음
관원록官員錄	위와 같음
상당표相當表	위와 같음
하표서식賀表書式	1매

이 밖에 번무사辨務使 설치 포고문의 사본

12 훈도로부터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에게 온 서한

사이스케最助 간전관幹傳官 공公에게 회납回納합니다.

귀주歸州하신 후 적조積阻한 마음이 날마다 깊어지던 차에 뜻밖에 보내주신 서한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공公의 안부가 계속 평안하셨다고 하니 구구한 제 마음이 기뻐함을 어찌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복귀하지 못해서 항상 번뇌로 나날을 보내던 중에 장습瘴濕과 체출滯出로 몸져 누운 지 5,6달 동안에 끝내 차도가 없었으니 홀로 딱할 뿐입니다. 보내주신 글의 뜻은 잘 살펴보았습니다. 대차사大差使의 공무는 공께서 쓰시마로 돌아가실 때도 이미 자세히 직접 말씀하셨고, 관수館守, 간전관幹傳官, 수간전首幹傳 공이 여러 차례 공무를 다룰 때도 이미 세세히 면약面約했습니다.¹⁷ 그 공무는 실로 이미 지난 일이니, 이제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과 수작酬酌한 말이 관중館中에 퍼졌다고 하신 말씀은 실로 이해하지 못할 말입니다. 의혹은 차치하고, 인심의 교활하고 악함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보내주신 과자 한 상자[-匣]는 감사드리며, 다식과茶食菓 한 상자[-櫛]를 함께 올리오니 마음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신 서한 가운데 면온緬穩의¹⁸ 기약이 없으니 몹시 아쉽습니다. 형편이 급하여 서울에 재류 중에 잠시 아웁니다.

경오년(1870) 윤월閏月 19일

훈도(印)

13 윤10월 29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에게 보낸 서신

【신미년(1871) 정월 27일 도착】

성상聖上(천황)께서 더욱 안녕하시어 능히 주련駐輦하시니 황공하지만 크게 기쁜 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더욱 청영淸榮하신 중에 봉직奉職하시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외무경과 외무대보를 포함해서 본성本省(외무성)의 속사屬司 모두 무사히 잘 있습니다.

- 이미 도한渡韓을 해서 모든 일의 형편이 잘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멀리서나마 생각합니다.
- 이번에 본성本省에 변무사辨務使를 두어, 사에지마鯨島 소변무사少辨務使가 영국, 프랑스, 프러시아로 이번 달 3일에 출발하였고, 이어서 모리森 소변무사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변무사의 등급 등은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¹⁷ 면약(面約): 직접 대면하여 약속함.

¹⁸ 면온(緬穩): 대면온전(對面穩展)의 준말로 만나서 회포를 풀다는 뜻이다.

一. 청국으로 간 야나기와라 권대승을 비롯한 일동은 무양無恙하며 이번 달 24일
귀정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특히 노고가 크실 줄 압니다. 좋은 소
식이 조만간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경오년(1870) 윤 10월 일

주임출사奏任出仕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오바 겐지베大庭源次兵衛

하나부사花房 권소승

다나베田邊 소승

미야모토宮本 소승

미즈노水野 소승

구스모토楠本 권대승

야나기와라柳原 권대승

마루야마丸山 대승

요시오카吉岡 권소승 님

추신. 『태정관일지太政官日誌』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과 같이 물품을 보내드
리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별지

태정관일지太政官日誌	37호부터 46호까지
신력新曆	1부
황서약력皇西略曆	위와 같음
해외신문海外新聞	18호부터 26호까지
해군기장海軍旗章	1부
탄정대전도정규칙彈正臺總挑灯規則	위와 같음
관원록官員錄	1책
상당표相當表	1부
하표서식도賀表書式圖	1매

별지

이번에 외무성에서 대·중·소大·中·少 변무사辨務使와 정正·권權·대大·소少 서기書記를 둬.

대변무사大辨務使

종3위從三位 상당

중변무사中辨務使

정4위正四位 상당

소변무사少辨務使

종4위 상당

대기大記

종5위 상당

권대기權大記

정6위 상당

소기少記

정7위 상당

권소기權少記

종7위 상당

경오년(1870) 윤10월

태정관

14 11월 6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서 온 서신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때이지만 외무경과 외무대보 두 공公을 비롯해 제현諸賢들은 더욱 여정勵精하시리니 삼가 공경하는 마음이 큼니다. 소관小官 등은 무사히 광음光陰을¹⁹ 보내고 있으니 부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양월陽月²⁰ 27일에 이즈하라에서 발선發船한다는 계획은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풍세風勢가 순조롭지 않아서 29일에 출항해서 드디어 윤월閏月 2일에 와니우라鰐浦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도한渡韓할 작정으로 닻을 내렸는데, 연일 맹렬한 서북풍이 불어와서 부질없이 21일 간을 그 포구의 모사茅舍에서²¹ 우거寓居했습니다. 풍세風勢가 또 화선和船의 항해라고는 해도, 가까운 해로海路를 두고 이처럼 체류하게 되었으니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23일에 이르러 점차 순풍이 불어서 돛을 올리고 곧장 바다로 출항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바람이 그쳤다가 밤이 되자 다시 서북풍으로 변했습

¹⁹ 광음(光陰): 세월, 시간.

²⁰ 양월(陽月): 음력 10월의 별칭.

²¹ 모사(茅舍): 락풀로 엮은 집.

니다. 그리하여 부산포에는 입항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풍파에 따라 육지 사이로 들어가다가 울산부蔚山部(원문) 내의 당포唐浦라는 포구에 표착漂着했습니다. 이곳은 부산에서 바닷길로 15리 정도, 육로로 11리 동북쪽에 있다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무사히 도착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25일 정박하고, 26일 새벽에 당포에서 출항할 작정으로 인근 포구에 계박繫泊해²² 둔 쓰시마의 선박【선박 이름은 준키치마루順吉丸】의 단주端舟(보트)를 포구까지 저어 오게 했는데,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암초에 걸려 이미 집채만한 파도 속으로 뒤집혀 빠질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 안이 온통 혼란스러운 중에 겨우 소관 등 4, 5명이 인선引船의 도움을 받아 준키치마루에 옮겨 뒀습니다.【그거리는 15초丁 정도임】 위기는 면했지만, 풍세가 더욱 맹렬해져서 성난 파도가 하늘에 닿을 듯했습니다. 본선本船은 이제 부서지지나 않았을지 모두가 고심하고 있었는데, 다시 준키치마루와 구니토쿠마루國德丸【인근 포구에 계박繫泊한 쓰시마 선박】의 단주가 더욱 구원에 진력했습니다. 다행히 새벽에 바람이 진정되는 틈을 타서 만조滿潮를 따라 본선이 무사히 급류를 빠져나와 바다 위에 떠있다는 보고를 받고, 일동이 크게 작약雀躍했습니다.

이 날은 한기寒氣가 맹렬해서 바닷가가 얼고 온도계가 29도에²³ 이르렀습니다. 본선은 조금도 파손된 곳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전 위기를 경계로 삼아 어쨌든 준키치마루로 화관和館에 돌아가자는 중론衆論이었으므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이 포구에 같은 배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짓달 초하루에 이르러 근래 보기 드문 밝은 해가 뜨고 풍세도 좋아져 본선本船이라면 화관和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다시 본선으로 옮겨 탄 후 곧장 돛을 올렸습니다. 그 속도는 마치 화선火船과 같았는데, 오후 3시경부터 풍력風力이 갑자기 약해져서 배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4시경부터 또 서북쪽에서 역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관和館과의 거리가 5, 6리에 지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²² 계박(繫泊): 배를 묶어 둠.

²³ 화씨인 것으로 보인다. 섭씨로는 영하 1.67도이다.

더 밀고 나가면 도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뱃사공들이 온 힘을 쏟았지만 폭풍과 역랑逆浪을 거슬러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절영도絶影島와 오륙도五六島 중간 바다에 닻을 내리고, 이날 밤은 정박한다는 각오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위력이 더욱 강해져서 한밤중이 돼서는 바람과 파도 소리가 마치 우레처럼 들렸습니다. 단지 동이 뜨기만을 기다렸지만, 풍세風勢가 더 강해져서 더 이상 불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이미 지난 위기 때 단주端舟는 파손돼서 화관和館에 급보를 보내기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날 밤도 결국 그렇게 정박했는데, 다음날 아침 날씨가 쾌청하고 바다도 조금 잔잔해졌으므로, 동쪽 바다에 계박繫泊한 쓰시마 선박의 단주端舟를 빌려 화관和館에 급보를 알렸습니다. 그 후 차츰 수순手順이 세워져서 단주端舟와 기타 선박이 이동하고, 소리小吏와 뱃사공의 수도 늘자 일동이 비로소 쾌연快然한 기색을 보이며 소주小舟에 옮겨 뒀습니다. 참으로 이즈하라를 출발한 지 거의 33일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하가 무사하고 그밖에 물건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천행天幸이었으니, 모두가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온갖 소회가 많지만 자세히 아뢰지 못합니다. 부디 깊이 양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一. 어제 5일부터 공무에 착수해서 오늘 6일 10시에 관사館司를 비롯하여 대차사大差使와 전어관傳語官 등이 집합했습니다. 첫 용건은 우선 소관小官 등이 도한渡韓한 것을 관사館司로부터 훈도 등에게 전하게 한 것이니, 근일 무언가 회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상황은 일찍부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속神速하게 성공할 가능성이 막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침체沈滯되더라도 순순諄諄하게 타이른다는 취지를 관철한다는 작정입니다. 대화 등이 시작되면 그때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 . 한지韓地의 상황도 이번 봄 이래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계속 정탐해서 아뢰겠습니다.
- . 할찌이 전권專權을 가졌다고 한 대원군도 더욱 좌천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유事由는 소상하지 않지만, 권위權威를 독점한 끝에 폭정暴政이 심해져서 빈척擯斥되었을 것이라는 소문입니다.
- . 독일 선박이 입진入津한 정황도 본성本省(외무성)에서 아시는 것 외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쇄양鎭壤(쇄국)의 정론定論은 역시 확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 . 오랫동안 근무한 관사역館司役 반 고라이조番高麗造라는 자가 최근 사소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면직免職과 근신의 명을 받아 지난달 하순에 쓰시마로 돌아간 후, 즉시 배소配所에 인도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임 관사역은 이번엔 동행한 난바 아사카에게 명했습니다.
- . 며칠 전 서찰을 보내실 때 동봉된 「지나교제수속서支那交際手續書」는 일동이 삼가 열람했습니다. 이 일이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소관小官 등도 크게 기운을 얻었습니다. 제현諸賢께서도 필시 안도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 우리나라의 현재 사정과 여러 주州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또 홋카이도北海道의 근황과 각국의 동정動靜도 알고 싶습니다. 대단히 근접한 땅이지만, 이역異域에 속해 있으니 온갖 일이 크게 단절돼 있습니다. 부디 양찰하시어 신문新聞과 일지日誌 등을 수시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 . 2관官 6성省의 변천과 본성本省 관원의 증감 및 출척黜陟 등은 어떻습니까? 새로 만든 『관원록官員錄』을 순서대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아웁니다.

경오년(1870) 11월 6일

히로쓰 히로노부 廣津弘信

모리야마 시게루 森山茂

요시오카 고키 吉岡弘毅

외무성 귀중

**15 미야모토 宮本 소승 小丞으로부터 마치다 町田 대학대승 大學大丞이 외무성 봉
직 중 반출한 서적과 관련하여 요시오카 고키 吉岡弘毅에게 보낸 조회서**

요시오카 고키 권소승 權小丞 님

미야모토 소승

마치다 町田²⁴ 대학대승 大學大丞이 본성本省(외무성)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가 소지한 서적 가운데 『고사본사경 古史本辭經』이라는 것을 성省去에 반출했는데, 그 뒤로 이 서적이 그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으므로 각각 조사했는데, 귀하께서 그 곳으로 출장가시기 전에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책을 그 곳으로 가지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이곳 자택에 남겨 두셨습니까? 그 곳으로 가져가셨다면 다음 인편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택에 있다면 수령할 사람을 보낼 것이니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한 귀댁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말씀드립니다.

경오년(1870) 11월 7일

또한 목하 모쪼록 더욱 정양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다망하여 미처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²⁴ 마치다 히사나리(町田久成)를 가리킨다. 1865년부터 2년간 영국에서 유학했으며, 이후 외무대승 등을 역임하며 박물관 사업에 주력했다. 1882년 도쿄제실박물관(東京皇室博物館, 도쿄국립박물관의 전신)의 초대 관장이 되었다.

16 나가사키현(長崎縣)으로부터 조선에 보낼 하코모노(箱物)를 쓰시마(對馬)에 전달했음을 알리는 서한

【1916호】

조선에 발송할 하코모노(箱物)는²⁵ 일단 이즈하라번에 도착했다고 알려 와서 별지의 수령서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를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경오년(1870) 11월 14일

나가사키현 (印)

외무성 귀중

17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이즈하라번(嚴原藩) 참사(參事)에게 보내는 글

기후가 한랭한 이때 더욱 청영(淸榮)하게 근무에 여념이 없으시니 삼가 경하하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곳에 체재하는 중에는 모든 일을 배려에 맡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생 등도 지난달 23일 와니우라(鰐浦)에서 출발하여 울산 내부의 당포에 표착(漂着)했습니다. 뜻밖의 위난(危難)을 만났지만, 지난 3일 밤에 화관(和館)에 도착했으니, 부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사(知事) 공(公)께서 와니우라에 위문을 위해 좋은 술을 하사하셨습니다. 이는 화관에 도착한 뒤에 난바 씨에게서 받았습시다. 실로 생각지도 못한 후대(厚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차에 따라 모쪼록 감사의 말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²⁵ 하코모노(箱物): 상자에 넣은 물품이나 선물.

이상 감사의 뜻도 전할 겸 알려드립니다. 나머지는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3명【요시오카, 모리야마, 히로쓰】

이즈하라번 참사參事 귀중

18 소 시게마사宗重正가 가역家役 면직을 청하는 글

건백서 등본

이 1통은 오늘 아침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외무경님의 저택을 찾아뵈
었음. 금일 이즈하라번에서 변관辨官에게 제출한 것으로 내람內覽을 위해 보
내드립니다. ㉞

신토 시게마사宗重正는 참으로 황공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대정유신大政維新으로 각국과의 교제를 친재親裁하시고, 조
선국은 예로부터 왕래한 나라이니 더욱 위신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신토 시게
마사에게 양국의 교통交通을 관장하도록 가역家役에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나라[조선]에 대한 공무를 다룰 때는 외국사무보外國事務輔의 자격으로 근무하
는 우악優渥²⁶ 조명朝命을 받았습니다.

지난 무진년 겨울 신정新政의 전말을 대수사大修使를 통해 고지하는 서계에서
한두 자구가 자신들의 기휘忌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여러 방면으로 이난異難

²⁶ 우악(優渥): 은혜가 넓고 두터움.

을 주장하면서 몇 달을 천연遷延하며²⁷ 황조皇朝의 성의에 불응하며 사절을 한갓 채류하게 한 상황은 외무성 관원이 직접 건문한 바입니다. 본래 한인韓人이 완우頑愚하여 만국의 교통에 어두워 교주膠柱의²⁸ 벽론僻論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도, 이는 국위國威에도 관계되니 신의 직장職掌에 있어 몹시 황송하옵니다. 또한 이번에 다시 관원의 도한渡韓을 명하신 이상, 신의 입장에서 조정의 취의趣意를 관철하기 위해 한층 더 분려奮勵하는 것은 물론 그 분수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신청宸聽에²⁹ 아뢰는 것처럼, 예로부터 번藩의 생계가 궁군窮窘하여 대체로 한토韓土에 의지해서 생양生養을 해결한 뒤로는 교제상 그릇된 관례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조종操縱의 권權이 항상 저들에게 있어서, 걸핏하면 우롱과 경모輕侮를 받고 왕왕 그 술책에 빠져 국위國威를 손상시킨 선례가 없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의 복철覆轍로³⁰ 장래의 형세를 숙고해 보건대, 관원이 다시 도한渡韓 할 때 여전히 대수사 응접 순서를 따라 반복변론反復辨論한다면, 그 효과가 없을 것임은 말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관원은 마땅히 그 단서端緒를 바꿔서 답 관해야 하니, 이번에 만약 전례前例에 따라 본번本藩이 그 사이를 주선하고 한인韓人이 구습舊習을 답습해서, 과거에 본번本藩에 가했던 간책奸策을 관원에게 사용하여 다시 금일의 공간公幹을 방해해서 더 이상 황조皇朝의 실제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신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황공한 정도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강기綱紀를 한번 진작하여 각국의 교제를 외무성에서 통괄하는데, 유독 한국만 본번本藩에서 관여한다면 외교의 권權이 두 길로 나뉘는 것이니 그 체제體裁가 어떻겠습니까?

일부러 신정新政 이래로 세습의 직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본번本藩만 가역家

²⁷ 천연(遷延): 시일을 일부러 미룸. 지체함.

²⁸ 교주(膠柱): 교주고슬(膠柱鼓瑟)의 준말로, 비파나 거문고의 줄을 기러기발[柱]에다 아교로 붙여놓아서 한 가지 음 밖에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고집스러워서 변통할 줄 모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²⁹ 신청(宸聽): 제왕의 청문(聽聞).

³⁰ 복철(覆轍): 앞선 수레가 뒤집힌 바퀴자국이라는 뜻으로 잘못된 선례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뜻이다.

役으로 봉직하게 하신 것은 지금의 취지로 볼 때 스스로 불안한 것이 있으니, 부디 전후의 정실情實을 살피시어 이번에 신의 가역家役을 면허免許하는 분부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원이 다시 도한渡韓했을 때 담판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저들에게 신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해 면직된 사실을 전하면, 조정의 위엄이 한인의 의표를 찔러서, 저들이 크게 두려운 마음을 품어 피아가 담판할 때 주객강약主客強弱의 형세가 바뀔 것입니다. 게다가 저들 또한 외교의 전권全權이 오로지 위무성 한 길로 귀착된 사실을 깨달아 저절로 황국의 성의誠意를 철저하게 이해할 것이니, 내외양전內外兩全의 장책長策이라고³¹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이 면직되더라도 한어韓語를 통변通辨하는 자는 물론, 번사藩士 중에서 저들의 국정國情을 잘 아는 자를 인선하셔서 사령使令을 하시겠다면, 분부하시는 대로 그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설령 신이 그 직책에 있지 않다고 해도, 종래의 연고로 인해 앞으로 양국 교제상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관견管見대로³² 기탄없이 헌언獻言하도록 명심할 것이니, 면직은 속히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은 한국의 현안 사건이 철저히 황위皇位の 융체隆替에도 관계됨을 염려한 나머지 흉억胸臆을 열고 아뢴 것입니다. 신토 시계마사는 참으로 황공해서 머리를 조아릴 뿐입니다.

경오년(1870) 11월

이즈하라 번지사嚴原藩知士

변관辨官 귀중

³¹ 장책(長策): 좋은 계책.

³² 관견(管見): 대롱 끝으로 물건을 본다는 뜻으로 자기의 견식을 겸칭하는 말이다.

19 소 시게마사(宗重正)가 가역의 사표(辭表)를 제출했음을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알리는 글

이즈하라 지사(知事) 서한

엄동설한에도 더욱 청영(淸榮)하시며 진중(珍重)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번제(藩制)를 고치라는 분부를 받고 개혁의 실효(實效)를 속히 드러내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벽루(僻陋)한 지위에 있으니 천하의 형세에 어두워 특히 미려한 몸이 고려(苦慮)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선 가역(家役)의 건은, 며칠 전 알려드린 것처럼 일신(一新)을 시작함에 체재(體裁)상 마땅하지 않고, 또 그러한 뜻을 발명(發明)하는 일단(一端)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최근 저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상표(上表)했습니다.³³

하지만 앞으로도 배려하는 것은 예전 그대로 하겠다고 아뢰었으며, 그 쪽의 역인(役人)들에게도 귀하의 지휘에 따라 모쪼록 진력할 것을 지시해 두었으니 부디 양찰(양察)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말씀은 화관(和館)으로 찾아뵙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삼가 말씀드립니다.

11월 19일

소 시게마사(宗重正)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님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님

³³ 상표(上表): 임금에게 글을 올림.

이즈하라 참사 서한

한 통의 서한으로 아됩니다. 요즘 용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출하기 전까지의 상황은 역원役員들이 전해왔습니다. 편벽되고 고루한 국속國俗이 실로 염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전력旋力으로 감화感化하여 공무를 이루시기를 오직 바랄 뿐입니다.

대수사大修使가 건너온 후 여러 가지 경과를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심후深厚한 칙명勅命에 부응하지 못해 끝내 여러분을 수고롭게 했습니다. 새로 알려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만국의 교제를 외무성에서 취급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유독 조선만 소 씨의 가역家役に 맡겨두는 것은, 그 기원이 사교私交에서 시작돼서 다른 것과 비교하기 어려움은 잘 아시는 바이지만, 체제體裁를 세우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신一新하신 때를 맞이하여 세습 역직役職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외교의 권한[權]이 오직 외무성으로 귀속된 사실을 저 나라에 분명히 밝힌다면, 여러분과의 응접應接을 거절할 논리도 없을 것입니다. 이를 겸하여 지사께서 마음에 두신 정실情實로 건백建白하여 가역家役을 사직하기로 생각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말씀하셨으나, 서한으로는 크고 작은 일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어떠실지 생각되어 또한 히구치 데츠시로樋口鐵四郎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전해왔으니, 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서 가역을 사직하셨지만, 배려는 계속하시겠다고 진언하셨습니다. 화관和館에 있는 역원役員들에게는 귀하의 지시를 받아 공무에 전력하도록 주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저 나라의 풍속을 깊이 생각하셨겠지만, 항상 애매몽롱曖昧朦朧한 술책으로 일을 지연시켜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 구래舊來의 간책奸策임

을 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통변通辨하는 자에게는, 시기時機에 맞게 적당히 지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가 관사역官司役으로 건너갑니다. 공무의 순조로운 성사에 진력하도록 지사께서도 단단히 지시하셨으니, 미숙한 인물이긴 하나 생각을 숨기지 마시고 가르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황궁하오나 삼가 말씀드립니다.

11월 21일

다카세高瀬 권대참사權大參事

후루카와古川 권대참사

시마오島雄 대참사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님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님

21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 조선으로 보낼 공신公信을 쓰시마對馬에게 전달했음을 알리는 서한

조선국 출사出仕에게 보낼 기름종이로 포장한 문서 1통이 어제 25일 도착했으므로, 당일로 이즈하라번에 전달하고 별지의 수령서를 받았으므로 이를 올립니다. 이와 같이 답변을 겸하여 알려드립니다. 이상.

경오년(1870) 11월 26일

나가사키현

외무성 귀중

각覺

一. 기름종이로 포장한 문서 1통

단, 외무성에서 요시오카 고키 님 외 2명에게 보내는 것.

이를 확실하게 수령하였음. 이상.

이즈하라번

경오년(1870) 11월 25일

시바야마 헤이자부로 芝山平三郎

⑨

22 이즈하라번 嚴原藩에서 초량관의 내력을 변관 辨官에게 상신한 글

<조선 관소館所와 관련하여 민부성民部省의 명령에 따라 제출한 서면의 등본>

예전에 민부성民部省에서 내린 구두 지시에 따라 조선국 관소館所의 지도 및 관소의 유래 개략서概略書 등을 제출합니다. 물론 옛 지도라서 소루疏漏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부디 아뢰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오년(1870) 11월 27일

이즈하라번

변관 귀중

조선국 관소館所의³⁴ 기원은 가키즈嘉吉³⁵ 연간에 저 나라에서 이를 설치하고 본주本州(쓰시마)와 교제한 데서 시작됩니다. 경상도 웅천熊川의 제포薺浦, 동래의 부산포, 울산의 염포鹽浦를 삼포三浦라고 하고, 쓰시마인의 재류 및 본주의 세전선歲遣船의 정박처로 정했습니다. 여러 주州의 사선使船도 풍파에 따라 삼포에 정박했습니다. 삼포 가운데 제포에는 특별히 관소館所를 설치해서 사절들을 접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쇼永正³⁶ 7년(1510) 본주와 저 나라 사이에 난리를 빚은 뒤로 강화講和를 단절했으며, 그에 따라 삼포를 폐쇄하고 제포의 관소를 없앴습니다. 그러나 다이에大永³⁷ 연간 즈음에 강화가 다시 이뤄지면서 또한 관소를 제포에 설치했습니다. 덴분天文³⁸ 13년(1544) 사정이 있어 제포의 관소를 부산으로 옮기고, 임진난壬辰亂 후 강화가 다시 성립됨에 게이초慶長³⁹ 12년(1607) 한사韓使가 내빙來聘하고 14년(1609) 부산을 관소 부지[館地]로 정했습니다. 겐나元和⁴⁰ 4년(1618) 부산관釜山館의 조영造營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부산포는 배가 정박하는 데 불편했으므로 만지萬治⁴¹ 원년(1658) 윤10월 사절을 저 나라에 보내서 관소의 이전을 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관소 이전의 문제로 사절이 수차례 왕복하였는데, 마침내 간분寬文⁴² 12년(1672)에 이르러 비로소 관소를 초량草梁으로 옮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엔포延宝⁴³ 6년(1678) 초량관草梁館의 조

³⁴ 관소(館所): 왜관(倭館)을 가리킨다.

³⁵ 가키즈(嘉吉): 일본의 연호(1441~1444)

³⁶ 예쇼(永正): 일본의 연호(1504~1521)

³⁷ 다이에(大永): 일본의 연호(1521~1528)

³⁸ 덴분(天文): 일본의 연호(1532~1555)

³⁹ 게이초(慶長): 일본의 연호(1596~1615)

⁴⁰ 겐나(元和): 일본의 연호(1615~1624)

⁴¹ 만지(萬治): 일본의 연호(1658~1661)

⁴² 간분(寬文): 일본의 연호(1661~1673)

⁴³ 엔포(延宝): 일본의 연호(1673~1681)

영이 완성되면서 이사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 이제 193년이 됩니다.

이 글은 경오년 11월에 조선에 출장 나간 관원에게 보낸 부분임.

구두 기록[口上書取]

23 아오야마 시게지로 青山繁次郎의 조선 심교 尋交의 건에 관한 의견서

조정 朝政의 일신一新(메이지유신)을 통지하는 건과 관련하여, 저 나라가 아직 그 요령要領을 깨닫지 못해 한갓 세월만 보내고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조정의 신의 信儀(원문)를 관철하는 방도는 어디까지나 온유 溫柔의 취지를 지켜 격렬 激烈한 방법을 쓰지 않고 관대한 조처에 있으니, 교섭의 상황과 기회에 따라 저들이 기회 忌諱하는 자구를 삭제해서 서계를 전달하려는 의향이셨습니다. 따라서 그 순서는 지금까지의 절차도 있으니, 모쪼록 속히 성사되는 방도에 관해 짐작되는 바를 조금도 숨김없이 아뢰고자 합니다.

본디 본번 本藩(쓰시마번) 역직 役職의 대사건 大事件은, 지사를 시작으로 동서 東西 정정·권權 대참사 및 공무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경위와 같이 마음을 써서 논담 論談을 다했지만 오늘날까지 사절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음은 말할 것도 없으니, 일개 번藩의 미력 微力과 이제와서 저 나라의 정태 情態, 편벽되고 고루한 정실 情實을 새로 변백 辨白한다면 혐의 嫌疑를 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단지 지휘를 받들고 전망하시는 바에 따라 진력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우매한 신분으로 특히 외진 땅에 있어서 세태를 체인 體認하지 못해 이제 와 자기 혼자 이것저것 아되는 것은 다죄 多罪가 크니 황공하기 짝이 없지만, 눈앞에 바로 장애가 생겨서 길을 잃을 失途 상황으로 예측되는데도 혐의 嫌疑를 꺼려서

일신을 돌보고 눈치챈 일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도리어 불충不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짐작되는 대로 구두로 말씀드린 것을 다시 지면에 옮겨서 내람內覽을 위해 봉입奉入하는 것입니다. 외람되오나 이 마음을 양찰하시고, 불경不敬한 부분은 너그러운 용서해주시길 바랍니다.

곰곰이 살피건대, 대한對韓 통교通交가 전후로 400년에 이릅니다. 원래부터 교제의 각 조목과 절목節目의 건약堅約은 모든 것을 옛 법에 따르고 전례를 어기지 않는 데 오로지 힘써서 이웃 나라 간의 우호를 지속하였으니, 신주神州(일본)의 문명이 크게 열려 정체政體를 일신하고 큰 활안活眼으로⁴⁴ 해외 여러 나라에 대해 [그 외교를] 직접 관장하는 의미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관계로 헤아려보면, 이번에 갑자기 출장을 나가서 외교를 직접 관장함을 발령發令할 경우 현재의 체세體勢에 우원迂遠하다며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혹은 병을 이유로 시일을 지연시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반복된 경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선 그 인순因循을 견디기 어려워 여러 차례 절박하게 통지했지만, 다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도 연회 하는 장소로 가거나, 또는 동래부로 쳐들어가야 하는 시기時機에 임박하면 홀연히 예상치 못한 결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분노를 이기지 못해 과감한 방책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히 그런 결말이 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조정의 의론이 용단勇斷의 결정을 내려서 무위武威를 발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의 성의盛意는, 인교隣交를 더욱 두터이 하여 입술과 이가 만세가 지나도록 서로 보호해야 한다는 세상에 드문 주의主意입니다. 지엽적인 사안에 구애되어 구래의 인호隣好를⁴⁵ 무너뜨린다면 간과干戈를 발동해서 양국의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게다가 불평하는 사이에 근경近境에 적국을 두는 것과 마

⁴⁴ 활안(活眼): 사물의 도리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건식.

⁴⁵ 인호(隣好): 이웃 국가 간의 우호.

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조정 성의誠意的 본지本旨를 저버린다면 감개憾慨를⁴⁶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디 교제의 공법公法에⁴⁷ 기초한 입론立論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신교信交에 저들이 불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리가 있고 저들에게 잘못이라면 참으로 잘못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들도 인호隣好의 본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자구字句에 고충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천민天民 중에 먼저 깨달은 백성[先覺]과 늦게 깨닫는 백성[後覺]의 관계를, 나이 많은 형과 나이 어린 동생의 관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린 동생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무리한 말을 한다고 해서 형제의 정분으로 하루아침에 그를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나이 많은 형은 몇 번이라도 경계하고 타일러서, 세상의 도리와 사체事體를 분변하도록 마땅히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도 10년 전 서양과 교제를 시작했을 때, 지금 피발좌임被髮左衽한 사람들은⁴⁸ 모두가 대대로 양이가攘夷家라고 불렀던 것입니다.⁴⁹ 그렇다면 저들이 선왕의 구전舊典과 선규先規를 계속 고수하면서 예외적인 일에는 비록 응하지 않더라도, 좁은 구멍 안에서 혼자 잘난 척하는 것을 죄가 있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로서는 면목面目과 관계되는 일을 잠시 감내하면서 성의誠意的를 다한다면, 머지않아 풀이 바람에 저절로 눕는 것 같은 교화教化에 따라 진력의 효험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들이 본디 인호隣好에 대해 이난異難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며, 기휘忌諱하는 자구 때문에 공무가 지체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의 논의가 관대함에 착안하시어 입술과 이, 형과 아우와 같은 인의隣誼로 친후親厚한 데로 나아가신다면, 대수사의 서계 가운데 잠시 저들이 기휘하는 자구를 변통하시고, 사실을 철저히

⁴⁶ 감개(憾慨): 한스러움과 분노.

⁴⁷ 교제의 공법(公法): 국가 간 외교에 관한 국제법을 뜻한다.

⁴⁸ 피발좌임(被髮左衽): 머리를 풀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민다는 뜻으로, 오랑캐의 풍속을 상징한다. 여기서는 서양 복식을 의미함.

⁴⁹ 현재 단발하고 서양복을 입는 등 서양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10여년 전에는 서양문화를 배척했던 양이가 었다는 의미.

게 알리는 것을 실용實用으로 내세우십시오. 그리하여 자구의 논의는 잠시 놓아두고 일신一新을 통지하며, 또 앞으로 선린을 맺는 단서를 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순을 취한 다음에 양국 교제에 관한 긴요한 안건들의 조목과 절목 등을 관원들이 간곡하고 순순하게 강정講定하는 순서가 된다면, 참으로 온당한 바로서 조리가 세워져 저들이 굳이 거절할 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공함을 무릅쓰고 짐작되는 바를 은밀히 아뢰었사오니, 모쪼록 취사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오야마 시게지로 青山繁次郎

24 아오야마 시게지로 青山繁次郎의 의견에 대한 난바 아사카 難波安積의 의견서

아오야마 青山생의 의견에 대해 관견管見을 아래에 제요提要⁵⁰함

사절의 접대 여부는 통신通信 상의 대강령大綱領이 된다. 국서의 본뜻을 해치지 않고 자구를 바꾸는 것은 교린의 소절목小節目이 되는 일이다. 통교의 증거를 변통하는 것과 서계書契 중 사소한 문자를 개찬改撰하는 것의 경중이 어떠한가.

난바 아사카 難波安積 삼가 적음

⁵⁰ 요점만을 추려 제시함.

25 아오야마 시게지로 青山繁次郎의 의견에 대한 히로쓰 히로노부 廣津弘信의 의견서

눈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 길을 잃은 경우를 미루어 생각하여 운운, 이번 에 갑자기 나타나서 응접할 것을 발령發令할 때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원迂遠⁵¹한 고정苦情을 애기하여 운운, 결국 연향宴饗⁵²에 무리하게 참석하든지 또는 동래부에 밀어닥치는 등의 시기에 임하면 갑자기 불측不測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운운, 반드시 조정의 논의는 용단勇斷으로 나와 무위武威를 빛내시는 운운, 구래舊來의 인호隣好가 무너지고 전쟁을 일으켜 양국의 인민이 도탄의 괴로움에 빠지고, 가까운 곳에 원수를 두어 성의誠意에 어긋나는 것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는 운운.

위의 몇 건의 논의는 선견지명先見之明으로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단정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 정도의 논의를, 혐의를 더하는 까닭이 된다고 지나치게 상상하면서, 지사知事를 비롯해 참사參事들⁵³에게 반복하여 논설論說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 도쿄東京의 귀족 번저藩邸로부터 하달되었음에도, 관원의 도항 전에 대수사大修使를 철수해야 한다든가, 또 지사·참사들도(대수사를) 철수시킨다면 곧바로 이전 서계의 봉납 절차에 문제가 생기고, 조정에서 이번에 성의를 통하게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관小官들은 도항한 다음 대수사의 상황을 직접 듣고 시기에 따라 진퇴하든가, 지금 도항 전에 철수시키고 이어서 관원이 도항하면(우리가) 먼저 하나의 소동과 변혁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한국의 정세에 오히려 온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 주장에 따라 대수사 진퇴는 관원이 도항한 후에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대의大意가 얼음과 솜처럼 서로 달라 대수사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전단戰端을 여는 것

⁵¹ 방법, 태도, 생활 따위가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을 말함.

⁵² 사절을 대접하는 잔치.

⁵³ 1869년 판적봉환(版籍奉還) 후의 관제 개정으로 지사(지부사知府事·지번사知藩事·지현사知縣事) 아래에 정(正)·권(權)의 대참사(大參事)를 두기로 정해졌다.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 이후 부현(府縣)에 참사 관직이 설치됨에 따라 대참사는 폐지되었다.

을 결정해야 한다고까지 단호한 의론이 있으리라고는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정말로 한인韓人이 우리의 교정交情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자구字句 때문에 의단疑團⁵⁴을 품고 있다는 취지는, 작년 이래 누차 이미 이것을 들었는데 지금 또 이 글 중에서 수다스럽게 변론하고 있다. 그런데 대수사의 손으로는 갑자기 되고, 관원의 손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은, 저들이 본조本朝의 교정交情을 거절하고 쓰시마對州 일변一藩의 사교私交가 아니면 결코 안 된다는 확답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물론 선례·구전舊典이라는 것을 주장함은 종래의 법이라고는 하지만, 원래 일은 한 번은 그 시작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후에 예격이라는 것이 생긴다. 소 씨의 구호舊好도 처음에는 반드시 예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웅당 다시 둘 사이의 정실情實이 서로 화목함에 따라 서로 약속하여 예전例典이 생겨 왔던 것이다. 대수사가 일신一新을 알린 후에도 관원이 직접 응접하는 시기에 이르면, 반드시 한 번은 예를 깨트려서 구의舊誼를 보존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오직 전후前後가 있을 뿐이다.

또한 작년 10월 태정관에서 외무성에도 소 씨에게도 조선과의 교제는 앞으로 외무성에서 취급하라고 하달했다. 그 후 대수사 문제는 차후의 명령이 있기까지 이쪽에서 철수하지 않도록 하라는 하달이 있었던 것이다.

각설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니 교제의 수속 등은, 이번에 우선 여차여차한 중대한 취지를 품고 관원이 도항을 명받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외무성과 쓰시마번이 동심협력하여 조정의 뜻을 관철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중에서도 관원이 응접하는데 이르기까지의 수순은 어떻게든 쓰시마번에서 천만 진력해야 한다. 그 이유는 종전의 연고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지사 공께서도 힘껏 명하셨을 터인데, 어떻게든 단연코 소요에 이른다고 하는 이견異見과 무엇보다 결단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왜관에서의 시담示談 중에 전단戰端 얘기를 거침없이 하면서 마치 확정된 듯이 논의하는 것은, 무엇보

⁵⁴ 마음속에 늘 풀리지 않고 있는 의심.

다 조정의 입장을 규정짓는 바가 될 것이다. 원래 한인도 의심이 깨끗이 해소되면 교의交誼를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 시간을 들여 외무성과 쓰시마번이 협동하여 성심을 펼쳤는데도 성숙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이에 반드시 외무성의 근태勤怠도 쓰시마번의 신위信僞도 한국의 허실도 모두 드러날 것이다. 그때는 조정 스스로 조정의 고의高議가 있을 것이다. 외무성은 외무성의 견해도 있을 것이다. 지금 어떻게든 반드시 성숙되어야 하는 교정交情을 반드시 성숙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당장에 양국 인민이 도탄의 괴로움에 빠지는 것처럼 추측하는 의론議論은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위는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의견서이다.

26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나가사키[崎陽]에서 하세가와 다이조長谷川退藏가 저술한 보천록補天祿을 외무성에 증정하는 글

제1호

「보천록補天祿」 1책을 나가사키현에서 나가카와 다이조長谷川退藏⁵⁵가 제출하므로 한국에 도착하여 충분히 살펴보았는데, 방금의 요무要務와 관계되므로 건넵니다. 동인同人은 종전에 경郷 공께서 아시는 인물이니 가부와 취사는 동인에게 명하시기 바랍니다.

⁵⁵ 제목에는 책의 제목이 ‘補天祿’인데, 이는 본문에 나오듯이 ‘補天錄’의 오키로 보인다. 저자도 제목에는 하세가와 다이조로 나오고 본문은 나가카와 다이조로 돼 있어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알 수 없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 본문의 내용으로 추정컨대 사와 노부요시(澤宣嘉) 외무경이 나가사키재판소 총독이나 나가사키부(長崎府) 지사로 재직할 시기에 교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관리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당시 외무성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가 나가사키 우라카미무라(浦上村) 그리스도교도 처리 문제였기 때문이다. 1868년 2월 나가사키재판소 총독 사와 노부요시와 외국사무계(外國事務係)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메이지 신정부의 그리스도교 금압 정책에 따라, 우라카미무라 신도들의 개종을 설득했지만 거부함에 따라 이들을 포박하여 유배에 처한다. 이 조치가 서양 공사들의 격렬한 항의를 초래하여 당시 최대 외교 현안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경오년(1870) 12월 1일

히로쓰 히로노부 廣津弘信

모리야마 시게루 森山茂

요시오카 고키 吉岡弘毅

외무성 귀중 貴中

가친家親이 지은 보천록에 붙이는 머리말[題家君補天錄書首]

가친이 어느 날 「외교 문제」라는 책을 읽고 신도를 의론議論하기로 생각했다. 즉, 천교天敎⁵⁶를 우려한 까닭이다. 그래서 이 글을 지어 천교를 의론한 것이다. 가친이 천교를 의론한 것은, 즉 신도를 생각한 까닭이다. 가친의 뜻은, 비록 「외교 문제」라는 책과 동이同異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그 논한 바가 정해지고 마침내 우리 신명神明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의 하나로 계승되어, 장차 세상에 대활안大活眼의 사士가 있어 이를 알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일이 묘당廟堂의 비밀과 관계되기 때문에 공공연히 이를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약간의 내용이 새어나가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여 건백하는 바가 있었다. 가친은 오직 외교 문제를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이 논설을 짓고 그 의리를 다스렸다.

또한, 『춘추春秋』에는 경經이 있고 전傳들이 있다.⁵⁷ 혹은 경전에서 벗어나 문장을 이룬 것이 있고, 경전 밖의 것으로 일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그렇다고 세상은 구명邱明⁵⁸을 참망僇妄하다⁵⁹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서로 발휘發揮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야의 선비가 이들 말로써 관직을 구하려 한다는 혐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방금 사정이 급박하고 그 기세를 하루도 늦출 수 없어, 가친이 초

⁵⁶ 천교는 일반적으로 배화교, 즉 조로아스터교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하느님교’를 의미한다.

⁵⁷ 현존하는 전(傳)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등 세 종류가 있고, 이를 합쳐 춘추 3전이라 부른다.

⁵⁸ 『춘추좌씨전』을 지은 좌구명(左丘明)을 말한다. 여기서 ‘丘’를 ‘邱’로 표기한 것은 공자의 이름인 ‘丘’를 피휘(避諱)한 것이다.

⁵⁹ 분수에 넘치고 망령되다.

어樵漁⁶⁰의 신분이지만 이를 자처했다.

이 글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는 모두 나 불초不肖의 책임이다. 나 불초는 관청의 일로 매우 바빠 겨를이 없다. 잠시 짬을 내어 이 글을 써서 후일을 기다릴 뿐이다. 메이지 2년(1869) 5월 25일. 불초 아들 신우신新又新 삼가 씀.

보천록補天錄

근일 관에서 편찬한 「외교 문제」라는 책에 “신도神道로 훈민訓民하면 어떠한가”라는 문장이 있다. 이 글은 대체로 피차彼此를 비교하여 검토하는 사이에서 얻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은 마땅히 신기관神祇官⁶¹·태정太政官 두 관에서 나와야 할 것인데, 지금 오히려 외무성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 유래를 볼 수 있다. 외무성의 제공諸公이 피차를 비교하여 검토할 때, 그 의미가 온당하지 못한 곳이 있는 연후然後에 이 한 가지 도리를 책문策問⁶²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도가 어떠한가 하는가를 논함은, 즉 천교를 깊이 우려하는 까닭이다. 오직 그 말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독자는 아마 그 뜻하는 바를 살피지 못할 것이다. 보이는 것이 한순간의 일이라는 것을 정말로 모른다. 천하 천년의 변화를 맞이하여 이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명神明의 나라를 유지할 수 없고 신명의 계통을 보호할 수 없다. 하물며 신명의 백성이 이것을 버리고 저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국가엔 경중輕重의 형세가 있는 바, 모호하게 국면을 끝낼 수 없다. 나는 이 때

⁶⁰ 나무하고 고기 잡는 촌부.

⁶¹ 신기관(神祇官, 진기관)은 조정의 제사를 담당하는 관청. 왕정복고를 표방한 메이지 신정부는 제정일치와 신도 국교화를 추진하기 위해 1868년 1월에 신기사무과를 설치했다. 그 후 1868년 윤4월 정체서(政體書)에 따라 신기관이 설치되었다. 설립 당초에는 다른 관청과 동격이었지만, 1869년 7월의 직원령(職員令)에 따라 행정기구를 총괄하는 태정관의 상위에 위치하였다. 1871년 8월 신기관은 신기성이 되고, 신기성은 1872년 3월에 폐지되었다.

⁶² 중국의 관리 등용 시험에서 정치에 관한 계책을 물어서 답하게 하던 시험 방법.

문에, 이 편을 저술함으로써 이 문제를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하였다. 몰래 자손들에게 주어 간직하도록 하고 그 때를 기다리도록 하였다. 이름을 보천補天이라 하고 붙인 것은 또한 ‘보곤補堦’⁶³이라 하는 것과 같다. 즉, 티끌만큼이라도 나라에 보답하기를 도모했기 때문이다. 어찌 여와씨女媧氏를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이겠는가.⁶⁴

제1

천교祔敎의 종지는 천지에 하나의 주재자[一主 외에 일신一神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신도가 8백만신(八百萬神, 야오요로즈노카미)이라 설(說)하고 1,500만신이라고 설하는 것과 정반대이다. (이하의 문장은 두 글자가 빠져 있어 의미 불명) 내가 『사설변(邪說辨)』이란 책에서 이것을 상세히 논했다. 지금 여기서贅언(贅言)하지 않는다.】

제1부전

“8백만신이라 설하고”의 설의 글자는 좋지 않다. “우리가 8백만, 천만의 신으로 충칭하고, 천지의 모든 유공有功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 정반대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그러므로 그 종교 아래의 백성은 신·성·선·불神聖仙佛의 상像을 불태우고 사당을 훼손하는 것을 무한한 공덕이라 한다. 각국에서 교비敎匪⁶⁵의 일을 적은 것을 보면 그 개락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이 한번 나라에 들어오면 아마쓰미카미天津御神의 수많은 신들과 구니쓰미카미國津御神의 수많은 신들⁶⁶ 모두가 한 묶

⁶³ 임금을 보필한다는 뜻.

⁶⁴ 여와는 중국의 천지 창조 신화에 나오는 여신. 오색 돌을 빚어서 하늘의 갈라진 곳을 메우고(鍊石補天) 큰 거북의 다리를 잘라 하늘을 떠받치고 흑룡의 몸으로 토지를 되찾고 갈짚의 재로 홍수를 막게 하였다고 한다. 밑줄 친 부분의 ‘보천’에서 여와씨를 연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⁶⁵ 반체제적 종교 결사를 지배층에서 부른 이름.

⁶⁶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아마쓰카미(天津神)는 천상계의 신들, 또는 천상계에서 내려온 신들의 총칭이고, 구니쓰카미(國津神)는 땅에 나타난 신들의 총칭이다. 미카미(御神)는 가미(神)의 경칭이고, 야오요로즈(八百萬)는 무수히 많

음으로 절단截斷된다.【영국사는, 그 나라 당초에는 군신(群神)이 있었고, 군신을 폐하고 이 종교를 받든 것을 싫었다. 유럽[歐羅巴] 여러 나라 전법(傳法)의 광경은 이를 통해 알 수 있다.】이미 크고 작은 신기神祇⁶⁷가 없고, 또 종사宗社·능묘陵墓가 없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진 신들의 제사를 모두 폐지한다. 이것은 국제國體를 훼멸毀滅하고 천하의 인심을 동요시킨다.【불교를 버리고 없애면 이 또한 천하의 인심을 동요시킨다. 그 변란은 매한가지이다. 이것 역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대란大亂의 길이다. 방금 나라에서 천교의 충격에 당하여 대란을 면하고자 바라다면, 나라에 저들의 종교에 필적할 도도가 없어서는 형세상 불가하다. 그러면 그 도는 무엇인가.

하나의 주재자[一主] 이외에 별도의 신은 없다. 이것이 사설邪說이 사설인 까닭이다. 그렇지만 저들의 안력眼力은 능히 천지의 일대一大 근원에 집중시킨다. 그러므로 황천상제皇天上帝⁶⁸【두주: 신이 궁극적으로 계시는 곳이 상제라는 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받들고 그 종교를 설립함으로써 천하의 인심을 묶는다.

제2부전

아메노히토쿠와다신사天一嶽田神社(이세伊勢 스즈카군鈴鹿郡)·텐이치카미타마신사天一神玉神社(하리마播磨 사요군佐用郡) 식소사式小社⁶⁹

위는 아메노미나카누시노오미카미天御中主大御神⁷⁰의 신사이다. 이 외에 식내式內에는 전혀 없다. 본관本官이 아는 신사는 약간 있다.

본방에 전해지는 신전神典에 이른바 다카아마노하라高天原⁷¹가 곧 이 황천이

다는 의미.

⁶⁷ 하늘의 신과 땅의 신.

⁶⁸ 간단히 상제(=하느님)라고도 하며, 만물을 주재하는 인격신이다.

⁶⁹ '식(式)'은 『엔기시키훈식』을 말한다. 927년에 정리된 『延喜式』권9와 권10에 당시 관사(官社)로 지정된 전국급 신사 일람이 수록되어 있다. 관사는 신기관으로부터 폐백을 받는 신사이다. 『延喜式』에 수록된 식내사(式內社)는 신기관으로부터 폐백을 받는 관폐사(官幣社)와 국사(國司)로부터 폐백을 받는 국폐사(國幣社)로 나뉜다. 또 신사의 중요도와 세력에 따라 대사와 소사의 구별이 있다.

⁷⁰ 아메노미나카누시노카미(天之御中主神)를 말한다. 오미카미(大御神)는 카미(神)의 경칭.

⁷¹ 신들이 머무는 천상 세계.

고, 머물러 계시는 곳은 곧 이 상제이다. 해석은 피차 동일하여 우열이 없다고 하지만, 3주三柱(미하시라)의 신이 몸을 감추었다⁷²고 설說하여 66국⁷³의 크고 작은 제사에서 단독으로 황천상제를 숭봉崇奉하는 것은 없다.【자세히 탐구하면 이 신들의 제사라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세(伊勢)·카스가(春日) 신사보다 우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여하튼 이 신들을 받드는 제사는 없는 것이다.】

제3부전

미무스비노오미카미皇產靈大御神⁷⁴는 야마시로노쿠니山城國, 현 교토부 남부 하즈카시 신사羽束師神社(식내 대사)

지금은 미미한 것이 되어 사람들이 알지 못할 정도이다.

오히려 차차 생겨난 신들을 받든다. 황조대신皇祖大神⁷⁵을 받드는 제사는 열성列聖의 숭봉崇奉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온 나라의 마음을 모으는데 (필요한) 천지의 일대一大 근원을 결여한 것을 면하지 못한다. 이것을 천교天敎가 일주一主를 옹호하는 것에 비하면 한 수 뒤지는 것 같다.

제4부전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도의 근원이 없는 것처럼 들려 좋지 않다. 고서古書を 잘 읽고 고쳐야 한다.

⁷² 주(柱, 하시라)는 신이나 부처를 세는 단위. 『고사기』(古事記) 첫머리에 나오는, “천지가 처음 발생할 때 다카야마노하라(高天原)에서 탄생한 신의 이름은 아메노미나카누시노카미(天之御中主神), 다음으로 다카미무스히노카미(高產巢日神), 다음으로 가무무스히노카미(神產巢日神)이다. 이 3주의 신은 모두 독신(獨神)이었으며 몸을 감추었다(天地初發之時 於高天原成神名 天之御中主神 次高產巢日神 次神產巢日神 此三柱神者 並獨神成坐而隱身也)”는 구절을 말한 것이다.

⁷³ 일본의 전국을 표현하는 용어.

⁷⁴ 가무미무스비노카미(神皇產靈神)와 다카미무스비노카미(高皇產靈神)의 존칭.

⁷⁵ 천황가의 조상신으로 일반적으로는 아마테라스오카미(天照大神)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저들의 말은, 혹은 육합六合⁷⁶을 복종시키기에 충분하고 우리의 도로써는 팔황八荒⁷⁷에 미칠 수 없다. 여기에 저들이 강하고 우리가 약한 형세가 숨어있는 바, 천하의 근심이 이것보다 큰 것은 없다. 실로 묘당廟堂에서 심모원려로 이것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그 대비를 필요로 한다면 (그 방법은) “몸을 감추었다隱御身矣”라고 설한 바의 신을 받들어 인심을 만족시키는 일거에 있다.

중국漢土 옛 성인의 말에 “정치가 간이簡易하지 않으면 백성이 가까이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천교天教에서 일신一神을 받드는 것은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신도에서 8백만의 신으로 설하는 것은 번잡함을 면하지 못한다.

제5부전

도는 황천상제의 도가 유일한 줄기이다. 8백만의 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도道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천하에 공이 있는 모든 신들을 제사 지낸 후에 공이 있는 사람의 영혼을 제사 지냄도 마찬가지이다.

번잡함과 간단함의 사이에서 정치의 득실이 결정된다. 그렇지만 저들의 간단함은 교조敎祖가 의도한 사私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의 번잡함은 천지가 전한 공公에 속한다. 공사의 구별은 곧 정사正邪의 판별인 바, 지금 겨우 하나의 내용을 보태 이미 흠어진 인심을 모으고, 번잡함을 간단하게 되돌리면 정치의 요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매우 무거운 것을 가벼운 힘으로 옮기는 것은 천지 기능의 활동이다機活이다. 나는 이 주책籌策이 잘못되면 또한 장래의 계획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이 결점을 미봉하거나 혹은 약간 보완하려 한다.

⁷⁶ 천지와 사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⁷⁷ 여덟 방위의 멀고 너른 범위라는 뜻으로, 온 세상을 이르는 말.

제2

천교(天敎)는 야훼(耶華)를 섬겨 천지·바다·일월 및 모든 생명체의 수많은 종류의 일대(一太) 부모로 삼고, 나머지 평범하고 용렬한 것은 모두 영묘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그것의 귀결점을 요약하면 천지는 하나의 기계이고 일월은 하나의 등촉(燈燭)에 불과하다. 이것에 따라 유추하면 본방에 전하는 일신(日神)·월신(月神)의 존귀함은 저들이 봤을 때 등롱(燈籠)·촉대(燭臺)의 파수꾼이 될 뿐이다. 【천교는 근본을 잡고 말단을 생략한다. 우리에게 전한 신도의 종지는 그런 계열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탄생하신 신들을 숭사(崇祀)한다. 즉, 이것은 말단을 잡고 근본을 생략한다. 그 본말을 둘 다 포괄하지 못하는 면에서 피차의 우열은 없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근본을 잡는 쪽이 명의(名義)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말단을 잡는 것이야말로 이 피차의 승부에서 약점이 된다. 방금 천교가 전도되는 시절에, 세상에서 신도를 받드는 자는 아마 이를 태연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하나의 근본이 되는 태초의 신을 버리고 제사지내지 않는다. 게다가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⁷⁸를, 이 신을 황족의 신으로 만들어주신 미무스비(皇產靈)의 2주(二柱, 후타 하시라)⁷⁹ 및 이자나기(伊邪那岐)⁸⁰ 등의 대신(大神, 오카미) 위에 추가하는 제전(祭典) 의식이 있음에 이르러서는 명분이 뒤바뀌어 천지의 정리(正理)가 아니다. 교비(敎匪)⁸¹가 훗날 이러한 것을 전해 듣게 되면 우리 국체와 제후(帝猷)⁸²에 미사(美事)가 아니다. 하물며 어찌 신명(神明)의 제사를 지킬 수 있겠는가. 저 아마테라스오카미(天照大神)의 신덕(神德)은 하늘처럼 높고 해처럼 밝아 필적할 것이 없지만, 자식을 부모에 앞세우시려는 것은 신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궁극의 근원이고 천지 태초의 하나의 근본이고 대황조(大皇祖)⁸³인 신을 생략해두는 것은 인효(仁孝)와 예의(禮義)의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신도가 천지의 정전(正傳)이라 하지만, 금일 사교(敎敎)의 공격을 당하여 약간 수식(修飾)을 가하여 그 도를 정제(整齊)⁸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천지 태초의 황조대신(皇祖大神)⁸⁵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도는 근본이 없고, 우리의 교는 무의미한 것으로 귀결되어 저들로 하여금 그 법권

⁷⁸ 『고사기(古事記)』에서 주신으로 등장하는 신으로 천황가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황조신(皇祖神)이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아마테라스오카미(天照大神)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아마테라스메오카미(天照皇大神), 스메오미카미(皇大神) 등의 별칭이 있다.

⁷⁹ 가무미무스비노카미(神皇產靈神)와 다카미무스비노카미(高皇產靈神)의 두 신.

⁸⁰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남신(男神)으로 이자나미(伊邪那美)의 남편. 아마테라스나 스사노 등 많은 신의 부신(父神).

⁸¹ 여기서는 예수교도를 의미함.

⁸²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계책이나 사업.

⁸³ 건국 초창기의 신들과 천황의 총칭.

⁸⁴ 정돈하여 가지런히 함.

⁸⁵ 일본 신화에 나오는 황실의 조상신.

法權을 마음대로 휘두르도록 하기에 이른다. 왜냐하면 저들이 스스로를 부모라 칭하고 우리 조종祖宗을 부르기를 자녀나 증손·현손이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군부君父의 대권을 저들에게 부여한다. 대권이 한번 저들의 손에 떨어지면 우리 군부에게 무슨 위용이 있겠는가. 이것이 금일의 형편이다. 저들의 법권은 웅장하고 사나워 불교의 진속이체眞俗二諦 설에 비하면 그 해악의 크기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현재 변경의 백성에게 자못 전도하는 기미가 있다. 신도가 만약 종전의 소설所說과 같은 것만 말해서는 마침내 단멸斷滅로 귀결될 것이다. 무릇 아메테라스스메 오미카미天照皇大御神를 어떤 지위에 두고 받들어야 하는가.【이 신의 신덕(神德)은 현원(玄遠)·영묘(靈妙)하여 아마쓰오카미(天津大神)⁸⁶·황조대신(皇祖大神)이 천지의 조화를 이 신에게 맡기고 몸을 감추신 것은 오묘한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의 이치는 중국 서적과 부합하는 면조차 있어 우리나라 일가(一家)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별도로 고찰하여 그 대략을 『독서지남(讀書指南)』에 실었다. 거기서 볼 수 있으므로 지금 여기서는 체언하지 않는다. 이것을 요약하면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대덕(大德)은 아마쓰(天津)·황조 신들의 미코토(尊, 신의 존칭)로 여긴 깊은 뜻과 합치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만 아마쓰·황조의 신들을 생각하고 이 신의 이 대덕만을 주장한다면 이치의 우열이 있어 그 주장은 홀연히 패하게 된다. 깊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갑甲 부전

미나카누시노오미카미御中主大御神가 아메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御神의 조상이라는 것은 신전神典에 분명하다. 그런 것을 “종전의 소설所說과 같은 것” 이라고 말하면 고전에 정설이 없는 것처럼 들려 좋지 않다.

저들은 종교를 세우는 시초에 시야를 천지 제일 대권大權의 곳에 집중했다. 그 때문에 법을 천지 태초의 신에 의탁함으로써 인심을 모으고 흠어지지 않게 했다. 본방神明의 전傳에는 처음에 관한 설명이 없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무와 권능을 계속해서 생겨나는 신들에게 귀속시켰다. 혹은 8백만신이라

⁸⁶ 일본 신화에서 천상계에 있는 신을 말한다.

고 설하고, 천오백만 신이라고 설하고, 제부서신諸部緒神⁸⁷이라고 설하고, 지궁枝宮·지사枝社⁸⁸의 신이라고 설하여 인심을 흩어지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했다.

을乙 부전

8백만신의 주장은 모두 좋지 않다. 고어에 ‘제도帝道는 유일하다’ 라고 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설과 같다면 천하에 있는 모든 천황들·공신들의 신사를 어찌해야 하는가. 가까이는 초혼장招魂場, 쇼콘조⁸⁹을 개설하는 것도 쓸모없는 일인가.

천하 억조億兆의 백성이 석가모니의 이른바 부처에 귀의하고 불법에 귀의하는 흐름으로 흘러 인심이 구구하게 나뉘어졌다. 한 가족의 남녀 사이도 하나로 화합되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유럽[歐羅] 여러 나라에는 없는 바이다. 민심은 귀일歸一을 필요로 하는데 모두 종교가 이를 담당한다. 세상에 신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는 이 점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정교政敎는 아마 저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름대로 생각건대, 자손이 제왕 만세의 업業을 정하러 한다면 아마테라스스메오카미天照皇大神를 숭봉해야한다. 아마테라스스메오카미와 8백만신의 도를 무궁히 세우려 한다면, 또한 그 조상이 유래된 바를 숭봉하는 일거一舉에 있다. 천하의 고명高明한 선비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병丙 부전

8백만신의 도라고 하는 도는 없다.

⁸⁷ 일본 신화에서 니니기노미코토(瓊瓊杵尊)의 강림을 따랐던 5신. 아마노코야네노미코토(天兒屋命)·후토다마노미코토(太玉命)·아마노우즈메노미코토(天鈿女命)·이시코리도메노미코토(石凝姥命)·다마노오야노미코토(玉祖命).

⁸⁸ 본사에 속한 작은 신사.

⁸⁹ 초혼사(招魂社, 쇼콘사). 메이지유신 전후부터 그 이후에 순난(殉難)한 전몰자 위령을 위해 세워진 각지의 신사. 도쿄 초혼사는 1879년 야스쿠니신사로, 지방의 주요 초혼사는 1939년 호국신사로 개칭되었다.

제3

천교敎敎가 행해지는 천지 사이와 일월 아래에 비할 데가 없는 유일한 신은 즉, 하나의 야훼[耶華爾]로 그 외는 모두 신이 아니라 한다. 이것을 본방에 전하는 말에 비추어보면, 아메노미나카누시노오카미天御中主大神가 천지에 앞서 계셨으며 8백만신의 대황조大皇祖에 해당하는 신으로 중국인이 말하는 황황후제皇皇后帝⁹⁰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 저 태교太敎⁹¹는 황도皇道의 기초로 천하만국과 병립해야하는 까닭의大本源이다. 이 대신大神을 받들지 않으면 그 세력에서 저들에 저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의 천지 태초의 존신尊神을 모시면서, 무스히노오카미産靈大神⁹²를 비롯해 이어서 생겨난 대신大神조차 신이 아니고, 저들에게 설명하는 신은 이미 (저들의 입장에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예로 출현하는 현인神現人神⁹³ 역시 지존至尊이 아닌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태양이 밑으로 내려와 만물과 같아지면 창생은 무엇을 통해 빛을 우리러볼 수 있겠는가太陽降而下與萬物同蒼生何由仰照”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의 자손이 날로 그 차례를 잃었다周之子孫日失其敘”⁹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삼가 살피니 신도의 뜻은 오로지 황조·신명皇祖神明을 받드는 데 있다. 이것은 인효仁孝·성경誠敬을 지극히 하는 것이라서 다시 설명을 기다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저 8백만신도, 신의 공적과 덕택이 본래부터 그런 것이지만, 충후忠厚한 마음과 강상이륜綱常彝倫⁹⁵을 수용할 수 있는 자질의 근본은 동방東方의

⁹⁰ 『시경』에 나오는 말로, 천(天), 천제(天帝), 상제(上帝)를 뜻한다.

⁹¹ 다이교(大敎). 신도를 국교화하기 위해 부른 이름. 1870년 1월 3일 ‘대교선포조(大敎宣布詔)’에서 천황에게 신격을 부여하고 신도를 국교로 정하여 일본을 ‘제정일치 국가’로 하는 국가방침을 정했다.

⁹² 천지와 만물을 만들어낸 신. 다카미무스히노카미(高皇御産靈神)·가미무스히노카미(神皇産靈神) 등.

⁹³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출현한 신이라는 뜻으로, 보통 천황을 지칭한다.

⁹⁴ 『춘추좌씨전』 「노은공(魯隱公)」 11년조에 나오는 구절이다.

어떤 영기靈氣에서 나와 신대神代 이래의 유풍流風과 여운餘韻은 천지가 다하더라도 떨어지는 일이 없고, 천고의 노영광전魯靈光殿⁹⁶에 속하여 본방 곳곳에 초연超然히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비난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도의 큰 근원이 아직 없고 천지의 시초에 철저히 못했다. 천하의 신사神祠가 3천 1백 여나 될 정도로 많지만 하나도 미나카누시노오카미御中主大神를 받드는 사당이 있다고 듣지 못했다. 오히려 개벽의 처음에 3주三柱의 신이 “몸을 감추었다隱御身矣”고 설하고, 이자나기伊邪那岐 대신이 “히노와카미야日之少宮⁹⁷에 숨었다隱日ノ少宮”고 설하여 ‘은隱’의 한 글자에 매우 오묘한 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풀이 마르고 나무가 시들어 다 없어져 재가 됨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실은 일에 있어 심히 해롭다.

갑 부전

‘은隱’ 글자는 ‘유택幽宅’의 오류일 것이다.

을 부전

‘은’이라는 한 글자 이하는 고서를 잘못 해석하여 그렇게 된 것일 터이다.

태교太敎가 저들보다 한 수 뒤져 우민愚民이 저들에게 협종脅從⁹⁸하는 것도 반드시 이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 폐단을 면하려면, 이 대신을 숭봉하지 않으면 저들과 보루를 사이에 두고 대치할 수 없다. 아마테라스오미카

⁹⁵ 강상은 삼강오륜, 이론은 사람이 떳떳하게 지켜야 할 도리.

⁹⁶ 한(漢)나라 노공왕(魯恭王)이 건립한 영광전(靈光殿)을 말하는데, 여러 차례나 전란을 겪어도 이 궁전만은 완전하게 보존되었다 한다.

⁹⁷ 일본 신화에서 천상에 있었다고 하는 대궁(太宮).

⁹⁸ 남의 위협에 눌리어 복종함.

미天照大御神를 비롯해 후계신이라는 신이 분장分掌한 신공神功의 위에는 기묘한 위광의 신령이 있음은 논할 필요도 없지만, 그 신공이나 신령이라는 것이 바로 이 대신大神, 御中主大神的 신령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대어신大御神, 御中主大御神을 생략하고 입론하는 것 같은 것은 어찌 근본 없음이 심한 것이 아니겠는가.

중국[漢土]의 성왕聖王이 세운 예악禮樂의 태반 이상은 제사에 관계된 것으로, 제사는 교郊를 제일 대제大祭로 삼는다. 즉, 황천상제皇天上帝를 제사지내는 것이므로 이 신을 받드는 것은 단지 천교敎敎의 사설私說로 제약받을 일이 아니다. 지금 봉쇄의 규정을 고쳐 빗장을 부수고 모든 곳과 대치하여 황위를 그 사이에서 떨치고자 한다면, 대교大敎를 분명히 함에 있다. 대교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 오로지 이 신을 받들고 숭사崇祀함에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머지 신들의 제사는 충효·강상의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어지럽혀도 된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다. 어지럽히면 곧 사설邪說에 빠지고, 어지럽히면 곧 나라의 원기元氣를 없애고 막는다.

무릇 나라는 고국을 귀하게 여기고 집은 옛집을 중히 여기는 까닭은 천추의 유택遺澤⁹⁹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황방皇邦이 천지간에 고국이고, 우리 황실이 만 곳에 옛집임은 온 세상이 다 안다. 그리고 저들의 위세와 기염에 겁을 먹고 오랜 세월 전해온 제사를 잃게 되면 장차 무엇으로써神明神明의 후예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신도의 모습이 종전처럼 되어서는 오직 그 말단을 잡고 그 근본을 생략하여 정교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인심의 흠어짐과 흠어지지 않음의 계기가 깃들여 있는 곳이고, 피차의 국세가 강약의 차이를 이루는 것이기에 결코 작은 탈이 아니다.

지금 하나의 책자를 지은 것은 위험을 지탱하고 넘어지려는 것을 부축해서 그 형세를 만회함으로써, 종묘사직이 장차 무너지려 하므로, 이른바 하늘의 해를 되돌리고 장강長江과 황하黃河의 물을 막으려는 계책이다.【옛말에 “하늘은 하나를 얻었기에 맑고 땅은 하나를 얻었기에 안정되고 임금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천하를 바로잡았다(天得一以清

⁹⁹ 후세까지 남은 은혜와 덕택.

地得一以寧 王公得一以為天下貞)”¹⁰⁰고 한다. 이 하나는 정말로 천지의 대덕(大德)이다. 저들이 능히 이것을 점득(占得)함으로써 천하의 이복(利福)을 거둔다. 간이(簡易)함을 가지고 번잡함을 통합하고 적은 것으로써 많은 것을 제어하는 것이다. 단지 하나를 잡고 백을 폐한다는 것은 사설(邪說)이 사설인 까닭인 것이다. 지금 나는 이 하나를 8백만신을 받드는 그 위에 추가하여 이일(理一)을 밝히고 분수(分殊)¹⁰¹를 자세히 얘기하려고 한다. 바라건대, 도가 대중지정(大中至正)¹⁰²으로 돌아감으로써 육합(六合)·팔황(八荒)을 가르칠 수 있기를. 이 글은 은(隱)이라는 한 글자를 원만하게 설명한 것이다. 신기관(神祇館)¹⁰³ 중에 저절로 그 인물이 있을 것이다. 지금 반드시 의론하려는 것이 아닐 뿐이다.】 천하에 어찌 나와 이 우려를 같이 하려는 자가 없겠는가.

제4

천교(天敎)가 종지로 삼는 바는 즉, 야훼가 천지를 창조하고 일월을 창제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종교 아래의 나라 하나하나가 그 교리를 받드는 것을 공공이라 하고, 한 나라 한 왕의 조詔를 공이라 하지 않고 사私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천하의 시비를 전도顛倒시킨다. 사설(邪說)이 사설인 까닭이다.

본조는 개벽 이래 국체와 인심의 첫 번째 대의는,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로 천하의 천하가 아니라는 것이 만천萬千 년의 오랜 세월 동안 온 나라에서 전혀 다른 말이 없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론이다. 지금 야훼의 교리에 따라 이것을 논하면, 이 땅은 모두 야훼의 소유로 돌아가 우리 스메미마노미코토(天照大神)의 국토가 아니게 된다. 그 주장의 귀결점을 요약하면, 우리 천황의 팔을 비틀어 천황의 금구(金鉤)¹⁰⁵를 흔드는 것은 천교의 말이다. 천교가 우리 황실에 해가 되는 것은 홍수나 맹수보다도 더 심하다. 어떻게 난적의 말을 막아서 천하의 시비를 전도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을까?

¹⁰⁰ 『노자』 제39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¹⁰¹ 이일분수(理一分殊)란 성리학적 개념으로 이(理)는 하나(一)이나 그 분(分)은 다름(殊)을 말한다.

¹⁰²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극히 공정함.

¹⁰³ 신기관(神祇官)의 오류로 보인다.

¹⁰⁴ 황어손(皇御孫, 스메미마)의 경칭. 황어손은 아마테라스오카미(天照大神)의 자손인 역대 천황을 지칭.

¹⁰⁵ 황금으로 만든 병처럼 완전무결한 것. 특히 외국의 침략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사설邪說이 미만瀾漫하여 만 리의 넓이에 가득 차기에 이르렀다. 우리神明神明的 말과 같은 것은 겨우 구구區區한 60주州 안에 국한된다. 기실은 봉쇄의 폐단 때문에 아직 갑자기 이것을 내쫓을 수 없다. 대체로 저들의 병력이 뒤에 있어 교법敎法和 표리를 이룬다. 이것이 강대함을 이루는 까닭이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계천입극繼天立極¹⁰⁶의 신이 성무聖武로써 나라를 세웠기에 저들을 막고 저들을 물리침에 나라가 본디 그 도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다만 두뇌의 첫 번째인 정수리 부분이 결여되어 인심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국체가 원만하지 못하다. 요는 아메노미카누시天御中主 일신一神을 받들어 황통의 큰 기초를 확립함에 있다. 과연 그러하면 그 이후 계계승승繼繼承承하는 황족의 근원이 여기에 이어지고 황위皇位가 안정되어 다시 동요하지 않는다. 대저 신예神裔¹⁰⁷의 빛남은 천하만국 중에 우리와 비견할 자 없음이 오래되었다. 저들의 교조가 스스로 천제天帝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겨우 그 교법敎法의 이복利福에 그치고 마침내 그 자손을 비호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 하물며 나머지 소추小醜¹⁰⁸에 있어서야. 나라에서 이미 이 일신一神을 받들고 훗날 운전運轉하여 만회의 방법을 다한다면 우리 천황이 육합六合에 군림하는 기초를 이루는 것도 오직 이때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관중管仲의 전화위복轉禍爲福, 인패제제의因敗制宜¹⁰⁹이다. 예수[耶蘇]가 옛날에 괴롭게 죽고 설교한 것은 오히려 우리 천황을 위해 미리 유세객이 된 것이다. 어찌 유쾌하지 않은가.

제5

서교西敎라 하는 것, 양교洋敎라 하는 것, 희랍교希臘敎라 하는 것【3교는 『영환지략(瀛環志略)』에 실려 있다. 저번에 저술한 「사설변(邪說辨)」에서 이것을 논해두었다.】은 교리가 같지

¹⁰⁶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지극한 법칙을 세운다는 뜻.

¹⁰⁷ 신의 자손, 또는 천황가의 자손.

¹⁰⁸ 작고 보잘것없는 무리.

¹⁰⁹ 실패한 것을 계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뜻. 『전국책(戰國策)』에는 ‘轉禍而爲福, 因敗而爲功’으로 나온다.

않지만 야훼를 받드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3교의 백성은 모두 야훼를 끌어다가 하느님[皇天上帝]이라 하고 군부君父를 황천상제라 하지 않는다. 무릇 오직 군부를 황천상제로 여기지 않는다. 그 때문에 나라마다 법이 없고 집집마다 법이 없다. 무릇 오직 야훼를 황제·상제로 여긴다. 그 때문에 그것을 만든 만국과의 형제를 맺을 때까지 협동·합일한다. 이것에 따르면 세상의 군부를 도외시하면서 하늘을 말하고 공공을 주장하는 것은 사설邪說이다. 그 뜻이 예수[耶穌]에 연원한다. 황도의 죄인이다. 이것에 따르면 지금의 이른바 공론은 옛날의 이른바 사설이다. 지금 공사公私의 말이 천하에 가득 차 군부를 황천상제라 하지 않는다. 일세一世의 대정大情이 모두 그러하다. 이것을 광제匡濟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천하의 모든 일이 정교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풍속·인심을 광제하는 일이 학교에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학교 역시 정교와 한 짝을 이루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므로 학교 혼자 그 취지와 계통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역시 황조신명皇祖神明을 받들어 그 주장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만 유가의 삼강오상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것 역시 행해지지 않는다.

제1 부전

유가의 삼강오상의 도에 의하지 않고도 우리의 가무나가라¹¹⁰의 도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자의 사론私論으로 떨어질 것이다.

대개 유교는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 원류는 천지의 정수精粹에서 나왔고, 또한 우리 황조신명의 은뢰恩賴에 의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취하여 우리 황극皇極을 도와야 한다. 이것 역시 신명의 도이고 별도로 기능과 관할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단지 중외를 합동하여 하나로 화합하는 것이다. 반드시 마땅한 방법

¹¹⁰ 神ながら隨神 惟神 등으로 표기하며, 의미도 신 그 자체로서, 신이 뜻하는 대로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별도의 생각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체언하지 않는다.

제2 부전

8백만신의 도라 하는 도도 없는데 도가 있는 것처럼 논하고, 도리어 유교를 끌어오는 것은 어째서인가.

제6

천교祧敎 아래에서 야훼는 곧 군주이고, 야훼는 곧 부모이다. 과연 그렇다면 이 진짜 군부君父는 군부가 아니다. 하늘이 덮은 곳에 해가 비추는 곳에 위에는 군부가 없고 아래에는 신자臣子가 없다. 삼강오상이 땅을 쓸 듯이 흩어진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방금 개성開成¹¹¹하는 일이 급하여 부강설富強說이 제기되고 천하의 대정大情이 오로지 저들의 손아귀 속에 들어간다. 몇 세대 후에 천하의 생민生民은 다시 군부를 군부라 하지 않을 것이다. 야훼를 끌어다가 군부라고 할지 이 역시 알 수 없다. 인주人主는 어떤 정교政敎를 닦아서 이것을 구제함으로써 이 인심을 모을 수 있겠는가.

아메노미카누시노오카미天御中主大神를 나라에서 받들고 엄연儼然히 숭배하기에 이르면, 차차 생겨난 신들로부터 과질면면瓜瓞綿綿¹¹²히 우리 천황에게 이어진다. 이것이 우리 천황이 육합六合에 군림하는 기반이고 우리 조고詔誥¹¹³는 곤여坤輿¹¹⁴가 흠봉欽奉해야 할 바이다. 이것으로 일신一神을 받들고 일전一典을 세움으로써 삼강오상·구법九法¹¹⁵을 정한다. 그 비결秘訣은 사실 천지개벽의

¹¹¹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이름.

¹¹² 오이 덩굴이 끝없이 뻗어나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자손이 번성하여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의미.

¹¹³ 조서(詔書)로 알림.

¹¹⁴ 대지(大地) 또는 지구를 이르는 말. 『역경(易經)』 설괘(說卦)에서 “곤(坤)을 땅이라 하고, “큰 수레라 한다”고 대지(大地)를 큰 수레에 비유한 것에서 유래.

¹¹⁵ 하(夏)의 우(禹)가 천제로부터 받았다는 천지의 대법(大法)으로 홍범구주, 구주, 구장(九章)이라고도 한다.

시초에 존재했다. 금일에 간파하고 금일에 거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황운皇運이 융성하고 법도에 맞는 이 시기에 오직 총명하고 기미를 알아채는 선비가 능히 이치를 신령스럽게 머금고 묵계默契할 수 있다. 과연 것처럼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저들이 주장하는 바도 또한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온다. 그러니 어찌 원수처럼 여기기에 족하겠는가. 것처럼 그 설이 누추하고 샛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고, 우리가 이것을 편달鞭撻하면 대권大權은 이미 우리 손에 있게 된다. 오직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邪氣가 아주 성하고 천지의 정기正氣는 그 때문에 소멸하게 될 것이다. 풍운은 술을 빚듯이 한 세상을 변화시킨다. 선자善者가 있다고 해도 어찌 능히 그 기세를 막아 누를 수 있겠는가. 【훗날 피차의 교리 같은 것이 있다면, 저들은 천지 태초의 신을 받들고 우리는 계속 생겨난 신들을 받든다. 이치에 우열이 있고 세력에서 승부가 갈려 변경의 백성이 저들 종교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겨를이 없다. 그러니 어찌 능히 저들과 서로 대항할 수 있겠는가】

제7

예수[耶穌]는 중심을 일주一主에 둔다. 그 때문에 능히 복과 벌의 권한을 거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한마음으로 흠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본조의 신도는 8백만신이라 설하고 제부서신諸部緒神이라 설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한마음으로 흠어지지 못하게 할 수 없다. 흠어짐과 흠어지지 않음 사이에서 강약의 세력이 판가를 난다.

제1 부전

미나카누시노오미카미御中主大御神를 첫 번째로 숭봉하는 주장은 동의한다. 8백만신의 설은 전부 수궁할 수 없다.

『서경』의 홍범에 기록되어 있는 정치도덕의 9원칙으로 오행(五行), 오사(五事), 팔정(八政), 오기(五紀), 황국(皇極), 삼덕(三德), 계의(稽疑), 서징(庶徵), 오복(五福)을 이룸.

예수교[耶蘇敎]를 세운 뜻은 땅을 개척하고 영토의 경계를 넓힘에 있다. 그러므로 천지·일월의 창조주를 추대하고 법을 여기에 의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천교 天敎의 대지大旨는 오로지 천지사방을 뒤섞어 하나로 만들려는 수단에서 나온 것이라서 중국(漢土)의 신성神聖이 단지 봉강封疆을 지키기를 염원하는 것과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 본조 신명神明的의 소전所傳에 따르면 스메오미카미皇大御神¹¹⁶가 다카마노하라高天原를 아시고, 다케하야스사노오노미코토建速須佐之男命¹¹⁷가 많은 조류가 여기저기서 모이는 것을 아셨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 돌아갈 곳을 정했으니 우리 천황이 곤여坤輿에 군림하시는 것과 완전히 부합한다. 그렇지만 “아메노미나카누시노카미天御中主神 등 3주三柱의 신이 몸을 감추었다”라고 설하고, “이자나기노미코토伊邪那岐命가 히노와카미야日之少宮에 숨었다”고 설한다. 그 사이에 극히 현묘玄妙한 뜻이 있다고 하지만, 단지 그것을 이와 같이 설함으로써 군부君父의 권능이 오히려 저들에게 돌아가고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피차 소전所傳의 뜻에 따라 귀결되는 것이 정해졌으니, 저들은 선천先天을 잡고 우리는 후천後天을 잡는 것과 같다. 무릇 개벽의 일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꾸밈없이 천지의 진실을 전수하는 것이어서 저들이 의도적으로 말을 만든 유와 같은 것이 아니다.【저들의 교주가 의도적으로 내세워진 까닭은, 그 연원이 매우 멀다. 내가 이것을 논하여 「사설변(邪說辨)」에 실은 것은 제군이 아는 바이다】

그렇지만 금일의 사정은 이미 저들에게 한 수 뒤져 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도를 받들어 저들과 서로 대치하는 형세가 매우 고약孤弱하고 우리의 도가 매우 위급하여 존망이 걸린 이때에 우리는 여전히 ‘오직 신의 뜻에 따른다(神隨)’는 소전所傳을 받드는 데서 그쳐야 하는가. 또한 잘되기 위해 고쳐서 정리할 곳이 있는 것이 아닌가.

¹¹⁶ 황실의 조상에 해당하는 신들의 경칭. 또는 신의 경칭.

¹¹⁷ 『고사기(古事記)』에 나오는 신명으로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 素戔男尊)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고사기』 기술에 따르면, 이자나기(伊邪那岐)가 왼쪽 눈을 찌자 ‘아마테라스(天照大神)’가, 오른쪽 눈을 찌자 ‘쓰쿠요미(月讀命)’가, 코를 찌자 ‘스사노오’가 탄생했으며, 이자나기는 이 3신에게 각각 ‘다카마노하라(高天原)’, ‘밤의 세계’, ‘바다’를 다스리도록 명했다 한다.

제2 부전

‘오직 신의 뜻에 따른다(가무나가라)’는 도를 받들지 않고 뭔가에 의거하려는 지은이가 아메노미나카누시노오미카미天御中主大御神를 숭봉할 것을 주장하면서 ‘오직 신의 뜻에 따른다’는 도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마 이 신을 제사지내는 것을 ‘오직 신의 뜻에 따른다’와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일 터이다. 이미 신전神典의 처음에 나오시는 이 오미카미大御神가 대황조大皇祖라는 것은 누구도 알고 있는 것이다. ‘오직 신의 뜻에 따른다’는 도를 도외시하면 신황神皇¹¹⁸의 대죄인이다. ‘오직 신의 뜻에 따른다’는 뜻을 지은이는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어서 논함에 충분치 않다. 또한 유가의 설을 취한 것은 미혹함이 심할 따름이다.

우리 천황은 혁혁赫赫한 신의 후손으로 만세토록 연면連綿하시고, 그 도읍지로 정한 곳을 물으니 곧, 해가 뜨는 곳이다. 이 몇 가지는 이미 지구에 군림하는 주인인 것을 보여주기에 족하다. 다만 선천과 후천 사이에서 승부의 기미가 잠복해 있어 두 군대의 강약의 모습이 없지 않다. 지금 그 세력을 만회할 필요가 있다. 아메노미나카누시노오미카미天御中主大神를 드러나게 해서 받들어 크게 근본에 보답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일거一擧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방법으로 새로 사전祠殿을 설립하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 특별히 천하의 신사神祀에 명령하여 모두 이 신을 그 정전正殿에서 받들어 제사하게 하고, 곧바로 이 대신에게 우선하여 폐백을 봉헌한다. 그런 다음에 각 신사의 사무를 나눈다.【그 사전(祀典) 제식(祭式)과 같은 것은 담당 관리가 맡아서 마땅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반드시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하면 구관舊慣을 바꾸지 않고 구물舊物을 바꾸지 않으면서 국체를 우뚝 세울 수 있다.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일심동체가 되게 하는 이른바 하나라는 글자의 공효功效를 우리 역시 점유할 수 있다.【본방에 이 대신(大神)의 사당이 없는 것이 큰 결전(缺典)임은 앞에서 논한 바와 같다. 그렇지만 나라에 한두 사우(祠宇)가 있는 것 같은 것은, 이것은 겨우 다른 여러 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다만 나라에 사당이 하나도 없는 이 신(天御中主神-오키

¹¹⁸ 여러 신들과 역대 천황.

이)의 지극한 덕으로, 백성들이 득의하여 칭송하는 일이 없는 것이 성행한 바, 모두 이것을 대관(大觀)·달관(達觀)하니 이는 하나의 사당도 없기 때문에 천하의 큰 복으로 여기는 것이다. 지자(知者)가 손뼉을 치면서 경행(慶幸)할 바이다. 그러므로 이 신을 천하 군신(群神)의 사당에 받들면 군신의 사당은 모두 이 대신(大神)의 사당이 된다. 대신은 곧 천하 군신의 근본이다. 하나로써 만 가지를 통합하고 만 가지를 정리하여 하나로 한다. 천년 소전(所傳)의 전(典)을 바꾸지 않고 땅이 평온해지고 하늘이 완성된다. 선천과 후천을 혼일(混一)하여 정교의 대의(大儀)를 세우는 것이 어찌 나라의 큰 경사가 아니겠는가. 내가, 국체가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는 단지 이 대신(大神)의 현회(顯晦)¹¹⁹ 여하에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이 때문이다.】

나는 불민하지만 나름대로 생각한다. 단지 이 일로 국세가 옛날의 만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큰 제방이 개미굴에 의해 뚫려 화禍가 몇 세대나 지속될 것이다. 백성은 근심을 더하고, 거서(車書)¹²⁰는 걱정을 더하게 된다. 나라와 임금을 어찌할 것인가. 용렬한 선비가 경시하는 바이고 식자가 두려워하는 바이다. 【혹자는 “본방 소전(所傳)에 ‘이 신이 몸을 감추었다’고 적은 것을 지금에 와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천하에 어찌 의존하는 자가 없겠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릇 ‘몸을 감추었다’고 적은 것은 단지 이 신만이 아니다. 두 무스히(産靈)의 대신 같은 것도 모두 이리하다. 그렇지만 신기(神祇)는 신전(神殿)에 봉사한다. 혹은 드러나고 혹은 은미한 것은 신명(神明)의 도이다. 그러 한즉 당초 숨었다고 설한 신이 나타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는 손가락을 곱자라고 하는 주장이 아닌가. 다만 금일에 있어 특별이 조고(詔誥)를 베풀 하나의 연고(緣故)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고 있는 사유는 있지만 이 글에 기록하지는 않는다. 은(隱)을 현(顯)으로 하는 데 무슨 변별의 어려움이 있겠는가.】

제3 부전

‘몸을 감추었다’는 것은 ‘몸을 드러낸 9인¹²¹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정도일 것이다. 현은顯隱에 관한 논의는 너무 어려운 듯하다.

¹¹⁹ 세상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과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

¹²⁰ 천하가 통일된 상태를 이르는 말. 『사기·진시황본기』나 『중용』에 나오는 “수레의 너비를 같게 하고 같은 글자를 쓰게 한다(車同軌書同文)”는 것에서 나온 말이다.

¹²¹ 다카마노하라(高天原)에서 지상의 세계인 아시하라노카쓰쿠니(葦原中國)로 내려온 신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8

천교天敎는 개과요복改過邀福 및 왕생천국의 설이 있다. 이 두 설은 중생이 현세와 내세의 본원本願을 해결해주어 결루缺漏가 전혀 없다. 신도는 현세를 설하고 내세를 설하지 않는다. 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설로써 필부필부匹夫匹婦의 마음을 거두어 잡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권능이 모자라는 곳이 있어 완전하지 못하다.【천하의 인심이 달아나 불교에 귀의함도 그 근원은 필경 이 점에 기인한다. 깊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갑甲 부전

신도는 본래 필부필부의 마음을 거두어 잡는 데 충분하다. 그 때문에 불법이 처음에 왔을 때 천하에 가득 찰 수 없었다. 그래서 요승들이 본지수적本地垂跡¹²² 설로써 신불神佛을 혼합하여 마침내 교권을 잡은 것이다.

저들 법권法權¹²³의 주밀周密함은 고보弘法¹²⁴가 전교한 가지기도加持祈禱¹²⁵와 겐쿠源空·신란親鸞¹²⁶의 후생이 이룬 좋은 것을 섞어서 하나로 모은 것과 같다. 그 런데다가 천지·일월의 창조·창제의 하느님이라 설하고 조고詔誥라고 설한다. 이 설은 득의하여 실권이 손아귀에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외복畏服하게 한다.

불교는 허구라서 비록 팔종八宗¹²⁷이 연합하더라도 권력이 저들에 적수가 되기에 충분치 않다. 허虛가 실實에 미치지 못함은 천하의 통정通情이다. 비록 적수

¹²²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신명(神明)한 몸을 나타내는 일.

¹²³ 여기서는 교리나 가르침의 권능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

¹²⁴ 헤이안시대 초기의 승려로 진언종(眞言宗)의 개조이다. 본명은 구카이(空海)이고 고보대사(弘法大師)는 시호이다.

¹²⁵ 병, 재난, 부정 따위를 면하기 위하여 기도를 올리는 일. 결인(結印)하면서 진언을 외거나 몇 가지 상징적 도구를 사용하여 행한다.

¹²⁶ 겐쿠는 헤이안시대 말기에서 가마쿠라시대 초기의 승려로 일본 정토종의 개조이다. 법호는 호넨(法然). 신란은 호넨의 정토종을 계승하여 정토진종을 개창한 가마쿠라 시대 중기의 승려.

¹²⁷ 일본에 전래된 불교의 8개 종파로 구사종(俱舍宗)·성실종(成實宗)·율종(律宗)·법상종(法相宗)·삼론종(三論宗)·화엄종(華嚴宗)·천태종(天台宗)·진언종(眞言宗)을 칭하는 말.

가 되더라도 법문이 다기하여 인심을 합일할 수 없다. 논論이 여기에 이르면 사랑으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케 한다.【불교가 여러 종파를 합동하면 현세와 내세의 두 본원을 다 해결해주어 이 또한 결점이 없다. 그렇지만 교법이 다기하여 인심이 하나로 되지 못함은 면하지 못하는 바이다. 만약 이것을 타파하여 하나로 귀일시키면 아마 교권이 종전의 백배가 될 것이다. 외국의 종교는 그 권위가 조정에 연결되지 않음을 어찌하라. 이것이 종교를 본방에 세움에 반드시 신도를 기약하는 까닭이다. 신도가 이미 천지·일월의 주(主)를 끌어안고 인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현세와 내세 이세(二世)의 본원을 해결해주는 것을 본지(本旨)로 해야 한다. 이것을 그 도의 원만(圓滿)이라 한다.】

순수한 신도가 장차 무엇을 닦음으로써 이 법권을 완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

종교를 아방에 세움에 신도가 아니면 권력이 조정과 연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도는 죽음을 꺼리고 더러움을 싫어한다. 애기가 죽음과 더러움에 이르면 상서롭지 못하다고 한다. 이것이 인심을 거두어 잡는 데 충분치 않은 결점이다.

마땅히 오쿠니누시노오카미大國主大神¹²⁸가 은부隱府를 분장하신 설을 강講하여 유명幽明¹²⁹에 대한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죽음을 더럽다고 하고 이것을 진토(塵土)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것은, 그 도의 고결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인정과 세태에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신도가 고결하다고 해도 인심을 거두어 잡을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부(幽府)의 설은 모토오리(本居)와 히라타(平田)씨의 견해에 각각 이동(異同)이 있다.¹³⁰ 그렇지만 사람이 죽어 모두 황천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전하는 것은 유래하는 바가 있겠지만 권선징악에 불만인 점이 없지 않다. 이것들의 논의는 반드시 그 담당관이 있을 것이다.】

¹²⁸ 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國主命)라고도 부른다.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신으로, 아마쓰카미(天神)의 주신인 아마테라스오카미에 대응하여 구니쓰카미(國津神, 토착신)의 두령으로 불린다. 신화에 따르면 나라를 만든 뒤에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신칙을 받들어 국토를 니니기노미코토(瓊瓊杵尊)에게 헌상하고 은퇴하여 유명계(幽冥界)의 주재자가 되었다 한다.

¹²⁹ 이승과 저승.

¹³⁰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더러운 세계 즉, 황천 세계에 가기 때문에 죽음은 비참하다고 한 것에 대해,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는 사람은 살아서는 천황이 주재하는 현계(顯界)의 백성이 되고, 죽어서는 오쿠니누시노카미(大國主神)가 주재하는 유명(幽冥)의 신이 되어 각각 주재자를 섬기기 때문에 사후가 반드시 공포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스도교의 천지창조 신화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아마노미나카누시노카미(天御中主神)를 창조주로 하고, 유교적·불교적 색채를 완전히 배제한 복고신도(復古神道)를 수립한 히라타는 사람이 죽으면 황천국에 가는 영과 신이 되는 영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의 영은 신이 되어 신들의 나라인 유명계(幽冥界)에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명계는 현세의 모든 장소에 편재하고 있어, 신들이 신사에 진좌(鎮座)하고 있듯이 사자의 혼은 묘소 위에 머문다고 주장하였다.

을乙 부전

오크니누시노오카미(大國主大神)가 명부(冥府)를 아신 것은 물론이라서 논할 필요도 없다. 사체를 더럽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고서를 보고 비교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의 사체라도 오래 두면 썩어 문드러져 전혀 청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땅에 묻는 것이다. 부모나 군상(君上)의 몸에서 나온다고 해도 대소변은 오물임에랴.

병丙 부전

황천의 설은 히라타의 책을 서투르게 읽은 것으로 일이 크게 잘못되었다. 제대로 주장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정丁 부전

신도가 죽음과 더러움을 상서롭지 못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인심을 거두어 잡는데 부족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 권선징악의 도는 조정에서 충혼(忠魂)을 제사 지내고 있으신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아메노미나카누시노오카미(天御中主大神)를 받들지 않으면 일과 권한이 양분된다. 인심을 일치시키는 도에 있어 심히 해가 된다. 반드시 그 설을 강명하여 일과 권한을 하나로 함으로써 우부우부(愚夫愚婦)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한다.【천교(天敎)의 십계명에 흔들림 없는 하늘(不動之天)을 그 귀착점으로 여긴다.¹³¹ 이것은 거의 불교에서 설하는 외도(外道)¹³²로 보는 것과 같다. 그 교리의 취지는 열등하고 높지 않다. 이것을 깨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또한 담당관이 있을 것이다.】

¹³¹ 십계명의 하나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

¹³² 불교 외의 종교를 사교(邪敎), 사설(邪說)로 보는 것.

무릇 생사는 길흉이 판가름 나는 곳이라고 하지만 이것 모두 신의 결정에서 나온다. 이는 이승과 저승의 두 길이 모두 신명神明의 범위 안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금 죽음을 더럽다고 일컫는 것이 어찌 신명의 도가 아니겠는가.【죽음을 꺼리고 더러움을 싫어하는 것은 동방의 일종의 기풍이다. 즉 천지의 이치에서 나와 본방이 만국보다 훨씬 뛰어난 까닭이라는 것은 내가 「사설변」이란 책에서 논한 바와 같다. 그렇지만 신명은 천지의 주재자인데 이승만 알고 저승을 모른다고 한다면 아마 사리가 통하는 말이 아닐 것이다. 하물며 일과 권한을 구할 수 없고 사설(邪說)이 이로 인해 창광(猖狂)¹³³할 수 있게 됨에 이르러서야. 이것이 내가 이 논의를 제기하는 까닭이다.】

또한 교리가 인간 세상의 유명幽明에 대해 철저하고 사생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이 순수하다고 해도 그 세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이 천하의 대정大情이다. 나의 이 생각 역시 세태와 인정의 면에서 찾아낸 것이 있다. 식자는 그 정수精髓를 참작해서 반드시 그 마땅함을 헤아려야 한다.【상제(喪祭)의 일단(一端)을 가지고 이것을 논해보겠다. 예컨대 멸죄(滅罪) 의식 역시 집에서 불교의 힘을 빌리는 것 같은 것이다. 무색옷을 입은 존숙(尊宿)¹³⁴이 허다한 대중을 거느리고 인도하면서 손에 총채를 들고 입으로는 법어를 창한다. 대중은 이구동성으로 염불을 외면서 예찬한다. 종류 이상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유쾌해진다. 신직(神職)에 따라 옛 의식으로 하면 이를 꺼리고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긴다. 이름난 신을 모시는 대신사의 신직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무릇 신도가 사자(死者)를 다루지 않는 가법(家法)이므로, 세상의 인정은 이런 방식으로 신종(愼終)·추원(追遠)¹³⁵하는 데 여념이 없기에 이르렀다. 그런 점 때문에 불교를 받들면 편하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도요토미(豐臣) 씨·도쿠가와(德川) 씨 때에 예수교[耶蘇]를 금지하고 천하에 명령하여 불교에 귀의토록 했다. 종문(宗門)을 바꾸는 정치가 있어 이런 풍속을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 따위도 세상에는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신도로 훈민(訓民)하는 방법을 논의함에, 그 교리가 현세와 내세의 두 본원을 해결함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불교를 이길 수 없다. 하물며 형을 받아 죽은 예수[耶蘇]의 큰 권능에 대적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또 신도의 설에 신의 추한 눈이라 하거나 더러운 하국(下國)이라 한 저승을 귀천·선악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정하는 것 같은 것은 출척(黜陟)¹³⁶상에 있어서도 불분할 뿐만 아니라, 우부우부가 갈망하는 염원을 끊어버리는 것과 가깝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사생의 문제는 사람의 일신

¹³³ 미친 듯이 사납게 날뛰.

¹³⁴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 남의 본보기가 될 만한 승려.

¹³⁵ 신종은 상사(喪事)를 당하여 예절을 정중히 하는 것을 말하고 추원은 조상의 덕을 생각하여 제사에 정성을 다하는 것을 말함.

¹³⁶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올리어 씀.

상에 중대한 일인데 소홀히 했다. 그중에는 저승을 중시한 것이 있어 그 설을 비전(秘傳)이라 칭하면서 말하지 않은 것도 있다. 불교에도 있고 예수교에도 있어, 단지 이것으로 인심을 구하는 법을 설하고 권한을 떨치는 것이 타계(他界)의 세상인데, 오직 우리 신명의 도만 자신의 분내(分內)¹³⁷에 있는 것을 배척하고 버려 스스로 사람들과 단절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내가 조정을 위해 크게 걱정하는 까닭이다.】

무^戊 부전

이곳은 모두 작자의 사론私論이다. 내 부모의 영제靈祭¹³⁸에 신직神職에 의뢰한 것은 고대에 있을 리가 없다. 이 점은 지나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말하기를, 새로 신도를 수보修補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 아니고, 오로지 전수專修하는 방법이 더 시급하다고 한다. 오호 그렇게 되면 일과 권한이 조정에 돌아오지 않아 이는 국가의 장구한 계책이 아니다. 또 불교의 허구는 그 교리가 교묘하다고 해도 어찌 황천상제를 품고 있는 자의 실권에 대항할 수 있겠는가. 【덧붙여 기록한다. 이리하여 신도가 진기(振起)하여 크게 세상에 성행하게 되면 불교가 쇠퇴할 것임은 날자를 기약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그렇지만 대략 수십 개의 사찰을 남겨 쓸모없음의 쓸모를 기다려야 한다. 고삭희양(告朔餼羊)¹³⁹을 남긴 것은 예부터 있었다. 또 천년의 유산을 하루에 단멸(斷滅)시켜 크게 인심을 흔드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 일단 의견을 기록하여 후세의 현철(賢哲)을 기다릴 뿐이다.】

제9

본조는 본조 나름의 정교政敎가 있다. 그렇지만 정사政事는 정사이고 교법敎法은 교법이라서 정情이 나뉘고 세력이 격리되어 권력이 귀일歸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위를 멀리 떨치지 못한다.

¹³⁷ 자신의 신분이나 분수를 넘지 않는 범위.

¹³⁸ 불교의 법요(法要, 사자에 대한 공양)에 해당하는 신도의 추도의식.

¹³⁹ 설사 허례(虛禮)에 가깝더라도 해롭지 않은 것이면 그대로 보존해서 뒷날의 소용을 기다린다는 뜻. 『논어·팔일(八佾)』에 나오는 “자공(子貢)이 초하루를 고할 때 쓰는 희생양을 없애려 하자, 공자가 ‘사(賜)야! 너는 그 양을 사랑하지만, 나는 그 예를 사랑한다’(子貢欲去告朔之餼羊。子曰賜也、爾愛其羊、我愛其禮)’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모세[摩西]의 십계 전반은 신의 일에 속하고 후반은 인간의 도에 속한다. 신과 사람을 포괄하고 이승과 저승을 다 갖추었다. 이 종교 아래의 정치는 모두 여기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그 성위聲威는 천지를 진감震撼¹⁴⁰하기에 이른다. 【모세의 십계에 살인하지 말라는 글이 있다. 중국[漢土]의 정치가 사형(死刑)을 정하지 않은 그 원유가 여기에 기초한다. 그리고 그 기세가 사람이 나라를 압도하기에 이른다. 정교일치의 효과이다. 무릇 사형이 없는 것 같은 나라는 끝내 풍속을 더럽혀 살기가 사방에 이른다. 그리고 사형이 있는 나라는 그렇지 않음은, 이것은 하늘과 땅의 기괄(機括)¹⁴¹의 변화로 내가 말하는 이른바 천지가 거꾸로 가고 역류하는 것이다. 바라건대 식자가 그 이치를 밝혀 그 변화에 통달한 연후에 천하의 정교에 참여해야 한다.】

예수(耶蘇)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괴롭게 죽은 것으로 보여주는 것은, 흉사凶邪하고 상서롭지 못함은 일단 차치하고, 인심을 굳게 단결시키고 능히 생과사를 만들 수 있다. 천하의 허다한 종교를 연합해서 이것에 향해도 아직 저항해서 싸우기 쉽지 않다. 이것을 총괄하면 아시아[亞細亞] 전역의 기풍은 고결하고 상서로워서 자애를 베풀며 가엾게 여긴다. 【본조는 신명의 기풍으로 고결하고 중국[漢土]은 성현의 말이 상서롭다. 불교는 이 둘에 비할 수 없다고 해도 그 뜻이 자애롭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잃지 않는다. 모두 풍기(風氣)의 자연(自然)에 의한 것이다.】 정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歐羅]은 그렇지 않다. 그 도는 사뭇 본지로 한다. 예수의 괴로운 죽음을 궁극이라고 하는 것에서 풍기를 엿볼 수 있다. 【「사설변」 책에서 이것을 논한 것이 상세하다.】

무릇 천하의 이치는 정교이 능히 사뭇을 이기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지만 천년의 변화로 사가 정을 압도한다. 상하 수천 년 동안 그 자취를 또렷하게 기록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정으로써 사에 대응한다. 그 방법을 얻지 못하면 절충折衝·어모禦侮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 있다. 무엇으로 이것에 대비할지 모르겠다.

우리에게 전해진 신명神명의 말은 신전神典에 실려 있다. 그 말이 현묘하고 심원하다 해도 모두 인간 세상의 강상綱常·이륜彝倫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한 것임

¹⁴⁰ 울려 흔듦.

¹⁴¹ 쇠뇌[鑿]의 어금니와 화살의 뾰족한 끝을 이르는 말로 사물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의미한다.

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을 정선精選해서 받들어 황가皇家 정교政敎의 기본으로 하고, 신관이 그 교를 펴고 정관政官이 그 정치를 펴므로써 우리나라의 보전寶典을 이루어 백성과 더불어 지킨다면 일조가 될 것이다.

저들의 십계는 이것을 계천입극繼天立極¹⁴²의 초에 설하여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고사故事를 만든다. 그 공효功效에 민첩함과 우둔함의 차이가 있는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또한 뒷날의 계획이다. 나라에서 마침내 신과 사람을 포괄하고 이승과 저승을 겸비해서 만국에 반포해도 부끄럽지 않는 헌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이 글이 완성되면 반드시 만고토록 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중외(中外) 우열의 결판은 이 글에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중요성을 내가 감히 자부하지만, 십여 년 전의 이목과 정신이 아직 심히 시들고 쇠하지는 않았다. 두상(竇)143이 “한가에서 봉선144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여145가 병들기 이전이라야 한다(漢家若欲論封禪 須及相如未病時)”고 읊은 정(情)이 없지 않다. 그리고 지금이 이와 같다. 그 인물을 기다릴 뿐이다.】

이를 요약하면 운조運祚¹⁴⁶의 장단·강약은 오로지 건국의 모습에 관여한다. 이 책은 곧 국체의 증좌證左이다. 이를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를 아는 자가 아니다.【나는 말한다. 아메노미카누시노미코토(天御中主命)를 섬겨야 한다고, 이는 국체의 성취이다. 유명(幽明)·사생의 두 본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이것은 신도의 성취이다. 그리고 정교의 성취는 오로지 이 책에 달려있다고. 세상에 장차 식자가 있어 내 말에 수긍하기 바란다.】

십자가 위의 괴로운 죽음을 보여주는 요결要訣에 비해 우리 동방의神明은 강의剛毅·웅무雄武¹⁴⁷하며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치욕을 무겁게 여긴다. 이것은 고유한 정기正氣이다. 저들은 사뻐로써 하고 우리는 정正으로써 한다. 이미 천

¹⁴² 하늘의 뜻을 계승하여 제위에 오름.

¹⁴³ 당나라 시인으로 저서에 『두씨연주집(竇氏聯珠集)』이 있고 『전당시(全唐詩)』에 21수가 수록되어 있다.

¹⁴⁴ 봉(封)은 태산 위에 흙으로 단을 쌓고 하늘의 은공에 보답하는 제사를 말하고, 선(禪)은 태산 아래 작은 산의 땅을 깨끗이 쓸고 땅의 은덕에 보답하는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¹⁴⁵ 중국 전한(前漢)의 문인인 사마상여(司馬相如)를 말한다. (B.C.179?~B.C.117). 그의 사부(辭賦)는 한(漢)·위(魏)·육조(六朝) 문인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그가 임종 직전에 지은 봉선문(封禪文)에 의거해서 한 무제(漢武帝)가 태산에 가서 봉선을 행했던 유명한 고사가 있다.

¹⁴⁶ 천운. 천운을 받아 제위에 오르는 것.

¹⁴⁷ 용감하고 강함.

하의 기본을 확립하고 또 천하의 인심을 하나로 화합했으니, 육합·팔황 사이에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자가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성주聖主에 달려 있다.【피차의 강약은 군사력 때문이지만 일에는 원류가 있다. 우리의 신성한 건국 모습은 만국에 초출(超出)¹⁴⁸하는 것이 있다. 더구나 무마(撫摩)·도야(陶冶)하면 그 세력을 만회할 수 있다. 요컨대 정교의 근본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나의 주장은 근본을 논하는 것이다.】

위의 9조는 내가 일찍이 피차를 비교해서 살펴보고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교문제 한 가지를 상세히 기술했다. 무릇 금일의 정세는 우리가 저들을 아우르지 못하면 저들이 바로 우리를 노릴 것이다. 그 형세는 지자知者를 기다려 알 일이 아니다. 무릇 지금의 교의敎義는 구정九鼎¹⁴⁹의 경중과 관계되는 바, 일이 작은 탈이 아니다.

그 때문에 나는 이것을 논하여 동서 강약의 세가 원인이 있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조금도 저들을 ‘옳다’고 하고, 스스로를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교활하고 영리하게도 능히 인심을 단단히 모아 타국을 위력으로 굴복시키기에 이른 것은 그 원인이 있어 그렇게 된 것이다. 무릇 바르지 않으면 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을 바르게 해야 한다.

세상의 논자는 혹은 교의를 가리켜 쓸모없는 것이라 하고, 심지어는 나라에서 천교祔敎를 받은 연후에 군민君民이 배개를 높이 베고 잠잘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저들의 교권敎權이 웅장함을 특히 모르는 것이다. 그 세력은 천지를 흔들기에 충분하다. 그 종교가 한번 나라에 들어오면 곧바로 종사宗社가 경복傾覆하고 군부를 업신여기며 짓밟는다. 감히 바란다. 당초 몸을 감추었다고 하는 오미카미大御神을 있는 힘을 다해 신의 손을 이와토巖戶¹⁵⁰에서 꺼내어 원래대로 되돌려서 받들고, 스메미마노미코토皇御孫¹⁵¹가 알려주신 나라의 존엄한 위세

¹⁴⁸ 다른 사람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¹⁴⁹ 중국 하(夏)나라의 우왕(禹王) 때에, 전국의 아홉 주(州)에서 쇠붙이를 거두어서 만들었다는 아홉 개의 술. 주(周)나라 때까지 대대로 천자에게 전해진 보물이었다고 한다.

¹⁵⁰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가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의 난폭함에 노하여 동굴에 숨었다는 전설의 무대.

를 지구 끝까지 떨치고, 이어서 차례로 생겨난 신들의 양언揚言을 가지고 정교의 큰 기초를 정하기를. 무릇 이 오미카미는 비로소 천지태초부터 있으시고, 총막 무짐沖漠無朕¹⁵²하지만 적연寂然하여 하는 일이 없는 중에 삼라만상을 전부 갖춘 천지와 신인神人の 첫 번째 근원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도는 이 신이 결여되어 여러 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기록한 책에도 유독 이 신을 신지 않았다. 무릇 교사郊社¹⁵³의 예를 천하에서 중시했음을 한적漢籍에서 찾아보면 천백뿐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천하의 결전缺典 중에 이것보다 큰 것은 없다고 몰래 생각한다. 또 일찍이 몰래 중외의 책을 비교해서 고찰하니 한적에서 말하는 황천상제는 곧 우리가 말하는 아마쓰天津의 황조대신皇祖大神이다.【곧, 3주(三株)의 대신과 이자나기대신 등이 이것이다.】 소위 태상진군太上眞君 등 음양가에 의해 숭배되는 것은 우리의 소위 오쿠니누시노오카미大國主大神을 비롯해 모두 명부冥府를 알려주시는 신들을 말하는 것이다.【불교에서 설하는 제석(帝釋), 사천(四天) 역시 우리가 황조신명을 지칭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천교天教의 소위 야훼는 그 말과 그 책에 의거하면, 곧 우리가 말하는 아메노미카누시노오카미天御中主大神이다. 땅이 만리를 떨어져 있어 칭호가 동일하지 않지만, 하나의 천지간에 신의 근본은 동일하고 둘이 아님은 전혀 의심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신은 피차의 구별 없이 천지태초의 대신으로 저들에게 계시고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만 그 조상이 유래된 곳으로 여겨 이것을 제사지내고 받드는 예禮가 없다. 그런즉 저들의 교조가 설하는 법은 사설邪說이지만 의거하는 신은 능히 천지의 근원에 도달하는 것이 이와 같다. 그리하여 찬란한 대신大神이 저들의 교조에게 멸시받는다.

방금 황운皇運 유신維新的 시기에 신의 제사도 오나오라이大直會¹⁵⁴때에 맞추어,

¹⁵¹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자손.

¹⁵² 지극히 고요하여 아무런 조짐이 없는 상태로, 정이천(程伊川)이 “총막무짐한 가운데 삼라만상이 갖추어져 있다(『근사록(近思錄)』)”라고 하였다.

¹⁵³ 천자가 교(郊)에서 상제에 제사하는 교제(郊祭)와 사직단에서 사직신에 제사지내는 사직제.

¹⁵⁴ 나오라이(直會)는 신사에서 제사가 끝난 후 공물인 술과 음식을 함께 마시는 잔치.

당초 숨기고 있던 (대신들의) 몸이든 영靈이든 재앙이나 더러움을 없애주는 신에게 그 더러움을 씻도록 하여 과호지풍科戶之風¹⁵⁵으로 깨끗하게 날려버리고, 눈부시고 유쾌하고 즐거운 황대어국皇大御國¹⁵⁶ 신사들에 진좌鎮坐¹⁵⁷토록 하여 교제郊禘¹⁵⁸의 예를 행하면 저절로 치국治國이 아주 쉽게 되어 황운의 영광이 이보다 더한 성전盛典은 없을 것이다. 한번 나타나고 한번 숨는 신명이라고 하지만 꾀할 수 없는 천운이 순환하여 반드시 돌아오는 이때에 이 신을 여기에 나타나게 해 호천昊天에 흠약欽若¹⁵⁹하시는 것이 어찌 성왕聖王이 나타난 천고에 드문 한때가 아니겠는가.

왕고에 대소 두 신이 외토外土를 경영하고 일이 이루어지자 본토로 돌아와 진좌했다. 오아라이大洗·사카쓰라酒列 신사가 이것이다.¹⁶⁰ 예로부터 이런 사례도 있어 국사에 실렸다. 불교가 처음 나라에 들어올 때 구니쓰카미國神¹⁶¹가 그 상서롭지 못함에 대해 진노하신 것은 번신蕃神¹⁶²을 공경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무릇 이 오미카미大御神는 즉 우리 황조皇祖의 대신이다. 천지에 걸쳐 한없이 존귀한 대신으로 번신이 아니다. 황운이 진흥하는 금일에 참으로 능히 이 대신을 팔백만 신들의 신사에 진좌할 수 있으면, 겨우 이 일거로 선천과 후천 둘 다 차지하고, 도가 대본大本을 빠트리지 않고 나라가 대의大儀를 잊지 않는다. 안으로는 인심을 하나로 하고 밖으로는 외토를 교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를 잡고 백을 폐하지만 우리는 본말 둘 다 잡는다. 지극한 공정함으로 사설邪說을 꾸짖기에 족하다. 또 천하의 수많은 사당을 아울러 이 대신의 사당으로 한다. 이것은 팔백만의 신사神祠를 천지간에서 보호하는 방략이다.

¹⁵⁵ 죄악과 불결을 날려버리는 바람.

¹⁵⁶ 황국의 경칭.

¹⁵⁷ 신령이 그 자리에 임함.

¹⁵⁸ 천자가 남쪽 교(郊)에서 하늘에 올리는 제사 이름.

¹⁵⁹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경순(敬順)과 같은 말.

¹⁶⁰ 이바라키현(茨城縣)에 있는 오아라이이소사키신사(大洗磯前神社)와 사카쓰라이소사키신사(酒列磯前神社)를 말한다.

¹⁶¹ 일반적으로 아시하라노카쓰쿠니(葦原中國)에 있는 토착 지신을 말한다.

¹⁶² 외래의 신.

방금 요사妖邪한 것이 해외에서 압도해와 그 칼끝이 매우 예리하다. 편안히 하
루를 보낼 수 없다. 나는 이 염려를 마음에 담은 지 오래되었지만 몸은 이미 한운
야학閒雲野鶴¹⁶³으로 자거自居하니, 너희들이 내 대신 건언하여 황방皇邦을 빛내
고 황기皇基를 공고히 함으로써 황유皇猷와 황풍皇風을 대해의 만리 밖으로 펼치
는 큰 원류를 열기를 요한다. 성스러운 천자가 위에 계시면서 언로를 활짝 열어
놓고 천하의 선비를 기다리신다. 나는 너희들에게 죄주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 글을 약간 기록하여, 이것을 집에 간직하고 자손에게 줌으로써 이 뜻
을 이루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겨우 그 대략일 뿐이다. 만약 이것을 윤택潤澤하게 하려면 이를 담당
할 관리나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고기를 잡고 뿔나무를 하는 무리가 마땅히
의의擬議¹⁶⁴해야 할 일은 아니다.

메이지明治 기사기(1869년) 여름날 나가사키[崎壘]의 이름 없는 나무꾼이 도
묘산東明山 산중의 작은 초사草廬에서 적다.

보천록을 짓고 뒤에 적는 글[著補天錄題後]

하룻밤 청등 아래서 말을 대신해 적노니/一夜青燈筆代唇

천근·월굴에 경륜을 허비했다네/天根月窟¹⁶⁵費經綸

고심해서 책을 완성하니 도리어 웃음거리가 되네/苦心書就還嘲笑

창생을 얘기하지 않고 귀신을 얘기한 것이네/不語蒼生語鬼神

전구轉句¹⁶⁶는 “글이 완성되었으나 우원하여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었네(書成謾自
嗤迂遠)”로 다시 짓는다.

¹⁶³ 한가로운 떠도는 구름과 들에 노니는 학이라는 뜻으로, 아무 매인 데 없는 한가로운 생활로 유유자적하는 경지를 이르는 말.

¹⁶⁴ 여러모로 헤아려 그 가부(可否)를 결정함.

¹⁶⁵ 천자·음양의 이치.

¹⁶⁶ 한시(漢詩)의 절구에서 제3구를 이르는 말.

후기[書後]

나는 보천록을 저술한 다음 집에 보관하였다. 집안의 자제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자제가 우연히 이 책을 읽고 그 대의를 객홀에게 말했더니, 객이 발난¹⁶⁷하여 말하기를, 그 주장은 좋으나 다만 사람들의 자취를 자세히 다루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 돌아갈 때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렇지만 관중^{管仲}이 늙은 말을 다룬 지혜¹⁶⁸는 관중의 지혜가 말보다 뛰어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관중이 상지^{上智}인 것은 말의 지혜를 이용한 데 있다. 실로 못사람의 의표를 찔러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봉쇄가 오래되어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저들의 지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천하가 모두 이와 같았다. 너희들 역시 무릇 군사^{軍事}를 통해 보지 않았느냐. 우리는 처음에 무武의 나라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했는데, 자물쇠를 풀고 빗장을 열기에 이르러 그 기에는 서로 우열이 있었다. 우리의 것이 저들을 다 이기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사정은 대적해서 싸울 정도는 아니다. 즉, 우리가 이긴다고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저 신명^{神明}의 도 또한 우리만 옳다고 여기는 바라서 이 사이에서 행해져야 함은 이 때문이다. 시험 삼아 바다를 건너가서 신명의 도를 설한다면 저들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은 장차 외연^{巍然}히 사방에서 존송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비유해서 설한 것은, 저들을 말^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지 저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객에게 듣고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용인^{庸人}이다. 나는 세상에 용인이 많음을 오직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그 말을 또 후기에 기록해서 다른 사람이 제발^{題跋}을 달지 못하게 하고 비밀로 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경오^{庚午}(1870년) 9월 길일에 죽원^{竹院}에서 쓰다.

¹⁶⁷ 따져 묻고 비난함.

¹⁶⁸ 『한비자(韓非子)』 「설림(說林)」에 나오는 고사로, 관중이 제(齊) 환공(桓公)을 모시고 고죽국(孤竹國)을 정벌하고서 돌아올 때 중도에서 길을 잃자, 늙은 말을 풀어놓고서 그 뒤를 따라가 길을 찾았다고 한다.

보천록을 가지고 와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아메노미나카누시노오카미天御中主大神를 받들어 제사 지내는 목적은 비판할 것이 없다. 다만 국사國史·구설舊說을 오해했다고 생각되는 곳 약간에 대해서는 부전을 붙였다. 한 장님[一盲]이 못 장님[衆盲]을 속이는 것을 우려하는 노파심 때문이니, 살펴본 제현諸賢 역시 생각을 말해주시길.

신미년(1871) 정월 23일 외무경 적음

27 12월 초하루 일자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의 내신來信

러시아[露西亞]인 남하의 모습에 관한 건

매우 추운 때이지만, 경卿·보輔 양공兩公을 비롯해 여러분께서 더욱 힘써 노력하시니 축하해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관小官들의 한국 도착 및 훈도訓導를 면회한 과정 등은 지난달 6일 자 서한 중에 대략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 후에 계속 교섭을 촉구했는데 훈도의 병환이 완쾌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직 관소館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훈도가 실제 병에 걸린 것이 틀림없다는 말과 함께, “지난달 (소관들이) 표착漂着한 당포唐浦에서 그곳의 지방관이 문정問情할 때, 외무성에서 보낸 관원이 배에 탄 사실을 알려두었기 때문에 그곳의 지방관도 조속히 수도首都에 내계內啓했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지난 한 달 동안은 수도에 왕복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 아무튼 이달 상순에는 훈도의 병환도 완쾌되어 관소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즈하라번 번사藩士들이 내평內評하고 있습니다.

一. 러시아[魯西亞]에 관한 것은 이즈하라번嚴原藩에서도 이전부터 탐색을 등한히 하지 않았고 올봄 관원이 도향한 때에도 종종 탐색했지만, 사정事情을 엄하게 비밀로 하는 나라라서 그 종적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내주신 신문지 중에 한민韓民이 도망한 기사가 있어, 각별히 신중하게 탐색하도록 했는데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가 별지와 같이 보고하므로 서둘러 말씀드립니다.

괘지掛紙

해의 신문 중의 이 조항의 원본을 첨부하여, 이 우라세의 대화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두어야 함.

처음부터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미 온성穩城에서 볼 수 있는 장소까지 다 가온 모습이니 묘당廟堂에서 회람하시고 심모원도深謀遠圖하십시오. 만약 한국에 큰일이 생기면 이는 곧 황국의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나라의 교제는 가능한 빨리 종전의 목적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즈하라번과 협동하여 진력할 생각이지만, 이러한 형세에 대해서도 또한 평의하실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一. 이전의 서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역異域에 체류하고 있어 만사를 들을 수 없는 사정을 살피시고 신문 혹은 일지나 관원록官員錄 등을 때때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의 조목들에 대한 귀의貴意를 얻고자 말씀드립니다.

12월 1일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외무성 귀중 貴中

11월 25일, 한인 韓人 이의일 李宜逸이라는 사람은 이전부터의 교정 交情이 있어 대면하였다. 서로 옛정을 펼치는 중에 문답한 상황을 아래에 말씀드립니다.

문: 이번에 도쿄에서 신문지를 봤는데, 귀국 북쪽 경계의 땅을 다른 나라 사람이 개척하고 가옥을 건립하여, 이미 귀국의 빈민 수 백 명을 불러들여 무육 撫育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정말로 깊은 뜻이 있는 일이라서 몰래 귀국을 위해 탄식하는 바입니다.

답: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은 그럴만합니다. 함경도 온성 穩城 이북에 흑룡강 黑龍江¹⁶⁹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북쪽의 경계는 이 강이 한계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강의 건너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차차 건물을 지어 온성에서 멀리 보면 높이 솟은 것이 많이 보입니다. 이 큰 강이 어는 때는 보행도 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 가을에 흉년이 들어, 온성 근처의 여러 마을에서 굶주림에 허덕여 망명한 4,5백 호가 큰 강을 건너 저들에게 투신 投身했다 합니다. 이 땅은 청국의 경내 境內이기 때문에 위의 자들을 돌려보내줄 것을 청국에 상서 上書했는데, 그 회답에 “본국의 제독과 협의하여 돌려보내도록 조치했으니 그쪽에서 인솔할 자를 파견하고, 더욱이 패려 悻戾¹⁷⁰하게 대하지 말고 온순하게 취급하라”는 것이어서 이미 올해 2월 14일에 관리가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수 백 명의 사졸을 거느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문: 내밀히 말씀하신 취지는 신문지 내용과 부합합니다. 끝내 귀국의 외환 外患이

¹⁶⁹ 두만강을 흑룡강으로 오해한 것 같다.

¹⁷⁰ 언행이나 성질이 도리에 어그러지고 사나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위의 다른 나라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망명한 사람들은 이미 이상 없이 되돌아왔습니까?

답: 다른 나라 사람은 노안서魯安西(러시아[魯西亞]일 것이다)라 부르고 여진의 속국이라 합니다. 망명한 사람들의 그 후의 상황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문: 그대는 북쪽 경계의 지리에 정통한데 함경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답: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의 친족인 사람이 울봄에 함경도에 가서, 이미 외국 사람의 가옥도 멀리서 보고, 군졸이 강을 건너는 것도 구경하고 왔기 때문에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까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서울에서는 온성 부근의 방어 방법에 대해 꽤나 시끄러웠다고 들었습니다.

문: 후룡강 이북에 다른 나라 사람이 소굴을 이룬 땅이 청국의 영지인데 무엇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둡니까?

답: 이 땅은 청국이 저들에게 사방 몇십 리인지를 잘라주었다 합니다.

이상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

28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 외무성의 공신公信을 송달하기 위해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주는 글

신미년(1871) 2월 7일 도착¹⁷¹

11월 6일자 귀한貴翰이 도래하여 이즈하라嚴原에서 발선發船한 후 수십 일 동안 표류하여 11월 3일 그곳에 도착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동설한 중

¹⁷¹ 외무성에 도착한 날짜를 의미함.

에 매우 힘써 일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쿄에서 출발하실 때 서류 상자와 유지油紙 등을 챙기지 못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기에 맨 나무로 만든 서류 상자 10개, 유지 20매를 이번 배편으로 보내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답합니다.

경오년(1870) 12월 7일 나가사키현長崎縣
조선에 출장한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님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님

29 나가사키현長崎縣으로부터 조선에서 온 공신公信을 첨부하여 외무성에 보낸 글

별지로 왜관 출장 관원들이 전해줄 것을 의뢰하여 진달進達합니다. 이상.

경오년(1870) 12월 13일 나가사키현長崎縣
외무성 귀중貴中



국역

조선
사무서
(2)

제 7권

7

조선사무서 제7권

메이지明治 4년(1871) 정월부터 3월까지

01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제출한 조선의 새 소식

오시마大島 대부大夫가 귀국한다는 설(사실이다), 또 특별히 비밀스런 일이 많아 왜관에 건너온 것으로 보인다. 공무로 왔다고도 전해 들었다. 이 일은 도쿄東京의 움직임¹과 관련하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지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

별책은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대리인으로 삼은 구스 준楠潤이 지참하여 외무경 저택에 가서 배알하고 제출할 예정이었는데, 만나지 못하여 봉서封書로 제출한 것임.

신미년(1871) 정월 8일

¹ 외무성 관리의 조선 파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1월 25일이 개시開市³라서 상역商譯³들의 부하로 근무하는 이의일李宜逸이라는 사람이 이전부터의 교정交情이 있어 내방하였다. 대면하여 서로 옛정을 펼치는 중에 문답한 상황을 아래에 말씀드립니다.

문: 이번에 도쿄에서 신문지를 봤는데, 귀국 북쪽 경계의 땅을 다른 나라 사람이 개척하고 가옥을 건립하여, 이미 귀국의 빈민 수백 명을 불러들여 무육撫育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정말로 깊은 뜻이 있는 일이라서 몰래 귀국을 위해 탄식하는 바입니다.

답: 그 일은 그럴만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함경도 온성穩城 북쪽에 흑룡강黑龍江⁴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북쪽의 경계는 이 강이 한계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강의 건너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차차 건물을 지어 온성에서 멀리 보면 높이 솟은 것이 많이 보입니다. 강이 얼면 걸어서 통행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 가을에 흉년이 들어 온성과 근처 마을에서 기아로 망명한 백성 4,5백 호가 강을 건너 저들에게 투신投身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청국의 경내境內이기 때문에 위의 자들을 돌려보내줄 것을 청국에 상서上書했는데, 그 회답에 “본국의 제독과 협의하여 돌려보내도록 조치했으니 그쪽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데려가고, 더욱이 패려悻戾⁵하게 대하지 말고 온순하게 취급하라”는 것이어서 이미 올해 2월 14일에 관리가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수 백 명의 사졸을 거느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문: 내밀히 말씀하신 취지는 신문지 내용과 부합합니다. 끝내 귀국의 외환外患이

² 본 영인본에는 이 제목이 누락되어 있는데, 외교사료관 소장의 『조선사무서』[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B03030165300]에 의거하여 보완했다.

³ 무역상인의 성격을 지닌 역관.

⁴ 두만강을 흑룡강으로 오해한 것 같다.

⁵ 언행이나 성질이 도리에 어그러지고 사나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위의 다른 나라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망명
한 사람들은 이미 이상 없이 되돌아왔습니까?

답: 다른 나라 사람은 노안서魯安西(러시아[魯西亞]일 것이다)라 부르고 여진의 속
국이라 합니다. 망명한 사람들의 그 후의 상황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문: 북쪽 경계의 지리에 정통하시네요. 혹시 함경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답: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친족이 울봄에 함경도에 가서, 이미 외국 사람의 가
옥도 멀리서 보고, 군졸이 강을 건너는 것도 구경하고 왔기 때문에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까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서울은 물론 온성 부근의 마을까지 방어 방법에 대해 꽤나 시끄러웠다고 들
었습니다.

문: 후룡강 이북에 다른 나라 사람이 소굴을 이룬 땅이 청국의 영지라면 무엇 때
문에 그대로 방치해둡니까?

답: 이 땅은 청국이 저들에게 사방 몇십 리인지를 잘라주었다고 합니다.

02 초량관草梁館에서 소 씨宗氏의 옛 관리가 외무성 관원에 제출한 의견서

「조선과의 용건에 대한 쓰시마 관리들의 견해를 왜관에서 외무성 관원에게
제출한 글」

조정 일신을 통지하는 건은 저 나라가 아직 그 요령要領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
되이 세월이 흘러 불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정이 신의를 관통하는 방법으
로 어디까지나 온유穩柔한 태도로써 격렬하게 하지 않고 관대한 조치를 취하시
어, 교섭의 상황이나 기회에 따라 그들이 꺼리는 자구를 제거한 서계書契도 건네
줄 생각이다. 그러므로 위의 순서는 지금까지의 절차도 있으니 모쪼록 속히 진
척시킬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금도 숨김없이 제안하라”고 하여 매우 황송합니

다. 원래 이 건은 본 번本藩(쓰시마번)의 역직役職과 관계된 큰일이라서 지사知事を 비롯해 동서東西(도쿄와 쓰시마라는 의미)의 권權·정正 대참사大參事⁶ 및 이 용건의 관계자들도 지금까지 해온 상황에 대해 마음껏 논담論談을 다한 끝에, 지금에 이르러 사절의 불민不敏함은 말할 것도 없고, 미력한 한 번藩이 지금 다시 저 나라의 정태情態⁷가 완고한 실정을 새로 변백辨白하면 오히려 혐의를 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로지 지휘를 받들어 뜻하시는 바에 따라 진력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딴 고도孤島에 거주하여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다시 혼자만의 우매한 관견管見을 이것저것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큰 죄라서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 길을 잃으시는 경우에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하는 것을 혐의嫌疑하시는 것을 꺼리고 자기만을 돌보아, 느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불충이라 생각합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직접 말씀드린 의견을 문서로 적어 내람內覽하시라고 삼가 드리는 심서心緒⁸를 황궁하오나 양찰諒察하시고 불경한 점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길 오로지 바랍니다.

살피니, 한국과의 통교는 전후 400년에 이르고, 모든 교제 사항과 조목은 굳게 약정한 구전舊典을 따릅니다. 전례를 어기지 않는 것을 오로지 힘써 인호隣好⁹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주神州(일본)의 문명이 크게 열리고 일신日新하는 정체政體는 대활안大活眼으로써 해외 여러 나라에 응접하고 있는 것과는 그 의미에서 천양지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종전의 관계로써 고량考量¹⁰하면, 이번에 갑자기 관원이 출장하여 응접하도록 명령을 내릴 때, 지금의 태도로 하시면 매우 우원迂遠¹¹하여 차질이 생깁니다. (저들이) 주장을 이랬다저

⁶ 대참사(大參事, 다이산지)는 메이지 초기에 설치된, 지방관인 장관 다음의 관직이다. 1869년 판적봉환(版籍奉還) 후의 관제 개정에서 지사(지부사知府事·지번사知藩事·지현사知縣事) 아래에 정(正)·권(權)의 대참사를 두기로 정해졌다.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 이후 부현(府縣)에 참사 관직이 설치됨에 따라 대참사는 폐지되었다.

⁷ 사정과 상태.

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⁹ 이웃 나라와 잘 지냄.

¹⁰ 생각하여 헤아림.

했다 하거나 혹은 병을 핑계로 시일을 천연遷延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버릇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인순因循¹²을 참지 못하고 빈번히 절박하게 주장해도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연향宴饗¹³에 무리하게 참석하든지 또는 동래부에 밀어닥치든지 하는 시기에 임해서는 갑자기 불측不測의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분만憤懣¹⁴에 겨워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히 그러한 결말에 이를 때 그대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조정의 논의는 용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와 무위武威를 빛내시게 될 겁니다.

부전 1

관원이 연설演說한 것을 베껴

우리들이 임관任官¹⁵을 면담하는 것은 규정 밖의 일이라서 거절할 것임은 원래부터 미리 각오했으며, 가령 아무리 천연하더라도 연향 참석 또는 동래부에 밀어닥치는 조홀粗忽¹⁶한 거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성의·성심으로 어디까지나 온순을 다할 것이므로 다시 소요를 빚어 쌍방이 혼단弊端¹⁷을 여는 일은 결코 없다. 그러므로 양국의 인민이 도탄에 빠질 것이라는 것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다. 온후함을 토대로 하기에 그런 상황에 이를 리는 없을 터이다.

그러나 조정의 성의盛意¹⁸는 인교隣交¹⁹를 더욱 두터이 하여 이와 입술의 관계

11 방법, 태도, 생활 따위가 현실과 동떨어짐.

12 낯은 인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킴.

13 사절을 대접하는 잔치.

14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가득함.

15 훈도 등의 관리.

16 거칠고 소홀함.

17 틈이 생기는 실마리.

18 후의라는 의미.

19 이웃 나라와의 교제.

를 만세토록 유지하자는 고마운 주의主意로 나와, 지엽적인 일에 얽매어 구래의 인호가 무너지고 전쟁을 일으켜 양국의 인민이 도탄에 빠지고, 더구나 불화하는 중에는 가까운 곳에 원수를 두는 모습이 되어 성의誠意의 본뜻에 어긋나는 것은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본디 교제의 공법에 기초하여 입론立論을 세운 우리나라의 신실한 교제를 그들이 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치가 있고 그들에게 잘못이 있고 죄가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들이 (일본 조정의) 인호隣好하 시려는 본뜻을 자못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구字句의 문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험삼아 이것을 형제의 교제에 빗대어 얘기하면, 연장자인 형이 나이 어린 동생에게 천민天民의 선각先覺·후각後覺에 비교하여²⁰ 완고한 아우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주장할 때 형제의 정리情理 상 이를 일조일석에 방축할 수 없습니다. 장형長兄은 몇 번이고 금계禁戒²¹·교유敎諭²²하여 세상의 도리와 사정을 변별하도록 깨우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전 2

실로 완고한 아우를 깨우쳐주는 것 같다. 결국은 요즈음 세태世態의 정실情實도 깨달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도 10년 전 서양과 교제할 초창기에, 지금 단발·좌임左衽²³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그때는 모두 세상에서 양이가攘夷家라고 부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선왕先王의 구전舊典과 선규先規를 빈번히 고수하고 예

²⁰ 『맹자』 「만장(萬章)」 하(下) 편에 나오는 “하늘이 이 백성을 낳 적에 먼저 아는 이로 하여금 뒤에 알 이를 깨우쳐 주며, 먼저 깨달은 이로 하여금 뒤에 깨달을 이를 깨우쳐 주게 함이니, 나는 하늘이 낸 백성 중에서 먼저 깨달은 자라, 내 장차 이 도로써 이 백성을 깨우쳐 주리라(伊尹曰何事非君, 何使非民, 治亦進, 亂亦進, 曰天之生斯民也, 使先知覺後知, 使先覺覺後覺, 予天民之先覺者也, 予將以此道, 覺此民也)”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²¹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경계함.

²² 가르치고 타이름.

²³ 북쪽의 미개한 인종의 옷 입는 방식이 오른쪽 셔를 왼쪽 셔 위로 여몄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미개함의 상징적 표현이다. 여기서는 서양복을 의미한다.

외의 일은 응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죄가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태를 잠시 그대로 두면서 점차 성의를 다한다면, 오래지 않아 홀연히 초언草偃의 교화²⁴에 따라 진력하신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본디 인호하시는 곳에 이의와 곤란함을 제기할 까닭이 없습니다. 꺼리는 자구 때문에 용건이 지체되는 까닭이므로, 조정의 논의가 더욱 관대한 곳에 착안하시어 순치脣齒와 형제 관계, 인의隣誼²⁵로 친후親厚²⁶하는 것으로 나오신다면, 대수사大修使 서계 중에 그들이 꺼리는 자구를 약간 변통하고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의 관철에 주안을 두어 자구의 논란은 잠시 제쳐두고 일신一新을 알려야 합니다.

부전 3

한두 글자는 긴요한 글로 이것을 변통하여 개찬改撰하는 것은 국체에 관계됩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고 건너간 서계는 그들이 꺼리는 자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서계 개찬과) 대동소이大同小異이다. 그들의 간원懇願에 따라 자구를 변통 개찬하고 서계를 관철하여 사절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과 자구의 논란이 심해져 사절의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사절을 철수하는 것과의 경중을 국체와 관련하여 어떻게 보는가.

대수사의 진퇴는 모두 조정의 논의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지사知事 공公께서 미력이나마 대수사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조선과 교제를 구하는) 공무의 시작점이라서 (이 일에) 착수하는 절차와 공무의 논의를

²⁴ 바람이 불면 풀이 눕는 '풍행초언(風行草偃)'의 교화를 말한다. 『논어』 안연편(顔淵篇)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는다(君子之德風也 小人之德草也 草尙之風必偃)"고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²⁵ 이웃 사이의 정의情誼.

²⁶ 서로 친하여 정이 두터움.

추구하는 사정과는 약간 의미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급한 일은 임관과의 면담이니 어떤 방식이든지 속히 주선하시길 부탁하고자 함.

또한 앞으로 선린善隣 관계를 맺는 단서를 열어두시는 정도로 위의 수순을 진척시키고, 그다음에 양국 교제에 긴요한 사항의 조약 조항 등에 이르러 관원이 성심껏 반복해서 설유하여 강정講定하시는 순서로 한다면 참으로 온당하고 조리條理를 세울 수 있어 그들이 굳이 거절할 말을 내세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내밀히 들으시라고 의견을 올립니다. 적절히 취사取捨하시기 바랍니다.

03 한국에 있는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1월 10일자 서신

신춘新春에 길조吉兆라서 천리동풍千里同風²⁷입니다. 황상께서는 만안萬安하시고 성산聖筭²⁸을 더했습니다. 백관은 건승하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귀하들이 더욱 왕성하게 격지隔地에서 해를 넘기신 것을 참으로 축하합니다.

진술할 것은, 지난 12월 1일 작성하신 방목芳墨²⁹은 올해 1월 2일 나가사키로부터 도착하였으며, 11월 6일 작성하신 방한芳翰은 올해 1월 4일 오사카부大坂府에서 급편急便으로 보내와서 2통 모두 정확히 받았습니다. 경卿·보輔를 비롯해 그 관계자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도한渡韓한 것이 엄한嚴寒의 시기이고, 특히 폭풍으로 거의 33일 동안 매우 힘들게 고생한 것은 정말 두려웠으리라고 상상합니다. 그렇지만 천행天幸으로 지체없이 한국에 도착한 것은 조정을 위

²⁷ 천 리에 걸쳐 같은 바람이 분다는 뜻으로 세상이 잘 다스려져 평화롭다는 의미.

²⁸ 임금의 나이.

²⁹ 남의 글이나 편지의 높임말.

해 만족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멀리서 축하합니다.

- . 한국에서의 상황이 작년 봄 이래 바뀐 것이 없다는 것, 또 대원군[大殷君] 운운과 독일[獨逸] 선박 입항 후의 정상情狀, 관사館司 고라이즈쿠리高麗造, 番高麗造 건, 중국[支那]과의 교제가 진척되어 만족이라는 것, 그리고 「보천록補天錄」을 보내셨는데 이것 또한 모두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울러 혼도가 병이 든 사정 등 상세히 전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적魯狄(러시아) 상황도 신경을 쓰셨는데 이것 역시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 . 본방本邦의 형세를 아시고자 하는 취지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관원록과 일지 등을 회람하니 이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건 건은 아래에 말씀드립니다.
- . 지난 겨울에 민부民部·대장大藏 두 성省을 궁중宮中에 합병함.
- . 공부성工部省이 설치되고, 이 성이 관할하여 도쿄와 요코하마항[金港] 간 철도를 부설하고 있음.
- . 에치젠越前 유학생의 규칙을 정함.
- . 본 성省에 변무사辨務使를 설치하고 사메시마鯨島, 鯨島尚信 소변무사·모리森, 森有禮(통칭 긴노조金之丞) 소변무사 이하가 각각 항해함.³⁰
- . 야나기와라柳原, 柳原前光 님 이하는 (청국과의 수교 예비교섭에) 성공하고 귀국하여 포상함.
- . 히가시후시미노미야東伏見宮·가초노미야華頂宮 이하는 항해하고, 이토伊藤, 伊藤博文 소보少輔, 大藏少輔·구로다黒田, 黒田清隆 차관次官, 開拓次官은 유럽[歐洲]으로 감.³¹
- . 궁宮·화족華族의 녹제祿制를 개정함.
- . 복제·휘장을 개정함.

³⁰ 변무사는 1870년 윤10월에 설치되어 1872년 10월에 폐지된 공사의 칭호로 대·중·소 3등이 있었다. 사메시마는 영·불·독 3개국에 모리는 미국에 각각 파견되어 교제 사무 및 유학생 관리를 담당하였다.

³¹ 당시 이토 히로부미 대장소보는 개정과 화폐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으며, 구로다 개척차관은 미국과 유럽을 여행했다.

一. 보불전쟁普佛戰爭 결말의 새소식을 들음.

一. 모든 일반 사사령社寺領은 폐지함.

위는 『태정관일지』나 그 외의 서류로 요해了解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건

一. 지난 11월 23일 간다神田 나베초鍋町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족士族이, 이전부터 남교南校(난코)³²에 고용된 영국인 교사 달라스C. H. Dallas와 링A. R. Ring 두 사람에게 불시에 칼부림을 하여 (이들이) 이미 절명한 것처럼 보였는데, 치료와 요양이 철저했기 때문인지 일단 완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이래저래 고심한 것을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쯤은 위의 칼부림을 한 당사자를 아마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一. 지난 겨울에 분고노쿠니豊後國(현재 오이타현의 대부분과 후쿠오카 동부) 히타현日田縣³³에 여러 번의 탈변脫藩한 무사와 그 외 간민奸民이 가담하여 봉기[一揆, 잇키]를 기도하여 예사롭지 않은 동요가 있었지만, 일단 지금은 진정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부터 재차 신슈信州(현재의 나가노현) 나카노현中野縣(나가노현 북부)의 마쓰시로松代·스자카須坂 두 번藩의 관할지에서 토쿠土寇가 봉기했습니다. 이 역시 중대한 일로 아직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번에 군대 1개 대대 정도를 계속 투입하고, 또 순찰사를 파견하기도 한 상황이니, 이들 일들은 매우 쓰라리기 그지없습니다.

一. 12월 11일에 외무성을 가스미가세키霞ヶ関의 전 후쿠오카번福岡藩 구로다가黒田家 번저로 이전했습니다. 이 저택은 아시는 대로 장려壯麗한 높은 건물로 아무런 부족함도 없습니다. 여러 과課의 응접소 등도 충분히 갖추 수 있어 매

³² 메이지 신정부는 1869년 7월 막부 직할의 교육기관을 통합하여 ‘대학교’를 설립했다. 1869년 12월 대학교가 ‘대학’으로 개칭되면서 대학 본교의 남쪽에 있었던 옛 가이세학교(開成學校, 서양학 교육)는 ‘대학남교’, 동쪽에 있었던 의학교는 ‘대학동교’로 개칭되었다.

³³ 히타현은 1868년 부젠국(豊前国)과 분고노쿠니의 막부령(幕府領)·하타모토령(旗本領)을 관할하기 위해 메이지 정부가 설치한 현이다.

우 형편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 안에 洋·漢어학소도 설립하여 근일近日에 시행합니다. 사족과 졸족卒族, 그 외 그 자제들을 각각 교육할 계획이며, 이후 본 성의 쓰임에 쓸려고 설립한 것입니다.

一. 조약개정 건은 나카노中野, 中野健明 권대승·다나베田邊, 田邊太一 소승 등이 취급하여 각각 목표를 정할 것임. 그러면 다음의 편지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一. 고치번高知藩³⁴ 오바 겐지베大庭源二兵衛가 본 성의 주임奏任 출사出仕(쑤시)로 임명되고 전임 와타나베渡邊, 渡邊洪基 대록大録은 복관되어, 이 두 사람이 조약개정條約改正掛에 들어가 있음.

一. 가라후토柯太, 樺太, 사할린 건은 청국재류 러시아[露]공사가 귀국 도중(도쿄에) 들렀을 때, 소에지마副島, 副島種臣 참의 님·외무대보外務大輔, 寺島宗則 님과 담판한 끝에, 올해 여름에 양국의 전권대신이 포시에트까지 출장하여 담판할 예정이라고 저 나라 정부의 집정執政에게 서간을 보냈으므로, 이후의 결책決策·웅단雄斷은 이 또한 다음 편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사文書司³⁵ 3과는 계속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편집과에 많고 3과의 인원은 거의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중에 이시카와 이와시石川岩司, 나가이 반코쿠永井盤谷, 가토 가쓰조加藤活藏는 지난 12월 26일 면직되었습니다. 실로 본 성에서는 드문 진사珍事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一. 야마가타 고스케山縣狂介, 山縣有朋 병부소보兵部少輔에 임명되고 시시도 빈고노스케宍戸備後介, 宍戸 璣는 형부소보에 임명되어, 모두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一. 5개항장³⁶은 아무런 별 일도 없습니다. 저번에 섬에 불일이 있어 하코다테箱館로 출장갔는데, 홋카이도도 점차 개간 계획이 수립되고, 또 이곳의 산업도

³⁴ 도사번(土佐藩).

³⁵ 1870년 5월 7일에 설치된 것으로, 그 아래에 번역통변(翻譯通弁), 외교서한, 기록편집 등 3개 과가 두어졌다.

³⁶ 요코하마(橫濱)·고베(神戸)·나가사키·니가타(新潟)·하코다테(函館)를 말함.

점점 성대해지니 모쪼록 중국·조선과 무역을 왕성하게 하고 싶다는 취지로 그곳의 장관을 비롯해 관원들이 말했습니다.

- . 지난 11월에 야나기와라柳原, 柳原前光 님이 대승으로 승임하고, 마루야마丸山, 丸山作樂 님은 여러 차례 원하여 (대승에서) 권대승으로 강등되었으며 사다佐田, 佐田白茅 씨는 주임 출사가 됨.
- . 청국에도 올봄에 조약을 체결할 대사를 파견할 모양임.
- . 몇 해 전 터키[都尔兒]와 러시아[魯國]가 전쟁할 때, 터키 국경에 군함을 정박하지 못하도록 영국을 비롯해 유럽[歐洲]과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이 조약을 폐지하고 마음대로 군함을 정박하고자 러시아가 위압적으로 교섭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어찌 된 일인지 그대로 동의했다 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맹렬함과 독일[李國]의 위풍[威風]이 천하에 웅비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천년 동안 한결같았던 황국도 비상한 방법이 없으면 결코 안 됩니다. 아울러 이번에 한국에 출사出使한 귀하들의 노력을 특별히 희망합니다.
- . 별지 중에 오시마 도모노신大島友之進, 大島友之允이 경卿 공公에게 저번에 제의한 내용이 있으니, 유념하시라고 전합니다. 정말로 틀림이 없다면 사실 여부를 다음 편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판이 진전되면 (그 소식을) 전해주시길 오로지 손꼽아 희망합니다.
- . 어제 9일 히로사와廣澤, 廣澤眞臣 참의 댁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들어와서 동인同人에게 중상을 입히고 그 후에 사망한 일이 있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범죄인과 그 사정 등이 밝혀지면 다음 편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시게루茂, 森山茂 님에게 야나기와라 대승 님의 편지 1통을 보내니 틀림없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간행한 책자의 사본을 별지 목록에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받아보신 후 너그럽게 회답하시길 기다립니다.
- . 벽지에서 아직 추위가 남아 있는 때에 조야朝野를 위해 각별히 몸조심하시길 오로지 기원합니다.

위와 같이 알려드리는 사항들은 경·보·卿·輔를 비롯해 대승들에게도 보고하고
회답하는 것임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근언謹言.

신미년(1871) 1월 10일 작성

미야모토 메이宮本鳴

쓰쿠이 엔津久井遠

사다 나오히로佐田直寛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님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님

본문 외에 별도로 말씀드릴 것도 없기 때문에 상세히 알려드리지 않으니 양
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바야시 다다시小林匡 님께도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쓰쿠이 씨津久井氏
도 2,3일 전에 문서 소우少祐로 승임하여 서간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일에 사이토 료齊藤 사생史生이 권소록權少錄으로 승임하였습니다.

입기入記(별지)

-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丞가 제출한 일기 및 의견 운운한 서류 2책
- 분고豊後, 시나노信濃 등에서의 봉기 대의大意
- 관위와 성씨를 적는 방식에 대한 포고령의 사본
- 해외유학생 규칙 1책
- 사사령社寺領 토지의 상납을 명령하는 포고령 1책
- 요코하마에서 발행된 신문지 발췌
- 『태정관일지』(49호부터 55호까지, 41호)

— 『가이가이신문海外新聞』³⁷(30호부터 35호까지)

— 『직원록』³⁸(부·현府縣 직원록도 포함) 2책

— 해군휘장 2책

— 편지 5통

모리야마 시게루 님에게(야나기와라 대승으로부터)

모리야마 시게루 님에게(기리야마 효자에몬桐山兵左衛門으로부터)

요시오카 고키 님에게(사다 하쿠보佐田白茅로부터)

요시오카 고키 님에게(오쿠 요시노리奥義制로부터)

고바야시 다다시 님에게(오쿠 규타로奥久太郎로부터)

위와 같음.

신미년(1871) 1월 10일

이 외에

『외무성일지』

해외 관명의 번역 예例

³⁷ 1870년 7월 20일부터 1871년 8월 1일(51호)까지 도쿄에서 발행된 신문으로,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 등이 외국 신문을 번역해서 발행한 것.

³⁸ 직원은 관원이라는 의미.

04 히타현 日田縣 봉기의 대의 大意

히타현에 살고 있는 다지마 단스케 田島彈助·다지마 이치노스케 田島一之助가 급편急便으로 보내온 11월 14일자 서면의 대의 大意

- 어젯밤 낭사 浪士 모습의 5명이 히타현 마메다마치 豆田町에 숙박하고 있어, 그 관계기관에서 재빨리 체포하여 조사했는데, 도요쓰번 豊津藩 탈주자가 저번에 무릇 50명의 동지와 분고 豊後 기시마 壠島에서 회합하고 이날 14일에 이곳으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 베이 번 米藩(구루메번 久留米藩, 현재 후쿠오카현의 구루메시)에서 파발로 알리기를, 히고 肥後(현재의 구마모토)·조슈 長州(현재의 야마구치현)·구루메·도요쓰와 그 밖의 곳의 탈주자가 이날 14일에 히타현에 밀어닥쳐 방금 징수한 조세를 모두 탈취할 기도가 아닌가라고 한다. 이미 후쿠오카번 히코산 彦山과 가장 가까운 지쿠젠 筑前(현재의 후쿠오카현 서부) 고이시와라 小石原라고 하는 곳에 부랑자 5,6백 명이 둔 집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곳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나카쓰번 中津藩(현재의 오이타현 나카쓰시) 미즈시마 水島 대속 大屬이 변관 辨官에 올린 12월 3일자 서면의 대의

- 11월 11일에 구루메번에서 히타현에 사자를 보내 말한 취지는, 전 도요쓰번 탈주 부대는 이타쿠라 겐노 板倉源之丞·미야즈 구하치로 宮津宮八郎 등이 거괴 巨魁로 동지 2백 명과 구루메번 동지 2백 명을 규합, 오는 14일에 히타현을 습격하고 연공 年貢 미금 米金과 탄약을 조달해서 이웃 번을 선동하고, 교토와 셋슈 攝州(현재의 오사카부 북서·남서부 및 효고현 동부) 간의 동지와 통모하여 린노우지노 미야 輪王寺宮(닌코 仁孝 천황의 조카로 메이지 천황의 삼촌뻘인 황족)를 기슈 紀州(현재의 와카야마현과 미에현 남부) 와카노우라 和歌の浦에서 웅립하고, 국체 또한 일변하려는 책략이라고, 구루메번에 들어간 자가 정탐하였기에 알려드린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타다이北代 서무정庶務正·오쿠보대久保 서무권대우庶務權大祐가 신슈信州 가루
이자와輕井澤역으로부터 대 급편大急便으로 오키大木(오키 다카토우大木喬任) 민
부대보民部大輔·와타나베渡邊(와타나베 기요시渡邊清) 민부대승民部大丞에게 보낸
12월 27일자 서면의 대의

마쓰시로번松代藩(현재의 나가노현 남부) 및 나카노현中野縣의 토민들이 봉기와 폭
동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나쁘고, 스자카須阪·마쓰시로 두 번도
실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다. 특히 군대라는 것은 허약하여 조금도 지금
의 쓰임에 사용할 수 없다. 병부성에서 즉시 출병하고, 출병이 이루어지면 신슈
일원의 처리를 권대승權大乘에게 위임해주기 바란다고 운운했다. 최근 마쓰시
로·나카노 관내는 점점 비등하고 있으며 이나伊奈(현재의 나가노현 남부)·스자카도 마
찬가지이다. 전 신슈가 동요하는 조짐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스루가駿河(현재의 시
즈오카현 중부)·도토미遠江(현재의 시즈오카현 서부)·미카와三河(현재의 아이치현 동부) 3곳도
일시에 함께 봉기한다는 보고 등도 있다고 함.

나카노 현청에 보관하고 있던 여러 장부가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에 지리·조
세 양사兩司의 관원 2명 정도도 본사本司의 기록을 정리하고 급히 편집하여 출장
해주시길 원함.

05 관직에 있는 자들은 지금부터 관명·성씨·실명 순으로 서명하라는 명령서

관직에 있는 자들은 지금까지 성씨·관명 순으로 적어왔는데 앞으로는 관명·
성씨·실명 순으로 적을 것.

단, 관직이 없고 관위를 지닌 자들은 마찬가지로 관위·성씨·실명 순으로 적을
것.

경오년(1870) 12월

태정관

06 관직에 있는 자들의 평소 왕복문서는 이전처럼 약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명령서

관직 및 관위를 지닌 자들의 명칭은 지금부터 관명·관위·성씨·실명 순으로 쓰도록 하달하였지만, 평소의 왕복문서 등에는 지금까지처럼 약식을 사용해도 무방함.

단, 같은 성씨와 같은 관위의 자가 있으면 실명을 부가하여 구별할 것.

경오년(1870) 12월

태정관

2월 10일 요코하마에서 출판된 신문지 발췌³⁹

요코하마 외국 상사商社 중에서 조선 국민과 상업을 열기 위해 이 상사의 에이전트에게 상품을 지참시켜 조선국 수도에 보내려 했다고 들었다. 몇 년 전에 위와 같은 기도를 한 자가 있었지만 전혀 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07 쓰시마노카미對馬守로부터 외무성 관원과 면접할 것을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조회하는 글

일본국日本國 좌근위소장左近衛少將 쓰시마노카미對馬守 다이라 요시아키라平義達가 조선국朝鮮國 동래東萊·부산釜山 두 영공令公 합하閣下께 글을 올립니다.

봄이 한창인 때에 모두 평안하신 것을 멀리서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세 이후로 군국軍國의 정사

³⁹ 이 부분은 목차에 누락되어 있다.

를 모두 무문(武門)에 위임하면서 외교의 사무 역시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의 운이 크게 변하여 조정에서 친히 만기(萬機)를 결정하면서 서정(庶政)을 유신(維新)하였으니, 사방의 만국에서 예로써 오는 자들은 여전히 예로써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 대우하는 예전(禮典)이나 조약(條約)과 같은 일은 모두 외무성(外務省)의 소관이 되었습니다. 귀국과의 두터운 교린 관계는 이미 수백 년이나 되었으니, 그런 까닭에 외무대승(外務大丞)이 특별히 두 공(公)께 글을 보내 양국 심맹(尋盟)⁴⁰의 일을 도모하고자,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등에게 위임하여 두 공을 찾아뵙고 조정의 성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뢰도록 명하였던 것입니다.

근자에 얼핏 듣건대 귀국에서는 종전에 외무사원(外務使員)을 맞이한 전례가 없다 하여 준엄하게 거절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접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무릇 예례라는 것은 일에 따라 생겨나는 것으로, 자고로 그러한 일이 없는데 그러한 예가 먼저 있는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외무사원의 예가 없었으니 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체(政體)가 이미 바뀌어 외교의 사무를 외무성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귀국에 사절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성의와 신의를 표하는 것이 이치와 형세상 당연합니다. 어찌 심히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두 공께서도 또한 그 사원을 관대하게 맞이해주시고 그들이 진술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전례가 있고 없음을 끌어다가 거절하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무릇 인의(隣誼)를 공고히 하고 친호(親好)를 돈독히 하는 것은 양국의 복입니다. 만약 전례의 지엽적인 사항에 얽매어 이를 논함으로써 그 복을 잃게 된다면 어찌 좋은 계책이라 하겠습니까. 구구한 우려를 이길 길이 없어 감히 마음속에 담아둔 말씀을 진술합니다. 이렇게 지은 것을 잘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불선(不宣)⁴¹.

⁴⁰ 예전의 맹약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

⁴¹ 아직 쓸 말은 많으나 이만 줄인다는 뜻으로 편지 끝에 쓰는 말.

메이지明治 4년 신미(1871) 2월 일

좌근위소장 쓰시마노카미 다이라 요시아키라

08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내는 2월 5일자 서신

봄날의 따뜻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해지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서 더욱 다상多祥하심을 축하합니다. 이곳은 별로 바뀐 것도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래 오랫동안 체재하고 특히 뱃길이 불편한 외지고 먼 곳이라
서 만사가 자유스럽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오늘날의 시세에서 국가를
위해 더욱 분발하여 여러 해 동안의 갈등을 일시에 해소하길 희망합니다. 앞의
서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바뀐 것은 없지만, 별지의 요코하마橫濱에서
발행된 신문 중에 실린, 미국이 한국을 치려는 정황이 정말 절박한 상황임을 알
려드리기 위해 이를 전합니다.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울러 일지와 신문 등 몇 책을 또한 보내드립니다. 봄철의 따뜻함이 날로 더
해지지만, 아무쪼록 자애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경백敬白.

메이지明治 4년 신미(1871) 2월 5일 씀.

한국어용괘韓國御用掛

미야모토 메이宮本鳴

쓰쿠이 엔津久井遠

사다 나오히로佐田直寛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님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님

추신

- 一. 외무경 님을 비롯해 모두 무탈하니 안심하십시오.
- 一. 와타나베渡邊 형은 최근에 문서권정文書權正에 임명되었습니다.
- 一. 그 밖에 탄식할 일이 없지 않습니다. 멀리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09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조선 도착 이래의 경황을 진술한 2월 8일자 내신來信

지난겨울 윤10월 29일자 서한은 올해 1월 27일에 도착하여 잘 읽었습니다. 시하時下 신춘에 모두가 더욱 정성을 다하여 힘쓰시면서 봉직하는 것을 멀리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훈도의 입관入館⁴²을 이즈하라번嚴原藩을 통해서 교섭하고 변론을 다했지만, 지난겨울에 훈도는 병을 핑계로 한 번도 입관하지 않았습니다. 기실은 서울에 내밀히 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에 이르러 품의에 대한 회답이 내려왔는지 7일에 비로소 입관하여 가관사假館司⁴³ 난바 아사카難波安積를 면회했습니다. 이번에 외무관원이 외무경의 간절한 성의를 품고 심맹尋盟을 위해 도해했으니 마땅히 응접하시라고 완곡하게 얘기하도록 했는데, 별지 응접서 대로 저들은 오로지 선례를 굳게 지키면서 쓰시마對州의 조선사무담당자가 아닌 사람을 면담 하는 것은 거둬 사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관사가 재삼 논판論判⁴⁴하였지만 완고하게 예격론例格論을 주장하고, 또한 병이 재발했다고 전하면서 입관을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심정을 정탐했는데,

⁴² 훈도가 왜관에 가는 것을 '취관(就館)'이라 하였는데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훈도가 왜관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였다.

⁴³ 임시 관수를 이룸.

⁴⁴ 논의하여 옳고 그름을 가림.

저들이 임진의 역[임진왜란]에서 당했듯이 국력이 우리에게 대적하지 못함을 알고 공포심이 끊임이 없습니다. “만일 일본인이 기유覬覦⁴⁵하려는 생각을 품고 혹시 국력으로써 압도壓倒할지도 모른다. 그때에 이르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선례를 묵수하여 그 사원을 면접하지 않고, 오로지 쓰시마에 의뢰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묘책으로 삼는 바이기 때문에 결핍하면(문서의) 왕복을 오래 지체하거나 혹은 병을 핑계로 인순因循·지체함으로써 우리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정신이 지극하면 관철하지 못할 리가 없으므로, 저들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오랫동안 버티면서 간절히 설유說諭하여 저들이 품고 있는 의심을 풀어준다면 끝내 풀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27일에 일본 관사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가 왜관으로 건너오면서 지사·참사參事⁴⁶의 문서를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문서 중에 별지 건언서 대로 도쿄에 건의하였으므로 이를 유념하시라고 전합니다. 위의 지사 건언은 실로 정당한 확론確論이라고 생각되므로 신속히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채용한 다음에는 우선 소 씨에게 명하여 아래와 같이 저 나라 예조에 고지하게 하십시오.

즉, 무진년(1868) 조정에서 우리 번에 하명하여 대정유신大政維新을 귀국에 고지하고 양국 심교尋交⁴⁷의 방법을 주선하라고 분부했는데, 제[不肖]가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해 지금까지 4년이 되었지만, 조정의 성의를 귀국에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의 건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서정을 경장하시어 모든 해외 교제사무는 오로지 외무성이 맡아 종래 쓰시마[對州]와 귀국과의 통교 조례를 폐하고 다시 외무성에서 이를 관장하며, 만사를 공명정대 위주로 더욱 인교隣交를 두터이 하시고자 하는 생각이니, 귀국은 마땅히 그 뜻을 밝게 살피고 외무 관원

⁴⁵ 분수에 넘치게 야심을 품고 기회를 노림.

⁴⁶ 메이지 초에 각 부현(府縣)에 설치된, 장관 다음의 관명.

⁴⁷ 옛 교제를 새로이 하는 것.

을 너그럽게 대접하여 양국이 친호親好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섭하게 한다면, 저들은 일단 경악하겠지만 이미 설득할 방법을 잃어 선례와 옛 격식으로써 우리를 강제鉗制⁴⁸할 수 없게 됩니다. 가령 그때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치가 있는 바라서 형세상 승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기회를 타서 외무성에서 사교私交의 누습을 일소하고, 차래지식嗟來之食⁴⁹과 다름없는 세견선歲遣船 등은 단연코 폐지하여 만사를 공명정대하게 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인교隣交하시는 성대한 뜻을 보이고 은혜와 위엄을 병행하여 그 기회를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황위皇威를 한국에 붉게 빛낼 수 있으며, 바로 진구황후神功皇后가 남긴 공적을 이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지사의 건의는 비상한 호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디 소 씨의 사표를 (조정에서) 신속히 채용하시도록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오로지 희망합니다.

위는 전열譴劣⁵⁰함을 돌보지 않고 우견愚見을 토로하였으니 마땅히 조량照亮⁵¹하시길 기원합니다.

一. 이즈하라번嚴原藩은 종래부터 피폐한 끝에 조선과의 무역으로 번의 재정을 보충해왔습니다. 따라서 (조선과의) 교제를 (외무성에서) 회수한다면 눈앞에 번의 재정 부족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과 관련된 무역과 세견선 등의 이윤 부분을 별지에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위의 부족분을 대장성大藏省에서 급여하여 번의 재정을 세우고, 번의 상하가 황은皇恩을 감대感戴⁵²하도록 처분하시는 것은 비천한 관원이 감히 다언多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잘 헤아려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⁴⁸ 말에 재갈을 물린다는 뜻으로 자유를 구속하여 억누름을 이룸.

⁴⁹ 『예기(禮記)』 「단궁(檀弓)」 하편에 나오는 말로, “자, 와서 먹어라.”라고 하며 주는 음식이라는 뜻이다. 무례한 태도로 주는 음식을 말하며 모욕적인 대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⁵⁰ 재주와 학문이 없고 보잘것없음을 이르는 말.

⁵¹ 형편이나 사정을 살펴서 밝게 앎.

⁵²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여 높이 받들.

一. 그런데 이즈하라번의 처분에 대해, 방금 다단한 중에 대장성에서 이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한국의 지형과 물산 등을 자세히 관찰했는데, 친교가 성숙한다면 차차 통상사通商司⁵³가 손을 댈 산물도 많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게다가 개항에 뒤처진 (일본과 같은) 나라가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지금 만국 중에 우리가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이 나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즈하라번이 빈곤한 중에서도 얼마 안 되는 원금을 나가사키 상인 등에 빌리고 이자를 갚는 소무역小貿易조차 상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차차 정호情好가 친밀해진 다음 양국 인민이 공평한 상업을 전개하여 널리 전 한국과 유무상통有無相通⁵⁴하게 되면 막대한 국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위의 이즈하라번 회계의 부족분을 대장성에서 급여해주더라도 적게 지출하고 많게 거두는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별지 탐색서 대로 함경도 온성穩城과 칼 두께⁵⁵의 강 하나를 사이에 둔 북안北岸에는 러시아인(露人)의 군영이 연이어져 있고, 몰래 한국 빈민을 초무招撫⁵⁶하는 형세에 이르렀으니, 하루 빨리 한인韓人을 수복綏服⁵⁷으로 삼아, 그 손을 사용하여 황국의 울타리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로 손익의 다소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확고하게 평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신미년(1871) 2월 8일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외무성 귀중貴中

⁵³ 메이지 정부의 경제관청으로 1869년에 설치되었다. 1871년 폐지될 때까지 무역사무를 관리하였다.

⁵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함.

⁵⁵ 폭이 아주 좁다는 의미.

⁵⁶ 불러서 어루만져 위로함.

⁵⁷ 중국 고대에 경기를 중심으로 주위를 500리씩 나눈 지역의 하나로, 가까운 순으로 전복(甸服)·후복(侯服)·수복(綏服)·요복(要服)·황복(荒服)이라 불렀다.

10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의 쓰시마^[對州] 출범 및 초량왜관 도착 후의 일기

윤10월 23일

관원이 와니우리^{鰐浦}를 출범했으나 일기가 불순하여 울산 당포^{唐浦}에 협승^{脇乘}했다.⁵⁸

윤10월 25일

밤중에 당포를 출범했으나 풍파가 거세고 더구나 암초에 올라타서 매우 위태로웠다. 겨우 당포로 돌아왔다.

윤10월 28일

당포를 출범하여 오륙도 앞바다까지 통항^{通航}했는데 서북풍이 강하게 불어 왜관으로 가지 못하고 2,3일 동안 이곳에 정박했다.

11월 3일

풍파가 약간 잔잔하므로 전갈^{傳喝}을 통해 왜관에 알리고, (왜관에서) 급히 준비한 단선^{端船}⁵⁹을 보내와서 밤 8시경에 관원이 왜관에 도착하였다. 여숙^{旅宿}은 관사가^{館司家}에 마련하고 바로 상륙했다.

11월 6일

관원 여숙에서 공무를 논의했다. 대수사^{大修使} 정관^{正官}·관사·도선주^{都船主}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출장하여 논의한 결말은, 훈도 하래^{下來}⁶⁰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관원이 도해한 까닭을 얘기하면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관사 초대면^{初對面}

⁵⁸ 와키노리(脇乘)는 목적지 옆에 표착하는 것.

⁵⁹ 작은 배.

⁶⁰ 동래부에서 초량왜관으로 내려오는 것.

은 반드시 면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선풍이기 때문에, 그 일로 하래하도록 서면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시의時宜에 따라 답판해야 한다고 간전관幹傳官(통역) 두 명이 주장했는데, 관원들도 이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 하여 조속히 간전관 두 명이 훈도에게 급히 하래하도록 전했다.

11월 7일

도선주가 관원이 주거하는 곳으로 와서 용건⁶¹의 교섭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요시오카吉岡과 모리야마森山⁶²에게 설명했다, 타당한 것이어서 일동이 충분히 논의한 다음 회답하기로 함.

이날 모리야마가 대수사 정관에게 가서 정답을 나누던 중에, 오늘 도선주가 요시오카에게 내밀히 얘기한 사정을 진술했는데 (정관이 관원의) 의견과 수순을 그 자리에서 알고자 한다고 강하게 말하므로 (모리야마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개략적으로 내담內談했더니 (대수사 정관이) 매우 잘 이해한 것으로 보임.

11월 8일

모리야마가 어제 말한 것도 있어, 용건과 관계된 역원役員들이 오늘 대수사 정관 댁에 들리, 모리야마에게 (정관 댁에) 들어올 것을 전하여 (모리야마가) 오후에 나타났다. 그래서 어제의 절차에 따라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했다, 말로만 해서는 평의할 토대를 마련할 수 없으니 글로 적어 보내면 간담懇談을 다해서 회답하겠다고 함.

11월 9일

용건의 협상과 관련하여 도선주가 생각하는 바를 글로 적어 관사·도선주가

⁶¹ 여기서의 용건은 외무성 관원이 훈도와 회담하는 것을 말한다.

⁶² 원본은 '林'으로 되어 있는데 '森山'의 오기로 보인다.

관원에게 제출.

훈도의 하래를 그 관계자가 말해두었는데 (훈도가) 병이 있다는 회답서가 도래했다고 간전관이 얘기함.

11월 11일

관사와 도선주 두 사람이 함께 오도록 어제 관원이 하달하여 두 사람이 나왔는데, (관원) 3명과 함께 용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엇그제 제출해둔 문서의 회답은 주장한 대로 되지는 않음.

11월 13일

훈도의 하래를 또다시 재촉하는 서면을 제출해두었는데, 아직 병이 낫지 않았다는 회답이 도달했다고 간전관이 얘기함.

위는 이번에 전한 절차임.

관원이 도해하여 한인을 만나 논의하는 것 등을 처음부터 말을 꺼내면 반드시 임관^{任官}⁶³들도 내려오지 않을 것이므로, 관사가 초대면을 할 때 관원이 도해한 것을 임역^{任譯}⁶⁴에게 얘기하고 대면하는 것도 그때 관사가 설명할 것으로 생각함. 그런데 관원이 도해한 것은 이미 저 나라에서 알고 있으므로 필시 동래부사·부산첨사·임역들이 급히 서울에 계문^{啓聞}하고 서울에서 소식이 도달하여 뭔가 지시가 없는 동안은 훈도는 병을 핑계로 내려오지 않을 책략이라고 생각됨. 이것은 규정 외의 일이 있을 때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 같은 것임.

⁶³ 훈도와 별차.

⁶⁴ 훈도와 별차 등의 역관.

11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가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상경을 알리는 2월 9일자 서신

성상께서 더욱 평안하시고 주련(駐輦)⁶⁵하신 일은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경(卿) 공(公)을 비롯해 각위(各位)께서 더욱 왕성하게 봉직하시어 매우 기쁩니다. 이곳의 일동은 무사히 소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의 목적을 품의하기 위해 이번에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를 올려보내니 상세한 것은 동인(同人)에게 들으시고 진력하시길 국가를 위해 기망(企望)합니다.

신미년(1871) 2월 9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대소승(大少丞) 귀중(貴中)

추신. 미야모토(宮本, 宮本小一) 소승(少丞)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고사본사경(古史本辭經)』⁶⁶이라는 서적의 유무를 찾으셨는데, 이것을 차용할 수 없었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2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1월 10일자 서신을 열어 보았다는 2월 22일자 내신(來信)

성상께서 더욱 평안하시고 주련(駐輦)하신 일은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경·보(卿輔)를 비롯해 여러분께서 무사히 봉직하시어 매우 기쁩니다. 진술할 것은, 지난 1월 10일 작성하신 방한(芳翰)⁶⁷은 어제 21일에 도달하여 배견(拜見)했습니다. 서한 중의 갖가지 기이한 일은 놀라울 따름이고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일지와 신문 등 보내신 것은 모두 받았습니다. 이곳 상황은 히로쓰 히로노부로부터 상세히 들

⁶⁵ 임금이 행차할 때, 도중에 잠시 가마를 머무르게 하던 일.

⁶⁶ 고시(憲法) 에도 후기에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가 일본어의 기원을 논한 여학서. 원본의 ‘左史’는 ‘古史’의 오타로 보인다.

⁶⁷ 상대방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말.

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외 사정을 때때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미년(1871) 2월 22일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사다 하쿠보佐田白芳 님

쓰쿠이 엔津久井遠 님

미야모토 메이宮本鳴 님

추신. 쓰쿠이 님과 미야모토 님이 조선어용괘朝鮮御用掛에 임명되었다고 하니
각별히 진력하시길 의뢰합니다.

**13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조선 사건에 관해 조목조목 히로세 도요키치
廣瀬豊吉에게 유지諭示하는 글**

유지諭旨 대의大意 조목

누세累世의 인의隣誼

국가 간의 통신[國信]을 새로 명함

우내宇内の 변천

해외 동정

러시아 오랑캐[魯夷]의 원모遠謀

서양 오랑캐[歐戎]의 심모深謀

이즈하라번嚴原藩 체류 중에 유지諭旨에 들어갈 조목을 요청하여 전부 기록하
고자 시작했지만, 매우 바쁜 중에 출범에 임박하여 3조만 초고를 작성했으니,
숙고하신 다음 한글을 추가하기 바랍니다.⁶⁸

2월 23일

히로쓰 히로노부 廣津弘信

히로세 도요키치 廣瀬豊吉 님

제1조

저번에 본방本邦은 정권을 무인의 가문에 맡기고 외교의 일도 관장하도록 했는데, 근래 만국의 형세가 크게 변하여 아방我邦도 내외 정령政令을 태연하게 막 부에 맡길 때가 아니라서 만기萬機를 친재親裁하시고, 동서양 및 중국[支那] 등의 크고 작은 여러 나라에서 예로써 내빙來聘하는 자는 예로써 이를 맞이하고, 외국 의 일은 모두 외무성에서 관장토록 하여 통교하는 여러 나라는 모두 외무성 사자使者로써 왕래하고 접대한다. 구의舊誼가 없는 나라조차 오히려 그러한대, 하 물며 귀국과는 수백 년의 인의隣誼가 두텁고, 특히 쓰시마[對馬州]는 아방 중에서 가장 귀국과 근접한 땅이라서 특별히 귀국의 간정懇情을 받은 일 등을 조정에서도 깊이 감희感喜⁶⁹하시는 바의, 입술과 이처럼 서로 보호해주는 나라에 있어서야. 이것이 외무성 관원이 도향한 연유입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귀국 동래부사·부산첨사 양사兩使께서 속히 면담하시어 이 뜻을 체득體得하고, 이를 예조에 전달하여 양국이 친신親信할 수 있도록 강구하실 것을.

제2조

인의를 맺는 자는 성의誠意를 친밀히 하여 국민을 편히 쉬게 하는 것을 본지本旨로 한다. 만약 지엽적인 격식에만 얽매어 실제로 서로에게 이해利害와 안위가 있는 바를 방관하면, 이것을 헛된 사قم이라 불러야지 어찌 믿음으로 서로 소통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좌씨전左氏傳』에도 “어진 이를 가까이하고 이웃 나라와 사이 좋게 지내는 것親仁善隣은 나라의 보배이다”⁷⁰라고 했고, 또 “나라를 안정

⁶⁸ 왜관에서 훈도에게 알릴 사항이 있을 때 통역인 간전관이 언문, 즉 한글로 번역해서 문서를 전한다.

⁶⁹ 고맙게 여겨 기뻐함.

시키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것定國息民을 예禮라 한다”⁷¹고 했다. 『노자』에도 성인聖人이 위에 있어 화和를 보전한다⁷²고 했다. 귀국의 문명文明⁷³이야 어찌 우리의 말을 기다리겠는가. 그렇지만 그 글만 있고 그 실實이 없으면 군자의 가르침도 역시 장차 이익이 없을 것이다. 귀국과 아국 사이에 누세의 구교舊交가 있다. 또 그 신의信義를 되찾으려는 때에 만약 구규舊規·선례에 집착해서 그 본뜻을 잃고, 나라와 백성의 희우喜憂와 고락苦樂을 잊고 서로 관계하지 않는 것처럼 해서는 화和를 보전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를 친인선린親仁善隣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를 정국식민定國息民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본조本朝가 깊이 탄식하는 바이다. 귀국은 마땅히 이것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그 양국의 이해와 안위, 희우와 고락과 관계된 부분 및 방금 해내·해외 시세時勢의 변천과 같은 것은 더욱 상세히 논구論究하길 기대한다.

제3조

여기에 또 귀국에 알리지 않을 수 없는 긴요한 일이 있다. 그 하나의 (이유는) 수백 년 화친을 맺은 양국 간의 신의에 따라 귀국 왕토王土의 안녕과 귀국 인민의 안식을 기원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귀국의 안녕과 안식은 아국의 안녕과 안식이고, 아국의 안정은 귀국의 안정이라서, 방금의 형세를 관찰하니, 만약 아국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귀국에 연관되고, 귀국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아국을 번거롭게 하기 때문이다. 귀국이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말하는 바를 숙려熟慮하실 것을 바란다.

⁷⁰ 『춘추좌씨전』 은공(隱公) 6년 조에 “親仁善隣 國之寶也”라는 말이 나온다.

⁷¹ 『춘추좌씨전』 은공(隱公) 8년 조에 “定國息民 故曰禮也”라는 말이 나온다.

⁷² 『도덕경』 제66장의 “성인이 위에 있어도 백성은 무겁다 여기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백성은 해롭다 여기지 않으며, 이 때문에 천하가 즐거이 추대하고 싫어하지 않는다(聖人處上而民不重 處前而民不害 是以天下樂推而不厭)”는 부분을 이렇게 축약한 것으로 보인다.

⁷³ 문채(文彩)가 뛰어나고 분명함.

무릇 천하의 일은 변하지 않는 것[常]과 변하는 것[變]이 있다. 다른 것이 있고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변·상·이·동[變常異同]은 모두 천도[天道]⁷⁴와 관계되어 사람이 왜곡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본디 지구는 거대하여 수륙[水陸]이 통하지 않으면 편리하지 않다. 그 때문에 크고 작은 지방·나라·산·섬은 강·하천·호수·바다가 둘러싸서 그 한계를 이룬다. 사람은 그 사이에서 태어나고 여기에 바탕 하여 성품을 얻게 된다. 현자는 풍속을 살펴 법을 세우고 백성을 보호한다. 이 때문에 강토가 다르면 정교[政敎]도 이것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나라가 각기 다르고 그 실정[實情] 역시 같지 않음은 보통이다. 본래 천지가 그러하지만, 만국이 똑같이 우러러보는 것은 하나의 태양이 비추기 때문이다. 만국이 함께 의지하는 것은 하나의 지구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함께 이 하나의 지구에 실려 있는 곳에 가지 못할 나라가 없고, 똑같이 이 하나의 태양이 비추고 있는 곳에 못을 사람이 없다. 이미 왕래하지 않을 수 없음에야 선함[船艦]을 갖추는 것은 세상의 추세로 이것 역시 당연한 하늘의 이치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아직 선함을 갖추지 못한 시절에야 각기 그 나라를 잠근다. 이것은 조종[祖宗]이 옛날에 도모한 것으로 자기 나라의 본 모습을 지켜 다름을 보이는 것이기에 마땅함을 얻은 것이다. 하늘이 이미 선함을 갖추게 함에 이르러서야 각기 그 나라를 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정청[政廳]⁷⁵이 금일에 꺾하는 것으로 외국의 변화에 따라 그와 같아지기를 강구하는 것이기에 마땅함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개쇄[開鎖]에 동이[同異]와 변상[變常]이 있는 것은 모두 하늘의 이치이다. 하늘의 도리와 관계된 바라서 사람이 실로 어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제 시험 삼아 이를 논해보겠다. 예컨대 러시아[鄂羅]가 강성하고, 중국[支那]이 부유하다고 해도 항구를 열고 교역장을 설치하여 회맹[會盟]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이들 나라에는 각각의 약속이 있고 절도[節度]가 있다. 외국인이 이것을 받들면 이익이 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지하고, 제지했으나 따르지 않으면

⁷⁴ 천지자연의 도리.

⁷⁵ 정무를 취급하는 관청.

처벌한다. 처벌해도 복종하지 않으면 이를 정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양이攘夷의 주장이 있어 물리쳤으나 시비가 분명하여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우리의 절도에 따라 화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를 열지 않을 수 없는 것과 외이外夷를 물리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모두 하늘의 이치이다. 이것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고금의 모습은 ‘쇄鎖’에서 시작해 ‘개開’로 변하고, ‘양攘’에서 일어나 ‘화和’로 끝난다. 끝나면 다시 시작하고 시작하면 다시 끝난다. 일쇄一鎖·일개一開·일양一攘·일화一和가 처음과 끝을 이루는 것은 모두 하늘의 도리와 관계된다. 그래서 사람이 이것에 처함에 그 모습의 이동異同과 변상變常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개·쇄·양·화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나라에서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깊이 살피지 않으면 그 마땅함을 얻을 수 없다. 무릇 이것을 천년에 걸쳐서 안으로 모은 것이 모두 일국의 영수靈粹⁷⁶로 하늘이 우리에게 길러준 것이다. 이것이 만리에 걸쳐서 밖으로 흩어진 것이 모두 각국의 영수로 하늘이 우리에게 길러준 것이 아니다. 천년은 옛것이고 만리는 새것이다. 우리가 그 새것을 선택하여 같아지려고 바깥에 강구하는 것, 이것이 금일의 개항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옛것을 지키고 다름⁷⁷을 안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은 다른 날 양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이것⁷⁸을 천년 동안 상하로 세우고, 만리에 걸쳐 동서로 누인 것은 모두 하늘의 이치에서 나와 어길 수 없고, 어길 수 없음을 알고 모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득책得策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다름은 모든 것을 달리하여 적당한 시기에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것을 같이하여 적당한 시기에 양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이 우리를 만국이 둘러싼 그 사이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름을 대동협화大同協和의 세상에서 길러야 한다. 천하는 오직 다름으로 능히 일국의 대권大權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오직 같음으로 능히 만국의 모든 사정에 정통할 수 있게 해

⁷⁶ 순수한 기운.

⁷⁷ 국가의 정체성을 의미함.

⁷⁸ 옛것을 지키고 다름을 안으로 드러내는 것.

준다. 같지 않으면 맹약을 맺을 수 없다. 다르지 않으면 거절을 표할 수 없다. 다르면 강해질 수 있고, 같으면 친해질 수 있고, 친하면 화친할 수 있다. 강하면 싸울 수 있고, 싸움과 화친은 개쇄開鎖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항의 시기에 화친을 보이고 다름을 드러내지 않으면 무엇으로 나라를 떨칠 수 있겠는가. 양이의 시기에 강함을 보이고 같음을 강구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바깥을 복종시키겠는가. 그러므로 다름을 드러내는 것은 알지만 같음을 강구하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음을 강구하는 것은 알지만 다름을 표방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현명한 군주明主가 취할 바가 아니다.

현명한 군주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같음을 강구함으로써 인의를 보전하고, 다름을 표방함으로써 국위를 떨친다. 같음과 다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어느 하나 이를 없애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 고금 변천의 모습으로, 우리 조정이 대처하는 바의 대강이다.

위는 통역 히로세 나오유키廣瀬直行에게 주어 한인을 설유說諭토록 한 조목들이다.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지음

14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조선의 풍문서風聞書를 첨부하여 보낸 2월 30일자 서신

여러분께서 더욱 왕성하시어 매우 기쁩니다. 이곳의 상황은 지난번 히로쓰 씨가 출범한 이후 별로 바뀐 것도 없습니다. 진술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국내 형세는 갖가지 풍설이 난무하는 모습이라서 조사하여 별지와 같이 탐색한 것을 전한다”고 번리藩吏가 내밀히 제출하였으므로 일람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위와 허실은 분간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중대한 사태의 하나로 조권朝權⁷⁹의 쇄폐衰廢⁸⁰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어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조정에서도 필

시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여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이것들과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진위를 밝히신 회답을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급박한 사세勢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조선에 대한 조치가 만일 인순因循으로 흐른다면 더욱 국위를 삭감할 수 있으므로, 결국 황화皇化가 삼한에 미치도록 진력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연코 조정의 논의를 확정하시어 만반의 목표를 수립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분투하시어 하루빨리 지휘하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찰考察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별지 풍문서 중의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귀국한 다음 도한渡韓을 추진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또 조정의 명령을 받고 도한하는지, 또는 사사로이 변藩을 위해서입니까?

망주傍註⁸¹에 ‘불不’자 도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불’자 도장을 찍을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전의 술책을 행하겠다고 고고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풍문서에 경악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번에 본성本省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 히타현日田縣·나카노현中野縣 등의 형세와 기타 갖가지 사정 등을 추고推考하여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위와 같은 풍문이 있어 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외의 형세를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와 같은 중대한 풍설을 누문漏聞⁸²하면 진위야 어찌됐던 고심이 한이 없으니, 이후에는 부디 중대한 사건은 물론 작은 일이라도 참고가 될 정도의 것은 어떤

⁷⁹ 조정의 권력이나 권위.

⁸⁰ 힘이나 세력이 점점 줄어서 없어짐.

⁸¹ 본문 옆이나 본문의 한 단락이 끝난 뒤에 써넣는 본문에 대한 주석.

⁸²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새어 나온 말을 얻어들음.

일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사가 격절^{隔絶}한 곳이라서 기우^{杞憂}를 참기 어렵습니다. 일지와 신문을 기다리는 것이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찰^{諒察}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신미년(1871) 2월 30일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야나기와라^{柳原} 대승 님

마루야마^{丸山} 권대승 님

조선의 풍문

이번에 관원이 도한^{渡韓}에 이르게 된 일은 일찍부터 그 조짐이 드러난 일로 일조일석의 일이 아니다. 우리 조정도 능히 찰지^{察知}하고 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지난 무진(1868년) 겨울에 전라도 녹도^{鹿島}에 증기선이 도래하고 그로부터 홍양^{興陽}⁸³에 가서 정박했다. 부사가 만호^{萬戶}(소리^{小吏}-원주)로 하여금 문정하도록 했는데, 일본국 조정의 사절로 국서도 가지고 왔다고 얘기했다. 그 사유를 부사에게 아뢰었는데, 일본과의 교제는 종전부터 건약^{堅約}이 있어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쓰시마^{對州}로부터 취급하고, 문인^{文引}을 검증한 다음에 응접하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배는 모두 표착^{漂着}한 것으로 취급하는 조약이니, 가령 정부 사절선이라 칭해도 이곳을 속히 떠나, 용건은 쓰시마를 통해 말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때는 표박^{漂泊}의 전례에 따라 초량 관소^{館所}에 통고하겠다고 그 사유를 말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위의 배가 보이지 않았다. 재빨리 출범했는지 배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위의 장소에 다수의 기물^{器物}과 파치 등이 남아있었다. 그 내용을 조정에 계문^{啓聞}했는데 태워버리라는 전령이 있었다. 다음해 기사(1869년) 3월에 이르러 또다시 홍양에 위의 증기선이 도래

⁸³ 전남 고흥지역의 옛 지명.

하여 얘기한 주된 요지는, 지난해 응답은 구례를 고수한다는 주장을 자주 내세웠지만, 방금 세계의 사정은 옛날과 달라서 일월이 비추는 곳과 배가 이르는 곳은 통하지 못할 나라가 없고 교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쓰시마와는 구약舊約으로 교제하면 된다. 조정은 곧 일본의 대정大政이 나오는 곳이고, 그 정부의 사절이므로 다시 생각할 필요 없이 응접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그렇지만 일본국의 일신은 각별하지만, 조선은 선왕先王의 구전舊典에 따라 태평한 금일에 가령 눈앞에 이익이 보이고, 또 자질구레한 일이라 해도 신규의 일은 결코 상담할 수 없다. 지난해에 남겨둔 물품을 모두 태워버리라는 엄령이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일은 찰지察知할 수 있다. 따라서 무슨 일이든 쓰시마의 손을 통해 말하면 가부는 그때의 답판에서 언급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다른 날 쓰시마의 손을 통해 시담示談하겠다고 하면서 배가 물러갔다.

그런데 지난해 봄에 쓰시마 사람이 아닌 모습의 사람이 건너오고, 또 지난해 4월에는 독일 배에 관원의 모습을 한 사람이 탑승하여 쓰시마의 한어韓語 통역을 데리고 도한渡韓했다.⁸⁴ 이것들은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상황이다. 이것으로 생각하면 머지않아 규정 밖의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에 있는 사람들의 구구한 논담도 있었는데, 과연 이때에 이르러 관원이 드러내놓고 건너와서 은견隱見⁸⁵·춤돌하여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것을 들음.

신미년(1871) 1월

위는 난바 아사카難波安積가 1월 26일 제출함.

⁸⁴ 일본 주재 북독일연방 대리공사 브란트가 군함 헤르타(Hertha)에 탑승하여 외무소속 마와타리 하치로와 통역 나가노 교타로를 대동하고 5월 3일 왜관에 출현한 일을 말한다(김흥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233~234쪽).

⁸⁵ 숨었다 나타났다 함.

15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가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에게 보낸 2월 30일자 별도의 서신

저번에 해사선^{海士船}⁸⁶을 통해 회답을 말씀드린 것은 아마 받아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25,6일경은 필시 이즈하라^{嚴原}를 발선^{發船}하여 지금쯤은 나가사키를 출발했을 것으로 상합니다.

그런데, 그 후 25일에 훈도가 입관하여 아오야마^{青山} 댁에서 별도로 간독^懇^篤⁸⁷한 자리를 마련하고, 아오야마가 정성껏 간담^{懇談}했는데, 유지^{諭知} 건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한 다음 회답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는 여전히 예격론^{例格論}만 주장합니다. 이번은 훈도도 어쩔 수 없는 국정^{國情}을 충분히 진술할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우라세가 병으로 칩거 중이라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 모두 충분한 담판이 이루어지지 못해 정말로 유감입니다. 다만, 우라세가 완쾌하면 조속히 하래하여 정성껏 담판하고자 한다고 말해두었다 합니다. 우라세도 차차 쾌차하여 머지않아 출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즈하라번 번사^{藩士}가 아오야마에게 보낸 글 중에 일본 국정의 곤란한 형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야나기와라^{柳原} 공에게까지 내밀히 말씀드려둡니다. 따라서 이번의 용건은 이곳에서 추측한 생각과는 달리 충분히 진척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노형^{老兄}의 고심이 걱정됩니다. 그러므로 야나기와라 공과 심모^{深謀}하시어 시기를 살펴 묘모^{廟謨}⁸⁸가 하나로 정해지도록 진력하시길 기원합니다.

2월 30일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님

⁸⁶ ‘해사’는 ‘해녀’에 대응하는 말로 고기잡이를 하는 남자 잠수부를 말함. 해사선은 남자 잠수부를 태우고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을 이룸.

⁸⁷ 정성스럽고 돈독함.

⁸⁸ 조정에서 세우는 국가 대사에 관한 계책.

16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도중에 상경한 경위를 진술한 3월 4일자 내신^{來信}

에어리얼^{Ariel}⁸⁹ 배편으로 일필^{一筆} 계상^{啓上}합니다. 온화한 봄날에 경·보^{卿輔}각하를 비롯해 모두가 더욱 왕성하게 근무하시어 매우 경사롭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모두도 이상 없이 소일하고 있습니다. 황공하오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각설^{却說}, 지난겨울 이래 매번 서장을 전하시어 일일이 배견했습니다. 조만간 이즈하라번^{嚴原藩} 지사님의 가역^{家役} 사표를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 또 이곳 쓰시마와 한국 둘 사이의 허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장한 관원들을 한 번도 면담하지 않아, 앞으로 관맹^{寬猛}·진퇴의 교섭은 전적으로 사표를 채용하시는 일거^{一舉}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자세히 살펴 앞으로의 묘의^{廟議}가 경악스럽지 않을 정도로 결정하시도록 건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추태를 거듭할 우려도 있어 이것저것 독실하게 정실^{情實}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구나 발송하신 서장이 100일 뒤에는 도착하더라도 90일 안에 받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서장의 1회 왕복에 반년을 허비하기 때문에, 단연코 결의하여 히로노부^{弘信}를 한번 급히 보내도록 요시오카^{吉岡}와 모리야마^{森山}가 거듭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 한지^{韓地}를 출발, 15일 이즈하라번^{嚴原藩}에 도착하여 지사님께서 별서계^{別書契}·별편^{別便}(규정 외의 서계와 사자를 말한다·원주)을 (조선에) 보내시길 원하여 답합한 일도 있습니다. 번에 도착한 다음(이즈하라번의 주장을) 종종^{種種} 논파^{論破}하고, 24일 서계(별서계)가 건너간 것을 확인하고 26일 이즈하라를 출발했습니다. 27일 밤에 나가사키에 도착, 엿그제 2일에 출발하여 에어리얼 정기선을 탑승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이전부터 평판이 좋지 않고 매우 낡은 배라고 들었는데, 상하이^{上海}에서 파손된 부분이 있고 더구나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기체가 손상되어, 3일·4일·5일 중 언제 출발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藩에서 탑승하기로 약정한 자도 모두

⁸⁹ 영국 선박회사 P&O(Peninsular & Oriental Steam Navigation Company) 소속의 정기 증기선.

파담破談했습니다. 4,5일만 기다리면 골든 에이지Golden Age⁹⁰라는 견고한 선박이 오는 정기일이라서, 매우 중요한 용건을 지니고 있는 신분으로서 4,5일 정도에 위태로운 일이 생길 리는 없다고 생각하여 (출발을) 연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로 지금의 시기는, 더구나 재한在韓 관원들에 대해서도 조금도 지체할 때가 아니지만, 이러한 정실을 이해하시고 (이 서한을) 잘 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사건과 관련된 서류도 있지만, (이것은 재한 관원) 일동이 지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로노부가 도쿄에 도착하기 까지는 잠시 동안 조선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결의는 하시지 않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위는 대략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으로, 이와 같습니다. 경백敬白.

3월 4일 밤 작성.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님

쓰쿠이津久井 소우少佑 님

미야모토宮本 권소록權少錄 님

추신. 별도로 야나기와라柳原·마루야마丸山 두 각하께도 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7 요코하마橫濱에 있는 미국인 브루크가 미국 군함을 타고 조선에 가니 부탁할 것이 있으면 수용하겠다고 외무성의 경·보卿輔에게 올린 글

편지로 말씀을 올립니다. 졸자拙者는 조선 탐색을 위해 발항發航하는 미국 함대에 승선하여 곧 그곳을 향해 출발하려 합니다. 따라서 동국同國(조선)에서 담판

⁹⁰ 미국의 태평양우선회사(Pacific Mail Steamship Company) 소속의 정기 증기선으로 2,181톤.

의 상황 및 그 성과, 또는 줄자가 그곳에서 그 나라 및 인민의 현재 형세를 탐색할 것이므로, 귀국 정부에서 그 상황을 아는 것이 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곳에서는 저항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전쟁이 일어나 쌍방이 사용하는 군세軍勢의 다과, 무기의 종류 및 전투의 형세 등을 아는 것은 귀 정부에서도 역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귀국은 옛날 조선과 교전도 하였으며 이 섬⁹¹의 남쪽은 귀국에 인접하기 때문에 그 정사政事 및 야전에서 사용하는 군세의 다과, 사용하는 무기류, 기타 귀국을 습격할 선함船艦 등의 모든 상황을 천착穿鑿하는 것은 귀국 정부에 매우 요긴한 사무일 것입니다.

줄자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완전히 신실信實한⁹² 것입니다.

미국 함대는 나가사키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려고 하니 위의 일과 관련하여 뭔가 용건이 있으면 요코하마橫濱를 출범하는 다음 편의 평양平洋우선郵船⁹³으로 나가사키 주재 미국영사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871년 4월 24일⁹⁴ 요코하마

J. H. 브루크Brooke

외무경·보外務卿輔 각하

추신. 이 글은 하우스Hawes 씨가 올릴 것이며 이 일과 관련하여 그가 상담의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⁹¹ 영어 원문은 ‘한반도(Corean peninsula)’이다.

⁹² 영어 원문의 ‘특별하며 기밀(special and confidential)’이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다.

⁹³ ‘Pacific Mail’을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 ‘Pacific Mail’은 태평양 우선(Pacific Mail Steamship Company)을 말한다.

⁹⁴ 영어 원문은 4월 29일(음력 3월 10일)이므로 24일은 29일의 오키이다.

18 동건^{동件}과 관련하여 미국 함대의 하우스가 외무성 대보^{大輔}에게 올린 글

편지로 말씀드립니다. 요코하마에 체류하고 있는 브루크^{J. H. Brooke} 씨가 이번에 조선 정벌을 위해 미국에서 파견한 함대에 탑승하여 그곳으로 가려고 나가사키로 출발하는데, 그가 별지^{別紙}를 제출하므로 이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위의 사절에 관해, 귀 정부에 특별히 내보^{內報}하기 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졸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나라 정부처럼 귀국도 이 기회에 사정 탐색을 위해 하나의 대리인을 조선에 보내는 것이 마땅하므로, 출자가 병부성^{兵部省}에 근무하고 있기에 감히 이를 충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는 매우 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파견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통법^{通法}⁹⁵입니다. 더구나 브루크 씨는 귀 정부를 위해 충분히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상.

1871년 4월 29일. 요코하마

미국 해군 중위 하우스⁹⁶

데라시마^{寺嶋} 외무대보^{外務大輔} 각하

19 동건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소승^{大少丞}이 하우스에게 보낸 회답

미국 함대가 조선에 가려고 나가사키에 정박하고 있어, 브루크 씨가 이 군함에 탑승하여 저 나라까지 건너갈 예정인데, 저 나라에서의 답판 상황과 동정 등

⁹⁵ 일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

⁹⁶ 영어 원문은 A.J.S. Hawes. Lieut. R.M.인데, R.M.은 Royal Marines(영국 해병대)의 약자이다. 따라서 하우스는 미국 해군 중위가 아니라 영국 해병 중위이다. 『御雇外國人一覽』(中外堂, 1872년, 6면)에도 병부성에 고용된 하우스의 국적이 영국으로 표기되어 있다. 1870년 11월부터 고용된 하우스는 월 200엔의 급료로 병부성에서 해군 직무를 담당했다.

우리 정부를 위해 알려주고자 하는 후의를 표한 서간에 덧붙여, 족하_下가 우리 외무대보_{外務大輔}에게 운운하면서 보낸 위의 서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바라는 바라서 브루크 씨에게 의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족하가 브루크 씨에게 부탁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을, 졸자_{拙者}로부터 진술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이상.

3월 14일

외무 대·소승_{大少丞}

하우스 귀하

20 동건에 관한 평의서

미국은 지금 조선에 일을 일으키려 한다. 우리와의 관계는 이미 논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아는 바이다. 따라서 저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관원은 모름지기 이를 지키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방금의 사무는 아래와 같다.

— 이것과 관련된 내유_{內諭}를 보낼 것

— 영어 통역 1명을 파견하고자 하는 것[두주_(頭註): 구_(舊) 도미나가 이치쿠라_(富永一藏), 금(今) 나카토미 후유키_(中臣冬樹)]

— 브루크에게 부탁하여 그 정실_{情實}⁹⁷을 탐색토록 하는 것

— 요시오카_{吉岡}와 모리야마_{森山}가 그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

— 미국 공사에게 그 허실_{虛實}을 듣고 조선에 영지_{領地}(왜관·웁간이)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

— 미국 공사에게 우리나라 관원이 그곳에 있고, 또한 조선과 우리나라는 구교_{舊交}가 있음을 은연중에 얘기해서, 만약 임기_{臨機}하여⁹⁸ 그 나라에서 편의_{便宜}

⁹⁷ 실제의 사실.

를 요청할 일이 있어 우리 관원이 그 나라에 있는 해군[水師] 제독 등에게 제의할 일도 있다면 해군 제독도 이들과 담합談合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처리를 의뢰하는 것.

21 동건과 관련하여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내릴 내유서內諭書를 첨부한 상신 안

내유內諭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 조선은 경계를 접하고 있고 구교가 있는 나라이다. 특히 지금은 이미 관원을 파견해서 친교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저 나라에 사변이 있으려 한다. 반드시 그 방책을 다해서 그 나라의 위급을 걱정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그 해를 피할 것을 권유해서 황조皇朝가 인접하고 있는 친정親情⁹⁹을 드러내야 한다.
- 미국米利堅은 비록 구교가 없지만 이미 정부와 공연公然한 우의를 맺었고, 조선은 아직 정부와 교의交誼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때 공연한 황조의 처분은 미국을 도울 의리는 있지만 조선을 도울 이치는 없다. 그러므로 황조가 조선과 우의를 맺기 전에 일단 일이 생기면, 우리 황조는 그것을 방관하면서 미국이 하는 대로 맡겨두고, 감히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과 우의를 잃어선 안 된다.

⁹⁸ 어떤 기회나 고비에 처하여.

⁹⁹ 친하게 지내려는 마음.

— 조선은 경계를 접하고 있고 구교가 있는 나라이다. 더구나 우리가 먼저 교제를 촉구했다. 아직 저들이 공의公義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정私情이 있다. 미국은 공연한 우국友國이고 더구나 그 문책하는 바엔 이치가 있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우리와 그 정곡正鵠이 같다. 황조에 있어 양국의 관계가 이와 같다. 그리고 만약 한 쪽이 우리에게 의탁해서 그 정원情願¹⁰⁰을 통하게 할 것을 요청한다면, 아직 공연한 교제가 없는 조선이 바로 공공연히 우의를 표하도록 해서, 양국 사이에서 그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중하게 현재 세계의 형세를 통찰하고 보통의 공리公理를 조성해서 그 조처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황조의 지금 형세를 숙려熟慮하고 고념顧念해서, 힘껏 스스로 그사이에 들어가 기꺼이 그 일을 담당함으로써 남의 책임을 나에게 불러와서는 안 된다.

— 조선의 금일의 뜻은 미국이 바라는 바와 공교롭게도 상반된다. 우리 또한 (조선과) 교제를 바라는 점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조선이 하루아침에 양이쇄국攘夷鎖國을 결의할 경우엔 우리 또한 시의猜疑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결과 끝내는 위기를 초래해서 해만 있고 이익이 없을 것이다. 신중히 우국에는 신의를 지키고, 다른 쪽에는 시의를 피해서 그 위태함이 우리에게 초래되지 않게 하라.

— 지금의 형세는 일단 조선이 그것을 거부하더라도 영원히 지킬 수 없다. 반드시 개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대처함에 반드시 장래를 숙려해서 절대 장애가 될 바를 남겨두지 말라.

이상은 지금 미국과 조선 사이에서 우리 황조가 취할 처분의 대강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를 잘 이해해서 감히 조처를 그르쳐 후환을 초래하지 않게 하라.

메이지明治4년(1871) 신미3월

외무경

¹⁰⁰ 진정으로 바람.

변관辨官 귀중貴中

외무성

이번에 미국이 군함을 조선에 파견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작년 이래 요시오 카吉岡 외무 권소승權少丞 이하가 그곳에 출장하고 있으므로 별지와 같이 주의사항을 하달하고, 또한 영어가 통하는 자 1명을 모레 우편선으로 서둘러 파견할 생각이니 지금 지급至急으로 평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미년(1871) 3월 15일

부전

미국 군함이 조선으로 출발하므로 안도 타로安藤太郎와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에게 부쳐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내유하는 절차

22 동건과 관련하여 재가를 받은,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내리는 내유서

이번에 미국이 군함을 조선에 파견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작년 이래 요시오 카吉岡 외무 권소승權少丞 이하가 그곳에 출장하고 있으므로 별지와 같이 주의사항을 하달하고, 또한 영어가 통하는 자 1명을 모레 우편선으로 서둘러 파견할 생각이니 지금 지급至急으로 평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미년(1871) 3월 15일

외무성

변관辨官 귀중貴中

부전附箋

품의한 대로 辦官 印

- 一. 조선은 경계를 접하고 있고 구교가 있는 나라이다. 특히 지금은 이미 관원을 파견해서 친교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저 나라에 사변이 있으려 한다. 반드시 그 방책을 다해서 그 나라의 위급을 걱정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그 해를 피할 것을 권유해서 황조皇朝가 인접하고 있는 친정親情을 드러내야 한다.
- 一. 미국[米利堅]은 비록 구교가 없지만 이미 정부와 공연公然한 우의를 맺었고, 조선은 아직 정부와 교의交誼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때 공연한 황조의 처분은 미국을 도울 의리는 있지만 조선을 도울 이치는 없다. 그러므로 황조가 조선과 우의를 맺기 전에 일단 일이 생기면, 우리 황조는 그것을 방관하면서 미국이 하는 대로 맡겨두고, 감히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과 우의를 잃어선 안 된다.
- 一. 조선은 경계를 접하고 있고 구교가 있는 나라이다. 더구나 우리가 먼저 교제를 촉구했다. 아직 저들이 공의公義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정私情이 있다. 미국은 공연한 우국友國이고 더구나 그 문책하는 바엔 이치가 있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우리와 그 정곡正鵠이 같다. 황조에 있어 양국의 관계가 이와 같다. 그리고 만약 한 쪽이 우리에게 의탁해서 그 정원情願을 통하게 할 것을 요청한다면, 아직 공연한 교제가 없는 조선이 바로 공공연히 우의를 표하도록 해서, 양국 사이에서 그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중하게 현재 세계의 형세를 통찰하고 보통의 공리公理를 조성해서 그 조처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황조의 지금 형세를 숙려熟慮하고 고념顧念해서, 힘껏 스스로 그사이에 들어가 기꺼이 그 일을 담당함으로써 남의 책임을 나에게 불러와서는 안 된다.
- 一. 조선의 금일의 뜻은 미국이 바라는 바와 공교롭게도 상반된다. 우리 또한 (조선과) 교제를 바라는 점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조선이 하루아침에 양이쇄국攘夷鎖國을 결의할 경우엔 우리 또한 시의猜疑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결과 끝내는 위기를 초래해서 해만 있고 이익이 없을 것이다. 신중히

우국에는 신의를 지키고, 다른 쪽에는 시의를 피해서 그 위태함이 우리에게 초래되지 않게 하라.

- 一. 지금의 형세는 일단 조선이 그것을 거부하더라도 영원히 지킬 수 없다. 반드시 개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대처함에 반드시 장래를 숙려해서 절대 장애가 될 바를 남겨두지 말라.

이상은 지금 미국과 조선 사이에서 우리 황조가 취할 처분의 대강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를 잘 이해해서 감히 조처를 그르쳐 후환을 초래하지 않게 하라.

메이지明治 4년(1871) 신미 3월

23 동건과 관련한 안도 타로 安藤太郎의 도한渡韓 지령서

대장성大藏省 출사 안도 타로 安藤太郎

공무公務가 있어 일시적으로 당 성[외무성]에서 고용하여 조선국에 파견함.

신미년(1871) 3월 16일

외무성

24 동건과 관련하여 이즈하라번 嚴原藩에 내리는 지령서

이번에 당 성 관원 안도 타로는 중대한 공무가 있어 조선국에 급히 파견하니 이를 하달함.

신미년(1871) 3월 16일

외무성

이즈하라번 嚴原藩

이즈하라번

이번에 미국이 군함을 조선에 파견함에 따라 부산에 있는 관리 이하의 주의 사항 등 모든 것을 요시오카 고키 吉岡弘毅·모리야마 시게루 森山茂 등에게 하달하였으니, 그 내용에 따라 만사 萬事 지장이 없도록 명심할 것.

신미년(1871) 3월

외무성

이즈하라번

이번 조선국에 출장하고 있는 요시오카 고키·모리야마 시게루 등에게 전할 매우 급한 공무가 있어, 본 성의 관원 안도 타로를 파견하여 도한渡韓토록 할 것이니, 이 취지를 유념하여 지장이 없도록 취급할 것. 이를 하달함.

신미년(1871) 3월

외무성

25 동건과 관련하여 나가사키현 長崎県에 안도 타로 安藤太郎의 뱃삐를 임시 변통할 것 등을 명령하는 글

나가사키현 지·참사 知參事 귀중

외무 대·소승 大少丞

이번에 매우 급한 공무가 있어 본성本省 관원 안도 타로를 조선국에 파견합니다. 따라서 증기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할 것이므로 그때까지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또한 뱃삐나 경비의 대신 지급 등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 지장이 없도록 만단萬端으로 충실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렇

게 외무경의 명에 따라 확실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신미년(1871) 3월

26 동건과 관련하여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내리는 지령서

요시오카 고키·모리야마 시게루

이번에 아메리카합중국[亞米利合衆國]이 조선국에 응접할 것이 있어 군함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대들이 명심할 조목들을 별지와 같이 내유內諭함. 따라서 그 취지를 부산에 출장한 이즈하라번嚴原藩 관리는 물론 이즈하라 번청藩廳에도 이를 알리고, 임기응변으로 완급을 조절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명심할 것.

신미년(1871) 3월

외무성

27 동건과 관련하여 야나기와라柳原 대승이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평안하게 봉사奉使하고 있음을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이번에 아메리카 합중국[亞米利加合衆國]으로부터 응접할 일이 있어 조선국에 군함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장성大藏省 11등 출사出仕 안도 타로安藤太郎를 일시적으로 외무성에서 고용하여 내유內諭 등을 지참시켜 그곳으로 파견하니, 제반 사항을 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단, 안도는 미국 군함이 철수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도 무방합니다. 돈수.

신미년(1871) 3월 16일

외무대승外務大丞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님

추신.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은 2월 12일 한지韓地를 출범, 쓰시마對州를 거쳐 같은 달 27일에 무사히 나가사키에 도착했다는 서면이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귀착歸着을 기다려 처리하면 적절하겠지만, 이번은 매우 급하여 도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통지합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28 동건과 관련하여 조선사무과朝鮮事務課에서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요시오카吉岡·모리야마森山에게 보내는 공신안公信案

가마득하게 먼 곳에서 오랫동안 진력하여 힘들게 노력해 마지않음을 멀리서 살핍니다. 더욱 왕성하심을 먼저 기쁘게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외무성의 경·보卿輔 님을 비롯해 여러분은 왕성하게 봉직하고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군함 몇 척을 거느리고 그곳에 건너간다고 탐정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해난海難을 당한 선박을 매정하게 다룬 것의 문죄로 해난구조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작년 이래 벽지에서 진력하고 있는 도중에 선수先手를 빼앗긴 형편은 참으로 강개하기 그지없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바에는 그 사이에서 알맞게 대처하여 우리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아무쪼록 성부成否를 결정할 하나의 기회이니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체로 내년 3, 4월경은 우리의 조약개정 기한이라서 크게 병위兵威를 보여 그 확답을 재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뜻을 미리 이해하여 기회를 엿보고, 또한 두루 생각하여 진력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별지 내유內諭를 보내고 아울러 그 절차에 대한 것도 보내니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안도 타로安藤太郎를 통역 및 그 밖의 사무를 맡겨 보내니 잘 협조하기 바랍니다.

미국 공사와 외무경 님이 응접한 대의를 베껴 써 전하니 그 사정을 파악하기 바랍니다.

부산의 왜관 땅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사하여 상신하니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안도 타로에게 듣기 바랍니다. 여하튼 지나치게 조급하면 만사가 순조롭지 못하니 부디 임기응변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3월 16일

조선사무朝鮮事務

추신. 돈 천 냥을 안도 타로에게 부탁하여 보내니 받기 바랍니다.

29 동건과 관련한 미국 공사와의 대화서(2통)¹⁰¹

신미 3월 15일 외무성에서 사와澤 외무경이 미국공사 찰스 디 롱 및 이번 샌 프란시스코에서 도착한 돈이라 하는 자와 응접¹⁰²

외무경 : 귀국이 조선에 군함을 파견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헛소문입니까?

전권공사 : 몇 년 전에 미국 상선이 조선의 항구에 두 번 표착漂着하였는데, 첫 번째는 매우 친절하게 다루었고 두 번째는 인간 이하로 다루었습니다. 그 죄를 문책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사과하면 괜찮지만 사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¹⁰¹ 여기에 수록된 문서 2통의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원문서를 수록한 『外務卿等ノ各国公使トノ対話書』 제9권(『JACAR Ref.B03030047900, Ref.B03030048000』)과 『일본외교문서』 제4권, 문서번호 174와 175에 의거하여 순서를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¹⁰² 『조선사무서』에 수록된 2통의 문서 중 뒤의 문서는 제목과 날짜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外務卿等ノ各国公使トノ対話書』 제9권(『JACAR Ref.B03030047900』)의 문서제목을 붙였다.

외무경 : 우리 정부의 일신一新을 알리기 위해 지금 관원이 쓰시마인[對州]과 함께 그곳에 건너가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 때문에 우리 관원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¹⁰³ 당혹스러워 조회하는 것입니다.

전권공사 : 귀국에서 관원을 그곳에 파견한 것은 조공을 바치지 않고 교제를 불허하는 것 등을 문책하기 위한 것입니까?

외무경 : 현 조선 왕조시대에 이르러서는, 원래 일본의 속국이지만 전혀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쳐두고, 완고한 나라라서 외국인을 모두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신정부의 통지에 의하여¹⁰⁴ 이웃 나라와 우호를 맺고 통신을 진전시켜 차차 외국인을 미워하고 있는 상태를 일변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후의에서 관원을 파견한 것입니다.

전권공사 : 군함을 파견해도 전쟁은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부득이한 사정에 이르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나가사키에 전대戰隊를 모아놓고 있는 군함이 아직 출범하지 않았으니 매우 급하게 1명을 파견하여 제독에게 부탁해두십시오.

외무경 : 후의에 따라 영어를 할 수 있는 사관 1명을 그 군함에 태울 수 있도록 부탁하고자 합니다.

전권공사 : 그렇다면 속히 그 결정을 전하셔야 합니다. 우편선 배편이 언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편으로는 시간을 맞출 수 없습니다.

외무경 : 요전에 신문지를 통해 알고는 있었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¹⁰³ 『外務卿等ノ各国公使トノ対話書』 제9권(「JACAR Ref.B03030047900」)에는 이 부분이 “위난을 만나면”으로 되어 있다.

¹⁰⁴ 『外務卿等ノ各国公使トノ対話書』 제9권(「JACAR Ref.B03030047900」)에는 이 부분이 “일신(一新)을 알려”로 되어 있다.

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매우 절박하여 경악하고 있습니다.

전권공사 :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막을 것이며, 이후에 외국인을
침승처럼 생각하지 말도록 담판할 예정입니다.

외무경 : 나가사키를 출범하기 전에 관원이 가게 되면 괜찮지만 만일 군함이 떠난
뒤에 도착하게 되면 뒤쫓아 출범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잘 부탁드립니다.

전권공사 : 베이징의 공사가 탑승한 배도 있으니 제독 두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면 뭔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¹⁰⁵

외무경 : 모쪼록 매우 급히 의뢰해 주십시오.

전권공사 : 내년 5,6월경은 조약개정의 기한에 해당하니, 이 건은 조약에 기재
되어 있는 것처럼 1년 전에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무경 : 조약에 기재된 것처럼 개정의 기한이 되었으므로 이제 차차 상담할 예
정입니다.

미국공사 : 다른 나라는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외무경 :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공사 : 조약이 개정되면 이번에 전국을 개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무경 : 개정은 산조三條·이와쿠라岩倉·줄자와 2,3명 정도로 결정할 일이 아닙
니다. 중대한 안전이므로 외무성에서 전망을 세우고 중의衆議를 구하
여 부적절한 조항은 상담할 예정입니다.

¹⁰⁵ 『外務卿等ノ各国公使トノ對話書』 제9권(『JACAR Ref.B03030047900.』)에는 이 부분이 없다.

신미년(1871) 3월 16일 외무성에서 사와澤 외무경과 미국공사의 대화

외무경 : 어제 조선의 일에 대한 간화懇話¹⁰⁶가 있었으므로 사관¹⁰⁷ 1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단, 이름은 정해지는 대로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함은 부산포에 갑니까? 그곳에는 이전에 우리 관원을 파견해두었으므로 이들에게 전하여 알려주실 것도 부탁하고자 합니다.

전권공사 :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만, 사관 파견의 취지는 해군 제독에게 자세히 전해 위의 관원이 있는 부근에 배가 닿으면 바로 상륙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장소에 정박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무경 : 이번의 일은 위의 관원들에게 알려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발포 등의 경우에 이르면 어떤 재난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산포에 착함着艦하지 않더라도 탑승해서 간 자를¹⁰⁸ 요시오카吉岡 등이 있는 곳까지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전권공사 : 그것은 어떻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만 보내는 것은 어떻게든 조치하도록 해군 제독에게 부탁해보겠습니다. 다만 요시오카 씨 등을 위해 정박지를 바꾸는 것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외무경: 물론입니다.

전권공사 : 해군 제독에게 부탁하는 것은, 일본 사관 한 명을 조선까지 파견하니 착함한 뒤에, 이전부터 일본 관원¹⁰⁹ 중에 조선에 가 있는 이가 있으니 그곳으로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전에 도항한 관원을

¹⁰⁶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음.

¹⁰⁷ 『外務卿等ノ各国公使トノ対話書』 제9권(JACAR Ref.B03030048000)에는 이 부분이 없다.

¹⁰⁸ 『外務卿等ノ各国公使トノ対話書』 제9권(JACAR Ref.B03030048000)에는 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¹⁰⁹ 『外務卿等ノ各国公使トノ対話書』 제9권(JACAR Ref.B03030048000)에는 ‘사관’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으로 봤을 때 『조선사무서』의 ‘관원’이 옳다. 이하의 밑줄 친 ‘관원’도 동일.

보호하도록 전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외무경이 잠시 퇴석했다.

외무경 :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귀국의 군함이 부산포에 착함하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다른 곳에 정박하면 우리 사관이 육지로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나가사키에서 별도의 배를 마련하여 부산포에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하께서 해군 제독에게 글을 보내, 이전에 건너간 관원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과 아울러 그들이 만나기 위해 군함에 가는 일도 있으면 친절한 태도로 접대하도록, 이 두 가지를 의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권공사 : 알겠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군함이 나가사키까지 건너가지 않고 상하이에서 바로 도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의 소개장은 별도로 한 통을 사관에게 건네주어, 군함이 조선에 도착한 뒤에 대면하기 위해 갈 때 지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무경 : 위와 같이 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4시에 우편선이 출범한다고 하니 내일 아침에는 이곳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서장을 건네주십시오.

전권공사 : 4시 이후에는 작성해둘 수 있으니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외무경 : 매우 고맙습니다.

전권공사 : 이번에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중국에서도 확실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대체로 중국인은 자신들이 전쟁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어쨌든지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풍습이라서 조선인을 선동하여 뜻밖의 거동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30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요코하마橫濱에서 도한 배편 등과 관련하여
보낸 3월 19일자 서한**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요코하마에서 보낸 편지는 어제 19일 7시에 도착했다. 곧바로 야나기와라柳原 님께 보고하고 각각 처리하여 어젯밤 12시에 파발로 회답을 보냄.

단, 야나기와라 님도 편지를 보냄.

3월 20일

조선괘朝鮮掛

대략만 적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안도 타로安藤太郎가 전신기電信機로 알려드린 대로 내일 4시에 출발하는 프로이센[普魯] 상선에서 편승을 요청해서 선임은 고베神戸까지 상등석에 은화 40엔으로 정했다 합니다. 또한 이번은 급하고도 급한 공무이기 때문에, 저번부터 왕복한 적은 있지만, 안도와 함께 가고 마차에 오르내리는 등 이런저런 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더구나 이후에도 고베와 나가사키에서의 승선乘船도 어떠할지 불확실합니다. 아마 사정에 따라서는 안도는 증기선을 빌리고 줄자拙者は 육로로 가라쓰번唐津藩으로 갈 겁니다. 거기서 어선으로 이키壱岐섬에 건너가고, 또 어선으로 바닷물을 맞으면서 쓰시마[對州]에 건너갈 예정입니다. 잠수부를 태워 고기잡이하는 배가 바람이 불지 않아도 노를 저어 도한渡韓한다면, 누구든지 일찍 도착한 쪽이 새 명령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산포에 미국 배가 입항하는 일은 아마 없을 텐데, 가령 입항하더라도 훗날의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안도보다도 줄생拙生이 빨리 배를 타지 않으면 지장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증기선 탑승은 안도에게 명한 것이라서 두 갈래로 나눈다면 줄생이 육로로 가서 잠수부가 타는 어선을 타기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준비를 위해 역체사驛遞司¹¹⁰ 인마장人馬帳 한 권을 급히 입수

¹¹⁰ 1868년 윤4월 21일에 설치된 교통·통신 담당관서.

하시어 내일 12시정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우 급히 부탁드립니다.

안도 타로는 단발斷髮한 모습이라서 이번에 한인에게 더욱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매개가 되므로, 배 안에서 완곡하게 그 사정을 납득시켜 샷갓이라도 사용하도록 얘기하였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 의미의 차이도 있는데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여겨지면 협동 진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나 배田邊(다나베 다이치 소승) 군이 내유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천박하고 고루한 논의이지만, 한인이 느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은 어떻게든 조리條理를 세우면 승낙할 것이고, 한인이 의혹하여 우리와 미국이 표리가 되어 완급緩急으로 서로 호응하려는 계책으로 여겨져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사소한 사건이더라도 관계가 오히려 중대합니다. 이 점을 양찰諒察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들을 금전을 출납하는 담당자에게도 잘 통지해두시기 바랍니다. 한지韓地의 사건은 이 일거一舉로 호기로 바뀌지 않으면 종전의 외무성 방침도 완전히 화병畫餅이 되니 모든 일을 비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즈하라번 번사藩士인 사족士族 난바 아사카難波安積라는 인물이 조선에서부터 배종陪從하여 건너와 있는데, 이번에 (저를) 배종하여 이즈하라로 돌아온 다음 다시 도쿄까지 배종하라는 명을 받고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얘기할 겨를도 없이 출발하게 되었으니 외무성에서 그 취지를 자세히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즈하라번 지사의) 진퇴進退 문제를 꺼내면 면회한 다음 적절히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야나기와라柳原 님의 배알 등을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직접 자세히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역체사 장부는 내일 12시 무렵까지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위의 사항들을 충실히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 19일 11시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본성本省 조선어용괘朝鮮御用掛 귀중

이 서장을 각각 회람해서는 겨를이 없으므로 곧바로 야나기와라柳原 공公, 마루丸·구스楠 공, 하나부사花房 공¹¹¹ 중에서 매우 급히 지휘를 받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유지油紙 20~30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서장 포장용임.

31 이타쿠라 데이조板倉貞藏의 도쿄東京 도착 전신電信

외무성 귀중貴中 이타쿠라 데이조板倉貞藏

소식을 아래에 기록함

오늘 아침 5시에 지체 없이 도착함. 이를 보고합니다.

메이지明治 4년(1871) 3월 20일 전신기방傳信機方 東京傳信局印¹¹²

32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고베神戸에서 보낸 3월 23일자 서한

일필一筆 계상啓上합니다. 요즈음 더욱 안태安泰하시고 봉직奉職하심을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생拙生은 지난 20일 저녁 5시 반에 요코하마를
출범하여 어제 22일 아침 7시 반 고베神戸에 도착했습니다. 갖가지 배편 등을 찾

¹¹¹ 당시 야나기와라 사키미쓰는 대승, 마루야마 사쿠라(丸山作樂)와 구스모토 마사타카(楠本正隆)는 권대승, 그리고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는 권소승이었다.

¹¹² 1869년 요코하마와 도쿄 간 전신이 개통되면서 도쿄 쓰키지에 창설되었다. 1871년 8월에 전신국(傳信局)을 전신국(電信局)으로 개칭했다[『工部省沿革報告』(大蔵省, 1889, 473~474쪽)].

아보았지만 지금까지 그 편의를 얻지 못해 본의 아니게 체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1통은 권대승權大乘 두 분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편지들은 당사자에게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一. 요시오카吉岡를 비롯해 3월 이후 일당日當 수당금은 저번에 어수선하던 중에 쓰치코土子(쓰치코 도요노리土子豊憲) 씨에게 얘기해둔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곰곰이 생각한 바 일당금 부분은 조속히 급편急便으로 조선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고바야시小林의 일당금은 쓰치코 씨에게도 얘기해둔 대로 가족을 대리인으로 삼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생은 왕복에 들어가는 잡비 등이 의외로 많아 이래저래 매우 곤궁합니다. 그러므로 일당금 외에 월급도 3월부터 6개월분을 가불하지 않으면 심히 곤란합니다. 모쪼록 일당과 월급 모두 6개월분을 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기 수고스럽지만 마땅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리야마森山の 월급은 그의 동생 료스케良助가 신청하면 그 사정을 조사한 다음 조금씩 건네주시라고 의뢰했습니다.

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대로 대사건의 서장은 미농지美濃紙¹¹³로 포장한 다음 보통의 경우와 같이 봉封하시기 바랍니다. 재한在韓 관원들이 전언한 것이니 이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가사키에 도착하면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대략을 적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3월 23일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곤도近藤 권대우權大祐 님

오쿠奧 사생史生 님¹¹⁴

¹¹³ 닥나무 껍질로 만든 썩 질기고 얇은 종이의 하나. 묵지(墨紙)를 받치고 글씨를 쓰거나 장지문 따위에 바르는 데에 쓰는 종이로, 일본 기후현(岐阜縣) 미노(美濃) 지방의 특산물인 데서 생긴 이름이다.

¹¹⁴ 곤도는 곤도 마스키(近藤真鋤), 오쿠는 오쿠 요시노리(奥義制)로 당시 '조선국어용괘(朝鮮國御用掛)' 소속이었다. 곤도는 1871년 1월 8일에 권대우가 되었고, 오쿠는 2월 5일에 사생이 되었다.

33 조선인이 미국 선박의 구조로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함에 따라 이즈하라 번^{嚴原藩}에서 제출한 글

메이지^{明治} 4년 신미(1871) 정월 30일 바다 가운데서 이양선에 구조되어 상하
이로부터 아메리카^{亞米利加} 군함이 보내온 조선인 5명

구상각^{口上覺}

우리들은 조선국 전라도 제주 대정^{大靜} 사람들입니다. 배 1척에 5명이 타고 고기잡이를 위해 지난 정월 21일 사는 곳에서 발선^{發船}하여 난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서풍^{西風}이 불어 선구^{船具}가 손상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표류했습니다. 정월 30일 바다 가운데서 이양선에 구조되어 타고 간 배는 그대로 버리고 위의 배에 옮겨 탔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곤란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항해 중에 다시 바다 가운데서 이양선을 만났는데, 청국인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손짓으로 알리는 것이 옮겨 타라는 모습이라서 그대로 하였습니다. 처음 우리를 구조한 선박은 바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며칠 동안의 어려움으로 심신이 어지러워 낱짜 등을 알지 못한 채 상하이^{上海}인가 하는 곳에 배가 도착하여 2,3일 체류했습니다. 도움을 얻고자 상륙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군함에 태워서 어떻게 취급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지냈는데, 조선어를 할 수 있는 2명이 타고 있어 아메리카 군함이라는 것을 알고 몹시 놀랐습니다. 서양 의복 등을 각각 주면서, 압록강 근처로 가니 물길을 안내하라고 했지만, 잘 모른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3월 19일 상하이를 출발하여 엿그제 23일에 이 항(나가사키)에 착선했습니다. 일본 땅이라는 것을 알고 모쪼록 상륙시켜줄 것을 이방인들에게 부탁했지만, 물길 안내를 자주 얘기해서 거절하기 어려운 형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탄식하고 있었는데 은덕으로 상륙을 명했습니다. 모두가 안심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승선 인원 외에 탑승한 자가 없는지 물으셨지만 위의 5명 이외에 승선 인원은

없습니다.

종교[宗敎]를 물으셨는데 보통 석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패[提批]에 대해 물으셨는데 한 명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표민[漂民]들이 말하므로 문서를 올립니다. 이상.

메이지明治 4년 신미

이즈하라번嚴原藩

3월 25일

니이 한자에몬仁位半左衛門

통사通詞 간자키 도쿠로지神崎徳郎次

나카노 교타로中野許多郎

34 동건과 관련된 문정問情 기록

미국[亞國] 군함에 구조된 조선인 5명을 인도하여 번저藩邸에서 제반 사항을 심문하도록 했는데, 제주 안의 고도孤島에 사는 백성으로 1년 내내 고기잡이를 위해 배에서 살아서 육지의 일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위의 미국 군함에 구조되어 상하이로 갔으며 그곳에서 듣기로는, 조선에서 전쟁이 있어 한 척은 격침되고 또 한 척은 수리할 수 없을 정도의 형체가 되었으며 다른 한 척은 무사히 상하이로 왔다고 합니다. 그 복수를 위해 이번에 10척으로 개시했다 합니다. 그래도 승리하지 못하면 서양이 하나로 합하여 착수할 예정이라 합니다. 본서本書에서 말씀드린 아이들 중에 1명은 조선인이 틀림없지만 태어난 곳은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 위의 5명이 상륙할 때 위의 아이가 “잘못되어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했다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위의 두 아이(다음의 문서에 따르면 13세와 17세 아이-웁긴이)의 4촌이 조선에 살고 있어 그와 내통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5명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어민이 말한 것이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약간 흥미로운 기

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군함으로부터 상륙토록 한 한인韓人 5명을 이번에 데리고 건너가서 기회를 봐서 건네주면서 담판의 실마리를 끄집어내고, 또 황국과 미국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의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청縣廳과 상담했는데, 배를 같이 타고 데려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동의하므로 데려갈 생각입니다.

위의 5명 외에 이전부터 배에 타고 있던 13세와 18세 아이는, 작은 아이는 호복胡服에 호모胡帽을 착용하였으며 큰 아이는 중국옷[支那服]에 중국신발 차림이라 합니다. 이들은 상륙을 꺼릴 뿐만 아니라 미국인과 간친懇親하여 심복心腹하는 모습이라 합니다.

미국 군함은 지난달 27일 아침에 5척을 갖추는 대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프랑스 군함[佛艦]도 참가한다는 풍문이 자자합니다.

35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고베神戶에서 보낸 3월 26일자 서한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고베神戶에서 3월 26일 작성한 서간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회람하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조선사무과朝鮮事務掛

편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0일 저녁 5시 반에 요코하마橫濱를 출발하여 22일 아침 7시 반에 고베神戶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상륙하여 현청 및 외무국外務局으로 분담하여 배편을 탐색했지만, 서양선도 여러 번선藩船도 급속히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일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27일 새벽에 이곳을 출발하는 것으로 정해진 미국 정기 우편선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연찰¹¹⁵하십시오. 그렇지만 위의 미국선도 벌써 착발¹¹⁶이 가까워졌다 합니다. 서둘러 나가사키에 도착한 뒤에 미국 군함의 나가사키 출발 상황 등 만사를 문의하고, 일체의 교섭을 나가사키에서 평결¹¹⁷하고 또한 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대략을 의판¹¹⁸ 여러분께도 잘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 25일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안도 타로^{安藤太郎}

조선사무 변리^{朝鮮事務辦理} 앞

며칠 전에, 미국 전권공사가 안도 타로^{安藤太郎}에게 건네준 서장의 내용을 그 이로부터 들었습니다. 우선은 한국으로 건너간 황국 인민의 보호를 의뢰하는 내용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한인이 화의를 의뢰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인 윌리엄스¹¹⁷로부터 미국 군함 안의 잘 아는 이에게 내서¹¹⁸ 한 통을 보내주실 것을 사토^{佐藤} 오사카부^{大阪府} 대속^{大屬}¹¹⁸으로 하여금 간담^{懇談}하게 했습니다. 오늘 사토가 윌리엄스의 소개장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할지 하지 않을지는 어찌 됐든 간에 유념하시라고 이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이곳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¹¹⁵ 불쌍히 여겨 살핌.

¹¹⁶ 1870년 6월 외무성 각 과에 설치된 관직. 주로 대·소승 등 중견간부가 임명되어 이들의 합의로 각 과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¹¹⁷ 윌리엄스는 릿교대학의 설립자이고 일본성공회 초대 주교를 역임한 미국성공회 선교사 사냥 무어 윌리엄스(Channing Moore Williams)로 보인다. 「諸教師狀情探偵書」(JACAR Ref.A03022891100)에 따르면, 당시 윌리엄스는 오사카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¹¹⁸ 각 부(府)·현(縣)이나 요(寮) 등에 설치된 관명. 1869년에 제정되었으며, 각 부서의 장이 임명하는 판임관(判任官)으로 정(正)·권(權)의 구별이 있다.

국기 두 장을 고베神戸 외무국外務局에 얘기하여, 크기는 중평衆評에 따라 결정하여 고른 것을 빌렸습니다. 한 장은 부산 초량항草梁項 딸의 관용館用으로, 한 장은 만약 우책愚策과 같이 왕성 근방에 하나의 사무소를 갖출 수 있다면, 화전和戰의 형편에 따라 그때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려둡니다.

사다 하쿠보佐田白茅에게 보내는 한 통의 서한을, 매번 신세를 지지만 급히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전의 서한에서 청원해둔 사항은 매우 급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3월 26일

히로노부弘信

• 찾아보기

ㄱ

가나가와(神奈川)	99
가와모토 구자에몬(川本九左衛門)	61
가토 가쓰조(加藤活藏)	184
간자키 도쿠로지(神崎徳郎次)	234
강건(姜鍵)	106
강화도	39, 76
경성	47
고바야시 다다시(小林匡)	186, 187
고베(神戸)	185, 229, 231, 235, 237
공친왕(恭親王)	107
관수가(館守家)	66
구스모토(楠本)	112, 231
기도(木戸)	52, 53, 55, 78
기리야마 효자에몬(桐山兵左衛門)	187
기요(崎陽)	82, 90, 93, 96
김해	60, 66

ㄴ

나카노 교타로(中野許多郎)	47
나가사키(長崎)	22, 27, 28, 40, 41, 49, 75,

78, 82, 90, 92, 93, 96, 99, 102, 106, 107,
108, 119, 125, 134, 165, 170, 171, 181,
185, 196, 210, 211, 213, 214, 221, 223,
225, 228, 229, 232, 233, 236

나카이 반코쿠(永井盤谷)	184
나가카와 다이조(長川退藏)	134
나카노 교타로(中野許多郎)	64, 209, 234
난바 아사카(難波安積)	107, 117, 131, 193, 209, 230
네덜란드	41
노자키 도라이치(野崎虎市)	107
나이 한자에몬(仁位半左衛門)	26, 234

ㄷ

다이라 요시아키라(平義達)	190, 192
다지마 단스케(田島彈助)	188
다지마 이치노스케(田島一之助)	188
당포	22, 115, 119, 167, 197
대원군	117, 182
도요라번(豊浦藩)	106
도카이(東海)	40
도쿄(東京)	27, 53, 54, 78, 81, 89, 99, 132,

143, 169, 171, 174, 175, 177, 182, 184,
187, 194, 212, 230, 231

도쿠가와(徳川) 17, 36, 38, 55, 80, 83, 88, 158

독일 48, 51, 57, 58, 62, 64, 117, 182, 185,
209

동래부 16, 36, 53, 58, 60, 68, 105, 129,
132, 178, 197

동래부사 19, 21, 27, 34, 36, 37, 44, 45, 56,
67, 68, 69, 80, 83, 88, 92, 93, 190, 199, 202

당하이(定海) 76

ㄹ

러시아 17, 18, 22, 36, 37, 39, 40, 73, 167,
168, 170, 176, 182, 184, 185, 196, 201,
204

류큐(琉球) 71

ㄴ

마루야마 사쿠라(丸山作樂) 104, 105, 231

마지마 겐조(間島健造) 107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17, 21, 34, 35, 42,
50, 51, 91, 97, 99, 104, 105, 106, 107, 108,
118, 123, 125, 135, 169, 171, 186, 187,
191, 192, 196, 201, 208, 210, 216, 221,
222

모리카와(森川) 권대참사(權大參事) 67, 68

모리카와 교쿠조(森川玉城) 42

미국 27, 28, 29, 30, 31, 41, 109, 111, 182,

192,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6, 227,
229, 230, 233, 234, 235, 236

미야모토 메이(宮本鳴) 186, 192, 201

미야즈 구하치로(宮津宮八郎) 188

ㄷ

반 고라이조(番高麗造) 117

베이징(北京) 74, 75, 76, 226

부산 13, 14, 16, 36, 49, 51, 64, 81, 86,
89, 95, 104, 107, 115, 127, 190, 221, 222,
223, 224, 237

부산관 127

부산첨사 19, 21, 27, 56, 80, 84, 88, 92, 94,
190, 199, 202

부산포 22, 47, 75, 115, 127, 227, 228, 229

ㄷ

사다 나오히로(佐田直寛) 186, 192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112, 187, 201, 212,
237

사에지마(鮫島) 109, 111

사와 노부요시(澤宣嘉) 103, 104, 134

산인(山陰) 40

상하이(上海) 27, 108, 211, 228, 233, 234

소 시게마사(宗重正) 22, 24, 120, 123

소 요시아키라(宗義達) 21, 103, 104

시바야마 헤이자부로(芝山平三郎) 126
 시시도 빈고노스케(宍戸備後介・宍戸璣) 184
 쓰시마 13, 14, 16, 18, 19, 22, 24, 26, 43, 44,
 49, 51, 52, 53, 56, 62, 63, 73, 75, 76, 78,
 79, 80, 88, 103, 106, 107, 110, 115, 116,
 117, 119, 125, 127, 128, 133, 134, 176,
 177, 193, 194, 197, 202, 208, 209, 211,
 223, 225, 226, 229
 쓰시마노카미(對馬守) 27, 190, 192
 쓰쿠이 엔(津久井遠) 186, 192, 201



아오야마 시게지로(青山繁次郎) 128, 131, 132
 아와야 다스케(栗屋多助) 71, 77
 안도 타로(安藤太郎) 218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 222, 231
 야마가타 교스케(山縣狂介・山縣有明) 184
 야마구치번(山口藩) 71
 에도(江戸) 41, 44, 83, 84, 200
 옴포 127
 영국 28, 109, 111, 118, 138, 183, 185,
 211, 214
 오덕영 106
 오록도 22, 116, 197
 오바 겐지베(大庭源次兵衛) 112, 184
 오사카(大阪) 99, 181, 188, 236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 16, 52, 56,
 120, 174, 186, 207

오쿠 요시노리(奥義制) 187, 232
 와니우라(鰐浦) 22, 114, 119, 197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17, 21, 80, 87, 91,
 96, 97, 98, 99, 102, 104, 105, 106, 107,
 109, 111, 114, 118, 119, 123, 124, 125,
 126, 134, 135, 167, 169, 170, 171, 181,
 186, 187, 191, 192, 193, 196, 197, 200,
 201, 206, 208, 210, 216, 218, 221, 222,
 223
 요코하마(横浜) 92, 96, 99, 182, 185, 187,
 190, 192, 212, 213, 214, 229, 231, 235,
 236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 16, 22, 43, 50, 52,
 56, 57, 61, 66, 81, 89, 107, 110, 168, 170
 울산 119, 127, 197
 웅천 127
 유세환 106
 의주 76
 이시카와 이와시(石川岩司) 184
 이의일 22, 169, 175
 이즈하라(嚴原) 16, 18, 22, 24, 26, 27, 43,
 66, 67, 68, 69, 70, 80, 81, 88, 89, 105, 106,
 114, 116, 119, 120, 122, 123, 124, 125,
 126, 167, 168, 170, 193, 195, 196, 201,
 210, 211, 220, 221, 222, 230, 233, 234
 이키(壱岐) 106, 229
 이타쿠라 겐노조(板倉源之丞) 188
 이타쿠라 데이조(板倉貞藏) 231

ㄱ

절영도	22, 116
제주	28, 76, 233, 234
제포	127
지나(支那, 중국)	38, 42, 39, 71, 83, 95, 117, 136, 137, 140, 142, 146, 149, 152, 160, 161, 162, 182, 185, 196, 202, 204, 228, 235
진제(鎭西)	40

ㄴ

초량	127, 208
초량(왜)관	13, 19, 22, 26, 29, 126, 127, 176, 197
초량항	36, 237

ㄷ

타이슈(對州)	44, 45, 46, 48, 50, 54, 56, 64, 66, 73, 75, 77, 79, 80, 82, 88, 90, 93, 96
터키	185
텐진(天津)	76, 107

ㄹ

프랑스	39, 109, 111, 235
프러시아	109, 111

ㅎ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	112, 231
하세가와 다이조(長谷川退藏)	134
해남	76
홋카이(北海)	40, 117, 185
효고(兵庫)	99, 188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	125, 194
히구치 데츠시로(樋口鍬四郎)	42, 124
히로세 도요키치(広瀬豊吉)	59, 64, 201, 202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17, 21, 27, 35, 42, 51, 91, 97, 99, 132, 104, 105, 106, 107, 108, 118, 123, 125, 134, 168, 171, 186, 191, 192, 196, 200, 201, 202, 206, 210, 211, 212, 216, 218, 223, 229, 230, 231, 232, 235, 236
히타(日田)	183, 188, 207

조선사무서는 1867년 메이지유신 직전·후부터 개항을
앞둔 1874년까지 조선과 관계된 외교 문서를 '재부산일본총
영사관'이 정리한 문서이다.



ISBN 979-11-85308-47-0
ISBN 978-89-964675-0-2 (세트)